預金保護制度의 導入方案과 外國事例 分析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우리 경제는 金融의 自律化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금리의 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으며 금융시장에의 진입, 금융기관의 업무 및 내부 경영 등이 자율화되고 있다. 자율화에 의하여 촉진된 競爭과 創意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추진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 자율화로 인하여 金融制度가 不安全해질 우려도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 도산 등이 발생하여 金融 業務가 마비되는 등 금융제도가 불안전하게 되고 결국 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자율화는 반드시 金融制度의 安全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금융제도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監督의 기능에 의하여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의 행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감독만으로 금융제도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限界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 거래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즉 '預金保護制度'의 도입·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자율적인 경영의 결과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예금지급이 보장되어 예금의 연쇄인출현상이 방지됨으로써 自律性과 安全性이 동시에 달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財政經濟院은 本 硏究院에 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發刊하기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금보호제도의 방안을 第1篇에 제시하였으며 第2篇에는 주요국의 예금보호제도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자료가 비교적 방대하므로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 내용을 要約하여 수록하였다. 그 밖에 주요국의 예금보호법이 별도의 자료로 간행되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제정된 「預金者保護法案」에 이미 반영되었지만 앞으로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도 계속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本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崔長鳳 先任研究委員과 安鍾吉 明知大學校 敎授 및 金基洪 忠北大學校 敎授가 공동으로 연구·집필하였다. 著者들의 勞苦에 감사드리며, 저자들을 대신하여 本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검토자와 원고정리 등에 수고한 崔祉香 研究助員께 감사드린다. 또한 유럽지역의 現地調査를 위하여 研究費 一部를 지원한 大韓商工會議所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本書의 내용은 著者들 個人의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적인 見解와는 무관하다.

1996年 4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要　約 …… 15

第1篇 預金保護制度의 導入 …… 65

Ⅰ. 預金保護制度의 必要性 …… 67

1. 現況 …… 67
2. 問題點 …… 71
3. 目的 …… 75
4. 必要性 …… 77
5. 期待效果 …… 82
6. 課題 …… 83

Ⅱ. 預金保護制度 導入의 基本方向 …… 87

1. 形式 …… 87
2. 機能 …… 88
3. 性格 …… 90
4. 形態 …… 92
5. 保護對象 預金 및 機關 …… 96
6. 業務內容 …… 102
7. 道德的 危險 …… 107
8. 加入의 強制性 …… 109
9. 其他 …… 110
10. 形成段階 …… 110

Ⅲ. 預金保險公社의 運營 …… 112

1. 保險事業者 機能 …… 112
2. 保險加入對象 金融機關 …… 115
3. 保險對象 預金種類 …… 117
4. 保險加入方式 …… 119
5. 保險基金의 調達方式 …… 121
6. 預金保險金 限度額 …… 123
7. 保險料 …… 133
8. 個人年金信託 …… 139

Ⅳ. 預金保險公社의 組織, 財源 및 法律制定事項 …… 141

1. 組織 …… 142
2. 財源調達 · 運用 …… 159
3. 法律制定事項 …… 170

第 2 篇 主要國의 預金保護制度 …… 179

Ⅰ. 序 論 …… 181

Ⅱ. 美國의 預金保險制度 …… 184

1. 預金保險制度의 設立 背景 …… 184
2. 聯邦預金保險公社(FDIC) …… 186
3. FDIC의 最近 運營現況 …… 198
4. 全國信用組合出資金保險基金(NCUSIF) …… 209
5. FDIC 改革에 관한 最近 論議의 主要 內容 …… 213

Ⅲ. 캐나다의 預金保險制度 ····· 221

1. 預金保險制度의 設立 背景 ····· 221
2. 캐나다 預金保險公社(CDIC) ····· 223
3. CDIC의 活動 現況 ····· 236
4. CDIC의 金融監督 機能 ····· 247
5. 最近의 金融改革 方向 ····· 251

Ⅳ. 日本의 預金保險制度 ····· 253

1. 預金保險制度의 設立 背景 ····· 253
2. 預金保險機構(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254
3. 預金保險機關의 最近 運營 現況 ····· 262
4. 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險機構 ····· 270
5. 預金保險機構와 監督當局과의 關係 ····· 273
6. 日本의 銀行監督 ····· 275

Ⅴ. EU의 預金保護制度 指針(Directive) ····· 277

1. 背景 ····· 277
2. 保護 預金額 ····· 280
3. 保護對象 預金 및 預金者 ····· 281
4. 預金保護制度의 運營 ····· 281
5. EU의 相互主義(reciprocity) ····· 283
6. EU의 銀行監督 ····· 286

Ⅵ. 獨逸의 預金保護制度 ····· 296

1. 預金保護制度의 設立 背景 ····· 296

2. 預金保護委員會 ····· 297
3. 預金保護基金 ····· 298
4. 銀行監督 ····· 302

Ⅶ. 英國의 預金保護制度 ····· 311

1. 預金保護制度의 設立 背景 ····· 311
2. 預金保護委員會 ····· 313
3. 銀行監督 ····· 323

Ⅷ. 프랑스의 預金保護制度 ····· 331

1. 預金保護制度의 設立 背景 ····· 331
2. 預金保護制度 ····· 333
3. 銀行監督 ····· 335

Ⅸ. 其他國의 預金保護制度 ····· 339

1. 덴마크의 預金保險制度 ····· 339
2. 네덜란드의 預金保護制度 ····· 345

〈參考文獻〉 ····· 349

〈附錄 Ⅰ〉 聯邦貯蓄貸付保險公社(FSLIC) ····· 359
〈附錄 Ⅱ〉 日本 預金保險制度 導入에 대한 日本 金融機關의 意見 ··· 362

表 目 次

〈表 Ⅰ－ 1〉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預金保護制度 …… 69
〈表 Ⅰ－ 2〉 各國의 預金保險 形態 …… 91
〈表 Ⅰ－ 3〉 各國의 保險金 支給限度와 保險料 …… 93
〈表 Ⅰ－ 4〉 各國의 預金保險對象 …… 98
〈表 Ⅰ－ 5〉 金融機關 種類別 保險對象預金 比重 現況 …… 118
〈表 Ⅰ－ 6〉 保險對象預金 種類別 比重 現況 …… 119
〈表 Ⅰ－ 7〉 全預金銀行 預金種類別 · 金額別 殘額 現況 …… 127
〈表 Ⅰ－ 8〉 保險對象預金의 總預金對比 比重 …… 128
〈表 Ⅰ－ 9〉 保險對象預金에 대한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 …… 129
〈表 Ⅰ－10〉 預金種類別 · 限度額別 預金計座數 및 金額 構成比 … 132
〈表 Ⅰ－11〉 保險料率 水準別 1年間 收入保險料 規模 …… 138
〈表 Ⅰ－12〉 銀行經營에 대한 保險料의 影響 …… 138
〈表 Ⅰ－13〉 FDIC Division들의 主要 遂行業務 …… 145
〈表 Ⅰ－14〉 預金保險機構의 法的 性格에 관한 代案 …… 152
〈表 Ⅰ－15〉 預金保護制度 導入方案의 例 …… 154
〈表 Ⅰ－16〉 預金保險基金의 積立規模(2000年 末 現在)에 대한 推定 …… 165
〈表 Ⅰ－17〉 借入限度의 國別 比較 …… 169

〈表 Ⅱ－ 1〉 FDIC Division들의 主要 遂行業務 …… 187
〈表 Ⅱ－ 2〉 聯邦預金保險公社의 保險料와 保險金 變化 推移 …… 193
〈表 Ⅱ－ 3〉 危險加重 保險料率 …… 196
〈表 Ⅱ－ 4〉 FDIC의 倒産銀行 處理方法 …… 197
〈表 Ⅱ－ 5〉 付保預金과 銀行保險基金 規模 推移 …… 200

〈表 Ⅱ－ 6〉 銀行保險基金의 收益/費用 推移 …… 202
〈表 Ⅱ－ 7〉 銀行保險基金의 保險金 支給 및 그에 따른 損失額 推移 ……204
〈表 Ⅱ－ 8〉 保險金支給方法別 銀行保險基金의 支給 現況 …… 205
〈表 Ⅱ－ 9〉 貯蓄組合保險基金의 付保預金과 積立基金 …… 208
〈表 Ⅱ－10〉 貯蓄組合保險基金의 收益 /費用 …… 208
〈表 Ⅱ－11〉 全國信用組合出資金 保險基金의 收益 /費用 …… 212
〈表 Ⅱ－12〉 NCUSIF에 대한 最近 5年間의 統計資料 …… 212
〈表 Ⅱ－13〉 NCUSIF의 保險金支給 및 援助 現況 …… 213
〈表 Ⅱ－14〉 聯邦預金保險 改革을 위한 提案들의 主要 內容 …… 219
〈表 Ⅱ－15〉 被保險預金의 付保限度 關聯規程 …… 230
〈表 Ⅱ－16〉 CDIC 貸借對照表 …… 237
〈表 Ⅱ－17〉 CDIC 損益計算書 …… 238
〈表 Ⅱ－18〉 1967～94년 동안의 CDIC의 加盟金融機關의 破產 … 241
〈表 Ⅱ－19〉 CDIC의 最近 5年間의 財務狀況 …… 242
〈表 Ⅱ－20〉 最近 5年間의 CDIC加盟金融機關 및 其他에 關한 統計値 …… 242
〈表 Ⅱ－21〉 CDIC의 最近 貸借對照表 …… 243
〈表 Ⅱ－22〉 CDIC의 最近 損益計算書 …… 244
〈表 Ⅱ－23〉 CDIC의 最近 財務狀態變動表 …… 245
〈表 Ⅱ－24〉 CDIC가 介入한 信託會社와 貸付會社의 被保險預金 … 246
〈表 Ⅱ－25〉 預金保險制度의 擴充・整備過程 …… 261
〈表 Ⅱ－26〉 預金保險機構의 貸借對照表 …… 263
〈表 Ⅱ－27〉 預金保險對象 金融機關數의 推移 …… 265
〈表 Ⅱ－28〉 被保險預金殘高와 責任準備金(預金保險基金) 推移 … 266
〈表 Ⅱ－29〉 金融機關別 被保險預金殘高의 推移 …… 267
〈表 Ⅱ－30〉 預金保險機構의 損益計算書 …… 268

〈表 Ⅱ－31〉 지금까지의 預金保險資金 援助 發動事例 …… 269
〈表 Ⅱ－32〉 貯金保險機構 貸借對照表 …… 272
〈表 Ⅱ－33〉 貯金保險機構 損益計算書 …… 272
〈表 Ⅱ－34〉 大藏省과 日本銀行의 金融監督 比較 …… 276
〈表 Ⅱ－35〉 EU의 金融環境 …… 284
〈表 Ⅱ－36〉 EU의 預金保險 形態 …… 285
〈表 Ⅱ－37〉 EU의 保險金 支給限度와 保險料 …… 285
〈表 Ⅱ－38〉 EU의 預金保險對象 …… 286
〈表 Ⅱ－39〉 EC金融統合에 對應하기 위한 最近의 獨逸 銀行法
改正內容 …… 309
〈表 Ⅱ－40〉 加入·倒産 金融機關數 및 基金殘額 推移 …… 320
〈表 Ⅱ－41〉 英國 預金保護基金의 最近 4年間 貸借對照表 …… 320
〈表 Ⅱ－42〉 英國 預金保護基金의 最近 4年間 損益計算書 …… 321
〈表 Ⅱ－43〉 英國 預金保護基金의 最近 4年間 財務狀態 變動表 … 322
〈表 Ⅱ－44〉 英國 金融機關들에 대한 監督體系 …… 328
〈表 Ⅱ－45〉 年度別 銀行倒産數 및 預金保險料 支給規模 …… 329
〈表 Ⅱ－46〉 프랑스 銀行聯合會의 倒産銀行에 대한 資金支援 現況… 338
〈表 Ⅱ－47〉 덴마크의 破産 金融機關 …… 341
〈表 Ⅱ－48〉 북유럽지역 金融機關의 損失規模 …… 341

附 表 目 次

〈附表 Ⅰ－1〉 預金種類別 預受金 現況 …… 378
〈附表 Ⅰ－2〉 市中銀行의 預金種類別 預受金 現況 …… 378
〈附表 Ⅰ－3〉 地方銀行의 預金種類別 預受金 現況 …… 379
〈附表 Ⅰ－4〉 特殊銀行의 預金種類別 預受金 現況 …… 379
〈附表 Ⅰ－5〉 A銀行의 總預受金 金額別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 … 380
〈附表 Ⅰ－6〉 B銀行의 總預受金 金額別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 … 381
〈附表 Ⅰ－7〉 C銀行의 總預受金 金額別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 … 382
〈附表 Ⅰ－8〉 各國의 1人當 GNP 및 貯蓄額 對比 預金保險
付保限度額 …… 383

圖 目 次

[圖 Ⅰ-1] FDIC의 組織構成 …… 144
[圖 Ⅰ-2] CDIC의 組織構成 …… 147
[圖 Ⅰ-3] 信用管理基金의 組織圖 …… 159

[圖 Ⅱ-1] FDIC의 組織構成 …… 188
[圖 Ⅱ-2] FDIC와 FSLIC의 保險料水準 및 損失率 推移 …… 195
[圖 Ⅱ-3] FDIC 基金의 預金對比 比率 推移 …… 199
[圖 Ⅱ-4] CDIC의 組織構成 …… 225
[圖 Ⅱ-5] CDIC의 保險料 計算 樣式 …… 233
[圖 Ⅱ-6] QDIB의 保險料 計算 樣式 …… 234
[圖 Ⅱ-7] 캐나다의 金融監督體系 …… 248
[圖 Ⅱ-8] 獨逸의 銀行監督機構 …… 304
[圖 Ⅱ-9] 中央銀行 內 銀行監督 機構圖 …… 328

要　　約

第1篇 預金保護制度의 導入

Ⅰ. 明示的인 銀行對象 預金保護制度의 必要性

1. 預金保護制度의 現況

-그 동안 政府는 암묵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銀行의 예금자를 보호하여 왔다.

-銀行의 경우 정부가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은 은행이 公共性을 띤 機關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결국 은행의 도산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非銀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기금 형태의 預金保護制度가 존재하지만 대형의 금융사고 또는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수습하고 예금자를 보호하여 왔다.

2. 現 預金保護制度의 問題點

-그 동안의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預金保護制度는 金融機關의 보호와 預金者의 보호를 구분하지 못하고 예금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충분한 경우에도 부실화된 금융기관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ㅇ경영이 부실한 금융기관 자체가 보호되는 경우에는 金融機關의 株主, 경영진, 보호대상이 아닌 거래자 등도 예금자와 더불어 보호를 받게 되어 이들의 부실경영 책임을 정부가 안게 된다.

-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預金保護制度는 대체로 정부가 은행의 도산을 방지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경영의식 부족 등의 이유로 은행의 競爭力 向上이 기대되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效率性이 훼손된다.
  - ㅇ금융의 효율성 제고가 우리나라 금융이 안고 있는 최대의 課題이다.
- 금융권별로 預金保護制度에 있어서 差異가 있는 점도 우리나라 預金保護制度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 ㅇ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소형 저축기관과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보험회사는 기금에 의하여 예금자가 보호되는 반면 그 밖에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明示的인 預金保護制度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 ㅇ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간에도 예금보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에 명시적인 예금보호제도가 있으면 본점은 실질적으로 국내지점의 예금자를 보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預金保護制度의 目的

- 預金保護制度의 目的은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善意의 一般 少額預金者를 보호하고,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연쇄적 預金引出事態(bank-run)를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安全性과 특히 금융산업 및 금융거래의 效率性을 높이고,
- 규모, 중점 영업지역, 국적 등이 다른 다양한 금융기관간에 公正한 경쟁여건을 제공하며,
- 安全한 金融制度와 效率的인 金融産業을 달성함에 있어서 예금자, 금융기관, 정부 등의 責任과 權限을 명백하게 하고 금융기관 도산시 일반 국민의 負擔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4. 必要한 預金保護制度

－金融自律化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전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정부에 의한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는 계속 維持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經濟環境에 적합한 預金保護制度가 필요하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한 大型 金融機關의 도산도 허용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이 아닌 금융기관의 부담에 의하여 예금자가 보호된다는 면에서 中央銀行의 最終 資金供給者機能과 구분되는 預金保護制度가 필요하다.

－政府의 암묵적 預金保護制度가 유지되는 경우 금융이 자율화되면서 과다한 高危險－高收益 추구행태를 유발하는 금융기관의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이 우려되므로 道德的 危險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경제가 개방화·국제화·세계화됨에 따라 世界經濟의 변화추세에 맞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금융 거래자의 去來費用을 줄일 수 있도록 公信力이 있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損失을 예금자의 예금액 차이, 금융기관의 규모 차이 등에 따라 금융기관, 정부, 일반 국민 등이 公平하게 분담할 수 있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5. 預金保險公社의 設立

－銀行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預金保險公社를 설립하고 그 내에 預金保險基金을 둔다.

가. 期待效果

－預金保護機構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信賴가 가장 중요하므로 公社의 성격을 띤 예금보호기구를 설립한다.

－銀行을 對象으로 하는 明示的인 預金保護制度가 도입됨으로써 個別銀行의 도산이 다른 금융기관의 도산 및 금융제도의 불안전성을 유발하는 연결고리가 차단되어 金融自律化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은행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질 때 一次的으로 預金保險公社가 조기에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納稅者로서 일반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

나. 中央銀行으로부터의 分離

－中央銀行이 預金保險基金을 직접 운용하게 되면 도산가능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과정에서 중앙은행 업무에 자동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통화관리의 獨立性·中立性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중앙은행의 최종 자금공급자기능은 은행의 부실여부에 관계없이 金融制度의 안전을 위하여 은행에게 필요한 流動性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預金保護制度의 기능과는 구분된다.

－中央銀行이 預金保險基金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일반 국민은 중앙은행이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은행도 중앙은행에게 資金支援 등을 의존하게 되어 새로이 預金保護制度를 도입하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금보호제도는 중앙은행과 분리되어 도입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단 예금보험공사와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는 필요하다.

다. 監督機關으로부터의 分離

- 피감독기관의 도산은 적정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감독기관에 의한 業務 停止, 免許 取消 등의 권한 집행은 금융제도 불안전 등의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監督機關은 부실은행을 적정한 시기에 파산시키지 못하고 預金保險基金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으로부터 預金保護를 위해 保險料를 징수하고 또 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업무로서 不適切하다.
- 따라서 예금보호제도는 監督機關과도 分離되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ㅇ단 예금보험공사와 감독기관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 段階的 推進

- 예금보호제도가 완전히 定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반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5년의 期間(1996~2000년)에 걸쳐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Ⅱ. 預金保險公社의 運營

1. 形態

- 預金保險公社 내에 형성되는 預金保險基金은 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정기적으로 一定 保險料를 받아 이루어진다.
- 預金保險公社는 예금보험기금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管理할 의무가 있다.

2. 機能

－預金保險公社는 은행의 도산시 예금자에게 약정된 보험금(付保預金)을 지급하고 은행을 청산처리하는 가장 基本的인 기능을 수행한다.

－預金支給不能 銀行의 보험대상예금을 타 은행에 承繼시키거나 또는 讓渡시키는 기능을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하며, 예금지급불능의 은행 자체를 타 은행에 引受시키는 감독당국의 결정에 예금보험공사도 참여한다.

－保險對象預金 또는 부실은행을 인수할 은행이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 은행을 폐쇄하고 付保預金을 지급하는 경우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감독당국이 판단할 때에는 예금보험공사가 暫定的으로 銀行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ㅇ잠정은행은 일정기간 동안 도산 은행 또는 부보예금을 인수하여 保險金을 支給하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수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預金支給不能이 우려되는 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金融制度 등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게 직접 資金을 支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대상예금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예금자에게 지급이 보장되는 保險金은 최대화되는 한편 은행의 부담이 되는 保險料는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監督機能을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다.

ㅇ단 최대한 重複監督을 피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와 감독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갖추고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감독을 최소화한다.

ㅇ예컨대 은행에게 他 監督機關과 통일된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에 의한 감독에 의존하며 필요한 경우 타 감독기관에의 委任監督에 의존한다.

3. 保護對象 預金 및 加入對象 機關

가. 保護對象 預金

- 預金保險制度 導入의 주된 목적은 善意의 一般 預金者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연쇄 예금인출현상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원貨預金인 要求拂預金, 貯蓄性預金 및 원금이 보장되는 金錢信託이 보호대상의 예금이다.
-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利子는 모두 보험대상 예금에 포함된다.
- 金融機關間 預金은 金融機關이 일반 예금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情報蒐集能力이 있고 연쇄 예금인출현상에 대한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보험대상에서 除外한다.
  - ㅇ금융기관간 예금이 보험에서 제외되면 金融機關 相互間의 監視體制가 強化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 外貨預金은 전체예금에서 차지하는 현재의 비중이 미미한 편이며 타국통화인 외화 자체의 지급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保險對象에서 제외한다.
- CD 등 채권형 상품은 보험대상에서 제외한다.
- 假名 및 借名 預金은 보호하지 않는다.
- 금융 국제화의 관점에서 非居住者에 의한 예금도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호한다.
- 외국 금융기관의 國內 支店 및 現地法人에 의한 예금은 內國民 待遇의 관점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국내 금융기관의 海外 支店 및 現地法人에 의한 예금은 해외 현지의 預金保護制度에 따라 보호여부가 결정된다(host country basis).
- 個人年金信託은 예금의 성격, 예치기간, 조세제도 등에서 타 예금과 매우 상이한 특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취급한다.
  - ㅇ장기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公社內에 '個人年金保險基金'을 설정하고 보험금과 보험료를 별도로 정하여 個人年金信託 加入者를 보호한다.

나. 加入對象 機關

- 預金保險基金에의 가입대상이 되는 金融機關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이다.
- 가입대상 은행은 예금보험기금에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ㅇ단 예금보험공사는 가입을 강제화하여도 부실한 은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은행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基金의 損失이 최소화되도록 除名의 기준도 엄격하게 설정한다.
  - ㅇ除名된 부실은행은 경영을 개선하여 재가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신뢰를 상실하여 파산하게 될 것이다.
- 國策銀行은 도산의 가능성이 없지만 정부의 개입 이전에 국책은행 자체의 책임, 은행간의 형평성, 예금보험공사의 기반강화 등의 이유로 가입대상에 포함한다.
- 保護對象 預金을 취급하고 있는 外國銀行 國內支店도 가입대상 금융기관이다.

다. 預金保護의 基準

- 실제로 보호되는 예금은 각 은행에 대하여 개별 예금자의 總 保險對象 預金에서 차입금을 제외한 純預金이다.

4. 預金保險金 限度額

가. 算定方式

- 預金保險金은 예금보험기금에 가입한 은행이 도산할 경우 당해 은행의 보험대상예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에게 支給義務를 지는 補償金額(coverage)을 뜻한다. 또한 預金保險金 限度額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의무를 지는 上限額을 뜻한다.

ㅇ예금보험금에 한도를 두는 이유는 가입 은행의 고위험－고수익 추구행태 즉 道德的 危險을 감소시키고 가입 은행의 도산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의 基金 枯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가 預金者 保護 및 連鎖 預金引出現象의 防止이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預金保險金 限度額을 다소 높이고 이로 인한 예금보험기금의 財政負擔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산 은행의 殘存資産에 대한 優先請求權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ㅇ限度額이 낮을 경우 去來銀行의 不實化時 거액 예금자의 早期離脫로 해당은행의 不實化가 가속화되는 등 예금보험제도의 연쇄 예금인출현상 방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예금자가 限度金額만큼씩을 여러 金融機關에 分散預金함에 따라 金融機關 利用費用의 增加, 金融制度의 效率性 低下, 이로 인한 社會費用 增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ㅇ한편 限度額이 높을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재정부담이 증가되며 이는 가입 은행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은행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

－保險金을 一定 預金額(첫 한도)까지 전액 보호하여 소액 예금자를 모두 보호하고 다음 한도액까지는 一定率을 보호하여 연쇄 예금인출현상의 可能性을 줄이면서 은행의 道德的 危險에 대한 巨額 預金者들의 監視機能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ㅇ一定率 保護方式은 保險의 部分保護(coinsurance)方式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보호는 被保險者의 道德的 危險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금자들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監視活動을 하게 되어 은행의 不實經營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ㅇ한편 外國의 경험에 의하면 예금자는 預金保險限度額 內에서는 은행의 경영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預金保險機構에의 加

入與否만 확인하고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 ㅇ 또한 外國의 경험에 의하면 예금보호제도의 導入初期에 부분보호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그 방식을 도입하기가 어렵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부분보호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예금자들의 反撥이 거세어 이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 은행 도산시의 保險金 支給時期도 금융기관의 連鎖 預金引出現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도산시 빠른 시일 내에 保險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 ㅇ 그러나 완전한 보험금 지급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예금자 편의를 위하여 미리 예금자에게 假拂金을 지급하고, 후에 지급된 가불금을 保險金에서 差減한다.

나. 水準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중에서 각각 1개씩 선정된 A은행, B은행, C은행의 保險對象 預金(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금전신탁)의 預金者 및 金額 構成比를 살펴보면(〈表 1〉 참조),
  - ㅇ 保險限度額을 1,000萬원으로 하는 경우, 保險加入 對象이 되는 1,000萬원 未滿의 預金者가 전체 예금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A은행의 94.89%부터 C은행의 97.28%까지 대체로 95% 이상의 수준이며, 전체 예금액 중 보험가입대상 예금액 비중은 C은행의 14.94%부터 B은행의 34.42%까지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 ㅇ 保險限度額을 2,000萬원으로 하는 경우, 保險加入對象 預金者 比重은 97%이상(A: 97.68, B: 98.65, C: 98.79)이 되며, 특히 保險加入對象 預金額 比重은 C은행의 21.66%부터 B은행의 49.89%까지로 상당수준 증가된다.
  - ㅇ 保險限度額을 5,000萬원으로 하는 경우, 保險加入對象 預金者 比重은 99%이상이 되고, 金額 比重은 29.08%(C은행)부터 64.96%(B은행)까지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表 1〉 保險對象預金에 대한 預金者 및 金額 構成比(1994년 말 기준)

(單位 : %)

	A은행		B은행		C은행	
	예금자 구성비 (누계)	금 액 구성비 (누계)	예금자 구성비 (누계)	금 액 구성비 (누계)	예금자 구성비 (누계)	금 액 구성비 (누계)
1,000만원 미만	94.89	15.56	96.48	34.42	97.28	14.94
2,000만원 미만	97.68	24.16	98.65	49.89	98.79	21.66
3,000만원 미만	98.67	29.37	99.27	57.59	99.24	25.18
5,000만원 미만	99.29	34.56	99.65	64.96	99.55	29.08

－예금보호제도 관련 당사자인 예금보험공사, 가입 은행, 예금자 등이 제도를 조기에 인식하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호제도 도입시에 適正水準의 保險 限度額을 책정한다.

－보험 한도액의 代案은 다음 세 案이다.

〈第 1 案〉 2,000만원까지 전액보호

〈第 2 案〉 1,000만원까지 전액보호하고, 1,000만원 초과부터 3,000만원까지 90%(또는 95%)보호

〈第 3 案〉 2,000만원까지 전액보호하고, 2,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까지 90%(또는 95%)보호

－〈第1案〉은

○ 전체 예금자의 대부분(A은행: 97.68%～C은행: 98.79%)을 보호할 수 있다.

○ 금액수준으로는 은행별로 전체예금의 21%～50%수준을 보호하게 되며 저축성예금의 경우 총저축성예금의 약 50%, 금전신탁의 경우 총금전신탁의 약 22%를 보호하게 된다.

○ 1993년 말을 기준으로 보험한도액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금액기준으로 美國, 캐나다, 日本, 臺灣에 비해 낮고 英國과 비슷한 수준이며 1인당 GNP 및 1인당 저축액 기준으로는 美國보다는 낮고,

英國, 프랑스, 日本 등에 비해 높으며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다 (〈表 2〉 참조).

－〈第 2 案〉은

○〈第 1 案〉에 비하여 保險 限度額이 약간 높은 수준이나 부분보호이므로 大同小異하다.

○예금자도 일부 책임을 지는 部分保護制度이므로 은행시장에의 진입이 점차 자유롭게 됨에 따라 국내 외국은행 등 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예금자의 監視機能을 기대할 수 있다.

－〈第 3 案〉은

○전체 예금자의 99% 이상을 보호할 수 있다.

〈表 2〉 保險限度額 및 保險料率 수준의 國別 比較(1993년 말 기준)

(單位 : %)

	보험한도액	보험한도액/1인당GNP	보험한도액/1인당저축액	보험료율
캐 나 다	U$ 42,772	2.509	11.499	부보예금의 0.167%
독 일	자본금의 30%	－	－	총예금의 0.03%
프 랑 스	U$ 74,822	3.278	5.586	－
일 본	U$ 100,261	2.609	2.632	보험대상예금의 0.012%
대 만	U$ 38,023	－	－	부보예금의 0.015%
영 국	U$ 23,438	1.374	1.489	총예금의 0.3% 이하
미 국	U$ 100,000	4.057	26.810	총예금의 0.23~0.31%
한 국	2,000만원	3.340	8.766	－
	3,000만원	5.009	13.149	－
	5,000만원	8.349	21.916	－

－외국의 경우처럼 巨額 예금자를 少額 예금자로 분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金融實名制度 및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도입에 의하여 그 시도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제도적으로 쉽게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5. 保險料

가. 算定方式

－保險料는 예금보험기금에 가입한 은행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保險事故 確率에 준한 적정비용을 被保險者로부터 醵出하는 金額을 뜻한다.

－保險料 算定方式에는 固定料率方式과 差等料率方式이 있다.

○固定料率方式은 보험료산출과 기타 行政費用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差等料率(risk-based premium)方式은 가입 은행의 健全性에 따라 差等的으로 保險料率을 적용함으로써 가입 은행의 道德的 危險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일정기간 동안 固定料率方式을 운영하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때(2000년 이후) 差等料率方式을 도입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產業政策의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에 차이가 있고 자율적인 增資에 제약이 있는 등의 현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差等料率方式을 도입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聯邦預金保險公社(FDIC)도 1933년 도입 이후 고정요율방식을 유지하였으며 1993년에 들어서야 차등요율방식을 도입하였다.

－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預金으로서 다음 두가지 代案이 있다.

〈第1案〉 보험대상예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第2案〉 부보예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第1案〉은

○保險金 支給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보험기금 확충이 용이하고 계산이 간편하나 保險으로 보호되지 않는 巨額預金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ㅇ예금보험공사는 부보예금 이외의 자산도 간접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第2案〉은

ㅇ보험으로 보호되는 예금에 대해서만 保險料를 납부하여 보험료 徵收의 본래 취지인 수혜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만

ㅇ단기간에 보험기금의 확충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계산이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

－다음에는 保險對象預金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ㅇ보험료는 보험대상예금에 대한 계산기간의 平均殘額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水準

－1994년 말 기준으로 總 保險對象預金은 약 240조원이다.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保險基金의 규모는 1994년 말 기준으로 總 付保預金額의 0.5%～1%인 5,000억원 수준이다.

－예금보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保險料를 필요보험기금에 적정한 보험료 수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은행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ㅇ1990년대 말에는 은행에 대한 必要支給準備率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지급준비율의 하락시에 保險料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ㅇ외국의 경우에도 預金保險機構의 보험료 산정은 보험계량적 산정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금의 조달방식 및 규모, 은행의 보험료 납부능력, 보험금 한도액수준, 기금의 적립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

－保險料가 預金者 및 貸出者의 費用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 영향이 미미하도록 보험료율을 정한다.

－보험료의 代案으로 제시할 수준은 매년 0.01%～0.10%수준이다(외국의 예: 〈表 2〉 참조).

○ 收入保險料는 1994년 말 기준으로 1년에 약 240억원~2,400억원에 이른다(〈表 3〉 참조).

〈表 3〉 保險料率 水準別 1年間 收入保險料 規模(1994년 말 기준)

(單位 : 億원)

	보험대상예금[1]	보험료율			
		0.01%	0.02%	0.05%	0.1%
시 중 은 행	1,410,628	141.06	282.13	705.31	1,410.63
지 방 은 행	257,201	25.72	51.44	128.60	257.20
특 수 은 행	714,785	71.48	142.96	357.39	714.79
개 발 은 행	47,180	4.72	9.44	23.59	47.18
계	2,429,794	242.98	485.96	1,214.90	2,429.79

註 : 1) 추정치임.

-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제1단계인 初期(1996~1997년)에는 보험료율을 保險對象預金의 0.01%~0.02%로 정한다.
  - ○ 보험료율 수준이 保險對象預金의 0.01%~0.02%인 경우 1994년 말 기준으로 은행의 납부보험료 부담은 대체로 業務利益 및 總費用의 각각 약 1%, 0.2%에 미치지 못한다(〈表 4〉 참조).
  - ○ 이와 같은 부담을 고려할 때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초년도 保險料率을 보험대상예금의 0.02%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表 4〉 銀行經營에 대한 保險料의 影響(1994년 말 기준)

(單位 : %)

	보험료/업무이익[1]			보험료/총비용		
보험료율	0.01	0.015	0.02	0.01	0.015	0.02
시 중 은 행	0.35	0.52	0.69	0.10	0.15	0.20
지 방 은 행	0.45	0.67	0.90	0.10	0.15	0.20
특 수 은 행	0.58	0.88	1.17	0.09	0.13	0.18
개 발 기 관	0.19	0.29	0.39	0.01	0.02	0.03

註 : 1) 개발기관의 경우 영업이익임.

－둘째,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제2단계(1997～2000년)에는 보험료율을 保險對象預金의 0.02%～0.05%로 정한다.

ㅇ1990년대 말에는 金融自律化와 金融開放이 대체로 완성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銀行倒産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은행도산에 대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ㅇ보험료율 수준이 保險對象預金의 0.02%～0.05%인 경우 1994년 말 기준으로 가입 은행의 전체 납부보험료 부담은 1년에 약 480억원～1,200억원에 이른다.

ㅇ銀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과 동시에 必要支給準備率을 낮춘다. 1990년대 말 경에는 必要支給準備率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제3단계(2000년～)에는 보험료율을 保險對象預金의 0.05%～0.10%로 정하고 差等保險料率制度를 도입한다.

ㅇ보험료율 수준이 保險對象預金의 0.05%～0.10%인 경우 1994년 말 기준으로 가입 은행의 전체 납부보험료 부담은 1년에 약 1,200억원～2,400억원에 이른다.

ㅇ21세기에는 가입 은행의 道德的 危險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입 은행의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율에 差異를 두는 差等保險料率制度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ㅇ差等保險料率制度를 도입하여 은행간에 보험료 부담의 衡平性을 높인다.

Ⅲ. 預金保險公社의 組織 및 財源調達·運用

1. 組織

가. 法的 性格

－業務內容에 어느 정도의 강제적 권한(가입 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징수와 채권·담보의 인수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금보험공사를 민법상의 社團法人(혹은 財團法人)으로 하기보다는 公的 特別法人으로 설립한다.

나. 意思決定主體

－예금보험공사의 실무적인 운영을 理事會가 담당한다.

－설립초기 예금보험공사의 理事會는 理事長, 理事 1～2인 및 監事로 구성한다.

ㅇ기구도입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초기에는 가급적 機構組織을 소규모로 운영한다.

ㅇ理事長은 재정경제원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理事會와는 별도로 運營委員會를 설치하여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을 결정함과 동시에 예금보험공사와 감독당국간의 공식적인 의견 교환 및 정책 조정을 위한 場의 기능을 수행한다.

ㅇ運營委員會에는 재정경제원(차관), 중앙은행(총재 혹은 부총재), 예금보험공사(理事長)의 당국자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ㅇ예금보험기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에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運營委員會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업 대표가 참여할 경우 他 金融機關의 정보를 이용하여 私益을 추구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특정 은행이 아

니라 銀行業界 全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2. 財源調達 · 運用

가. 資本金(또는 出捐金)

－예금보험공사 설립시의 資本金 또는 기금의 초기 出捐金은 100억원～500억원으로 한다.

○무자본 특별법인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새로이 출범하는 예금보험공사의 公的 信認度(public confidence)를 높이고 또한 예금보험공사 설립시에 가입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에 資本金을 出資하거나 또는 기금에 출연한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政府나 中央銀行의 자본금 출자 또는 기금 출연은 보험료율 및 보험금 한도의 수준,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공신력 정도,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의 獨立的 · 中立的 管理를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預金保護基金이 적정한 수준으로 적립된 후 出資金은 상환될 수 있다.

나. 收入保險料

－부보예금에 일정비율의 보험료가 징수되고 부족시에는 추가로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다.

○보험료율을 保險對象預金 基準으로 1996년에는 0.01%～0.02%,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0.02%～0.05%, 2000년에는 0.05%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5년간 은행 도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수입보험료 및 이의 운용수익(연간 수익률은 10% 내지 12% 가정)

에서 영업비용(연간 15억원~50억원으로 가정)을 공제한 2000년도 말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규모는 付保預金 總額의 0.8%~0.9%로 추정된다.

ㅇ한편 보험료율을 付保預金 基準으로 위와 같이 정할 경우에는 2000년도 말 예금보험기금의 적립규모는 付保預金 總額의 0.14%~0.1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다. 外部로부터의 借入限度

-공적인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할 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금보험기금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政府 혹은 中央銀行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預金保險公社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ㅇ정부로부터의 차입은 豫算, 債券發行, 特定 公的基金 등으로부터의 차입이다.

ㅇ도산 은행의 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필요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능 및 예금보험공사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異議가 제기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金融制度의 安全性 維持를 위해 합리화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최대 차입한도는 5조원이다.

ㅇ1994년 말 시점에서 외부로부터의 최대 借入限度는 2조 5천억원에서 4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ㅇ만약 예금보험공사의 설립 이후 당분간 차입한도를 확대하지 않고자 할 경우 보험대상예금의 증가세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차입한도를 5조원 정도로 시작하는 방안이 있다.

라. 預金保險基金의 運用

-예금보험기금은 유동성이 높은 政府發行 有價證券에 대한 투자, 가입은행에의 예금, 단기대출(overnight loans) 등으로 운용된다.

ㅇ 단 예금보험공사 설립 후 당분간은 은행의 도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短期金融市場(CD, call, RP 시장 등)에도 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

第2篇 主要國의 預金保護制度

Ⅰ. 序 論

- 우리나라의 交易國 및 競爭國을 포함한 世界 主要國은 이미 예외없이 預金保護制度를 갖추고 있다.
- 本編에서는 우리나라의 預金保護制度 導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主要國의 預金保護制度를 살펴본다.
- 세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금융거래에서도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각 국가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예금보호제도를 改善하거나 새로이 導入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제도가 투명할 필요가 있어 예외없이 明示的인 예금보호제도를 갖추었다.
- 많은 국가는 1970~80년대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金融危機를 맞게 되어 다수 은행의 예금지급 불능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해 예금보호제도가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국가간에 경제의 장벽이 소멸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예금보호제도를 갖추지 않고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예금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 세계의 예금보호제도는 統一化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 ㅇ EU는 경제의 단일화를 추진함에 따라 예금보호제도에 있어서도 국가간에 차이점을 최소화하여 통일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ㅇ 제도의 통일화 경향은 監督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반화되고 있다.
- 각국의 예금보호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形態를 띠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예금보호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각 국의 文化, 歷史, 慣習 등에 배경을 두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ㅇEU의 지침도 통일된 예금보호제도를 도모하고 있지만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화되어야 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각국의 예금보호제도는 監督機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Ⅱ. 美國의 預金保護制度 : 聯邦預金保險公社(FDIC)

1. 創設

－예금보호제도는 1986년 국법은행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각 은행이 발행한 銀行券을 보증하기 위하여 형성된 安全基金制度(safety fund banking system)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 이후 1930년대 초의 경제 대공황으로 수많은 은행이 도산하여 예금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33년에 은행을 대상으로 聯邦預金保險公社(FDIC)가, 1934년에 貯蓄貸出組合(S&L)을 대상으로 聯邦貯蓄貸出保險公社(FSLIC)가 발족되었다.

－80년대 중반이후 많은 S&L이 도산하여 FSLIC 역시 지급불능으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1989년에 FIRREA(Financial,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에 의거 FDIC가 S&L의 예금보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FDIC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銀行保險基金(Bank Insurance Fund: BIF)과 S&L을 대상으로 하는 貯蓄組合保險基金(Saving Association Insurance Fund: SAIF) 2개의 基金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1970년부터 신용조합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신용조합협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全國信用組合出資金保險基金(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NCUSIF)이 있다.

2. 機構

- FDIC는 聯邦政府機關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승인에 의거 任命하는 이사회 의장, 부의장, 이사 등 3명과 통화감독관, 저축기관 감독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고 임명된 경우 임기는 6년이다.
- 현재 FDIC는 15여개의 부서, 1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3. 資本金

- 設立當時에는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출자하여 자본금이 2억 8,900만 달러이었으나 1947~48년 동안 전액상환되어 현재는 資本金이 없다.
- FDIC는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부로부터 이자지급 조건으로 300억달러까지 차입할 수 있으며 聯邦金融銀行(Federal Financing Bank)으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하다.

4. 主要業務

- FDIC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資産을 運用한다.
- FDIC는 경영이 부실한 피보험 금융기관에게 자산매입, 자금예탁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FDIC는 피보험 금융기관이 관련된 預金의 引受 및 引繼, 그리고 금융기관 자체의 매매 및 합병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불량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 FDIC는 도산된 금융기관의 預金을 승계할 새로운 國法 金融機關을 설립할 수 있다.
- FDIC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산된

금융기관의 財産管理 및 淸算業務를 수행한다.

- FDIC는 피보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으며, 재무부 통화감독청과 중앙은행 이사회 등과 감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加入하지 않은 州法銀行 중 피보험은행과 州認可 貯蓄貸出組合만을 직접 감독한다.
- 1993년에 FDIC가 취급한 금융기관은 41개이었으며 그 가운데 5개는 보험금 지급 또는 금융기관의 신설에 의하여, 6개는 모든 예금의 승계에 의하여, 나머지 30개는 부보 예금만의 승계에 의하여 처리되었다.

5. 加入 金融機關

- 中央銀行에 가입된 금융기관은 모두 FDIC에 가입해야 하며 나머지 은행과 州認可 저축대출조합은 FDIC 이사회의 承認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 1993년 말 현재 BIF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數는 1만 1,331개, SAIF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數는 1,929개이다.

6. 保險對象 預金

- 보험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CD 및 가입금융기관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신탁자금과 그 이자가 포함된 국내예금이며 금융채, 해외지점 예금 등은 제외된다.

7. 預金保險金 限度額

- 1994년 말 현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험금 한도액은 1980년 이후 예금자별로 10만달러로서, 이 한도는 議會에서 政治的인 判斷에 의하여 결정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준이다.

- 1993년 말 현재 예금자당 10만달러 이하의 예금액은 전체 보험대상 예금액의 75.6%로서 금액기준으로 보험대상 예금의 75.6%가 보장되는 셈이다.
-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도산 금융기관에의 채무를 차감한 純預金額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8. 保險料

- FDIC는 1993년부터 가입 금융기관을 危險度와 資本狀態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한 후 危險度와 資本狀態를 혼합하여 전체로는 9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전체 국내예금을 기준으로 매년 0.23%, 0.26%, 0.26%, 0.29%, 0.29%, 0.29%, 0.30%, 0.30%, 0.31%의 保險料를 부과하고 있다.
  - 1995년중에 최저 보험료율이 0.23%에서 0.04%로 낮추어졌다.
- 1993년에 BIF의 平均 保險料는 전체 국내예금의 0.237%, SAIF의 평균 보험료는 전체 국내예금의 0.247%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 FDIC가 흑자를 보일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1984년 이후 保險金 支給이 증가하여 이 제도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9. 預金保險基金의 殘額

- 1993년 말 현재 BIF의 잔액은 부보 예금액의 0.69%, SAIF의 잔액은 부보 예금액의 0.17%이다.
- 현재 BIF의 목표 잔액은 부보 예금액의 1.25%이다.

10. 特性

－FDIC는 예금보호기구이면서도 명실상부한 監督機構이다.

－FDIC의 감독기능은 다른 감독기관인 재무부의 통화감독청, 중앙은행의 이사회 등과 조직, 인력 등의 면에서 대등한 위치에 있다.

－FDIC는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獨立된 기관이며 一般會計監査院(GAO)의 監査를 받는다.

○ FDIC의 이사회에 當然職 理事로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관과 저축기관 감독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어 FDIC는 재무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

Ⅲ. 캐나다의 預金保護制度 : 캐나다預金保險公社(CDIC)

1. 創設

－금융제도에 競爭原理를 도입하면서 예금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1967년에 미국의 FDIC를 모델로 캐나다預金保險公社(CDIC)가 도입되었다.

－CDIC의 創設 目的은 무엇보다도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CDIC의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가입 금융기관에게 健全 經營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로부터 금융제도의 안전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 그 밖에 퀘백주정부관할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퀘백주預金保險委員會(Quebec Deposit Insurance Board)가 있다.

2. 機構

－CDIC는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理事會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재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총독이 임명하는 理事長, 캐나

다은행(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총독이 승인하는 민간인 4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의 임기는 5년, 민간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 CDIC는 이사회 외에 사장과 6개 부서로 구성되고 설립당시 3명이었던 인원은 현재 90여명이다.

3. 資本金

- 設立當時 재무부가 전액 출자하여 資本金이 1천만캐나다달러이었으나 1977년에 전액 상환되어 현재는 資本金이 없다.
- CDIC는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독의 허가를 받아 聯邦歲入基金(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이자지급 조건으로 60억캐나다달러까지 차입할 수 있다.

4. 主要業務

- CDIC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자산을 운용한다.
  - ㅇCDIC는 모든 收入을 캐나다은행에 예치하고 캐나다은행을 통하여 資産을 운용한다.
- CDIC는 피보험 금융기관에게 대출, 채무보증, 자산취득 등의 방식으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 CDIC는 부보 예금을 다른 피보험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CDIC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산된 금융기관의 財産管理 및 淸算業務를 수행한다.
- CDIC는 被保險 金融機關에 대하여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정보입수, 경영실태파악, 법규위반검사 등에 필요한 監督權限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CDIC는 주정부 감독관과 함께 주정부소속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外部 檢査員을 선정하고 그를 통하여 감독함으로써 CDIC가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5. 加入 金融機關

－聯邦金融機關인 특허은행, 신탁회사 및 대출회사 그리고 퀘백주 저축은행은 모두 CDIC에 가입해야 하며, 州金融機關인 신탁회사 및 대출회사 중 주정부로부터 예금보험 신청이 승인된 경우, CDIC가 허가한 경우 등은 CDIC에 가입할 수 있다.
－1994년 말 현재 CDIC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數는 131개이다.

6. 保險對象 預金

－保險對象 預金은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달러로 이루어진 만기 5년 이하의 예금과 그 이자로서, 예컨대 비거주자에 의한 캐나다달러는 보험의 대상이며 외화예금, 해외지점예금, 채권 등은 保險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預金保險金 限度額

－1994년 말 현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험금 한도액은 예금자별로 6만캐나다달러이며, 共同名義 預金者(joint depositors), 信託 委託者는 별도의 예금자로 인정되고 특별한 退職關聯 預金(RRSP와 RRIF)은 다른 예금과 별도로 취급된다.
  ㅇ비교적 보험금 한도액이 높게 결정된 것은 미국의 경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도산 금융기관에의 채무를 차감한 純預金額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8. 保險料

- 1995년 현재 年間 保險料는 가입기관의 규모나 위험도에 상관없이 모두 보험부 예금의 1/6(0.17)% 또는 5,000캐나다달러 중 많은 금액이다.
- CDIC는 감독기관의 자문과 가입기관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9. 特性

- CDIC는 예금보호기구이면서 감독기관이다.
- CDIC의 감독기능은 재무부 산하의 金融機關 監督院(OSFI)에 의존하고 있다.
  - ㅇOSFI는 연방정부소속의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과 연금을 감독하며 동시에 CDIC의 요청에 따라 CDIC의 감독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 ㅇOSFI를 대표하는 2인이 CDIC의 당연직 이사이다.
  - ㅇCDIC와 OSFI는 金融機關監督委員會(FISC)(중앙은행도 참여), 連絡委員會(Liaison Committee) 등에 참여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CDIC는 예금보험업무에 있어서는 재무부, 중앙은행 등의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獨立性을 가지나 감독업무에 있어서는 自律性을 지니고 있지 않다.
  - ㅇ형식상으로는 감독업무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있지만 이는 預金保險業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 ㅇCDIC는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 CDIC는 피보험 금융기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 ㅇCDIC의 9인 이사 중 4인이 被保險 金融機關과 관련되어 있으며 CDIC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피보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대만은 1985년에 CDIC를 모델로 預金保護制度를 도입하였다.

Ⅳ. 日本의 預金保護制度 : 日本預金保險機構(JDIC)

1. 創設

－1957년에 예금보호제도의 導入을 시도하였으나 각계의 반대로 무산되고 1970년대에 들어 경쟁촉진을 위한 金融自律化가 추진되면서 예금자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71년에 전국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特別法人인 預金保險機構가 설립되었다.

○ 설립당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였다.

*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수산가공업협동조합 등 농수산업협동조합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3년에 설립된 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險機構가 있다.

2. 機構

－預金保險機構는 日本銀行(중앙은행) 부총재가 겸임하는 이사장, 이사장이 재무부장관(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임명하는 8명 이내의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運營委員會에 의하여 주요사항이 결정된다.

－運營委員으로 1995년 현재 전국은행협회연합회 회장 등 금융계의 저명인사가 임명되었다.

3. 資本金

－設立當時 정부, 중앙은행, 민간금융기관이 각각 1억 5천만엔씩 출자하여 자본금은 4억 5천만엔이었으며 1986년에 새로 가입한 勞動金庫가 500만엔을 출자하여 1995년 현재 자본금은 4억 5,500만엔이다.

－預金保險機構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中央銀行으로부터 5천억엔까지 借入할 수 있다.

4. 主要業務

－예금보험기구는 保險料를 징수하고 資産을 運用한다.

－예금보험기구는 피보험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ㅇ사고 금융기관에 대해 합병, 영업인수, 주식취득 등을 행할 救濟 金融機關이 있는 경우 그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구는 구제 금융기관에게 자금의 증여, 대출, 불량자산 매입, 債務 保證 및 引受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ㅇ지원액의 한도는 보험금 지급을 가정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 이내이다.

－預金保險機構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일정 한도의 假拂金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保險料의 수납 등 업무의 일부를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일본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에 委託할 수 있다.

－預金保險機構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피보험 금융기관에게 資料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5. 加入 金融機關

－日本 국내에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도시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등은 예금보험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ㅇ정부관련 금융기관과 外國銀行의 日本支店은 예금보험기구에 가입하지 못한다.

－1994년 3월 현재 예금보험기구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數는 1,023개이다.

6. 保險對象 預金

－保險對象 預金은 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원금이 보장되는 금전신탁과 그 이자이며 외화예금, CD, 공공예금, 가명예금 등은 보험대상 예금이 아니다.

7. 預金保險金 限度額

－1995년 현재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保險金 한도액은 1,000만엔이다.
－보험금 지급시 倒産 金融機關에 대한 채무는 보험금에서 공제된다.

8. 保險料

－1995년 현재 연간 보험료는 보험대상 예금잔액의 0.012%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9. 預金保險基金의 殘額

－1994년 3월말 현재 預金保險基金의 잔액은 약 8,205억엔으로 보험대상 예금액의 0.152%에 그치고 있다.

10. 特性

－지금까지는 預金保險機構가 예금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구제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1991년 이후 5차례 정도 발생하였다.
  ㅇ 1995년 2월에는 倒産 金融機關을 인수할 기존의 구제금융기관이 없어 처음으로 구제 금융기관(동경공동은행)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례가 없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預金保險機構는 예금보험업무에 있어서 獨立性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은 실질적으로 재무부(대장성) 및 중앙은행에 의하여 결정된다.

ㅇ아직도 많은 일반인이 預金保險機構가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예금보호제도는 일반인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었다.

ㅇ예금보험기구는 금융당국의 政策決定을 민간 자금으로 지원하는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V. EU의 預金保護制度 指針(Directive)

1. 背景

－EU는 美國 및 日本에 대항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화합(harmonization)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금융의 안전을 위한 預金保護에 대한 指針(The Deposit Guarantee Directive)이 마련되었다.

ㅇ예금보호제도의 화합을 검토한 초기에 해당되는 1987년에 EU는 통일된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拘束力이 없는 勸告(Recommendation)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권고에 의하여 당시 예금보호제도를 갖추지 않았던 그리이스, 포르투갈 등은 1990년 이전에 예금보호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

ㅇ拘束力을 지닌 최초의 預金保護指針은 1992년 4월에 마련되었고 그 후 몇차례의 수정을 거쳐 預金保護指針이 完成되었으며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제정, 개정 등의 立法節次를 거쳐 늦어도 1995년 7월부터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 運營

－會員國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형성된 1개 이상의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예금취급 금융기관은 모두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ㅇ다만 예금취급기관이 安全性을 보장하는 他 機構에 가입되어 있으면 預金保護機構에의 가입이 강요되지 않는다.

－特定 會員國의 예금보호제도는 타 회원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지점에도 적용되어 本國(home country)基準으로 운영된다.

－營業國 預金保護制度의 보호예금 수준, 종류 등이 본국에 비하여 보다 확대되어 있는 경우 타 회원국의 지점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영업국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비회원국인 지점도 EU 지침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국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保護預金은 預金支給不能時에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예금지급불능은 원칙적으로 감독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預金支給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감독기관은 예금지급이 거절된 후 적어도 21일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預金支給不能의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ㅇ다만 현실적으로 10일 동안 계속된 예금지급의 遲延事態는 예금지급불능으로 해석된다.

ㅇ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預金支給이 최대한 3개월 단위로 2차례 이내에서 延期될 수 있다.

－預金保護機構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한 예금취급기관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벌칙을 받게 되며 이러한 경우가 반복되면 그 預金取扱機關은 예금보호기구에서 제명될 수 있다.

－會員國은 예금자가 예금보호제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과대 선전으로 인하여 金融制度의 安全性 및 預金者의 信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금보호에 관련된 정보의 이용이 제약될 수 있다.

3. 保護對象 預金

- 保護對象 預金은 은행과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좌상 또는 일시적인 잔고, 기타 예금수취기관이 법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잔고와 信用機關이 발행한 증서에 의한 債務를 의미한다.
- 한편 금융기관간 예금, 任職員 및 株主 預金으로 해석되는 예금, 돈 세탁 등을 위한 불법 예금, 보험 인수금, 정부예금, 공동투자 인수금, 연금, 계열회사 및 관련회사 예금, 기명되지 않은 예금, 비정상적인 예금, 자기 예금으로 해석되는 예금 등은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되고 또한 會員國 通貨와 ECU 이외의 통화에 의한 예금은 보호대상 예금이 아니다.

4. 預金保護 限度額

- 예금보호의 최저 한도액은 2만ECU(1995년 6월 현재 1ECU=1.3121 US$)이다.
- 예금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共同預金保護制度(coinsurance system)가 허용되며 다만 실질적인 최저 한도액이 2만ECU이면서 90% 이상의 예금이 보호되어야 한다.
- 보호예금액은 EU 내 전 지점에 개별 예금자가 會員國의 通貨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預金額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 共同名義 計座의 경우 각 예금자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예금보호 한도액 내에서 보호되며 예금의 수혜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수혜자가 보호되며 수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수혜자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보호된다.

Ⅵ. 獨逸의 預金保護制度

1. 創設

－1960년대에 공영 금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취약한 민간 상업은행들에게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66년에 민간 상업은행만의 독자적인 예금보호제도로서 共同基金(Gemeinschaftsfonds)이 設立되었다.

ㅇ公的 預金保護制度는 민간 상업은행의 自律性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私的 預金保護制度가 도입되었다.

ㅇ獨逸의 共同基金은 은행의 도산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가 아니라 은행의 경쟁상의 불리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1967년 預貸金利가 전면 자유화되어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1970년대 중반에는 헬슈타트 은행을 비롯한 12개의 개인은행의 경영파탄이 일어나자 1976년 5월에 예금보험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의 共同基金을 擴充·改編하여 預金保護基金(Einlagensicherungsfonds, Deposit Security Fund)이 設立되었다.

*그 밖에 貯蓄銀行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貯蓄銀行 保護基金(Savings Security Fund: SBSF)이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신용공동조합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信用共同組合 保護基金(Cooperative Security Scheme: CCSS)이 1976년에 설립되었다.

2. 機構

－예금보호기금은 예금보호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예금보호위원회는 銀行聯合會 內에 설치되어 있으며 3大銀行의 대표 3인, 지방은행과 기타 기관의 대표 3인, 개인은행의 대표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은행연합회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

－銀行聯合會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이사회가 예금보호위원회의 機能을 引受할 수 있다.

3. 主要業務

－예금보호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基金資産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다.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銀行聯合會의 經營理事會(Board of Management)가 부여한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은행으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징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에 대해 經營狀況에 대한 정보나 관련 자료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經營不實銀行에 대한 자금 지원외에 지급 보증, 채무 인수 등의 금융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4. 加入 金融機關

－加入 對象機關은 원칙적으로 연방 민간은행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11개 주은행협회, 민간저당은행협회 또는 선박저당은행협회의 회원은행인 대형은행, 지방은행, 개인은행, 외국은행지점, 민간저당은행 및 선박저당은행 등으로서 적정 책임자기자본 보유, 은행업에 경험을 가진 2명 이상의 전문경영인 확보,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성과와 유동성의 유지 및 은행업 준수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銀行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입 대상은행의 기금가입은 임의로 되어 있으며 실제 일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 민간은행들이 가입하고 있다.

ㅇ會員數는 현재 300여개 은행에 이르고 있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

보험이 해지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保險解止의 사례가 없다.

5. 保護對象 預金

－保護對象 預金은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예금과 투자신탁회사 및 수탁은행으로부터의 신탁자금이며 신탁자금의 경우 開放型信託(open-end trust)은 수익자(beneficiary)가, 閉鎖型信託(closeend trust)은 委託者(trustee)가 보상을 받는다.

－금융기관 예금 및 당해 은행의 임직원(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포함)과 대주주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나 은행의 外國 關聯會社(foreign affiliates)의 부채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6. 預金保險金 限度額

－1976년 이후 保險金 限度額은 은행 자기자본의 30% 상당액까지이며 이는 사실상 거액예금을 제외한 개인예금자의 預金全額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ㅇ自己資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은행에게는 건전경영의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일반 예금자에게 은행에 대한 충분한 信賴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保險金은 보호대상 예금의 원리금에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차감한 순예금액 및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基準으로 결정된다.

－共同名義預金(joint accounts)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공동명의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7. 財源 및 出捐金

－예금보호기금의 재원은 공동기금으로부터 승계한 자금, 가입은행의 출연금 및 여유자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출연금은 다시 정규출연금과 특별출연금으로 구분된다.

－정규출연금은 원칙적으로 각 은행의 최근 결산일 현재 非金融機關 預金額(liabilities to customers)의 0.03% 해당액이며, 신규가입은행(설립 후 3년 이상 경과)은 해당연도의 정기 보험료 이외에 대상예금의 0.09%를 일시불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3년 미만의 신규가입은행은 加入時 資本金(liable capital)의 0.12% 이상(2만 5,000마르크 이상)을 보험료로 출연한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ㅇEU회원국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비금융기관 예금부채에서 자국 예금보호제도에서 보호하는 예금을 공제한 금액의 0.03%를 정규출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預金保險基金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정규출연금의 징수가 정지될 수 있으며 기금재원이 부족하거나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출연금이 2배까지 증액되거나 연 1회에 한해 정규출연금 範圍 內에서 특별출연금이 징수될 수 있다.

－형성된 기금은 주로 고정금리부 예금이나 유가증권(주식 제외)에 운용되며 운용수익은 기금에 귀속된다.

8. 特性

－獨逸의 예금보호제도는 EU의 예금보호지침보다 預金者를 더욱 보호하고 있다.

－1967년 금리자유화 이후 다수의 은행 도산이 발생함에 따라 預金保護制度를 강화하였다.

－민간 상업은행그룹에 대한 예금보호제도는 銀行法이나 預金保護關聯特別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제도가 아니라 민간 상업은행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자율적 제도인 점에 특색이 있다.

－예금보호제도의 주된 목적은 민간 상업은행에 대한 一般人의 公信力(public confidence) 유지에 있다.

－예금보호기금이 확충 개편되어 설립된 1976년 이전에는 공동기금이 26차례 문제은행 해결에 개입하였으며 1976년 이후 현재까지는 기금이 28회에 걸쳐 도산위기에 빠진 은행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금보험기금 부족시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차입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감독당국의 엄중한 감독으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이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ㅇ그러나 현행 保險金 支給方式下에서는 대형은행이 도산할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Ⅶ. 英國의 預金保護制度

1. 創設

－1971년 金利自由化 이후 중소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제1차 석유파동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여 1970년대 중반에 20여개에 달하는 중소금융기관의 預金支給不能으로 인한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행에 의한 은행감독체계를 전환할 필요성에서 1979년 4월 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이 은행법에 의거하여 1982년 2월에 예금보호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 公的 金融機關(National Savings Bank, National Girobank 등)의 예금자는 재무부의 보증예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建築組合(Building Societies)의 예금자는 자체의 投資者保護制度(Investor Protection Scheme)에 의하여 보호된다.

2. 機構

－예금보호제도는 預金保護委員會(Deposit Protection Board)에 의하여 운영되며 위원회는 中央銀行 總裁, 副總裁 및 業務部長(Chief Cashier)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中央銀行 총재가 임명하는 中央銀行 직원 약간명(현재 1인) 및 가입 금융기관 대표 3인으로 구성된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모두 中央銀行에 의해 지원된다.

3. 主要業務

－예금보호위원회는 預金保護基金(Deposit Protection Fund)을 보유·관리·운영하고 은행법상 인가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한다.

－보험가입 금융기관이 해산명령이나 자발적 해산결정 등으로 예금지급불능사태에 처할 경우 영란은행의 지원을 받은 事故對策班(claim unit)을 통해 예금자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은행의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예금보호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해당은행에 개입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出捐機關에 대해 정보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금보호위원회는 예금보호기금을 영란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금보호위원회 위원 중 영란은행 관계자 4인만이 기금을 운영한다.

○基金은 주로 재무부 증권에 投資된다.

4. 加入 金融機關

－예금보험제도의 대상금융기관은 은행법상 인가 금융기관인 일반 상업은행, 머천트뱅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과 자회사, 割引商社(disco

unt houses) 및 金融會社(finance house) 등이며 모두 예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英國 內 외국은행 지점 및 자회사 중 EEA(European Economic Area) 이외의 지역 은행들은 본국에서의 제도에 의하여 英貨預金(sterling deposit)이 보호된다는 것을 英國의 예금보호위원회에 입증하는 경우 영국의 예금보호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ㅇ외국은행의 본국 예금보호제도가 英國의 예금보호제도보다 취약한 경우 英國의 예금보호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5. 保護對象 預金

－보험대상 예금은 동업자예금, CD,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예금, 국내은행 해외지점예금 등을 제외한 EEA국가들의 통화 및 ECU로 표시된 모든 예금 및 이자이다.

ㅇ파운드貨 이외의 통화로 된 예금은 지급시 파운드貨로 환산된다.

6. 預金保險金 限度額

－보험금은 보험대상 예금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차감한 순예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금자 1인당 보호대상 순예금의 최고 한도액은 2만파운드(ECU2만 2,222)이며 예금의 90% 해당액(최고 1만 8천파운드, ECU2만)만이 지급된다.

ㅇ이와 같은 保險金 支給方式은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예금자에게도 보호대상 예금액의 10%를 부담시킴으로써 예금자가 거래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금융기관의 경영상태까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自己責任의 原則을 중시한 것이다.

7. 出捐金 및 其他 財源

-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기금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연금만이 징수된다.
- 예금보호위원회는 대상금융기관의 보험가입시 基準預金(최초출연금 징수전 일정기간 동안의 총예금 평균잔액에서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융기관예금 등의 평균잔액을 차감한 예금액)의 0.01% 해당액을 最初出捐金(initial contributions)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기금재원의 부족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부의 허가를 얻어 追加出捐金(further contributions) 또는 特別出捐金(special contributions)을 비정기적으로 징수한다.
- 회계연도 말 기금잔액이 300만파운드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동 잔액이 500~600만파운드를 유지하도록 추가출연금을 징수한다.
- 회계연도중에도 보험금지급 등으로 연말 이전에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특별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대형은행과 영세금융기관과의 출연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초출연금은 최저 1만파운드, 최고 30만파운드이고 추가 출연금은 최고 30만파운드 이내이며 가입금융기관의 출연금 총액은 기준예금의 0.3%를 초과할 수 없다.
- 예금보호제도를 民間財源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예금보호기금에 출자하지 않았다.
- 예금보호위원회는 基金의 財源이 부족한 경우 中央銀行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1천만파운드이고 1천만파운드 이상 차입시에는 재무부와의 협의 후 지정 한도금액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 ㅇ 1991년의 BCCI사건으로 예금보호기금의 지급수요가 크게 확대되자 재무부의 명령으로 借入限度는 1억 2,500만파운드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8. 特性

－英國의 예금보호제도는 정부와 중앙은행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이지만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행되는 은행의 감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ㅇ예금보호제도는 실무적으로는 中央銀行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으며 출연금 및 차입금 결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된다.

－예금보호제도의 운영이 中央銀行 및 政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일반 예금자는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시에 최초출연금이 징수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추가출연금 또는 특별출연금의 방식으로 出捐金이 徵收된다.

－예금자도 거래 은행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은행 도산시 예금액의 10% 만큼 손해를 보는 共同預金保護制度(coinsurance system)가 운영되고 있다.

Ⅷ. 프랑스의 預金保護制度

1. 創設

－은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재무부)와 중앙은행(프랑스은행)의 강력한 감독권한 외에 1980년에 프랑스 銀行聯合會에 의하여 예금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프랑스의 예금보호제도는 連帶責任基金(solidarity fund)을 형성하여 회원은행들을 지원하는 것이며 보험기능보다는 회원은행간에 損失分擔協定의 기능을 수행한다.

2. 對象 金融機關

－은행연합회에 의해 운영되는 예금보호제도는 민간 상업은행(외은지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93년 말 현재 가입은행수는 420개이다.

3. 保護對象 預金

－損失分擔協定은 소규모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장치로서 은행간 예금, 외화예금, 무기명예금, 초과보상된 예금, 임직원예금, 해외지점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4. 預金保險金 限度額

－破綻 金融機關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40만프랑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금보호제도로부터의 지급총액은 연간 2억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5. 保險料

－보험금 지불이 필요할 경우에 가입 금융기관이 갹출하여 基金을 마련한다.
－각 가입 금융기관의 분담금은 預金規模와 중재규모의 증가에 따라 누감적 · 누진적 기준에 근거를 둔 복잡한 체계에 따라 계산된다.
－분담금은 1년에 1억프랑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과거 2년과 미래 2년을 대상으로 5억프랑의 分擔金이 부과될 수 있다.

6. 特性

- 프랑스의 예금보호제도는 銀行의 公共－民間 構成의 構造下에서 정부(재무부) 및 중앙은행(프랑스은행)의 지배권과 전문가 連帶責任이 혼합된 제도이다.
- 프랑스는 은행에 대한 엄격한 監督·檢査를 통하여 예금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예금보험제도는 이에 대한 補完的 手段으로 활용된다.
- 예금보호제도 도입 이후 10개 내외의 은행이 도산하여 상대적으로 도산은행의 수가 많지 않다.
- 銀行의 預金支給不能 사태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가입 金融機關이 分擔하여 납부한다.

Ⅸ. 其他國의 預金保護制度

1. 덴마크의 預金保護制度

- 1980년대에 들어 金利가 自由化되고 금융시장에의 진입이 자율화되는 등의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銀行의 倒産이 우려됨에 따라 1987년에 예금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 ㅇ덴마크의 예금보호제도는 '預金保護法(Consolidated Deposit Guarantee Fund Act)'에 근거하여 민간 독립기구의 형태인 '預金保護機構(Deposit Guarantee Fund)'로 도입되었다.
- 예금보호기구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商工部(Minister of Business and Industry)가 지명한 5인으로 구성되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규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금보호기구는 감독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ㅇ덴마크의 銀行構造는 소수의 대형은행과 다수의 소형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4년 말 현재 은행 수는 219개이고 상위 2개 대형은행의 市場 占有率이 약 55%, 상위 12개 대형은행의 市場 占有率이 약 87%이다.

ㅇ덴마크는 兼業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감독원이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銀行, 貯蓄銀行(savings banks), 協同銀行(cooperative banks), 외국 금융기관지점 등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보호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예금 가운데 임직원의 예금, 동업자 예금,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株主의 예금 등은 保護對象의 預金이 아니다.

－보험금은 예금에서 예금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순예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험금 지급 한도는 30만덴마크크로네이다.

ㅇ다만 연금관련 예금, 어린이 예금, 주택저축 예금, 교육저축 예금 등의 특수 예금은 전액이 보호된다.

－보험료는 매년 금융기관 총예금의 0.2% 이하이며 예금보호기구의 기금은 30억덴마크크로네 이상이어야 하고 기금이 그 미만이 되면 금융기관의 總 寄附額은 매년 7억덴마크크로네이어야 한다.

ㅇ寄附額은 각 금융기관의 보험대상 순예금액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예금보호기구의 기금이 부족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상공부는 국회의 승인을 거쳐 예금보호기구의 자금 차입을 보증할 수 있다.

－預金保護機構는 기금이 30억덴마크크로네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基金은 유동성이 5억덴마크크로네 이상이면서 총 기금의 25% 이상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네덜란드의 預金保護制度

- 네덜란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로부터 금융제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1979년에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 예금보호제도의 내용은 EU의 예금보호지침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 네덜란드의 '預金保護制度(Collective Guarantee Scheme)'는 '信用制度監督에 관한 法(The Act of the Supervision of the Credit System)'에 根據하여 도입되었다.
- 예금보호제도는 中央銀行(The Nederlandsche Bank)에 의하여 金融部(The Minister of Finance)의 자문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보호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 ㅇ다만 비회원국 지점은 예금자가 본국의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네덜란드의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보호 한도액은 개별 예금자를 기준으로 2만ECU이다.
  - ㅇ예금은 모두 길다(guilder)로 환산하여 지급된다.
- 예금지급 불능 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보호예금 지급액은 다른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割當 比率(apportionment percentage)에 의하여 징수된다.
  - ㅇ할당 비율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제출하는 월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중앙은행이 금융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年間 徵收額은 自己資本(own funds)의 5% 이하이어야 한다.
  - ㅇ만약 연간 징수액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초과 자금을 예금취급 금융기관에게 대출하며 각 금융기관은 조속히 차입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네덜란드의 금융규제는 EU 委員會가 금융규제를 법제화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문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전에는 문서화된 규제는 없었다.

第1篇

預金保護制度의 導入

Ⅰ. 預金保護制度의 必要性

1. 現況

은행 등의 間接 金融仲介機關은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독특한 業務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예금은 예금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곧 지급되어야 하는 流動性이 높은 은행의 부채이다. 반면 貸出은 기업 등 자금 수요자에게 銀行이 자금을 제공하는 銀行의 資産으로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다.

이와 같이 은행은 유동성이 높은 預金을 유동성이 낮은 貸出에 연계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은 경제 전체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허약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예금자는 은행이 모든 예금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점과 預金支給을 요구한 순서에 따라 예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정상적인 예금자의 예금지급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이상으로 일시에 예금자의 예금지급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은행은 대출자산을 환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기 이전에 대출자산을 환수하는 데 따른 費用은 매우 클 것이다. 즉 장기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에게 대출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 전체의 손실이 지대할 것이다. 또한 貸出資産을 단기간에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은행은 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은행이 대출자산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여 예금자의 예금지급 요구에 응하지 못하면 다른 은행으로의 연쇄적인 대규모 예금지급 요구가 발생하여 전체 金融制度가 불안전하게 될 수 있다.

預金保護制度는 이와 같은 은행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 밖에 은행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中央銀行

에 의한 最終 資金提供機能(last resort lending)과 規制 및 監督(regulation and supervision) 등이 있다. 이들 수단들은 서로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

預金保護制度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예금지급 불능시에도 預金者에게 預金支給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자의 예금지급을 보장해 주는 방식은 각 국의 문화, 금융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띤다(第2篇 참조).

첫째, 預金保護制度에 의하여 선의의 소액 예금자가 보호된다. 소액 예금자는 은행의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소문에 쉽게 반응하는 계층이다. 소문에 쉽게 반응하는 소액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예금인출요구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방지된다.

둘째, 은행간에 공정한 경쟁 여건이 확립된다. 대형은행의 예금지급불능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예금보호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소형은행의 경쟁 기반이 취약할 것이다.

셋째, 경쟁력이 없는 은행은 도산하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예금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은행이 도산하게 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적게 되며 은행산업에 경쟁적 기반이 형성된다.

넷째, 明示的(explicit)이고, 機械的(non-discretionary)이고, 事前的(ex-ante)이고, 制限的(limited)이며 費用轉嫁 없이(costless for the community) 預金者가 保護된다. 예금보호의 방식이 규정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면 예금자는 은행의 예금지급 불능시에 예금이 명시적이고 기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보호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예금보호를 위한 비용은 은행들에 의해서 부담되므로 그 비용이 납세자 등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政府는 암묵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여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金融市場의 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도산과 이로 인한 예금자의 손실은 국가경제 전체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예금자도 보호되었다.

銀行의 경우 정부가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일반 국민은 은행이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銀行의 健全性에 보다 直接的인 責任을 느끼게 되어 결국 은행의 도산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非銀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기금 형태의 예금보호제도가 존재하지만 대형 금융사고 또는 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수습하고 예금자를 보호하여 왔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로서는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신용관리기금이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안전기금이 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보증기금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表 Ⅰ-1〉과 같다.

〈表 Ⅰ-1〉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預金保護制度(1994년 말 현재)

(單位 : %)

	신용관리기금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안전기금	보험보증기금
기구형태	특별법인	새마을금고연합회 내애 설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내에 설치	보험감독원 내에 설치
대상기관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한국·대한보증보험 제외)
설치운영시기	1983. 5	1984. 1	1984. 1	1989. 6
근거법	신용관리기금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규약	보험업법
재원	설립출연금(자본금의 10%) 정기출연금(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납부)	정기출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금 등	출연금, 조합원의 기여금, 기금운용수익	출연금, 기타 보험보증기금의 수입금
출연주체	정부 (現在: 출연 없음) 및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정부 (現在: 출연없음), 보험회사

〈表 Ⅰ－1〉의 계속

	신용관리기금	새마을금고연합회 안전기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안전기금	보험보증기금
출연료	ㅇ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0.08% ㅇ상호신용금고: 1%(전년도 예금 1일 평잔 기준)	전 사업년도 말 기준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0.1%(출연 다음 해부터 3년간)	출연금: 전월말 출자금 잔액의 1.0% 기여금: 매월 예탁금 및 적금잔액의 0.005%	직전 사업연도 가계성 수입보험료의 0.1%
의사결정기관과 그 구성	ㅇ운영위원회(총7명) · 기금의 이사장 ·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대표자 중 호선된 자 1인 · 상호신용금고 연합회장 · 재경원장관이 지정하는 3급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1인 · 투자금융회사 등의 임원 중에서 재경원장관이 위촉하는 3인	ㅇ안전기금관리위원회(9~15명) · 연합회부회장 중 연합회장이 지명하는 자(위원장) ·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 연합회이사 중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3인 · 금고이사장 중 연합회장이 위촉하는 4인	ㅇ안전기금관리위원회(총 7명) · 중앙회부회장 중 중앙회장이 위촉·이사회의 동의를 받은자(위원장) · 연합회장 1인, 중앙회 이사 1인 · 중앙회 감사 1인 · 중앙회 사무총장 · 조합 이사장 2인	ㅇ보험기금관리위원회(총 9명) · 보험감독원장(위원장) · 재경원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인 ·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 보험회사 대표 2인 · 기타 3인(재경원장관이 위촉한 보험학교수, 공인회계사, 소비자대표)
가입방식	강제	강제	강제	강제
업무	ㅇ예금보전금의 지급 ㅇ투자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예금 및 지급준비예탁금 수입 ㅇ투자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지급보증	ㅇ예탁금 또는 적금 채무의 변제 ㅇ각 금고의 상환준비금 예치 ㅇ회원금고에 대한 대출	ㅇ예탁금 또는 적금 채무의 변제 ㅇ회원금고에 대한 대출	ㅇ보험금 및 제지급금 보전금 지급 ㅇ보험사업자에 대한 대출
대상예금	ㅇ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자체발행어음, 담보부매출어음, CMA예탁금(무담보매출어음, CP제외) ㅇ상호신용금고: 계금, 부금, 일반 차입금, 부금예수금	보통예탁금, 정기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적금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개인보험가입자 보험금 및 제지급금
보험금 지급한도	동일인당 1천만원	동일인당 3천만원	동일인당 1천만원	동일인당 5천만원

註 : 신용관리기금 등의 경우 1996년부터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임.
資料 : 보험감독원.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관리기금.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問題點

예금보호제도는 은행 및 예금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副作用을 낳을 수 있다.

첫째, 예금자는 거래은행의 경영 상태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 은행의 경영 상태에 상관없이 예금자의 예금은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거래자들이 自律的으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의 기능이 약해진다.

둘째, 은행은 危險이 높은 거래를 선호하게 되어 은행의 破產危險이 높아질 수 있다. 예금보호제도에의 가입에 따라 은행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은행의 위험도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은행간에 비용의 차이가 적거나 없게 되면, 위험이 높은 거래가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은행은 위험이 높은 거래를 선택할 유인이 발생한다.

간단한 例를 들면 은행은 90원의 예금을 받아 이 예금으로 100원의 수입이 확실히 보장되는 投資機會와 80원의 수입을 올릴 확률이 1/2, 120원의 수입을 올릴 확률이 1/2인 투자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預金保護制度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첫번째 투자기회에 10원(100원－90원)의 수익, 두번째 투자기회에도 10원((1/2)(80원－90원)＋(1/2)(120원－90원))의 수익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예금보호제도가 있어 90원의 예금을 예금보호제도가 보호하게 되는 경우 첫번째 투자기회에 의한 수익은 10원이지만 두번째 투자기회의 기대 수익은 15원((1/2)(90원－90원)＋(1/2)(120원－90원))이 되어 은행은 두번째 투자기회를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예금보호제도가 그 부담을 안게 되어 예금보호제도 運營主體의 기대 손실은 5원((1/2)(90원－80원))이 된다.

이와 같은 은행의 행태는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이라고 불리운다. 은행의 도덕적 위험은 은행이 위험이 높은 자산 구성을 선택하는 행태와 부채인 예금에 비해 낮은 自己資本을 선택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예금보호제도가 은행의 위험선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銀行의 危險選好를 억제하는 金融規制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유가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 동일인 대출 등을 제한하여 은행의 위험을 낮추는 규제이다. 둘째, 自己資本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규제이다. 자기자본의 비율이 높은 경우 은행의 위험이 높아지면 銀行 所有主의 위험도 높아져 은행 스스로 위험도를 낮출 것이다. 또한 위험자산에의 운용을 규제하면 높은 자기자본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려는 의도가 방지될 것이다.

셋째, 과도한 受信 競爭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리에 상한을 두는 규제이다. 예금보험제도 아래서는 예금자는 은행의 위험도보다는 금리에 관심이 있게 된다.

넷째, 은행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제도는 道德的 危險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예금보험제도의 道德的 危險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監督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금보호제도의 運營主體는 예금보호기구에의 가입 자격을 심사하며 정기적으로 은행의 재무제표를 검사하고 경영활동을 감독하며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감독의 강화는 은행의 자유로운 경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밖에 예금보호제도가 도산 은행을 資金 支援, 引受·承繼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대상이 아닌 예금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예금보호제도에 의해서 보호대상이 아닌 예금이 보호되는 경우에는 預金保護制度에 따른 은행의 도덕적 위험 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도산방지를 통한 金融機關의 保護와 預金의 保護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도산방지와 예금자의 보호는 구분된다.

예금보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전체 금융산업의 효율성(efficiency)을 극대화하면서도 金融產業(制度)의 安全性(safety)을 유지하는 데 있다. 예컨대 특정 금융기관이 도산할 가능성

이 있을 때 일반 국민이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수의 예금자가 金融機關으로부터 동시에 예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金融産業의 안전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여 다수 예금자에 의한 同時의 預金引出現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하여 반드시 全體 金融産業(制度)의 安全性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도산이 방지되면 예금자가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도산방지를 통한 예금보호제도의 비용과 예금자의 예금만을 보호하는 예금보호제도의 비용이 비교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에 비하여 금융산업의 안전성이 보다 확실히 유지될 수 있는 반면에 금융산업의 효율성은 저하된다. 과거에는 金融産業의 效率性보다는 안전성이 보다 중요한 경제발전의 요소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經濟環境이 변화함에 따라 國家競爭力의 強化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는 대체로 정부가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競爭力 向上이 기대되기 힘들고 이로부터 금융산업의 效率性이 훼손된다. 금융기관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상실되면 시장으로부터 퇴출될 수 있는 경우에 경쟁력이 우월한 금융기관만이 생존하게 되고 또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金融産業의 效率性이 극대화되어 금융산업 및 경제의 발전이 예상된다. 더욱이 앞으로는 金融産業의 效率性을 강화하기 위하여 金融産業의 安全性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금융시장에의 進入과 退出이 보다 자유롭게 되어갈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암묵적이더라도 더이상 金融機關의 倒産防止를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예금자의 예금만을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에 따른 費用과 收益이 정확히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예금자가 보호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전적인 또는 비금전적인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한편 政府의 暗默的 預金保護制度에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비용과 수익의 정확한 비교 분석에 의하여 정부의 암묵적 예금보호제도가 채택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암묵적 預金保護制度는 그 동안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政府의 暗默的인 예금보호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의 분석도 필요하다.

政府의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에 의하면 예금자는 만약의 경우에 정부가 예금을 보호해 줄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정부가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정부의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는 순식간에 소멸될 것이다. 이에 따라 政府가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의 신탁계정 및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주식에의 資金運用比率이 높아지면서 金融機關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 증가함에 따라 예금보호를 위한 정부의 부담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금융권별로 예금보호제도에 있어서 差異가 있는 점도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금융권별 예금보호제도가 상이함에 따라 금융권별 경쟁력에 차이가 있게 된다.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소형 저축기관과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保險會社는 기금에 의하여 예금자가 보호되는 반면 그밖에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明示的인 預金保護制度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간에도 예금보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에 明示的인 預金保護制度가 있으면 본점은 실질적으로 국내지점의 예금자를 보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차 金融의 證券化現象 등에 의하여 금융권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예금보호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基金에 의한 예금보호제도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基金의 운용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 신용관리기금은 특성이 이질적인 상호신용

금고,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간에는 예금지급불능 사고건수, 계좌당 평균예금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83년 5월 설립 이후 1994년 6월까지 예금지급불능 사고건수는 상호신용금고의 35개, 투자금융회사의 5개이며, 투자금융회사 CMA의 경우 각 계좌의 70%가 5천만원 이상이고 상호신용금고의 계좌당 평균예탁금은 828만원(1994년 12월 현재)이다. 그러나 보험금 支給限度는 동일인당 일천만으로 동일하며 出捐料率은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0.08%,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0.1%로 계좌당 예금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表 Ⅰ-1〉 참조). 그밖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보험회사의 기금에 있어서도 保險金 支給限度, 出捐料率 등이 각 금융기관의 상품에 대한 위험정도 등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1인당 平均預託金은 136만원(1994년 12월 현재)이나 보험금 지급한도는 3천만원이며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1인당 평균예탁금은 262만원(1994년 12월 현재)이나 보험금 지급한도는 1천만원이다(〈表 Ⅰ-1〉 참조).

預金保護機能과 監督機能 및 最終의 資金供給者 機能(land of last resort)과의 업무분담 등에 관한 체계적인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세 기능은 서로 보완적 또는 상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預金保護制度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기능에 대한 體系的인 定立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目的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은, 첫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預金引出事態(bank-run)를 방지하여 금융제도, 금융산업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예금이 보호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개별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전체 금융제도 및 금융산업의 안전성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金融制度 및 金融産業의 效率性이 提高된

다. 예금이 보호됨으로써 한 개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하여 경영이 양호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인출사태가 초래되고 이로부터 전체 금융산업의 경영위기가 초래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예금이 보호됨으로써 금융거래시 거래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去來費用이 절감되므로 금융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둘째, 금융기관에 공정한 競爭與件을 제공하는 데 있다. 대형은행은 암묵적으로 정부가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too big to fail) 외국은행 지점은 본점의 預金保護機能에 의하여 예금이 보호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여건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반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예금보호제도는 機關投資家, 巨額 金融去來者, 證券關聯 金融去來者 등 금융시장의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및 금융제도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一般的인 少額 去來者를 保護하는 것이다.

넷째, 예금자 · 금융기관 · 정부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하게 하는 데 있다. 금융제도는 經濟全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경제의 안전을 위하여 예금에 대하여 예금당사자로서의 예금자, 예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 금융제도의 설계자로서 政府의 責任과 權限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예금자를 보호하지 못하여 금융제도가 불안전해지면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예금보호제도는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4. 必要性

預金保護制度는 預金者를 보호함으로써 金融制度의 效率性과 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금융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자본주의 경제가 유지하여야 하는 두 축이다. 금융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國家競爭力이 취약하게 되며 금융제도가 안전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금융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예금자는 예금을 필요할 때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기관에 예금할 것이다. 따라서 예금이 보호된다는 확신이 어떤 형식으로든 형성되어야만 금융기관으로의 예금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때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유지된다.

예금보호의 확신은 여러가지 形式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정부의 조직, 민간의 조직, 시장의 자율기능 등에 의해서 예금이 보호될 수 있다.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예금보호제도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정부가 暗默的으로 預金을 保護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정부에 의한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는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환경에서는 維持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에 의한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부는 預金支給 不能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부는 예금보호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금지급 불능사건이 발생하면 예금자는 정부에게 예금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그 요구가 일반 국민의 정서일 경우에는 정부는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예금지급 불능사건의 원인이 정부에 의한 金融機關 資金運用의 간섭으로 인한 부실채권 등이라면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政府에 의한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정부가 예금을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政府

에 의한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면 그 예금보호제도도 순식간에 소멸될 것이다.

經濟環境이 과거와는 크게 변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암묵적이더라도 더이상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정부주도의 경제에서 민간의 創意力이 강조되는 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보다는 自律이 강조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력이 강조되는 경제환경에서 政府에 의한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는 존재할 수 없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쟁을 조정하고 金融機關의 경영 등에 영향을 미쳐 金融機關의 安全性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때 일반 국민은 금융기관에의 예금보호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의 금융기관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게 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면 금융기관의 經營不實은 금융기관 자체의 책임이므로 예금보호에 대하여 무조건 政府의 責任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預金保護制度는 책임의 범위, 한계 등이 애매모호하고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非合理的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 민간 등 책임의 소재, 범위, 한계 등을 명백히 하는 預金保護制度가 필요하다.

여전히 일반 국민은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예금보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自律化되는 환경하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아져 예금지급 불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다. 정부에 의한 預金保護의 負擔은 결국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예금보호제도를 모색하면서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를 완전히 제외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된 형태의 정부에 의한 암묵적 예금보호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앞으로는 大型 金融機關도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預金保護制度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회사 등의 小規模 金融機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도산을 경험한 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大型 金融機關이 도산할 경우에는 그 波及效果가 지대하여 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도산이 발생하지 않을(too big to fail)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판단인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 및 경제 환경의 변화는 大型 金融機關이더라도 경쟁력이 취약하면 도산이 충분히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금융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되며 금리가 자유롭게 결정되는 등의 금융기관간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본격적인 금융기관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競爭은 適者生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기관의 도산 및 퇴출은 자연스러운 經濟現象이다.

금융기관의 倒産이 전제되는 것은 금융제도의 效率性이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이 반드시 우려할 만큼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金融制度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다수의 예금자가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金融 危機가 초래된다. 예금자의 예금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이 全體 金融機關으로 파급되지 않을 것이다.

예금보호제도가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競爭力이 취약한 대형 금융기관의 도산도 경제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예금보호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하여 金融制度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금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預金

保護制度가 필요하다.

中央銀行의 最終 資金供給者機能과 구분되는 預金保護制度가 필요하다. 중앙은행(또는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最終的인 資金供給者機能에 의해서 예금보호제도가 없어도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중앙은행의 最終的 資金供給機能과 예금보호제도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다르다.

첫째, 최종 자금공급기능은 유동성의 부족으로 국가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流動性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최종 자금공급자기능의 근본 목적이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최종 자금공급자기능은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최종 자금공급자기능에 의한 예금보호는 정부가 예금자가 아닌 금융기관을 직접 보호하는 셈이 된다.

셋째, 최종 자금공급자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유동성 공급은 예금자 보호보다는 금융제도의 안전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진다. 예컨대 투자금융회사 지원 등 예금자를 보호할 경우가 없는 경우에도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넷째, 최종적 자금공급은 중앙은행이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예금자가 보호되지 못하더라도 경제여건에 따라서는 최종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通貨增發의 압력이 큰 경우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불건전한 貸出 및 投資를 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최종 資金供給을 거부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4절 제73조).

끝으로 최종 자금공급자기능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費用은 결과적으로 예외없이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최종 자금공급자기능과 예금보호기능은 별개의 기능이다. 그러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두 기능은 상호대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기능이 效率的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이 자율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암묵적 예금보호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이 우려되므로 道德的 危險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예금보호제도가 道德的 危險으로 인하여 오히려 금융기관의 도산 및 금융제도의 불안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預金이 保護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불능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도 예금수신이 가능하며 한계 금융기관은 '起死回生을 위한 投資戰略(go for broke policy)'으로 인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도덕적 위험의 문제는 예금보호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제도에 유사한 도덕적 위험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중앙은행의 최종적 자금공급자기능에도 개별 금융기관에 의한 道德的 危險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예금보호제도의 정립과정에서 강구되는 것이 과제이다.

경제가 개방되고, 국제화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世界經濟의 변화추세에 맞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있는 국가 중에서 명시적인 예금보호제도가 없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보다 경제 및 금융이 발달되지 못한 국가도 예금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세계적으로 金融規制를 統一化하는 경향과 더불어 예금보호제도도 통일화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EU 국가는 예금보호제도의 통일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가운데 예금보호제도가 없었던 국가도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第2篇 참조).

금융 거래자의 去來費用을 줄일 수 있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예금보호제도가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 금융거래자는 금융기관 자체만을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預金保護의 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去來의 費用은 매우 높을 것이다. 예

금을 보호해주는 신뢰할 만한 제도가 있을 때 거래자는 마음 놓고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으며 去來費用도 줄어든다.

국민의 公平性을 추구하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예금자의 預金額 差異, 金融機關의 規模 差異 등에 따라 금융기관, 정부, 예금자, 국민 등이 公平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료, 보험금 등이 결정되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하에서는 예금자간의 소득 및 예금액 차이, 금융기관간의 規模 差異 등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공평하지 못한 예금보호제도이다.

5. 期待效果

첫째, 예금보호제도는 個別 金融機關의 도산이 다른 금융기관의 도산 및 금융제도의 불안전성을 유발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는다.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不實經營의 상태에 있는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預金引出은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예금인출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金融制度의 不安全性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부실경영에 처한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은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많다. 그러나 외부효과에 의하여 건전경영의 금융기관에도 經營의 危機가 따르고 금융제도가 불안전하게 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예금보호제도는 金融 自律化를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경쟁제한적인 제반 금융규제를 완화하여 金融의 自律化를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은 훼손될 우려가 있어 金融 自律化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보다 과감하게 금융 자율화가 추진될 수 있다.

셋째,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간에 공정한 競爭與件의 바탕이 된다. 규모, 업무영역 등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예금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본점의 예금보호제도 및 세계적인 명성에 의하여 예금이 보호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으며 대형 금융기관은 經營危機에도 정부에 의하여 보호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체에 기반을 두고 預金者를 保護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넷째, 예금보호제도가 明示的으로 정립되는 경우에는 암묵적인 정부에 의한 預金保護制度 및 金融當局(중앙은행)의 최종 자금공급자기능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비용부담의 소재, 범위 등도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에 의한 묵시적인 예금보호제도는 예금보호의 절차, 내용, 경우 등에 있어서 애매하고 안건에 따라 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中央銀行의 最終 資金供給者機能도 어떤 경우에 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인지가 예금보호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도산가능 사건이 발생할 때 一次的으로 예금보호제도가 금융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 납세자로서 일반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 정부는 예금보호제도에 의해서도 수습이 안되는 경우에만 개입하게 되어 政府 立場에서는 예금보호제도가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緩衝的인 役割을 하게 된다. 정부의 개입이 없이 금융사고가 수습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일반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6. 課題

預金保護制度에 의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부실은행은 도산되어 금융의 효율성이 강화되면서 예금자는 보호되어 連鎖的 預金引出 事態가 방지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성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제도에 의한 예금보호의 대가인 가격 책정, 도산은행 처리, 규제 및 감독 강화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은행의 위험도를 높여 금융제도의 불안전성이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제도의 課題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금보호제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최적의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다. 첫째, 預金保護의 대가로 은행이 지급해야 할 費用을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예금보호에 따른 각 은행의 限界費用이 限界收益에 일치하도록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다.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비용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은행간에 공평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지고 은행의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방지될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費用을 差別化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적정하게 비용을 차별화하지 못하면 비용차별화 방안은 비용부담에 대한 저항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둘째, 은행이 '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부담을 지는 것이다. 은행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부분적으로 예금자에게 부담시키면 예금자가 銀行의 행태를 감시하는 市場規律이 기대될 수 있다. 예금자에게 은행도산의 손실을 부담시키는 방안은 보호예금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 보호예금의 만기에 제한을 두는 방안, 예금의 일정비율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있다.

셋째, 적정한 시기에 은행을 폐쇄하거나 재정비하는 것이다. 은행의 純資産이 0이 되기 이전에 폐쇄하거나 再整備하는 方案이다. 도산가능 은행을 早期에 폐쇄시킴으로써 예금보호제도의 운영 경비 즉 은행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금보호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상적 운영 경비, 감시 방법의 개선에 따른 경비, 순자산 가치측정의 개발에 따른 경비 등이 소요된다. 또한 早期 閉鎖原則을 따르게 되면 은행 위험도는 예금자 보호의 관점에서 重要性이 삭감된다. 즉 은행은 결과에 따라 조기에 폐쇄될 수 있지만 자유롭게 危險資産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조기 폐쇄원칙에 의하면 '대형은행 도산 불가(too big to fail)'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대형은행도 순자산이 기준치 이하이면 폐쇄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조기 폐쇄의 원칙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은행을 조기에 폐쇄함으로써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뿐 아니라 純資産價値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純資産價値의 측정이 어려운 것은 貸出流通市場이 존재하지 않아 대출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점에 있다. 특히 個人 및 中小企業에 대한 대출자산의 價値測定은 더욱 어렵다.

넷째, 은행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公示하는 것이다.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게 되면 일반 예금자도 은행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은행의 客觀的인 市場價値가 형성될 것이며 시장가치에 의한 은행가치의 측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銀行이 장부상의 價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양호한 자산을 처분하고 불량자산을 보유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不實銀行으로 평가된 은행은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회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문제점이다. 또한 정보공시 원칙은 예금자도 은행도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손실의 책임을 지는 원칙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예금이 완전히 보호되면 예금자가 정보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은행의 危險度를 고려하여 자기자본 또는 자기자본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은행의 위험도가 반영된 자기자본 규제에 의하여 은행의 危險資産 選擇行爲를 관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섯째, 예금보호제도의 운영을 民間主體에 맡기는 것이다. 民間主體에 의한 예금보호제도의 운영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의 원리가 도입될 수 있으며 규제보다는 시장의 힘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民間主體에 의한 예금보호제도의 운영에는 問題點도 있다. 우선 민간주체는 도산가능 은행을 지나치게 조기에 폐쇄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간주체는 社會的 및 公的인 側面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주체에 의한 예금보호제도 운영은 중앙은행에 의한 최종 자금제공기능과의 연계성이 단절되어 은행에의 자금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예금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은행의 부담이 높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중요

한 문제점은 은행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市場原理를 따르는 民間主體가 부담하기 어려운 점이다. 민간주체는 은행도산으로 인한 민간에의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는 民間主體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公的機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대상 예금의 운영을 위험이 낮은 곳으로 制限하는 것이다. 즉 위험이 높은 자산에는 보호대상이 아닌 자금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보호대상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업무는 매우 축소된다(narrow banks). 그러나 이는 은행의 업무를 다양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範圍의 經濟(economy of scope)가 기대될 수 없으며 은행의 독특한 특색인 間接的인 資金仲介機能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경제와 금융이 발전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금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술된 과제를 각국은 그 文化・歷史・環境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예금보호제도의 형태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本 報告書에서는 世界 主要國의 예금보호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저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후 그 결과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예금보호제도의 導入方案을 모색하였다. 다음에는 예금보호제도의 導入方案을 제시하고 제2편에 세계 주요국의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調査結果를 정리한다.

Ⅱ. 預金保護制度 導入의 基本方向

1. 形式

예금보호제도는 明示的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暗默的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명시적인 예금보호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政策當局이 금융제도가 파탄하게 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금은행의 예금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책임을 지는 암묵적인 預金保護制度가 存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明示的인 預金保護制度 또는 暗默的인 預金保護制度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제도의 安全性 維持와 약자인 금융거래자의 보호라는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누가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預金의 支給不能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으로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에게 있으므로 우선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금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金融政策의 遂行 및 金融制度의 안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책당국도 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금보호는 금융기관, 예금자 및 정책당국의 모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에 의한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는 원칙적으로 정책당국만이 책임을 지는 의미를 지닌다. 보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은 제외되는 것이다.

政策當局만의 책임은 결국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정책당국에 의한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의 運營過程에서 정책당국

이 예금보호의 책임을 금융기관 및 예금자에게 임의적으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책당국이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책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政策運營의 투명성이 보다 중요하게 됨에 따라 예금보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제도화하여 예금보호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정책당국의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또는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운영보다는 최대한 투명성이 있는 제도에 의하여 예금보호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암묵적인 예금보호제도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도산 금융기관의 주주, 소유주, 경영진, 불공정 거래자 등을 결과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金融制度의 安全을 위하여 마지막 단계로 정책당국이 직접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결국 일반 국민이 課稅 또는 中央銀行의 發券力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金融制度의 安全으로부터 일반 국민이 누리게 되는 惠澤이 있으므로 마지막 단계에서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데에는 조건부로 妥當性이 있다. 따라서 예금보호제도는 明示的으로 형성되는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機能

예금보호기구의 機能은 예금보호제도의 目的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예금보호기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고 도산 금융기관을 청산 처리하는 가장 基本的인 기능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호기구는 倒産 金融機關의 장부 등 경영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能力이 필요하다. 이 기능에 의하면 원칙대로 保護對象의 預金은 보호되고 해당 금융기관은 폐쇄된다. 이때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한 결정은 인허가를 결정하는 監督當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둘째, 預金 支給不能의 보호대상 예금을 타 금융기관에 承繼시키거나 또는 讓渡시키는 기능을 예금보호기구가 수행하며, 預金 支給不能의 金融機關을 타 금융기관에 引受시키는 결정에 예금보호기구가 참여한다. 이때 승계받거나 또는 양도받는 금융기관에게 적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 자체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닌 거래자도 보호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해당 金融機關의 도산과 預金支給의 경우에 비하여 전체적인 비용이 적게 소요될 때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인수 금융기관이 쉽게 결정되지 않지만 금융기관을 폐쇄하거나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비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예금보호기구가 暫定的인 金融機關(bridge bank)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暫定 金融機關은 일정기간 동안 도산 금융기관 또는 예금을 인수하여 보호대상의 예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넷째, 예금보호기구는 예금지급 불능이 우려되는 金融機關의 破産으로 인하여 금융제도 등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保護 預金者 이외의 일반 거래자와 금융기관 자체도 보호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 지원방법은 대출, 예금, 자산 및 증권 매수, 부채 인수 등일 것이다. 그리고 支援規模는 해당 金融機關의 청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경영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의 감독기능이 필요하다.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監督機能을 예금보호기구가 수행한다. 監督의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예금보호기구 자체가 直接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감독기관과 협조하여 間接的으로 검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監督 機能을 보유하는 것은 필요하다.

3. 性格

예금보호기구는 정부 또는 정부관련기관으로 운영됨으로써 公的機關이 될 수도 있으며 민간 또는 민간단체로 운영되는 民間機關이 될 수도 있다. 또는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이 혼합된 官民機關의 성격을 띤 예금보호기구가 형성될 수도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 가지 성격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表 Ⅰ-2〉 참조).

美國, 스위스, 臺灣 등에서는 公的機關이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하고 獨逸,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주로 유럽국가에서는 民間機關이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한다. 또한 英國, 日本, 노르웨이 등에서는 官民機關이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한다.

公的機關과 官民機關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民間機關의 경우에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긴급한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예금보호기구가 公的機關 또는 民間機關인가에 대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예금보호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이다.

外國의 예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민간 주체로서 協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獨逸의 경우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방안이다. 민간기관에 의한 預金保護制度의 의미는 全國銀行聯合會 등의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등의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민간기관에 의한 예금보호제도의 長點은 정부 및 중앙은행 즉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短點은 첫째, 예금보호제도의 공신력이 약하여 예금보호의 확신이 결여될 수 있고, 둘째, 예금보호제도는 감독기능과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또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감독기능이 없는 민

〈表 Ⅰ-2〉 各國의 預金保險 形態(1994年 末 現在)

	운용기관명칭	도입시기	가입형태	운영형태
호주	Deposit Guarantee Fund	1979	강제적	민간기관
벨기에	Rediscount & Guarantee Institute	1985	자발적	관민기관
브라질	n.a.	1989	1)	관민기관
캐나다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67	강제적	공적기관
칠레	Superintendent of Banks & Financial Institutions	1986	자발적	공적기관
콜롬비아	Financial Institutions Guarantee Fund	1985	강제적	관민기관
덴마크	Deposit Guarantee Fund	1987	강제적	민간기관
핀란드	Deposit Guarantee Funds	1969	강제적	민간기관
프랑스	Deposit Guarantee Fund	1980	강제적	민간기관
독일	Deposit Security Fund	1976	자발적	민간기관
인도	Deposit Insurance &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1961	강제적	민간기관
아일랜드	Deposit Protection Account	1989	강제적	공적기관
이탈리아	Interbank Deposit Protection Fund	1987	자발적	민간기관
일본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71	강제적	관민기관
케냐	Deposit Protection Fund Board	1985	강제적	공적기관
네덜란드	Collective Guarantee Scheme	1979	강제적	관민기관
나이지리아	Nigeri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88	강제적	공적기관
노르웨이	Deposit Guarantee Fund	1961	강제적	관민기관
파라과이	National System of Savings and Loans for Housing	1971	자발적	공적기관
필리핀	Phillipin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63	강제적	관민기관
스페인	Deposit Guarantee Fund	1977	자발적	공적기관
스웨덴	Deposit Insurance Fund for Savings Banks	n.a.	n.a	민간기관
스위스	Deposit Guarantee Scheme	1984	자발적	공적기관
태국	Cent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85	자발적	공적기관
트리디나드토바고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86	강제적	민간기관
터키	Turkish Deposit Insurance Fund	1983	강제적	관민기관
영국	Deposit Protection Fund	1979	강제적	관민기관
미국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1933	2)	공적기관
베네주엘라	Bank Deposit Guarantee & Protection Fund	1985	강제적	공적기관

註 : 1) Universal Bank는 강제적, 여타기관은 자발적.
2) 모든 국법은행과 연준(FRB)에 가입한 주법은행은 강제적.

資料 : 본문 참고문헌 참조.

간기관에 의한 예금보호제도는 효과 및 비용의 측면에서 불리한 점 등이다. 따라서 예금보호기구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信賴가 가장 중요하므로 公社의 성격을 띤 預金保護機構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간 주체에 대한 信賴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예금보호기구는 公的機關 또는 官民機關의 성격을 띠면서 일반 국민의 信賴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 자본금은 정부만이 출연하거나 정부, 중앙은행 및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공동 출연한다. 자본금 규모의 중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미국, 캐나다 등은 무자본임) 재정의 형편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은 일반 국민의 信賴를 얻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관리의 중립을 위하여 예금보호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4. 形態

예금보호기구는 事前에 정기적으로 일정 보험료를 받아 基金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있으며 또는 예금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필요한 자금을 事後에 金融機關, 政府 또는 中央銀行으로부터 조성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험기금의 형태는 美國, 日本, 獨逸, 臺灣 등 예금보호제도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無基金의 형태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칠레,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表 Ⅰ-3〉과 같다.

無基金 形態는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형평에 맞게 필요한 자금을 배분하여 조달하기 어려운 점, 할당된 자금은 금융기관에게 일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자금할당에 시간이 所要되어 保險金 支給이 지연되는 점 등의 理由로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

〈表 Ⅰ-3〉 各國의 保險金 支給限度와 保險料(1994년 말 현재)[1]

(單位 : %)

	지급한도(자국통화)	(미국달러기준[2])	보험료
호 주	Schilling 200,000	18,026	無기금
벨 기 에	Franc 500,000	15,705	특정부채의 0.02%
브 라 질	n.a.	n.a.	n.a.
캐 나 다	Dollar 60,000	42,772	付保된 예금의 1/6%
칠 레	요구불예금의 100%, 여타예금은 Peso 120까지	n.a.	無기금
콜 롬 비 아	Peso 200,000의 75%	180	지급준비금의 0.5%
덴 마 크	Krone 250,000	41,098	총예금의 0.2% 이내
핀 란 드	Markka 500,000	105,414	총자산의 0.01~0.5%
프 랑 스	Franc 400,000	74,822	無기금(소은행·총예금의 1% 이하)
독 일	자본금의 30%	n.a.	총예금의 0.03%
인 도	Rupee 30,000	956	총예금의 0.04%
아 일 랜 드	Punt 첫5,000의 80%, 다음 5,000의 70%, 그다음 5,000의 50%	15,471	총예금의 0.2%
이 탈 리 아	Lira 첫 2억의 100%, 다음 8억의 75%	490,880	無기금
일 본	Yen 1,000만	100,261	보험대상예금의 0.012%
케 냐	Schilling 100,000	2,176	총예금의 0.1%
네 덜 란 드	Guilder 40,000	23,053	無기금
나 이 지 리 아	Naira 50,000	2,273	총예금의 15/16%
노 르 웨 이	무한	-	총자산의 0.015% 이내
파 라 과 이	Guarany 5,000,000	2,577	총예금의 0.25%
필 리 핀	Peso 15,000	628	총예금의 1/12%
스 페 인	Peseta 1,500,000	11,386	총예금의 0.2%
스 웨 덴	n.a.	n.a.	기금부족으로 연간 출연금 징수 고려
스 위 스	Franc 30,000	22,875	無기금
태 국	Dollar 1,000,000	38,023	付保된 예금의 0.015%
트리디나드 토바고	Dollar 50,000	8,486	n.a.
터 키	Lira 3,000,000	83	付保된 예금의 0.3%
영 국	Pound 20,000 이내 예금의 75%	23,438	보험대상예금의 0.3% 이하
미 국	Dollar 100,000	100,000	총예금의 0.23~0.31% (변동보험료율)
베 네 주 엘 라	Bolivar 250,000	1,471	총예금의 0.25%

註 : 1) EU國의 경우 1995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EU '지침(Directive)'에 의거하여 내용이 변동될 것임.

2) 1994년 말 현재 환율 적용.

資料 : 본문 참고문헌 참조.

서 예금보호기구는 保險基金의 형태를 띠어 預金保險公社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금보호기구가 보험의 형태를 띠게 되면 保險者(保險事業者)는 예금보험공사이며 被保險者는 금융기관, 保險受惠者는 예금자가 되고 금융기관도 간접적으로 보험수혜자의 성격을 지닌다.

預金保險制度의 성립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危險回避者로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이론에 의하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危險回避者(risk averter)이어야 한다. 예금보험제도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金融機關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반드시 危險回避者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危險愛好者(risk lover)가 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에 따라서 위험회피의 선호도가 다르다.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기관이 위험회피자에서 위험애호자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 성립할 수 없으며 예금보험제도의 가장 큰 부작용인 道德的 危險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預金保險公社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일반 보험회사와의 差異를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성에 있어서 預金保險公社와 일반 보험회사와의 차이는 우선 보험자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 預金保險公社는 약자인 預金者의 保護와 金融制度의 安全性 維持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한편 일반 보험회사는 이윤의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운영주체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운영주체에는 정책당국 그리고 피보험자인 금융기관 또는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일반 거래자가 포함될 수 있는 한편 一般 保險會社의 運營主體는 명확히 피보험자와는 구분된다. 셋째, 보험시장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즉 예금보험시장은 보험자의 독점적인 성격을 띠는 시장인 한편 일반 보험시장은 어느 정도 보험자에게 경쟁적 성격을 띠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運營에 있어서 預金保險公社와 一般 保險會社와의 차이는 첫째, 예금보험공사는 일반 보험회사와 달리 피보험자간에 영향을 주는 예금을 대

상으로 하는 데 있다. 만약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보장이 信賴를 상실하면 그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인출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예금보험공사는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지닌 위험도에 상관없이 부보된 예금을 보장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셋째, 예금보험공사는 실제로는 명시적으로 설정된 保險金 支給限度額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데에 차이가 있다. 넷째, 預金保險公社는 사전에 保險對象으로 정한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을 예금보험공사의 위험흡수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대상으로 수용해야 하고 거절할 수 없는 데에 차이가 있다.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입 금융기관이 얻게 되는 혜택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금자를 보호하여 금융제도를 안전하게 함으로써 실물부문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복지를 증대시킨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구는 이윤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가입 금융기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公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預金保險은 利潤의 極大化를 추구하는 민간기구에 의하여 운영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기구는 완전히 가입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는 없는 조직이다.

보험의 형태를 띠게 되는 預金保險公社는 속성상 한계는 있지만 적정 자본금, 적정 보험료, 적정 보험금 지급한도 등을 정하여 기본적으로 運營의 自立性(self-sustaining)을 도모할 필요는 있다. 보험의 형태를 띠게 되는 預金保險公社는 보험의 일반 원칙을 준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금의 지급 한도액과 보험료를 適正水準에서 결정한다.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장기능에 의한 규율 및 감독, 규제에 의한 규율 및 감독, 금융기관의 자본금 증대, 시장가치에 의한 회계제도,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른 자본금 및 보험료 산정 등의 방안을 綜合的으로 檢討한다.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의 위험을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그밖의 例는 예금자도 일부 책임을 지는 共同保險(coinsurance)제도, 위험도 평가에 용이한 無保證 및 無保險의 후순위(subordinated)부채 발행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이다.

5. 保護對象 預金 및 機關

가. 保護對象 預金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對象이 예금보호제도의 目的에 비추어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 예금을 國內 金融市場에서 발생하는 원貨預金으로 한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은 예금을 보호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약자인 거래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금보호제도는 自己 責任 아래 거래가 이루어지는 株式 및 債券,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예치금 등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情報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大規模 預金者 등을 예금보호제도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주식 및 채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서는 기본적으로 양도가 가능함에 따라 상환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상태를 고려한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거래가 아니다. 즉 예금보호제도는 金融機關을 保護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주식 및 채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거래에는 보호되어야 할 거래자가 없으며 그 거래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건전한 다른 금융기관까지 도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만약 金融制度가 不安定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감독당국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정보를 빨

리 수집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大規模의 去來者를 보호하여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투자가 등의 거액 거래자는 미리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經營의 危險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예금을 철회한 상태일 것이다.

만약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그와 같은 예금이 보호된다면 그 거래자들은 예금보호제도를 이용하여 오히려 위험이 높은 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예금보호제도는 情報의 비대칭성 때문에 거래 금융기관을 믿고 예금한 소액 예금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주자에 의한 預金과 이에 수반되는 利子가 가장 근본적인 예금보호제도의 대상이다. 그러나 금융의 국제화의 관점에서 非居住者에 의한 예금도 거주자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政策當局이 외화지급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外貨預金이 보호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금융이 국제화되어 외화예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外貨預金은 外貨를 원貨로 환산된 원화금액으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화가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외화 자체로 보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캐나다, 프랑스, 日本, 英國 등 여러 나라에서는 외화예금이 保護되지 않고 있다(〈表 Ⅰ－4〉 참조). 그것은 대체로 각국이 정보가 불충분한 소액의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자국의 통화로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만 保護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金融機關間 預金은 반드시 보호될 필요는 없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일반 저축자에 비하여 빨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制度的으로 保護하지 않아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外國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保護되지 않고 있다(〈表 Ⅰ－4〉 참조).

외국 금융기관의 國內支店 및 現地法人에 의한 예금은 금융의 국제화 관점에서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의 도산이 국내 금융제도의 불안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表 Ⅰ-4〉 各國의 預金保險對象 1),2)

	은행간예금	비거주자 예금	외화예금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국은행 외국지점	이자
호주	N	Y	Y	N	N	Y
벨기에	N	Y	N	N	N	Y
브라질	N	–	–	–	–	Y
캐나다	Y	Y	N	–	N	Y
칠레	N	Y	N	Y	N	Y
콜롬비아	Y	Y	–	–	–	Y
덴마크	–	–	–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N	Y	N	Y	N	Y
독일	N	Y	Y	Y	Y	Y
인도	N	Y	N	N	N	Y
아일랜드	–	–	P	–	–	Y
이탈리아	N	Y	Y	*	Y	Y
일본	N	Y	N	N	–	N
케냐	Y	Y	–	–	–	Y
네덜란드	N	Y	Y	Y	N	Y
나이지리아	Y	Y	Y	Y	N	Y
노르웨이	Y	Y	Y	Y	Y	Y
파라과이	N	Y	N	N	–	Y
필리핀	N	–	Y	–	–	Y
스페인	N	Y	N	–	N	Y
스웨덴	–	–	–	–	–	–
스위스	N	Y	N	Y	N	Y
태국	–	Y	N	Y	N	Y
트리니다드 토바고	Y	Y	Y	Y	N	Y
터키	N	Y	Y	N	N	Y
영국	N	Y	N	Y	N	Y
미국	Y	Y	Y	Y	N	Y
베네주엘라	–	–	–	–	–	–

註 : 1) Y : 부보대상, N : 부보대상 아님, P : 조건부 부보, – : 자료없음, * : 가능하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음.
2) 〈表 Ⅰ-3〉의 註 1) 참조.

資料 : 본문 참고문헌 참조.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들 예금이 보호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외국의 본점이 세계적인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자국의 예금보호제도 또는 직접 본점에 의하여 예금이 보호된다고 볼 수도 있다(too big to fail). 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表 Ⅰ-4〉 참조).

국내 금융기관의 海外支店 및 現地法人에 의한 예금은 해외 현지의 예금보호제도에 따라 保護與否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외 업무의 규모가 커져 해외에서의 예금인출로 인하여 국내 금융제도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銀行信託計定上의 신탁예금은 현실적으로는 예금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信託預金 中 元金이 보장되는 預金은 保護對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CD는 기본적으로 거액 예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호의 의미가 없다. 個人年金은 별도의 計定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의해서 취급되고 있으므로 보호대책도 별도로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金融實名制의 趣旨에 따라 假名 및 借名 預金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한편 새로운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새로이 예금보호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및 상품의 종류가 결정되면 금융시장에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전 현상, 보호대상 상품과 비보호대상 상품간의 자금이전 및 금리구조 변화 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銀行의 경우 모든 원貨表示의 要求拂 預金과 貯蓄性 預金,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는 信託이 보호대상의 예금이다. 그리고 이들 예금에의 利子가 보호대상이 된다.

나. 保護對象 機關

예금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金融機關은 예금은행(신탁계정 포함)이어야 하며, 비예금은행 중에서는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협협동조

합, 상호금융 등의 금융중개기관이 예금보호제도의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保險會社 保險商品은 예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현재는 예금보호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본래 의미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이 예금보호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保險會社가 自律的으로 거래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에도 예금의 성격을 지닌 상품들이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상품은 본래 거래자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금보호제도의 대상은 아니다. 이 역시 關聯會社가 自律的으로 거래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또한 銀行의 경우 加入對象機關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도산 가능성은 없지만 예금보험공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위해 예금보호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책은행이 완전히 民營化될 計劃인 점도 국책은행이 예금보호제도에 참여해야 할 理由이다. 예금, 신탁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開發機關도 보호대상이 된다.

다. 預金保護의 基準

예금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個別 預金者를 기준으로 한다. 즉 각 금융기관에 예금자(개인 또는 법인)별로 보유계좌의 예금액을 합산하여 개별예금자의 예금보호액을 산정한다. 계좌를 기준으로 하면 예금자는 예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켜 巨額預金者도 보호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로 보호되는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개별 예금자의 總 保護預金에서 借入金을 제외한 純預金이다.

라. 預金保險基金의 細分化

預金保險基金은 保護對象이 되는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의 예금보험기금이 형성되는 방안과 금융기관을 예금의 성격에 따라 몇개로 분류하여 각 금융권별로 預金保險基金이 형성되는 방안이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規模 및 範圍의 경제 측면을 생각하면 單一化된 예금보험기금이 적합할 수도 있다. 즉 금융기관의 經營狀態에 대한 情報, 一般 金融에 대한 情報의 수집 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기금도 여러 금융기관을 취급하는 데에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規模의 經濟 및 範圍의 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성격이 유사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의 성격이 다를수록 시장 참여자를 차별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범위의 경제로부터의 효율성보다 生産者 분리로부터의 효율성이 클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危險回避者이어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의 피보험자는 금융기관에 따라 제도 및 업무성격의 차이 등으로 危險回避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위험회피의 정도가 다른 금융기관을 동일한 예금보험기금에 의하여 保險運營의 方式으로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위험회피의 정도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細分化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預金保險基金은 금융기관을 2개 정도로 나누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이며 다른 하나는 相互信用金庫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이다.

예금은행은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과의 관계가 비예금은행과 다르며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은 고객의 위험회피도 등에서 매우 다르므로 예금은행과 상호신용금고를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이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外國(美國, 獨逸 등)의 예에서도 대체로 은행 대상

의 예금보험기금과 비은행 대상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탁계정은 예금은행의 계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그 성격이 예금은행 계정과 차이가 없으므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금은행의 계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자율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체신예금은 성격상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별도의 예금보험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相互信用金庫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은 현재 信用管理基金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용관리기금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면 비예금은행의 예금보호제도는 해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懸案 課題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預金保險基金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預金保險基金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預金保險公社를 설립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 신용관리기금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예금보험공사에 흡수될 수도 있다.

6. 業務內容

가. 中央銀行과의 관계

예금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預金保護機構를 설정함에 있어서 예금보호기구와 중앙은행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는 최종의 資金供給者 機能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직접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하는 방안과 중앙은행의 최종 자금공급자기능과 분리되어 예금보호기구가 형성되는 방안이 있다.

실질적으로 中央銀行은 최종 자금공급자기능 이외에 예금보호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예금보호기구를 직접 運營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預金保護機構는 중앙은행과 분리되어 그 役割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으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중앙은행과 예금보호기구는 중대한 몇가지 差異가 있다.

우선 중앙은행과 예금보호기구는 그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중앙은행은 通貨價値의 安定, 政府의 對外窓口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최종 자금공급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예금보호기구와는 다른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은 예금보험기금을 效率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예금보험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預金保護를 위해 빈번하게 필요하게 될 출자 및 지원 등의 자금을 중앙은행은 自意로 공급할 수 없다. 중앙은행 이외로부터 예금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도 중앙은행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중앙은행은 보험료 결정, 보험료 수납, 보험료 운용, 보험금 지급 등의 業務에 專門性을 가지기 힘들다. 중앙은행이 직접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

중앙은행이 예금보호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意思決定過程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는 다른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預金保護機構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인플레이션 조세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보호의 부담을 주는 것이며 정부의 조세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소득을 감안하여 預金保護의 부담을 주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금은 그 運用에 高度의 專門性이 필요하므로 중앙은행의 기금관리업무에 의하여 예금보험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될 수 없다.

중앙은행이 예금보험기금을 직접 운용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위상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中央銀行의 業務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어 중앙은행의 中立性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일반 국민은 중앙은행이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金融機關도 중앙은행에게 자금지원 등을 의존하게 되어 새로이 預金保護制度를 도입하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금보호기구는 중앙은행과 分離되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예금보호기구와 중앙은행이 분리되어 있을 때 牽制(check)와 調和

(balance)에 의한 양 기구의 보다 효과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나. 監督機關과의 관계

예금보호기구는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호 대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監督機關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금보호기구의 기능 및 역할에서 설명되었듯이 감독기능이 활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預金保護機構도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情報를 效率的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감독기능과 예금보호기능은 서로 범위의 경제성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감독기관이 직접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감독기관과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자 행태에 있어서 큰 差異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감독기관은 일차적으로 해당 金融機關의 경영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통하여 감독기관은 金融制度의 安全性 維持 및 약한 預金者 保護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에 반하여 예금보호제도는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아닌 예금자의 예금보호에 있으며 예금자의 예금보호를 통하여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은 대체로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金融機關의 破産은 곧 감독의 소홀 내지 적정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 貯蓄貸出組合(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의 부실경영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적정한 시기에 破産에 의한 정리를 유도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국민에게 納稅를 통하여 큰 피해를 준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감독기관은 업무의 정지, 면허의 취소 등의 權限을 執行할 경우 그것이 금융제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등의 波及效果를 고려할 때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 權限을 執行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예금보호를 위해 保險料를 징수하고 또 보험기금의 安定的 管理를 위해 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피감독기

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監督機關의 목적, 역할 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다.

이상을 종합하면 預金保護機構는 中央銀行은 물론 監督院과도 分離되어 형성되는 방안이 타당하다. 예금보호기구와 감독기관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예금보호기구와 감독기관은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預金保險公社의 業務

예금보험공사는 預金保護制度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맹 금융기관에 대한 監督機能을 갖는다. 단 최대한 重複監督을 피하기 위하여 감독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갖추고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직접 감독은 최소화한다. 가급적 資料提出을 요구하여 資料에 의한 감독을 수행한다.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 시기 등을 다른 감독기관과 통일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한 절차를 걸쳐 특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預金保險公社는 자료에 의하여 가맹기관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能力을 개발한다. 現地(on-site)檢査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걸쳐 수행하며 최대한 해당 감독기관의 검사원 및 검사시기에 의존하여 중복검사를 피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감독기능에 의하여 付保預金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예금자에게 지급이 보장되는 保險金을 최대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담이 되는 保險料는 최소화한다. 보험료는 금융당국이 인허가된 금융기관에게 금융시장에서 금융업무에 대한 과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일종의 稅金의 의미를 지닌다.

예금보호의 첫번째 단계로 도산의 경우와 비교하여 費用이 작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때는 直接 支援資金(direct loan)을 도산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게 공급한다. 자금의 지원으로 금융기관이 도산의 가능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은 支援資金에 대한 운영수입에서 지원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을 차감한 규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도산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회 비용 및 금융거래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적인 資金支援에 대한 결정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한다.

예금보호의 두번째 단계로 예금보험공사는 도산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買收 및 引受(purchase and assumption, P&A)의 결정에 참여한다. 매수 및 인수에는 가치가 있는(good) 자산만을 買收 및 引受하는 方式(clean bank P&A)과 모든 資產 및 負債를 買收 및 引受하는 方式(whole bank P&A)이 있다. P&A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감독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되 P&A로 인한 인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進行過程에는 예금보험공사도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역할을 담당한다. 감독기관은 P&A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투명화하여 운영한다.

예금보호의 세번째 단계로 金融機關이 도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도산 금융기관의 業務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인수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금융기관을 일정기간 동안(보통 2~3년) 잠정적으로 新設(bridge-bank)하여 이들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한도액 이하의 預金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한도액 이상의 예금자에게 일단 보험한도액을 지급하고 그 후 도산 금융기관을 實査하여 순자산이 남아 있으면 예금에 비례하여 추가로 예금을 지급하며 순자산이 부족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족액을 부담한다. 그리고 인수 금융기관 또는 잠정 금융기관은 도산 금융기관의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預金保護의 마지막 단계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예금자에게 보험한도액에 달하는 保險金을 支給한다. 이 업무는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업무이다. 예금보험공사의 다른 업무는 모두 이 업무보다 비용이 작게 소요될 경우

에만 수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7. 道德的 危險

예금보호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금융기관이 付保 預金을 위험이 높은 곳에 운영하려고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즉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이 발생하는 점이다. 예금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道德的 危險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보험에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의 해결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행동을 관리하여 道德的 危險을 억제한다. 즉 금융기관이 부보 예금을 건전하게 경영하게 하도록 부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적정하게 규제를 마련하여 감독하고 검사한다.

保險金의 支給에 상한선을 두어 巨額 預金者를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은 거액 예금자의 유치를 위한 經營危險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거액 예금자는 스스로 은행의 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보험대상이 아닌 예금 등에 대한 채권자는 은행이 支給不能 상태에 이르게 되면 부보예금 인계, 은행 합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예금 등의 채권이 보호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다.

資本金에 하한선을 둠으로써 은행 경영의 위험은 銀行 所有主의 危險을 의미하게 되어 은행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자본금은 은행의 경영위험이 높아질 때에도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預金者 保護의 완충 역할도 한다. 자본금의 하한선에 대한 기준을 몇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制裁에 차별을 둘 수 있다. 예컨대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첫 단계에서는 任員의 俸給支給을 중지시키고 다음 단계에서는 재조직 및 자본금 충실을 지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업중지를 명령하는 등으로 제재에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은행의 가치를 價格危險(interest risk, exchange risk)과 信用危險(credit risk, default risk)이 반영된 市場價値 會計基準으로 계산하여 공개함으로써 거래자 등이 은행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실적으로는 시장가치에 의하여 은행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市場價値 會計制度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시장가치의 계산이 정확한 경우에는 市場價値에 의한 은행의 純資産이 0이 되면 또는 그 이전에 은행의 영업을 조기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에 의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金融制度의 安全性을 유지할 수 있다.

예금자의 예금에 대한 주의력을 활용하여 道德的 危險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예금의 일정 한도와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예금자가 책임을 지고 손실을 보게하는 '共同保險(coinsurance)'제도를 도입한다. 예금자의 주의력이 전혀 없어도 예금이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금자는 금융기관의 道德的 危險에 방조하게 된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를 제시할 때 예금자는 예금보호제도를 의지하고 그 금융기관에 예금하게 된다. 그러나 예금자의 책임이 높을 경우는 선의의 소액 예금자보호라는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에 배치되므로 預金者의 負擔은 낮은 수준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공동보험제도가 도입 당시에 형성되지 않으면 예금자의 반발이 커서 후에 도입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동보험제도 도입의 애로사항은 일반 예금자가 金融市場의 情報를 충분히 알기 힘든 점과 소형은행으로부터 信賴가 있는 대형은행으로 예금이 移轉될 수 있는 점 등이다.

은행에게 보험대상이 되지 못하는 後順位 負債(subordinated debt, uninsured debt)를 발행하도록 하여 後順位 負債의 채권자에 의해서 은행의 경영행태가 감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後順位 負債의 채권자는 보험대상이 아닌 부채를 보유하게 되어 은행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태를 감시하게 된다. 後順位 負債의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정보를 입수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銀行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채

권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銀行의 危險管理를 촉진시키게 된다. 또는 후순위 채권의 매각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이는 은행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은행의 위험도가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too big to fail'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후순위 부채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資本金 下限 및 保險料에 차별을 둠으로써 은행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資本金에만 하한을 둘 경우 資本金의 增大로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어 은행은 수익률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결국 자본금에 하한을 둔 조치가 무의미하게 된다. 이에 따라 銀行의 危險度가 높을수록 자본금의 하한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위험도가 관리된다. 은행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동일하면 은행은 위험을 관리할 동기가 축소되므로 위험도가 높을 수록 보험료를 높게 함으로써 銀行에게 危險管理의 동기가 부여된다. 第2篇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예금보험공사는 위험도와 자본금을 혼합하여 각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9단계로 나누어 보험료에 차별을 두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8. 加入의 強制性

保護對象의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預金保護機構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방안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英國·日本·캐나다 등은 強制 加入의 경우이고 自發的 加入의 경우는 獨逸 및 美國의 일부 금융기관 등(〈表 Ⅰ-2〉 참조)이다.

예금보호제도에의 가입이 강제된 경우에도 加入과 除名의 基準은 엄격하게 설정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예금보호제도에의 가입 금융기관은 자본금, 노출위험의 정도 등에서 經營의 健全性을 유지하여야만 도덕적 위험이 억제되고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加入基準으로는 자본금, 경영진 자격, 주주의 구성, 경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또한 제명 基準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비가입 금융기관에 의한 행태가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금보호제도에의 가입을 強制化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는 예금보호제도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도 預金 競爭力을 갖추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은 모두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 가입과 자발적 가입의 差異는 거의 없을 것이다.

9. 其他

租稅當局은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課稅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에 준하여 과세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預金保險公社에 납부하는 출연금, 보험료 등은 법인세법상 영업과정에서의 損金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10. 形成段階

예금보호제도가 완전히 定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반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5년의 期間(1996~2000년)에 걸쳐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우리는 OECD에의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金融의 世界化가 진전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 세계적으로 예금보호제도가 統一化되는 경향이 예상되므로 예금보호제도는 무리없이 신속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적어도 5년간은 預金支給不能의 事態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그 이후 5년간 보험기금을 축적하여 2000년에는 예금보험공사로서의 틀을 갖출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한

다. 예금보호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정한다. 즉 예금지급불능 사태를 대비하여 適正 保險料를 정하는 대신 은행이 납부할 수 있는 能力에 따라 保險料를 정한다.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초기(1996년)부터 예금자의 다수가 보호되도록 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을 정한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預金保險公社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그밖에 조직, 인력, 설비 등을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하여 형성단계를 예컨대 基盤造成段階(1995~1997년), 擴充段階(1997~2000년), 定着段階(2000년~)의 3단계로 나누어 도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Ⅲ. 預金保險公社의 運營

1. 保險事業者 機能

金融機關 營業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危險(risk)은 두가지이다. 즉 금융기관 도산시 해당기관 소유주(주주)들이 입게 되는 財産上의 損失과 해당기관 예금주들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배상책임 두 가지이다.

현재의 은행에 대한 암묵적 預金保險制度下에서는 정부가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은행의 도산을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은행의 所有主(株主)와 예금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행은 보험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預金主 預金에 대한 全額賠償責任 保險契約과 所有主의 財産損失補償 保險契約까지를 保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보상(coverage)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은행의 經營에 直·間接的으로 介入함으로써 실제 사고(倒産)를 防止하고 은행의 道德的 危險(moral hazard)으로 인한 不健全 經營을 監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國內外 金融市場의 國際化, 開放化 및 兼業化(universal banking) 趨勢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줄이려는 금융자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 경영진의 인사권을 비롯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련된 各種 規制와 監督을 緩和하여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不實化와 道德的 危險를 直接統制하던 정부의 기능이 점차 弱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金利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점차 激化되어 預貸마진이 減少趨勢에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保險事故(倒産)危險

이 增大되고 있으며, 아울러 경쟁격화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高危險－高收益 위주의 경영추구 등과 같은 道德的 危險의 可能性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保險事故危險 및 道德的 危險의 增大와 保險者(정부)의 被保險者(금융기관)에 대한 直接統制機能弱化 모두가 保險料 引上 要因이 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 倒産時 정부가 預金主 등을 보호하도록 暗默的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결국 一般國民에게 銀行 不實經營의 責任을 轉嫁하는 것으로서 高額 預金主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부담을 轉嫁시키는 矛盾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율화 추진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不實經營責任은 금융기관 스스로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즉,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한 預金主의 不利益은 保險機能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암묵적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여 明示的인 預金保險制度를 導入하게 되면 지금처럼 은행을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은행에 가입한 預金主만을 보호하게 된다. 즉, 預金保險機構(보험자)에 銀行(피보험자)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은행의 倒産(보험사고)時에 預金主의 예금액(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예금보험기구가 보상(coverage)하게 되는 것이다. 은행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경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不健全 經營으로 인한 所有主(株主)의 財産損失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위험을 보유(risk retention)하며, 預金主에 대한 賠償責任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預金保險機構에 危險을 轉嫁(risk transfer)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구는 기본적으로 保險事業者(insurer)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피보험자(insured)는 은행이며, 보험수혜자(beneficiary)는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預金主이다(배상책임보험기능). 그러나 예금보험기구는 일반보험사업자와는 달리 非營利團體이므로 보험사업자로서의

수익은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 公的 強制保險(compulsory insurance)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사고시의 保險金 支給額과 必要經費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確率理論에 따라 산정된다(적립금 투자수익률도 보험료에 반영됨).

은행(피보험자)이 예금보험기구(보험자)를 통하여 保險에 加入한 後에는 保險加入 前과 위험수준(the degree of risk)이 달라져 「高收益-高危險」의 행태를 보이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制度的 裝置를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행위의 간섭

예금보험기구가 被保險者인 은행의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監査權, 감사결과에 따른 規制權限, 조기경보(early warning) 후 強制措置權 등의 直接統制手段을 갖는다.

② 공제조항(deductable)과 부분보장, 즉 공동보험(coinsurance)을 포함하는 보험계약

예금보호기구는 은행의 支給不能事態時, 優先的으로 은행의 殘存資産을 처분하여 預金主에게 배상하고(deductable) 모자라는 금액을 예금보험기구에서 賠償하되, 배상금액의 一定率만을 補償(coverage)한다는 條項(coinsurance)을 계약에 명시한다.

③ 보험료(premium)의 조정

예금보호기구는 은행의 財務狀態에 따라 定期的으로 保險料를 調節하는 方式(risk·based premium)으로 健全經營을 奬勵(incentive)하고 高危險에 따른 罰則(penalty)을 부과한다.

④ 배상책임한도액(limit) 설정

예금보호기구는 一定限度 金額까지만 補償해 준다는 계약조항을 명시한다.

2. 保險加入對象 金融機關

예금보험기구의 가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範圍(피보험자 대상)는 예금보험기구의 適正規模, 活動領域, 기존 監督機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금융기관의 종류(예금은행, 비예금은행 등), 소유주의 국적(국내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 영업지역(국내은행 해외지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가입대상 금융기관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공신력을 갖춘 예금보험기구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의 公信力을 提高시킬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保險事故의 危險度(the degree of risk) 및 營業性向(behavior)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 풀(pool)에 참여시키는 경우 금융기관 종류간 및 가입자간의 衡平性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固定保險料率制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적인 被保險者別 特性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자간의 衡平性 問題는 더욱 심각해진다. 變動保險料率制를 운영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 개별기관별 등의 재무 건전성을 반영하여 保險料率을 算定해야 하므로 운용비용이 많이 들고 조직이 비대해지는 등 기구운영의 효율성이 低下될 우려가 있다. 또한, 非銀行金融機關 등에 현존하고 있는 類似機構(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와의 統廢合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설립되는 예금보험기구에는 加入對象 金融機關을 모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등의 銀行으로 限定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非銀行의 加入을 허용할 경우에는 銀行基金, 非銀行基金 등으로 基金을 別途로 區分하는 것이 타당하다. 外國에서도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예금보험기구를 운영하거나 적어도 각각의 기금을 구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美國의 경우, 1989년 이전에는 은행에

대해서는 聯邦預金保險公社(FDIC), 貯蓄貸出組合에 대해서는 聯邦貯蓄貸出保險公社(FSLIC)라는 별도의 예금보험기구를 두고 있었으나 FSLIC의 파산으로 현재는 聯邦預金保險公社(FDIC)가 銀行保險基金(BIF)과 貯蓄組合保險基金(SAIF)이라는 두 基金을 운영하고, 또 신용조합에 대해서는 전국신용조합협회가 全國信用組合出資金保險基金(NCUSIF)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캐나다預金保險公社(CDIC)에는 특허은행, 저당대출회사 등만이 가입하고 있으며, 판매금융회사와 신용조합 및 서민금고 등은 CDIC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外國銀行 國內支店의 경우,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取扱하는 방안, 가입대상에서 완전배제시키는 방안, 또는 任意的인 加入을 허용하여 은행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衡平性과 금융의 국제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外國銀行 國內支店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가입대상에서 완전히 除外시키면 이들이 倒産하는 경우 해당은행 본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國內預金主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으며, 본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은행지점은 예금보험기구의 가입에 따른 의무 및 보험료 지급 등의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은행과의 競爭에서 優位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衡平性의 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원하는 은행만 가입하도록 任意加入을 許容하는 경우, 不實危險이 높은 은행일수록 상대적으로 가입할 확률이 높아지는 逆選擇(adverse selection) 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非加入銀行에 대해서는 자본금 및 資産運用 관련 규정을 差別化하여 적용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基準算定의 是非와 追加的인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금융 및 서비스에 관한 시장개방의 국가간 협상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외국사업체에 대한 감독·규제를 내국사와 差別化하지 못하도록 하는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이기 때문에 外國銀行 國內支店을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의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의 분쟁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은행의 海外支店 예금은 국내 예금보험기구의 가입대상에서 除外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외영업을 側面支援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해외지점의 대부분이 該當國家의 감독·규제를 받는 상태에서 국내기준을 적용한 예금보험기구의 보험료 부과 및 감독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한 국내은행의 해외영업이 확대되는 등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해외지점들은 국내의존도를 줄이고 海外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화의 방향이므로 각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자체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現地法人도 該當國家 예금보험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예금보험기구의 가입대상에서는 除外시켜도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海外支店 예금은 대부분이 外貨預金일 것이므로 외화를 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保險對象 預金種類

사고시 예금보험기구의 보상대상이 되는 예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각 預金種類別로 예금주 특성, 자금성격 및 전체 예금대비 비중 등이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선의의 일반예금주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連鎖引出現象(bank-run)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므로, 要求拂預金, 貯蓄性預金 및 金錢信託이 보험대상이다. 한편, 금융기관간 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일반예금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情報蒐集能力이 있고 연쇄인출현상에 대해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보험대상에서 除外되어도 무방하다. 이 경우 금융기관 상호간의 監視體制가 強化된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外貨預金의 경우 전

체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로서는 미미한 편이며 외화지급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캐나다, 日本 등 외국의 경우도 국내시장에서의 자국통화예금에 대해서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외화예금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美國은 外貨預金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는 달러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기축통화인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기구 가입대상 금융기관의 총 예수금 중 보험대상 예금종류별 비중은 은행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험대상예금인 要求拂預金, 貯蓄性預金, 金錢信託의 합계가 총 예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銀行種類別로 63.6%~82.7%이며 가입대상은행 全體平均은 76.8%이다. 예금보험대상이 되는 예금의 비중이 地方銀行의 경우 82.7%로 가장 높아 예금보험기구에의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表 Ⅰ-5〉 참조).

〈表 Ⅰ-5〉 金融機關 種類別 保險對象預金 比重 現況

(單位 : 億원, %)

	보험대상예금 소계		기타예금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시 중 은 행	1,067,691	76.5	327,593	23.5	1,395,284	100.0
지 방 은 행	198,656	82.7	41,702	17.3	240,358	100.0
특 수 은 행	49,336	63.6	28,196	36.4	77,532	100.0
합 계	1,315,683	76.8	397,491	23.2	1,713,174	100.0

註 : 保險對象預金은 要求拂預金, 貯蓄性預金 및 金錢信託의 合計임.
資料 : 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1994.

보험대상 예금종류별 구성비 역시 은행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表 Ⅰ-6〉 참조), 시중은행의 경우 要求拂預金 比重(14.7%)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반하여 금전신탁의 비중(52.6%)은 높은 편이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貯蓄性預金 比重(43.0%)이 높기는 하지만 예금종류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貯蓄性預金 比重(74.8%)이 월등히 높다.

〈表 Ⅰ-6〉 保險對象預金 種類別 比重 現況

(單位 : 億원,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소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시중은행	156,813	14.7	349,089	32.7	561,789	52.6	1,067,691	100.0
지방은행	49,134	24.7	85,388	43.0	64,134	32.3	198,656	100.0
특수은행	12,453	25.2	36,883	74.8	–	–	49,336	100.0
합계	218,400	16.6	471,360	35.8	625,923	47.6	1,315,683	100.0

資料 : 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1994.

보험대상예금이 總 預受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附表 Ⅰ-2〉, 〈附表 Ⅰ-3〉, 〈附表 Ⅰ-4〉 참조). 市中銀行의 경우, 56.9%(외환은행)~84.8%(보람은행)까지의 차이가 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73.4%(충북은행)~86.4%(제주은행)까지의 차이가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36.2%(축협)~81.3%(국민은행)로 격차가 심한 편이다.

契約時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이자는 모두 보험대상 예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가명 및 차명예금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4. 保險加入方式

예금보험기구의 가입대상인 銀行(피보험자)은 보험에 自發的(voluntary)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強制的(mandatory)으로 가입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강제적 가입방식이 우리 실정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제가입방식은 모든 加入對象機關이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서,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保險 풀(pool)이 확대되어 보험성립 기능 중 중요한 요소인 大數의 法則(the law of large number) 機能과 이로 인한 危險分散(risk dispersion)이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구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같은 조건하에서도 보험료를 引下할 수 있게 되어 가입자 전체 효용이 增加된다. 또한 자발적 가입방식을 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非對稱(asymmetric information)下에서의 逆選擇(adverse selection)問題, 즉 도산할 위험이 없는 건전한 기관은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 지불보다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의 혜택이 많다고 판단한 不實機關만이 加入하는 문제가 회피될 수 있다. 그 밖에 부수적인 효과로, 강제가입하게 된 건전기관들의 경우 타기관의 부실화가 자기관의 보험료부담 증가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상호감시가 강화되고 이로 인하여 가입기관들의 道德的 危險이 감소된다. 또한 특정금융기관의 一時的 不實化時 金融機關間 貸出 등을 통하여 가입기관간 自律的 協調體制가 강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

반면, 강제가입방식은 건전성 정도가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가입으로 인한 利益相衝(conflict of interest)問題와 건전기관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국내금융기관의 競爭力 低下 問題가 유발될 수 있다.

한편, 자발적 가입방식하에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自發的 判斷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건전한 금융기관은 불필요한 보험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經濟的 效率性이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발적 가입방식하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逆選擇으로 인하여 不實機關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여부가 예금주들에게 그 기관의 부실화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預金保險機構 導入趣旨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外國의 경우, 英國, 日本, 캐나다, 臺灣, 네덜란드, 터키, 필리핀, 칠레 및 레바논 등에서는 強制加入方式을 택하고 있으며, 獨逸, 스위스, 이탈리아, 인도 및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자발적 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다. 美國은 국법은행 및 중앙은행 가입은행들은 강제가입 대상으로 지정하고 여타 금융기관은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混合方式을 택하고 있다(〈表 Ⅰ-2〉 참조). 그러나 자발적 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加入對象機關이 예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국 정부도 이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적 가입방식을 택함으로써 예금보험기구 導入 初期에 加入對象 금융기관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예금보험기구의 早期 定着을 유도할 필요성이 높다. 부실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連鎖引出現象(bank-run)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全 金融機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구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제고되면 건전한 기관도 間接惠澤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強制加入으로 인한 건전기관의 불이익 문제는 상당 부분 解消될 수 있을 것이다.

5. 保險基金의 調達方式

보험기금은 금융기관의 倒産時 예금주에게 지급할 財源을 뜻하며, 조달방식은 사전적 보험료 납부방식과 사후적 분담방식 등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중 事前的 保險料 納付方式을 원칙으로 하고, 事後的 分擔方式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사전적 保險料 納付方式은 가입금융기관의 도산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被保險者들에게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醵出하여 미리 積立하는 제도로, 美國·캐나다·獨逸·日本·臺灣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表 Ⅰ-3〉 참조). 반면, 사후적 분담방식은 평시에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가입금융기관의 倒産時 가입기관별로 一定基準에 따라 必要財源을 醵出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이탈리아·

오스트리아·칠레·네덜란드·스위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表 Ⅰ-3〉 참조).

사전적 보험료 납부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오랜 기간을 두고 소액 부담하게 되므로 사후적 분담방식하에서의 일시적 過重負擔으로 인한 副作用을 줄일 수가 있고, 보험료 갹출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銀行經營을 監視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경영을 유도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기관의 不實化가 감지되었을 때 時宜適切하게 倒産時點을 判斷하여 해당기관의 청산을 決行할 수 있게 되어 도산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모든 가입기관이 健全經營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관들에게 不必要한 負擔이 되고, 積立金額이 충분하지 못한 初期段階에 도산기관이 출현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구 소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편, 事後的 分擔方式은 가입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보험료의 定期的 醵出에 따른 보험료산출, 기금운용 등에 수반되는 行政費用을 減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어느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되면 다른 가입기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므로 평시에 가입금융기관 상호간에 감시를 철저히 하여 가입기관의 도덕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도산기관이 출현하는 경우, 一時的인 醵出로 인하여 殘存銀行 모두가 동시에 不實化될 염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連鎖倒産危險(bank-run으로 인하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도산기관의 입장에서는 도산시까지 보험료 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예금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부 他機關에 轉嫁시킨다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의 保險基金 調達方式은 사전적 납부방식이 더욱 效果的이라 판단된다. 사전적 납부방식에 따라 가입기관들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사전적 보험료 납부방식의 일반적 장점 외에,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는 金融環境 變

化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초기단계의 필요기금 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이 一定期間 동안 出捐한 후 차후 段階的으로 回收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기금조성을 위하여 初期段階(5~10年)에 保險料外의 基金造成資金을 가입기관으로부터 醵出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 여건상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방안이다. 이 경우, 모든 기관의 건전경영이 상당기간 시현되어 充分한 基金이 확보된 後에는 보험료 면제, 基金造成資金의 환불 등을 통하여 가입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이 輕減될 수 있다. 초기단계의 필요기금 조성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은 사전적 納付方式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하고 법적으로 事後的 分擔도 가능하도록 장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전납부원칙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낮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대상기관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등 運營만 잘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預金保險金 限度額

가. 決定要因

預金保險金이란 예금보험기구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도산했을 경우 당해기관의 保險對象預金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주들에게 지급의무를 지우는 補償金額(coverage)을 뜻한다. 예금보험금 한도액은 예금보험기구가 지급의무를 지는 上限額(limit)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보험대상 예금액 전체를 금액과 상관없이 보상하는 無限限度(no limit)방식과 일정금액까지만 보상하는 有限限度方式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암묵적 예금보호제도는 정부가 예금주의 예금액 전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실질적 無限限度方式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한한도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의 주된 이유는 가입 금융기관의 道德的 危險을 減少시키고 가입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구의 積立金 枯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外國의 경우, 노르웨이와 유고만이 無限限度方式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保險金의 支給限度를 설정하는 有限限度方式을 택하고 있다(〈表 Ⅰ-3〉 참조). 有限限度方式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지급방식 중 하나를 시행하고 있다.

① 일정금액 한도까지 全額 補償하는 방식(대부분 국가),

② 첫 일정금액 한도까지는 全額 補償하고, 다음 한도까지는 일정비율만큼 보상하는 방식(이탈리아, 아르헨티나),

③ 첫 일정금액 한도의 一定率, 다음 한도의 또 다른 一定率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아일랜드),

④ 일정 한도금액을 設定한 후, 그 한도 내에서 一定率을 補償하는 방식(영국)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預金保險金 限度額을 설정하는 有限限度方式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되나 구체적인 한도금액 수준과 산정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요인이 검토되어 綜合的으로 判斷되어야 한다. 한도액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는 소액 예금주의 대부분을 예금보험기구에서 보호하면서도 예금보험기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高額預金主는 스스로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파악능력이 있으므로 이들의 監視機能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健全經營 努力을 向上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連鎖引出現象은 소액예금주의 이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액예금주의 離脫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은행의 不實時 고액예금주의 早期離脫로 해당은행의 不實化가 加速化되는 등 연쇄인출현상 방지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금주가 限度金額만큼씩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금함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비용의 증가, 금융제도의 효율성 저하, 이로 인한 社會費用 增加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한도액이 높게 결정되는 경우는 예금보험제도의 實效性을 높일 수 있으나 보험기구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이는 가입기관의 보험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競爭力 喪失을 우려하여 가입기관들의 반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預金全額을 보상받게 되는 예금주의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金融機關 健全性에 대한 預金主 監視機能이 低下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예금주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收益性만을 고려하여 거래은행을 결정할 것이므로 「高危險－高收益」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수가 증가하여 金融機關 全體의 倒産 危險性이 增大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가입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도산기관의 殘存資産에 대한 優先處分權을 예금보험기구가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限度金額이 달라질 수 있다. 도산기관의 잔존자산 우선처분권을 예금보험기구가 갖게 되더라도 도산기관의 전체 부채액 중 예금보험기구의 재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수준은 도산기관의 殘存資産 價値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倒産時期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예금보험기구가 도산기관의 잔존자산 우선처분권을 갖게 되고 도산시기를 잔존자산의 가치가 예금보험기구의 賠償責任額에 근접했을 때로 정한다면,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구의 實際的인 財政負擔은 별로 없게 되므로 같은 보험료 수준에서도 보상한도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의 기본 설립취지가 預金主 保護 및 連鎖引出現象의 防止이므로 기구설립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금 한도액이 다소 높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예금보험기구의 財政負擔을 減少시키기 위해 倒産機關의 殘存資産에 대한 優先請求權을 예금보호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보험금 지급방식으로는 一定金額(첫 한도)까지는 全額 補償하여 소액예금주는 全員 補償받게 하고, 다음 한도액까지는 一定率을 補償하여 연쇄인출현상의 可能性을 줄이면서 금융기관의 道德的 危險에 대한 고액예금주들의 監視機能을 提高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정률 보상방식은 보험의 部分補償(coinsurance)裝置와 같은 효과인데, 부분보상은 피보험자의 道德的 危險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예금주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監視活動을 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不實經營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 部分補償方式은 外國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예금보험기구 도입 초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도입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현재 부분보상방식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강하지만 예금주의 반발이 거세 이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의 예금주들은 예금보험 한도액 내에서는 銀行의 經營狀態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예금보험기구에의 가입여부만 확인하고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예금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 도산시의 保險金 支給時期도 금융기관의 連鎖引出現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기구는 은행의 도산시 빠른 시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보험금 지급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예금주 편의를 위하여 미리 예금주에게 가불금을 지급하고, 후에 지급된 假拂金을 保險金에서 差減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나. 補償水準

예금은행에 있어서 보험대상 예금의 금액별 殘額現況을 기준으로 補償比率(보험대상예금/총예금)을 추정하면 〈表 Ⅰ-7〉과 같다. 貯蓄性預金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예금주가 主를 이루어 1,000萬원 以下 계좌가 計座數 基準으로 전체 계좌의 96.37%를 차지하고 금액기준으로는 총 금액의 4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0萬원 以下 계좌는 총계좌의 99.59%, 총금액의 68.5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대상이 되는 예금은행 전체(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總預受金 中 貯蓄性預金이 차지하는 比重은 35.8%이며, 은행종류별로는

〈表 Ⅰ-7〉 全預金銀行 預金種類別·金額別 殘額 現況(1994年 9月末 基準)

(單位 : 千座, 億원, %)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계좌수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좌수	구성비	금 액	구성비
200만원 미만	69,840	85.52	121,112	12.98	6,598	69 24	28,788	3.14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733	7.02	140,761	15.09	973	10.21	29,097	3.17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130	3.83	133,251	14.28	621	6.52	53,477	5.83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626	3.22	244,615	26.22	1,010	10.60	204,565	22.29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83	0.22	63,061	6.76	185	1.94	108,192	11.78
1억원 이상	154	0.19	230,197	24.67	142	1.49	493,723	53.79
합 계	81,667	100.00	932,992	100.00	9,529	100.00	917,842	100.00

資料 : 韓國銀行.

시중은행 32.7%, 지방은행 43.0%, 특수은행 74.8% 순이다(〈附表 Ⅰ-1〉 참조). 은행별로 貯蓄性預金 比重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시중은행의 경우 보람은행의 8%부터 상업은행의 41.2%까지, 地方銀行의 경우 제주은행의 28.8%부터 대구은행의 46.3%까지, 특수은행은 농협의 58.2%부터 주택은행의 89.2%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附表 Ⅰ-2〉, 〈附表 Ⅰ-3〉, 〈附表 Ⅰ-4〉 참조). 전 예금은행의 1,000萬원 以下 總 貯蓄性預金計座의 예금액 합계는 39兆 5,124億원으로 전 예금은행 총예수금의 11.64%이고, 5,000萬원 以下 계좌의 예금액 합계는 63兆 9,739億원으로 총예수금의 18.85%이다.

금전신탁의 경우, 저축성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예금주 比重이 높아 예금은행의 總 金錢信託計座 중 1,000萬원 以下 예금계좌의 비중은 85.97%, 금액기준으로는 총액의 12.14%이며, 5,000萬원 以下 예금계좌

비중은 96.57%, 금액 비중은 34.43%이다. 예금은행 전체의 총예수금 중 金錢信託이 차지하는 比重은 47.6%이며, 시중은행의 경우는 총예수금의 52.6%, 지방은행의 경우는 32.3%를 금전신탁이 차지하고 있다(〈附表 Ⅰ-1〉참조). 총예수금 중 금전신탁 비중은 은행별로 차이가 많아 대구은행의 28.6%부터 보람은행의 88.1%까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附表 Ⅰ-2〉, 〈附表 Ⅰ-3〉, 〈附表 Ⅰ-4〉 참조). 전 예금은행의 1,000萬원 以下 總 金錢信託計座의 예금액 합계는 11兆 1,362億원으로 예금은행 총예수금의 4.44%이고, 5,000萬원 以下 계좌의 예금액 합계는 31兆 5,927億원으로 12.59%이다.

은행도산시, 보험에 가입된 예금(付保預金)에 대하여 해당은행의 殘存資産으로 우선 補償하게 되는 경우, 殘存資産價値가 付保預金의 補償總額을 超過한다면 예금보험기구의 실질적인 보상은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殘存資産의 價値가 작을수록, 또 付保預金이 總預金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클수록 銀行倒産時의 預金保險機構 負擔은 增加한다.

부보예금이 총예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保險金 限度額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貯蓄性預金 및 金錢信託 외에 要求拂預金에 대한 預金額別 計座分布까지를 포함하여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미비한 자료를 추정하여 비율을 산정하면 〈表 Ⅰ-8〉과 같다.

보험한도액을 1,000萬원으로 하는 경우 총 예금 중 부보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8%이며, 5,000萬원으로 하는 경우의 비중은 40.18%이

〈表 Ⅰ-8〉 保險對象預金의 總預金對比 比重

(單位 : %)

한도액	1,000만원	5,000만원
저축성예금	11.64	18.85
금전신탁	4.44	12.59
요구불예금[1]	5.40	8.74
합계	21.48	40.18

註 : 1) 要求拂預金의 金額別 계좌수 分布는 貯蓄性預金에 基準함.

다. 은행도산시 잔존자산 우선처분권이 있고 1,000만원(5,000만원)을 保險限度額으로 하는 경우, 殘存資産의 價値가 총예수금의 21.48%(40.18%)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을 예금보험기구 재정에서 補償하게 된다.

보다 세부적인 保險限度額別(2,000만원, 3,000만원 등) 예금주 및 금액 구성비는 자료 미비로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銀行種類別로 한 개 은행씩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A시중은행, B특수은행, C지방은행의 保險對象 預金(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금전신탁, CD제외)의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는 다음 〈表 Ⅰ-9〉와 같다.

〈表 Ⅰ-9〉 保險對象預金에 대한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1994年 末 基準)

(單位 : %)

	A은행		B은행		C은행	
	예금주 구성비 (누계)	금 액 구성비 (누계)	예금주 구성비 (누계)	금 액 구성비 (누계)	예금주 구성비 (누계)	금 액 구성비 (누계)
1,000만원 미만	94.89	15.56	96.48	34.42	97.28	14.94
2,000만원 미만	97.68	24.16	98.65	49.89	98.79	21.66
3,000만원 미만	98.67	29.37	99.27	57.59	99.24	25.18
5,000만원 미만	99.29	34.56	99.65	64.96	99.55	29.08

保險限度額을 1,000萬원으로 하는 경우, 保險加入 對象이 되는 1,000萬원 未滿의 預金主가 전체 예금주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A은행의 94.89%부터 C은행의 97.28%까지의 수준이며, 전체 예금액 중 보험가입대상 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C은행의 14.94%부터 B은행의 34.42%까지로 은행별로 차이가 많은 편이다. 保險限度額을 2,000萬원으로 하는 경우 보험가입대상 예금주 比重은 97% 이상(A: 97.68, B: 98.65, C: 98.79)이 되어 대부분의 預金主를 保護하게 되고, 보험가입대상 예금액 比重도 C은행의 21.66%부터 B은행의 49.89%까지로 상당 수준 增加된다. 보험한도액을 5,000萬원으로 하는 경우, 보험가입대상 預金主 比重은

99% 이상이 되며, 금액기준으로는 29.08%(C은행)부터 64.96%(B은행)까지로 은행별로 차이가 크게 된다.

다. 代案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支給限度金額 水準은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方案은, 도입 초기 비교적 낮은 수준의 한도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한 후, 제도가 정착되면 金額水準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 方案은 예금보험제도 도입시 필요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制度導入을 비교적 容易하게 하고, 제도 도입 후 가입기관이 부실해지는 경우 청산시의 財政負擔이 적기 때문에 適時에 淸算措置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 도입취지인 預金主 權利保護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미흡하여 사회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도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追加費用 支拂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短點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方案은, 도입 초기부터 적정한 수준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方案은 預金主 保護의 실효성을 상당수준 달성하게 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액예금주 대부분이 全額 補償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묵적 예금보호제도로부터의 정책변화에 따른 國民的 反撥을 最少化할 수 있고, 도입 후에도 장기간 동안 한도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금보험제도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다는 등의 長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수준에 따라 예금보험기구의 재정수준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機構의 財政負擔을 가중시킬 수 있고, 가입기관의 保險料負擔으로 인하여 제도 도입시 대상기관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자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못한 導入 初期에 가입기관이 不實化되는 경우 기구의 심각한 財政負擔이 야기되는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위의 두 대안을 비교할 때 외국의 예와 같이 두번째 方案인 導入時 適正水準의 限度額 設定方式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예금보험제도 관련 당사자인 예금보험기구, 가입기관, 예금주 등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정착시켜 제도의 早期 安定化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保險金 支給限度額 水準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예상한도액별로 보험가입대상 예금주 비율(보험가입대상 예금주 수/총 예금주 수) 및 보험가입대상 예금액 비율(보험가입대상 예금액/총 예금액)을 분석하는 한편, 예상지급한도액 수준과 함께 예금보험기구 도입 초기의 기금조성방식 및 규모, 가입기관으로부터의 갹출보험료 水準, 가입기관 부실시의 청산시기, 청산시 대상기관의 잔존자산 우선처분권 보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별로 가입기관 청산시의 必要財源 規模를 추정해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주가 동일은행에 다수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도 청산시의 財源規模가 달라진다. 預金計座別로 한도액 만큼씩 보상하는 방식과 保險對象 預金種類別(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금전신탁)로 預金主當 한도액 만큼씩을 보상하는 방식 및 預金計座數와 예금종류에 관계없이 예금주별로 한도액 만큼씩을 보상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한도액은 다음의 네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첫번째 方案은 1,000萬원까지 全額 補償하는 방식이고, 두번째 方案은 2,000萬원까지 全額 補償하는 방식이다. 세번째 方案은 1,000萬원까지 全額 補償하고, 3,000萬원까지 90%(또는 95%)보상하는 방식이고, 네번째 方案은 2,000萬원까지 全額 補償하고, 5,000萬원까지 90%(또는 95%)보상하는 방식이다.

앞에 설명된 A, B, C은행의 각 대안별 보험가입대상 예금주 비중 및 보험가입금액 비중은 〈表 Ⅰ-9〉에 요약되어 있으며, 예금종류별 각 대안의 보상수준 등은 〈表 Ⅰ-10〉에 정리되어 있다.

〈表 Ⅰ－10〉 預金種類別 · 限度額別 預金計座數 및 金額 構成比

(單位 : 千座, 億원)

	저 축 성 예 금		금 전 신 탁	
	계좌수(누계)	금액(누계)	계좌수(누계)	금액(누계)
1,000만원 미만	96.37	42.35	85.97	12.13
2,000만원 미만	98.46	54.25	92.86	22.24
3,000만원 미만	99.15	61.45	95.13	28.36
5,000만원 미만	99.59	68.57	96.57	34.41

註 : A, B, C은행의 한도금액별 분포를 기준으로 〈表 Ⅰ－7〉에서 추정한 결과임.

위의 대안들 중 외국의 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適正한 水準으로 판단되는 代案은 두번째 방안, 세번째 방안 및 네번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우선 2,000萬원을 限度額으로 하는 두번째 方案의 경우는 전체 예금주의 대부분(A은행 : 97.68%～C은행 : 98.79%)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金額水準으로는 은행별로 전체예금의 22%～50% 水準이 보상되어 다소 낮은 편이며, 특히 금전신탁의 경우에 전 예금의 22.24%만이 보상되어 매우 제한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 2,000萬원까지 全額補償하고 2,000萬원～5,000萬원은 部分補償(90% 또는 95%)하는 네번째 方案의 경우에 補償預金主의 比重은 모든 은행에서 99%를 상회하게 된다. 金額水準으로는 두번째 方案에 비하여 은행별로 7.42%(C은행)～15.07%(B은행)정도 補償比率이 증가하여, 총 예금대비 29.08%(C은행)～64.96%(B은행)가 보상된다. 예금종류별로는 총 저축성예금액의 68.57%, 총 금전신탁금액의 34.41%가 보상된다.

部分報償率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부분보상방식의 취지인 금융기관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예금주들의 監視機能을 提高시키기 위해 95%보다 90% 水準의 部分補償率 적용이 더욱 타당하다. 또한 90% 보상률 적용시에는 재정부담 감소의 효과도 있다. 보상방식, 보상수준 등에서 가장 적합한 지급한도액 수준인 네번째 방안(2,000萬원까지 全額 補償하고, 5,000萬원까지 90% 補償方式)을 導入하는 경우 財政負擔이 지나

치게 過重하다고 판단된다면 세번째 방안(1,000만원까지 전액보상, 3,000만원까지 90%보상방식)을 選擇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기구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네번째 方案을 選擇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7. 保險料

가. 算定方式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구 가입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하여 保險事故確率에 준한 적정비용을 被保險者로부터 醵出하는 금액이다[1]. 보험료 산정방식에는 固定料率方式과 差等料率方式이 있다.

固定料率方式은 保險料產出과 其他 行政費用 등이 적게 들어가고 導入 및 運營이 容易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예금보험기구의 主目的이 특정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連鎖引出現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하에 대부분의 국가가 固定料率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固定料率方式을 채택할 경우, 가입기관의 道德的 危險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상실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差等料率(risk-based premium)방식은 가입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입기관의 道德的 危險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健全經營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가입기관이 不實化되는 경우에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까지 겹쳐 더욱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예금주에게 去來銀行의 不實化를 公示하는 효과가 크게 되어 해당기관의 부실화를 심화시키는 惡循環의 문제가 발생할

---

1) 보험료를 풋 옵션 모델(put option model)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산정하는 硏究(Merton(1977), Ronn-Verma(1986) 등)가 있으나 이들 연구를 실제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

수 있다. 또한 健全經營 與否를 판별하여 계량화하기 위한 專門人力 確保 必要性과 行政費用의 負擔이 크다. 그 밖에 保險料率이 높게 책정되는 가입기관으로부터 많은 異意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기관별로 결정된 보험료 자료는 해당 기관의 건전성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예금보험기구의 運營에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다.

따라서 고려될 수 있는 保險料 갹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요율 방식을 근간으로 일부 差等料率의 성격을 가미한 방식이 있다. 둘째, 일정기간 동안 고정료율 방식으로 운영하고 여건이 충분히 成熟되었을 때 차등료율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方式은 세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銀行別로 保險料에 差別을 두는 方式, 이탈리아方式 및 保險料率 差等 외에 각종 罰則을 부과하는 方式이 있다.

은행별로 보험료에 차별을 두는 방식은 은행의 위험노출 정도 및 자본금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를 정한다. 美國의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는 1993년부터 가입금융기관을 위험도와 자본상태에 따라 각각 3단계로 구분한 후 위험도와 자본상태를 혼합하여 전체로는 9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 방식은 基準料率을 고정하고 料率算定 基準金額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이탈리아는 사후분담방식을 채택하여 이 방식을 적용)으로 보험료율은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保險料率 = 基準料率 × [對象預金 − (資本金+任意準備金)]

그 밖에 가입기관의 통제를 위하여 貸借對照表上의 각종 비율을 정하여 기준비율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는 保險料率 引上 外의 각종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다. 벌칙의 예는 경영진의 문책, 가입자 권리정지 등이다.

한편, 현재는 은행별로 產業政策의 支援過程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에 차이가 있으며 자율적인 增資에 제약이 있는 등 현 여건상 당장 差

等料率 方式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기간 固定料率 方式으로 운영하고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차등요율 방식을 도입하는 두번째 방식이 바람직하다. 美國의 FDIC도 고정요율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1993년에 들어서야 차등요율 방식을 도입하였다[2].

나. 水準

保險金 支給限度에 따라 추정되는 總 付保預金額(보험가입예금액)을 살펴보면, 2,000萬원까지 전액 보호되는 경우는 약 55兆원, 1,000萬원까지는 전액 보호되고 1,000萬원 超過 3,000萬원까지 95% 보호되는 경우는 약 65兆원으로 추정된다. 2,000萬원까지 전액 보호되고 2,000萬원 초과 5,000萬원까지 95% 보호되는 경우는 약 80兆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예금보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보험기금의 규모는 외국의 예등을 종합하여 평가할 때 總 付保預金額의 0.5~1%인 5,000億원 수준이 될 것이다.

예금보험기구의 도입 초기(1996년)에는 보험료를 필요보험기금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 수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은행이 납부할 수 있는 최소수준에서 결정하고, 앞으로 은행에 대한 必要 支給準備率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것이므로 그 비율이 하락할 때에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다. 代案

保險產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보험료율 산출방식은 該當危險으로부터의 損失(loss)에 대한 經驗統計 또는 類似危險의 과거

---

2) 자세한 것은 第2篇 참조.

經驗統計를 일정한 기준으로 작성한 후, 이 통계를 이용하여 損失의 規模를 測定(historical loss cost approach)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손해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保險事故의 頻度(발생확률: frequency)와 深度(평균 손해액: severity)가 추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손실규모 측정을 바탕으로 被保險者의 保險期間 中의 損失規模를 추정하고 보상한도를 고려하여 豫想損失額(prospective loss cost)과 保險營業上 所要費用(expenses) 및 非常危險에 對備한 金額(contingencies)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예금보험기구를 도입하는 경우, 과거 銀行倒産 經驗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과거 경험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준용할 만한 유사 경험통계도 없어 보험수리적인 보험료 산정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성립의 전제조건인 大數의 法則(the law of large numbers)도 존재하지 않는다. 外國의 경우도 예금보험기구의 보험료 산정시 보험수리적 산정방식에 의하지 않고, 기금의 조달방식 및 규모, 은행의 보험료 납부능력, 보험금 한도액수준, 기금의 적립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한다.

外國의 경우, 보험료 수준은 주로 保險對象預金(또는 付保預金)의 一定率을 基準으로 하는 방식(美國, 캐나다, 日本, 臺灣 등)과 總預金의 一定率을 對象으로 하는 방식(英國, 덴마크, 獨逸, 아일랜드, 스페인, 필리핀 등) 및 總資産의 一定率을 對象으로 하는 방식(핀란드, 노르웨이 등) 등에 의해 결정된다(〈表 Ⅰ-3〉 참조). 總預金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 保險料 수입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고 運營上 單純하다는 長點이 있으나, 보험대상예금(또는 부보예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受惠者 負擔原則」에 더욱 부합되는 것이므로 보험대상예금(또는 부보예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더욱 타당하다. 보험대상예금(또는 부보예금)의 일정률을 보험료로 醵出하는 경우, 정확한 수입보험료 규모는 保險期間의 보험대상예금액(또는 부보예금액)을 추정하여 산출되어

야 한다.

保險料 水準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첫째 導入 初期에는 보험료 수준을 낮추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보험료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도입시 가입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도입에 따른 반발을 줄임으로써 도입을 容易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입 이후 계속적인 保險料 引上이 있게 되면 가입기관의 반발이 예상되어 預金保險制度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기관의 부실화가 예상보다 빨리 발생되는 경우 必要財源의 不充分으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도입 초기에 보험료 수준을 어느 정도 確保하고 제도가 정착되어 變動料率方式을 도입하는 시기에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를 경우 예금보험기구의 필요자금을 보험료로 상당 수준 확보할 수 있고 가입기관의 도입초기 반발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면 상당기간 동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기관이 他金融圈과의 경쟁력 약화 및 부실화 등을 우려하여 制度導入 初期 反撥이 거셀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保險料 水準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안으로 제시할 보험료율 수준은 보험대상예금의 0.01%~0.10%이다[3]. 논리적으로는 保險料 算定은 보험에 가입된 예금인 부보예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구가 부보예금에 의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데 문제점이 있다.

保險料率 수준이 보험대상예금의 0.01%~0.10% 수준일 때 收入保險料는 1994년 말 기준으로 1년에 약 240억원~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表 Ⅰ-11〉 참조).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3) 외국의 例는 〈表 Ⅰ-3〉 참조.

〈表 Ⅰ－11〉 保險料率 水準別 1年間 收入保險料 規模(1994年 末 基準)

(單位 : 億원)

	보험대상예금[1]	보 험 료 율			
		0.01%	0.02%	0.05%	0.1%
시 중 은 행	1,410,628	141.06	282.13	705.31	1,410.63
지 방 은 행	257,201	25.72	51.44	128.60	257.20
특 수 은 행	714,785	71.48	142.96	357.39	714.79
개 발 은 행	47,180	4.72	9.44	23.59	47.18
계	2,429,794	242.98	485.96	1,214.90	2,429.79

註 : 1) 추정치임.

첫째,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제1단계인 基盤造成段階(1995～1997년)에는 保險料率을 보험대상예금의 0.01%～0.02%로 정한다. 保險料率 水準이 보험대상예금의 0.01%～0.02%인 경우 1994년 말 기준으로 銀行의 納付保險料 負擔은 대체로 업무이익 및 총 비용의 각각 약 1%, 0.2%에 못미쳐 은행에 커다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表 Ⅰ－12〉 참조). 이와 같은 부담을 고려할 때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初期 保險料率을 보험대상예금의 0.02%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Ⅰ－12〉 銀行經營에 대한 保險料의 影響(1994年 末 基準)

(單位: %)

	보험료/업무이익[1]			보험료/총비용		
보험료율	0.01	0.015	0.02	0.01	0.015	0.02
시 중 은 행	0.35	0.52	0.69	0.10	0.15	0.20
지 방 은 행	0.45	0.67	0.90	0.10	0.15	0.20
특 수 은 행	0.58	0.88	1.17	0.09	0.13	0.18
개 발 기 관	0.19	0.29	0.39	0.01	0.02	0.03

註 : 1) 개발기관의 경우 영업이익임.

둘째,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제2단계인 擴充段階(1997~2000년)에는 보험료율을 보험대상예금의 0.02~0.05%로 정한다. 1990년대 말에는 金融自律化와 金融開放이 대체로 완성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은행도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은행도산에 대비하여 保險料率을 引上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험료율 수준이 보험대상예금의 0.02~0.05%인 경우 1994년 말 기준으로 가입은행의 전체 납부보험료 부담은 1년에 약 480억원~1,200억원에 이르러 은행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保險料率의 引上과 동시에 필요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것도 방안이다. 적어도 1990년대 말경에는 필요지급준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預金保護制度 導入의 제3단계인 定着段階(2000년~)에는 보험료율을 보험대상예금의 0.05~0.1%로 정하고 差等保險料率(riskbased premium)制度를 도입한다. 보험료율 수준이 보험대상예금의 0.05~0.1%인 경우 1994년 말 기준으로 가입은행의 전체 납부보험료 부담은 1년에 약 1,200억원~2,400억원에 이르러 은행에 부담이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가입기관의 道德的 危險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율에 差異를 두는 差等保險料率制度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여 은행간에 보험료 부담의 衡平性을 높일 필요가 있게 된다.

8. 個人年金信託

'個人年金信託'計定의 경우에는 資金의 性格, 예치기간, 租稅制度 등에서 기타 신탁계정과는 매우 상이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제도 도입시 별도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個人年金信託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급속히 老齡化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稅制惠澤 등을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유도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담보로 하고 있는 個人年金信託에 대해서는 가입기관의 도산시에도 예금주의 원금과 최소 이자분은 보상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個人年金信託 計定은 租減法上의 「個人年金貯蓄에 관한 法律」에 따라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만기시의 급부금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稅制惠澤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최소 10년 동안의 의무적인 납입기간 동안 예치해야 하는 초장기성 자금이다. 따라서 예금주는 거래은행과 최소 10년에서 30~40년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거래은행의 도산으로 인한 피해가 個人年金信託 預金主에게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個人年金信託計定의 예금주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번째 方案은 도입하려는 예금보험제도 내에서 기타예금과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지급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기타예금과 個人年金信託金額과 합산하여 보상받게 되므로 個人年金部分의 충분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

두번째 方案은 個人年金信託 가입자를 별개의 예금자로 취급하여 기타예금의 보험한도액과 같은 금액만큼 별도의 개인연금신탁 보험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첫번째 방안에 비해서는 個人年金信託部分에 보다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으나 한도액의 제한 등으로 개인연금신탁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

세번째 方案은 예금보험기구 내에 별도의 '個人年金保險基金'을 설정하여 限度額과 그에 따른 보험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행정적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個人年金信託'의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보험제도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Ⅳ. 預金保險公社의 組織, 財源 및 法律制定 事項

지금까지 金融環境의 變化가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대응하여 금융당국의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健全經營監督의 強化와 함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설립된 預金保險機構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보험가입대상 금융기관, 보호대상 예금의 종류 및 보상한도, 보험기금의 조달방법 등의 측면을 검토하였다.

預金保護制度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경험들은 預金保護機構가 效率的으로 運營될 경우 은행도산에 따른 일반의 信認度 低下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수반하며, 일부 국가에서 보듯이 預金保護機構의 운영에 내재하는 부작용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기구의 존재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도 있다. Becketti(1991)가 지적하듯이 預金保護機構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도 예금자보호기능을 축소하지 않는 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예금보호제도의 도입 취지나 정치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예금자보호기능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예금보호기구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금보호기구가 預金者 保護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機構의 존재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金融市場 및 金融監督의 형태를 신중히 고려하여 예금보호기구의 조직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금보험기구의 바람직한 法的 形態 및 內部組織에 관해 살펴보고 관련되는 外國事例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

울러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주면서도 예금보호기구가 빠른 기간내에 제도적 장치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財源調達을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組織

예금보호기구의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는 예금보호기구의 설립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 금융산업의 현황(金融市場의 集中度 및 발달정도, 금융기관수, 收益性,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간의 관계 등) 및 금융기관들의 도산가능성, 金融規制 및 監督의 형태와 強度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預金保險機構의 형태 및 운영방법은 機構의 法的 性格 및 機能, 가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등에 따라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金融機關 도산의 발생 횟수와 금융기관들에 대한 일반의 신인도 정도, 그리고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市場의 規律(market discipline)에 의존하는 정도 등에 따라 예금보호기구를 公的 機構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민간기구나 관민합동의 형태로 할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金融機關의 倒産이 늘어나거나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예금보호기구가 도입될 시에는 公的 機構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公的 機構에 내재하는 운영상의 경직성이나 금융기관들의 내부경영에 대한 간섭 가능성을 우려하여 민간조직이 선호되는 경우도 있다.

예금보험기구의 의사결정기관은 理事會 혹은 기구에 설치된 委員會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르헨티나 · 터키는 중앙은행이, 칠레는 은행감독원이 관장하고 있다. 公的 機構의 理事會(委員會)에는 가입대상 금융기관들의 감독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국가에서는 金融機關 代表들이 理事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 당

국과 예금보호기구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예금보호기구의 의사결정기관이 문제은행의 처리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의 정도가 달라진다.

다음, 예금보험기구의 조직규모에 관해서는 기구가 도산은행에 대한 보험금지급만을 담당할 경우에는 조직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며, 英國처럼 금융기관 도산의 급증 등 필요시에만 정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원들을 지원받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金融機關 檢査機能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기구가 대규모의 자체조직을 갖추고 여러 지역에 事務所(regional offices)를 두거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정부와 중앙은행 직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주요국 예금보호기구들의 組織을 간략히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예금보호기구의 바람직한 조직형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主要國 預金保護機構들의 組織構成[4)]

1) 公的 組織

가) 美國 聯邦預金保險公社(FDIC)

FDIC는 1930년대 초의 대공황으로 1만여 은행이 도산하는 금융위기를 겪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1933년 은행법에 의거 1933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機構의 운영은 理事會가 담당하고 있다. 理事會는 5명의 理事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Chairman, Deputy Chairman, Director)은 대통령이 上院의 助言과 承認을 받아 임명하며, 나머지 2명은 연방통화감독관과 저축조합감독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임명 理事[5)]의 임기는 6년이며, 이 중 1명이 理事會 의장이 된다.

---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第2篇을 참조.

5) 현재는 은행 CEO 출신 및 OTS의 Acting Director가 임명 理事로 재직중이다.

FDIC의 내부조직으로는 Chairman下에 일상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Chief Operating Officer와 3개 部署(Supervision, Resolution, Consumer Affairs)를 관장하는 Executive Director가 있으며, 7개 局(division)과 8개의 室(office)들로 구성되어 있다([圖 Ⅰ-1] 참조). 7개 局(division)의 주요업무는 〈表 Ⅰ-13〉과 같다.

[圖 Ⅰ-1] FDIC의 組織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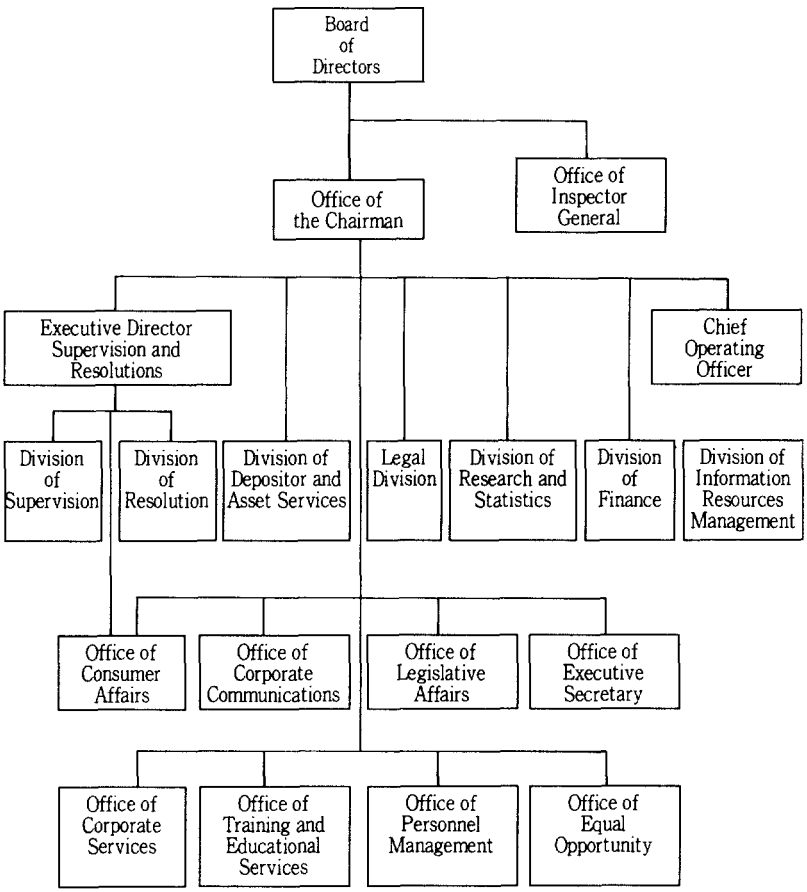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Ⅰ－13〉 FDIC Division들의 主要 遂行業務

Division	主要 遂行業務
Supervision	약 7,000개의 주정부 인가 비가맹은행들과 600개의 주법 저축은행들을 감독
Resolution	· 도산한 가맹금융기관들을 최소비용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계획 · 시행하는 것을 담당 · FSLIC Resolution Fund의 부채관리 · 자금지원 계약 및 bridge banks 관리
Depositor and Asset Services	· 도산기관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 도산기관으로부터의 획득자산 처분
Legal	· FDIC의 각 부서에 대해 법률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 감독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강구 지원
Research and Statistics	· 경제 및 금융상황에 관한 자료 생산 · 은행산업의 상황변화가 경제 및 FDIC에 미치는 영향 분석
Finance	· 가맹기관으로부터의 보험료 징수 · receiverships 관리(1993년 말 현재 280억달러의 자산관리) · 3개 기금의 연차보고서 및 내부경영보고서 작성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FDIC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통계자료 분석

이처럼 美國의 경우에는 권력의 집중에 대한 일반의 혐오, 단일은행제도(unit banking system)에 따른 은행수의 과다 등 美國의 은행제도가 갖는 특색으로 인해 FDIC가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서 전국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 비가맹 주법은행 중 보험가입 주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권까지 행사하고 있고, 여타은행에 대해서도 예금보호에 필요한 자료를 징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나) 캐나다 預金保險公社(CDIC)

CDIC는 금융자율화 진전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經營隔差 發生 등으로 인한 신용질서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67년에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예금보호기능 이외에 州政府가 認可한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감독권[6]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CDIC의 운영은 理事會가 담당하고 있으며, 理事會의 議長은 금융에 정통한 민간인으로서 재무장관의 추천에 의해 총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理事로는 캐나다은행 총재, 재무차관, 금융감독원장 및 부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이들 외에 재무장관이 총독의 승인을 받아 4인 이하의 민간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理事(임기 3년)를 임명할 수 있다. 民間 理事의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맹기관의 現職 피고용인은 理事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理事會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는 가맹기관의 피고용인이 참여하고 있다.

CDIC의 조직으로는 社長(President/CEO)과 그 하부에 6개 部署가 존재하며, 社長은 경영진과 理事會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圖 I-2] 참조). 그리고 사장, 부사장들, 법률국장으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Executive Management Committee)는 부서간의 의견조정 및 정보교환의 場의 역할을 수행한다. 1994년 현재 CDIC의 직원수는 93명이며, 이들 중 약 35명 정도가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현장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예금보험공사에 부여된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들을 재무부(州 감독당국 포함)와 보험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CDIC 6개 部署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法律/公社 事務局(Legal and Corporate Secretariat, 7명) : CDIC의 모든 부서에 대해 일상적인 혹은 전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공사의 이해를 대변한다. 국

---

6) 연방정부인가 금융기관(보험회사 및 신용조합 포함)과 연금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원(OSFI)이 맡고 있다.

[圖 Ⅰ-2] CDIC의 組織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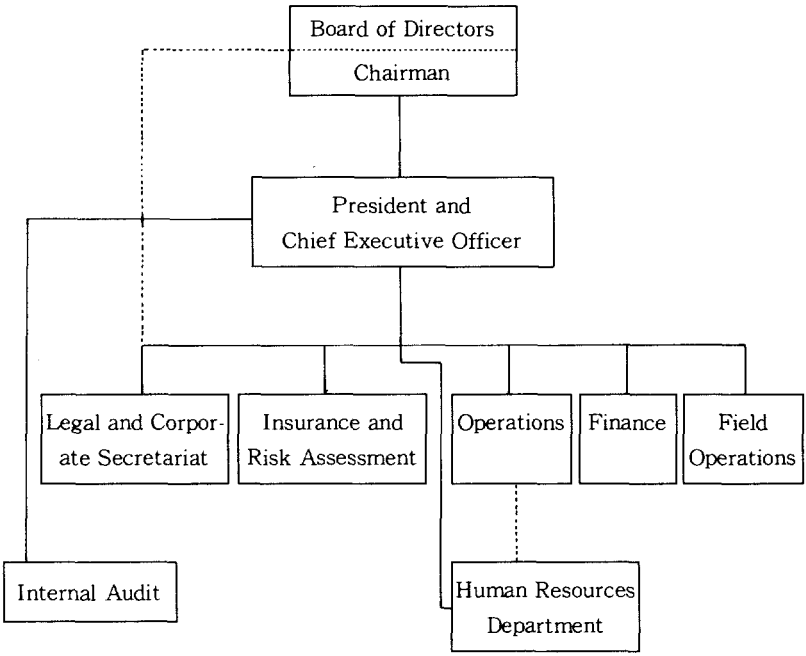

資料 : CDIC 內部資料.

장은 理事會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② 保險/危險評價部(Insurance and Risk Assessment Division, 20명) : CDIC法에 의거하여 회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건전경영 및 건전재무 기준의 유지 촉진, 예금보험의 위험평가 및 예금보험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運營部(Operations Division, 39명) : 오타와와 토론토 사무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다. 이 부서내에 시스템 개발 및 지원 부문, 운영 및 인사 부문 등이 있다.

④ 資金部(Finance Division, 10명) : 회계, 예산 및 재무 기능을 담당한다. 이 부서는 CDIC의 재무업무를 총괄하며, 전략적 계획과정을 촉진시키고 CDIC의 재정, 금융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現場擔當部(Field Operations Division, 12명) : 토론토에 위치하며, 도산 금융기관들의 청산에 있어서 主債權者로서 CDIC 이익을 대변한다. 이 부서에서는 지급불능 가맹기관의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도로 회수하기 위해 청산자 및 관리자/경영자가 보유한 자산의 처분을 감시한다. 또한 이 부서는 도산 가맹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맡게 되며, 동시에 채권, 보증, 인수 등을 감시한다.

⑥ 內部監査部(Internal Audit Department, 2명) : 내부감사기능을 담당하며, CDIC 사장과 理事會의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내부감사는 지속적으로 CDIC가 금융행정규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CDIC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업무를 집행하는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진다.

CDIC는 법적으로는 재무부, 중앙은행 등 다른 감독기관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재무부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은 금융감독원(OSFI)과 주정부 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CDIC는 이들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民間組織

가) 獨逸 預金保護基金(Deposit Protection Fund)

1960년대에 들어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競爭與件 造成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 상업은행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부실화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5월 기존 共同基金(1966년 설립)을 확충한 預金保險基金(Deposit Protection Fund)이 도입되었으며, 행정권의 개입 및 은행감독의 중복가능성 등을 회피하기 위해 순수 민간기금의 형태를 취하였다.

예금보호기금의 의사결정기구인 預金保護委員會(Deposit Protec-

tion Committee)는 은행연합회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은행 대표 3인, 지방은행 대표 3인, 개인은행 대표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호위원회는 은행연합회의 경영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不實金融機關에 대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設定한다. 위원들은 은행연합회의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소유자 혹은 경영자들 가운데서 선출되며, 위원들 중에서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다. 이 밖에 預金保護委員會 職員으로는 은행연합회 내에 2명의 이사와 5명의 회계사가 근무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은행연합회의 경영이사회가 預金保護委員會의 機能을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프랑스 預金保護基金(Deposit Guarantee Fund)

1980년 은행업계 자율로 銀行倒産 發生에 따른 손실을 공동 부담하기 위한 민간기구로서 예금보호기금이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은행연합회 내에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基金은 연대책임기금(solidarity fund)으로서 특정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회원 은행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협정의 성격을 갖는다. 프랑스의 경우 부실은행 처리는 프랑스은행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預金保護制度는 프랑스은행이 해산시키기로 결정한 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보험금을 사후지급하는 소극적인 機能만을 遂行한다.

3) 官民組織

가) 日本 預金保險機構(JDIC)

金融自律化 推進過程에서 금융기관간 적정경쟁체제의 도입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預金保險制度가 1971년 7월에 도입되었다. 예금보험기구의 의사결정기관은 運營委員會이며, 理事長(일본은행 부총재), 理事 및 8명 이내의 운영위원[7]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은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중에서 예금보호기구의 理事長이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선임

한다. 예금보험기구의 임원은 理事長 이외에 理事, 監事 각 1명씩이며, 理事는 理事長이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임명하고, 감사는 대장대신이 임명한다(현 감사는 日本興業銀行 行長). 그리고 運營委員會下에 사무국이 있으며, 현재 직원 15명이 勤務하고 있다.

日本 預金保險公社는 법적으로는 日本銀行과 독립되어 있으나, 제도 및 실무의 여러 측면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日本銀行 신용기구국이 양 기관의 협조 창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구는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시 대장대신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예금보험기구의 자금원조에 관해 대장성으로부터 사전에 적격성 여부를 인정받아야 하는 등 대장성의 실질적인 영향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英國 預金保護基金(Deposit Protection Fund)

1971년 5월 新金融調節方式의 일환으로 실시된 금리자유화의 영향으로 1970년대 중반 20여개의 중소금융기관이 예금지급불능 사태에 처하는 등 금융위기가 발생됨에 따라 1979년 銀行法을 제정하면서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82년 2월 預金保護基金(Deposit Protection Fund)이 設立되었다. 기금의 의사결정기관인 預金保護委員會(Deposit Protection Board)는 중앙은행 총재(의장), 중앙은행 부총재, 영란은행 사무국장(Chief Cashier), 중앙은행 전문위원, 가입금융기관 대표 3인으로 구성되며, 예금보호기금의 유지 · 관리 · 운영, 인가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징수, 여타 預金者保護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預金保護機構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은 전적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 중앙은행에서 추가로 직원을 지원받게 된다.

---

7) 현재 운영위원은 전국은행협회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신탁협회 회장, 전국지방은행협회 회장, 제2지방은행협회 회장, 전국신용금고협회 회장, 전국신용조합중앙협회 회장, 전국노동금고협회 이사장 등 8명이다.

나. 法的 性格

이상에서 보듯이 各國의 預金保護制度는 해당국의 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도입당시의 금융환경 등에 따라 法的 性格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公的 性格의 機構가 다수를 차지하며, 民間 金融機關들이 참여하는 관민기구나 순수 민간기구의 경우에도 관련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에 의해 一般의 金融機關들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는 가운데 예금보호기구가 필요한 보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앞 章에서 우리는 새로 도입될 預金保險機構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보장을 대체하는 것인 만큼 일반의 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信認度(public confidenc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를 公的 機關化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예금자 보호가 야기할 수 있는 道德的 危險의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預金保護制度가 감독기능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民間主體에 대한 信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호기구가 公的 機關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무내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강제적 권한(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험료 징수, 채권·담보의 인수 등 도산기관 처리에의 개입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民法上의 社團法人(혹은 재단법인)으로 하기보다는 公的 特別法人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8].

公的 預金保險機構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美國, 캐나다, 日本 등과 같이 예금보호기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英國과 같이 은행법

---

8) 예금보호기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형태에 관해서는 〈表 Ⅰ-14〉 참조.

〈表 Ⅰ－14〉 預金保險機構의 法的 性格에 관한 代案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	주식회사	특별법인	기타특별법에 기초한 법인
정의	사람의 집합체이고, 단체로서의 조직을 가지고,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일정한 목적으로 모아진 재산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	數人이 출자를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주주의 지위가 균일하게 분할된 주식의 형태를 취하고,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통상 單數이다.	그 존립이 공익 등에 관련되기 때문에 특별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율된 법인으로, 단수의 것도 복수의 것도 있다.
목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 재산에 의해서 항구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		영리, 즉 수익을 얻고, 그것을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익 또는 국가의 정책에 크게 관계가 있다.	직접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익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법규					국가의 특별보호 및 감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民商法에 대해 특칙(특별법)이 정해진다.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 民商法에 대해 특칙(특별법)이 정해진다.
업무집행임원 등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고 그 밑에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감사한다.	사원총회가 설치되지 않는 것 외에는 사단법인과 같고,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가 감사한다.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의 권리의무를 지고, 대외적 행위는 조합원 전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해서 해야 한다.	취체역(주식회사의 이사)이 회사의 업무방침을 결정하고 대표취체역이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임원 중 長은, 정부가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와 유사한 임원구성을 취하고, 특수법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자주성이 강하다.
감독	공익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사단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그 근본규칙인 기부행위를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통상 행정부의 특별 감독에 따른다.	통상 행정부의 일반적인 감독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기타			조합재산은, 총조합원의 공유로 된다.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특수회사도 포함된다(광의).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특수회사도 포함된다(광의).

資料 : 金融財政事情研究會(日本), 『預金保險制度』, 1969. 11, p. 267.

상에 예금보험기구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 방안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가는 預金保險機構의 성격과 감독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公的 預金保險機構를 도입할 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預金保護機構 도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기존 감독기관과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금보호기구의 성격을 반영하고 權限과 義務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독기관과 예금보호기구간에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해 利害가 相衝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은행들에 관한 각종 규제 및 감독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에 預金保護機構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기 보다는 별도의 特別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公的인 預金保護機構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체적으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예금보호기구 설립의 사회적 비용, 預金者保護의 효율성, 감독·검사의 중복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表 Ⅰ-15〉 참조). 우리가 預金保護制度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金融自律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암묵적 예금보호에 따른 潛在的 費用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호제도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도 소수 금융기관의 도산이 다른 기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倒産 金融機關의 처리에 따른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銀行市場의 구조나 金融自律化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은행도산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구의 설립 초기에는 機構의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預金保護基金을 적립해 나가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공식적인 預金保護制度가 존재하더라도 도산 금융기관의 수가

〈表 Ⅰ－15〉 預金保護制度 導入方案의 例

	第1案	第2案	第3案
방안	특별법인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설립 －별도의 예금자보험기금법 제정 －정부, 중앙은행 및 대상금융기관의 출자로 설립 －예금수취 금융기관의 가입 의무화 －예금보험업무, 부실은행 자금지원업무 및 대상금융기관 감독업무 허용 *미국의 예금보호기금 형태	은행감독원 내에 예금보험기금 설치운영 －은행법 또는 특별법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은행감독원 내에 설치 근거 마련(원장이 기금관리위원장) －중앙은행 및 대상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운영 －은행법 적용 금융기관의 가입의 무화 *일본, 영국의 예금보험기금 혼합형태 *「보험보증기금」과 유사한 형태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예금보험기금 설치 운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원규약에 따른 민간기금으로 운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원대상기관 중 임의가입 유도 －단순 예금보험기능만 수행 *서독의 예금보험기금 형태
장점	－공적성격의 예금보험기금 운영에 따른 금융기관 공신력 제고 －제1금융권 예금보험업무의 일률적 수행가능 －사후적 직접적인 예금자 보호 가능 －중앙은행과 정부의 직접적 개입 회피	－예금보험기금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최소화 －제1금융권 예금보험업무의 일률적 운영가능 －은행감독업무의 중복가능성 회피 －최종적 자금공급자인 중앙은행에 설치함에 따라 예금보험기능의 신뢰도 제고	－공적당국의 개입없이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자율성 유지 가능 －기금 설립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회피
단점	－기구설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ㅇ예금보험기구 운영에 따른 비용 ㅇ보험금 출연에 따른 금융기관 수지부담 －통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체계의 중복	－보험금 출연에 따른 금융기관 수지부담	－민간주체 예금보험기금 운영에 따른 상대적인 금융기관 공신력 제고 미흡 －보험금 출연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연쇄적인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 발생시 예금보험기금의 한계 노출(공적당국의 개입이 불가피) －보험금 출연방법에 대한 은행간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비고	－특별법 제정	－은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전국은행연합회 회원규약 개정

資料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預金者保護制度의 現況 및 補完方案』, 1989. 12.

많아 예금보호기금만으로는 보험금지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美國에서 수많은 貯蓄貸出組合(savings and loan associations)의 도산으로 예금보험기금이 고갈된 것이 금융기관 및 預金者들의 도덕적 위험과 감독기관들의 不實化機關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미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때[9], 預金保護機構의 도입이 악화되는 경영여건하에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預金保護機構의 法的 성격을 결정함에 있어 기존 금융감독기관과 예금보호기구간의 관계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새로이 도입되는 預金保護機構의 법적 성격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代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第1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감독기관들과는 별도의 예금보험기구를 독립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案의 長點으로는 政府의 거시경제정책이나 감독당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금보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道德的 危險을 줄이고 도산은행의 처리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이 案을 시행할 경우 預金保護機構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代案들의 경우보다 크고, 감독기관들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아 예금보호기구가 일정한 범위의 감독권을 가져야 할 경우 감독·검사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代案들에 비해 예금보호기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金融機關에 대해서도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短點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2案으로는 韓國銀行이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이 최종대부자기능과 감독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한국은행 내에 預金保險基金을 설치하고 별도의 運營委員會가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

---

9) 이와 관련된 경험적 증거로는 Kane(1985), Keeton and Morris(1987), Saunders, Strock and Travlos(1990), White(1991) 등을 참조.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예금보호기구를 운용하는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의 제공에 따른 金融機關들의 道德的 危險 가능성을 은행감독원의 건전 경영 규제로 줄이는 데 용이하며, 검사·감독의 중복을 피하면서 中央銀行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예금보호제도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게 된다. 반면 監督機能과 預金保護機能이 동일기관에서 이루어져 부실화 금융기관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라는 명목으로 中央銀行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은행감독원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들의 道德的 危險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것이며, 예금보호기금의 존재가 中央銀行의 독립적이고 간접적인 통화관리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第3案으로는 기존의 信用管理基金을 확대 개편하여 同 基金으로 하여금 비은행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은행들에 대한 예금보호기능까지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案은 신규 예금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히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될 경우에는 한 기관이 예금보호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으나, 업무성격과 危險度가 相異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差等保險料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예금보험을 제공하는데 있어 異種 금융기관들의 영업위험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金融機關들의 道德的 危險問題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신용관리기금 운용방식을 은행에 적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상에서 살펴본 각 代案들의 長·短點은 예금보호제도를 외형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가 보다는 예금보호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별도의 예금보호기구가 설립되더라도 財政經濟院이나 韓國銀行(은행감독원)의 과도한 영향력하에 있을 경우에는 예금보호기능과 감독기능의 동시 추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예금보호기구가 한국은행(은행감독원)내에 설

치되더라도 獨自的인 運營을 추구할 수 있다면 기구가 예금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監督機關과의 이해상충을 회피하고 예금보호기구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과 구별되는 예금자 保護機能을 效率的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들(중앙은행 포함)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예금보호기구를 설립하되, 機構 導入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 초기에는 가급적 機構組織을 小規模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예금보호기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제도 도입의 효율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다. 意思決定 主體

별도의 預金保護機構를 설립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다음 사항은 예금보호기구의 의사결정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主要國의 경우 預金保護機構의 理事會 혹은 運營委員會가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금보호기구의 導入·維持費用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예금보호기구의 理事會는 理事長, 理事 1~2인 및 監事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預金保護機構의 理事長은 예금보호기구를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예금자 보호 주체를 정부로부터 預金保護機構로 이전하기 위한 첫 단계로 設立 初期에 準獨立機構를 형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預金保護機構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理事會와는 별도로 예금보호기구의 運營委員會를 설치하여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들을 결정함과 동시에 預金保護機構와 감독당국간의 공식적인 意見交換 및 政策調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재정경제원

(차관), 중앙은행(총재 혹은 부총재, 은행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理事長)의 당국자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金融機關들의 대표가 運營委員會에 참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예금보호기구 기금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에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업 대표가 참여할 경우 他 金融機關의 정보를 이용하여 私益을 추구하는 利害相衝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양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은행이 아니라 銀行業界 全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은행연합회 회장이 運營委員會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밖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개발기관 대표 각 1인씩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設立初期에는 예금보호기구의 규모를 效率的 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預金保護機構가 정착된 후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 방안을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 內部組織

預金保護機構 設立 後 당분간은 은행 금융기관들의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預金保護機構가 보험료의 징수, 기금의 운용,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預金保險機構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총무부서, 보험료의 징수 및 기금의 운용을 맡는 자금부서, 관련자료 수집 및 은행의 경영상태 분석, 預金保護機構의 제도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조사부서로 기구를 최소화하더라도 業務遂行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圖 Ⅰ-3] 참조).

앞으로 金融機關의 倒産이 발생할 경우 도산 처리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도산기관에 관한 법적 문제 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

[圖 Ⅰ-3] 信用管理基金의 組織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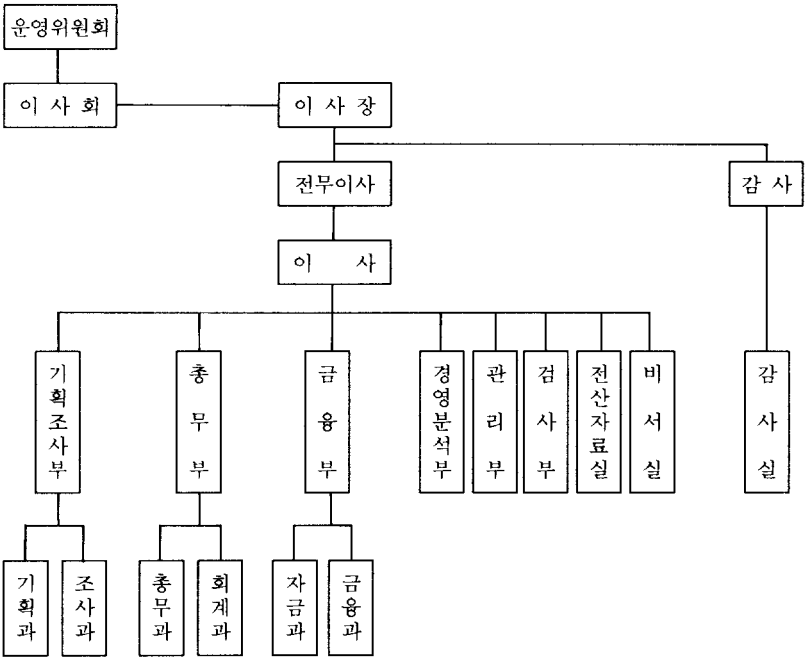

된다. 不實化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特別檢査權을 예금보호기구에 허용할 경우 검사부서를 도입하거나 외부 검사인력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財源調達・運用

예금보호기구가 도산 금융기관들의 預金者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산 금융기관들의 殘餘資産 처분수입 이외에도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들에 대해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財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預金保護基金이 부족할 경우 預金者保護制度에 대한 일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기금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도 가입 金融機關들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줌으로써 이들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預金保護制度의 純機能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예금보호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社會的 費用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預金保護機構가 가입 금융기관들로부터 징수한 출연금과 保險料, 基金運用收益 등을 預金者 보호를 위한 財源으로 적립하고 있다. 美國·獨逸·日本·캐나다·인도·필리핀 등은 매년 총예금 또는 保險對象預金의 일정률(0.01~0.066%)에 해당하는 保險料를 徵收하고 있으며, 獨逸·英國 등은 필요시 예금보험기구가 추가 및 특별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英國처럼 가입시 金融機關의 상황에 따라 一定規模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후, 예금보험기구의 財源이 일정수준 이하가 될 경우 가입기관들로부터 추가출연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와 같이 별도의 자본금이나 基金을 유지함이 없이 保險事故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을 금융기관들이 분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信賴度 측면에서, 혹은 사고발생시 금융기관들의 부담과다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代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保險基金殘額의 보험대상예금에 대한 비율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日本의 기금잔액은 1994년 3월말 현재 부보예금의 0.152%, 美國 은행보험기금(BIF)은 1993년말 현재 부보예금의 0.69%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 預金保險公社는 최근의 신탁 대부회사의 倒産增加로 1994년 3월말 현재 16억 4,800만캐나다달러의 기금결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금융환경의 변화와 그것이 預金保護基金規模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基金調達 方案들을 적절히 조정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예금보호기금의 조달방안별로 채택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資本金(또는 出捐金)

수입보험료를 제외한 財源 중 자본금에 대해서는 公的 예금보험기구의 경우 日本과 같이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하거나[10] 美國·캐나다·英國·獨逸처럼 無資本 特別法人 혹은 委員會(基金)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미국·캐나다는 설립 당시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거나 金融機關 支援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政府·中央銀行, 혹은 兩者가 出資를 한 후 일정기관이 지난 뒤에 예금보호기구로부터 상환받는 경우도 있다[11].

자본금이 있는 경우 출자주체는 政府·中央銀行, 혹은 兩者 모두이며, 일본·레바논의 경우처럼 금융기관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예금보호기구에 대해 資本金을 出資할 것인가의 여부는 보험료율 및 보험금 지급한도의 수준,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공신력 정도,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非銀行 金融機關에 대한 예금보호기구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出資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預金保護機構에 政府가 出資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예금보호기구의 公的 信認度(public confidence)를 높이고 또한 預金保護制度 導入時에 금융기관들의 初期負擔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금보호기구에 대해 자본금을 出資하거나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豫算制約 등을 고려할 때, 예금보험공사 설립시 정부가 資本金 또는 基金에의 초기 出捐

---

10) 설립 당시 정부·중앙은행·민간 금융기관 각각 1억 5천만엔씩 출자하였으며, 1986년 7월 노동금고도 500만엔을 출자함으로써 일본 예금보호기구의 자본금은 현재 4억 5,500만엔이다.

11) 캐나다의 경우 설립 당시 정부가 1천만캐나다달러를 출자하였다가 1977년 전액 상환받았으며, 미국에서는 설립 당시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이 2억 8,900만달러를 출자한 후 1947~1948년 동안 모두 돌려받았다.

金으로 100억원~500억원을 지원할 경우 金融制度의 安全性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부담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預金保護基金이 적정한 수준으로 적립될 때까지 一定 規模의 基金을 출연하였다가 예금보호기구로 하여금 상환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非銀行金融機關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호기구에의 出資 및 出捐 여부는 이들 예금보호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음, 앞으로 中央銀行의 주된 役割이 통화의 독립적 중립적 관리로 될 경우 중앙은행은 예금보호기구에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은행의 最終貸付者 機能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金融機關들에 대해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실화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과 구분하도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中央銀行이 銀行監督機能을 병행할 경우에는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추구하는 정책당국으로서 중앙은행도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出資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예금보호기구에 대한 정부의 直·間接 介入이 있는 한 직접적인 出資보다는 건전 경영감독의 강화를 통해 은행의 부실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大型銀行의 倒産으로 자금지원이 불가피하게 요청될 경우에만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金融機關들로 하여금 예금보험기구의 資本金에 출연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보험금지급을 유발하는 보험사고를 초래하는 당사자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銀行倒産에 따른 손실을 공동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출연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가까운 미래에 다수의 은행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金融機關들의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銀行負擔은 保險料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양쪽의 주장에 모두 타당성이 있으므로 은행들이 출연을 하는 경우에도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기금적립 목표와 매년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여 은행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되지 않는 수준에서 출연율

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나. 保險料[12)]

資本金 이외에 예금보호기구의 財源으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가입 금융기관들로부터 보험대상예금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하고 부족시에는 추가로 保險料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은행의 도산사례가 없어 바람직한 기금적립 規模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우나, 앞으로 不實銀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구 설립 초기부터 保險料 徵收를 통해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적정한 보험료율을 추정하기에 앞서 主要國들의 保險料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美國에서는 保險料率이 1935년에 국내예금 총액의 0.0833%였다가 1991년 제정된 聯邦預金保險公社 改善法(FDICIA)에 따라 1993년 1월부터는 가입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에 따라 國內預金 100달러당 23~31센트 범위 내에서 保險料를 징수하고 있으며 최저 보험료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1980년대 초 부보예금 총액의 0.1%에서 1994년부터는 1/6%로 상향조정되었으며, 日本에서는 전년도 保險對象預金 殘額의 0.012%를 유지해오다가 최근에 들어 발생한 신용조합들의 도산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英國에서는 보험가입시 기준예금규모의 適正比率 該當額을 최초 출연금으로 은행별로 1만~30만파운드를 징수하며, 每年 保險料를 징수하지는 않고 있다. 회계연도말 기금잔액이 下限(300만파운드)이하로 감소할 경우 동 잔액이 일정수준(500~600만파운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출연료(최고 30만파운드 이하)를 징수하며,

---

12) 보험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第3章 참조.

재원부족시 특별출연금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가입금융기관의 출연금 총액이 기준금액의 0.3%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獨逸에서는 정규 출연금으로 최근 결산일 현재 非金融機關 預金殘額의 0.03%를 받고 있으며, 필요시 정규출연료의 2배 增額 및 특별 출연금(연 1회에 한해 정규출연금 범위 내)도 징수할 수 있다.

이처럼 국별로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과 도산기관 처리에 필요한 費用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율이 어느 수준인가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表 Ⅰ-16〉를 통해 保險料率을 일정수준으로 정할 경우 일정한 기간 경과후에 적립될 기금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보험대상 예금[13]에 대한 預金保險料率을 0.01%~0.02%로 설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은행도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수입보험료 및 이의 운용수익(연간 수익률은 10% 내지 12%로 가정)에서 영업비용(연간 15억원~50억원으로 가정)을 공제한 基金의 총 적립규모는 保險對象 預金總額의 0.04%~0.11%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保險料率을 1996년에는 0.01%~0.02%,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0.02%~0.05%, 2000년 이후에는 0.05%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2000년도 말 預金保險基金의 적립규모가 보험대상예금총액의 0.14%~0.16%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 外部로부터의 借入許容 與否와 借入限度

預金保護機構는 금융기관 도산에 따른 정부(궁극적으로는 일반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지만, 금융기관 도산의 증가로 預金保護基金만으로는 예금자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金融

13) 추정에 사용된 보험대상예금은 보험금 지급한도액(부보예금)을 초과한 금액을 포함한다.

〈表 Ⅰ－16〉 預金保險基金의 積立規模(2000年 末 現在)에 대한 推定

a) 保險對象預金의 推定規模

(單位 : 億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시중은행계(21%)	1,427,197	1,726,908	2,089,559	2,528,367	3,059,324	3,701,781	4,479,156
지방은행계(12%)	257,820	288,758	323,409	362,219	405,685	454,367	508,891
특수은행계(15%)	718,485	826,258	950,196	1,092,726	1,256,635	1,445,130	1,661,899
개발기관계(15%)	48,284	55,527	63,856	73,434	84,449	97,116	111,684
총 계	2,451,786	2,819,554	3,242,487	3,728,860	4,288,189	4,931,417	5,671,130

註 : 보험대상예금은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초과하는 예금 포함.
( ) 안은 각 은행의 지난 3년간의 예금증가율을 토대로 한 연평균 예금증가율의 가정치임.

b) 保險基金 積立規模

(單位 : 億원, 年度末)

	보험료율	R=10%,C=15억	R=12%,C=15억	R=10%,C=30억	R=12%,C=30억	R=10%,C=50억	R=12%,C=50억
1996	0.01%	295.1502	300.7893	280.1502	285.7893	260.1502	265.7893
	0.015%	450.2278	458.6865	435.2278	443.6865	415.2278	423.6865
	0.02%	605.3016	616.5798	590.3016	601.5798	570.3016	581.5798
1997	0.01%	666.3379	678.7258	651.3379	663.7258	631.3379	643.7258
	0.015%	1015.2625	1033.9946	1000.2625	1018.9946	980.2625	998.9946
	0.02%	1364.1786	1389.2546	1349.1786	1374.2546	1329.1786	1354.2546
1998	0.01%	1128.1453	1148.9297	1113.1453	1133.9297	1093.1453	1113.9297
	0.015%	1717.0525	1748.5444	1702.0525	1733.5444	1682.0525	1713.5444
	0.02%	2305.9453	2348.1444	2290.9453	2333.1444	2270.9453	2313.1444
1999	0.01%	1697.6594	1728.7987	1682.6594	1713.7987	1662.6594	1693.7987
	0.015%	2581.3111	2628.5167	2566.3111	2613.5167	2546.3111	2593.5167
	0.02%	3464.9411	3528.2127	3449.9411	3513.2127	3429.9411	3493.2127
2000	0.01%	2961.9916	3005.8076	2391.0474	2990.8076	3008.3598	2970.8076
	0.015%	4488.8005	4555.2210	3639.8820	4540.2210	4575.8535	4520.2210
	0.02%	6015.5721	6104.5966	4888.6838	6089.5966	6143.3088	6069.5966

註 : R은 기금의 운용 수익률(%), C는 예금보호기구의 연평균 영업비용임.

〈表 Ⅰ－16〉의 계속

c) 預金保險基金의 保險對象預金 對比 比率(2000年 末 現在의 推定値)

보험료율	0.01%	0.015%	0.02%
R=10%, C=15억원	0.05	0.08	0.11
R=12%, C=15억원	0.05	0.08	0.11
R=10%, C=30억원	0.04	0.06	0.09
R=12%, C=30억원	0.05	0.08	0.11
R=10%, C=50억원	0.05	0.08	0.11
R=12%, C=50억원	0.05	0.08	0.11

d) 預金保險料率을 段階的으로 上向調整할 경우 預金保險基金 積立規模

(單位 : 億원, %, 年度末)

	보험료율	R=10%,C=15억	R=12%,C=15억	R=10%,C=30억	R=12%,C=30억	R=10%,C=50억	R=12%,C=50억
1996	0.015%	450.2264	458.6851	435.2264	443.6851	415.2264	423.6851
1997	0.035%	976.7594	994.7914	961.7594	979.7914	941.7594	959.7914
1998	0.035%	2456.5464	2501.4836	2441.5464	2486.4836	1385.6111	2466.4836
1999	0.035%	3160.1250	3217.8545	3145.1250	3202.8545	3125.1250	3182.8545
2000	0.05%	8156.7982	8253.8206	8141.7982	8238.8206	9342.3240	8218.8206
보험대상예금대비 비율		0.14	0.15	0.14	0.15	0.16	0.14

制度의 安全性 維持를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예금보호기구가 정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借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獨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財源不足時 정부나 중앙은행, 혹은 기타기관으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외부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공적인 예금보호기구를 운영할 때에는 금융기관 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금보호기구의 기금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정부기관(들)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預金保護機構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외부 借入先의 존재가 예금보호기구의 방만한 경영을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부터의 차입은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특정 公的 基金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정부가 가능한 한 財政規模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도산이 급증하여 預金保護基金의 부족분이 과다할 경우 정부로부터 충분한 금액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차입선이 정부로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 정부가 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政府財源 調達을 위한 국공채 발행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도 예금보호기구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政府가 金融産業의 正常化와 통화관리의 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공채 발행금리를 실세화하고 통안증권을 국공채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할 경우 경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금보호기구의 基金不足分 全額을 정부가 지원할 수 없을 경우 금융제도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손상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예금보호기구에 대해 필요시 倒産機關 處理資金을 지원하는 것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中央銀行의 支援對象은 금융기관인 반면, 예금보호기구의 보호대상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 예금자들이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 부실화 위험성은 없지만 일시적 流動性 부족을 겪고 있는 金融機關에 대해 금융제도의 安全性 維持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倒産 金融機關의 처리를 위해 예금보호기구가 中央銀行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능이나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異議가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은행의 주된 기능이 安定的 通貨供給을 통한 물가안정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에는 中央銀行으로부터의 차입명분이 약화될 것이며, 이 경우 정부가 필요한 資金을 支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預金保險機構가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예금보호기금의 적립규모, 금융기관 도산시 기금의 豫想損失規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表 Ⅰ-17〉에서 부보예금에 대한 차입한도의 비율을 보면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을 하나의 預金保護機構가 부보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1% 미만이나, 銀行을 주보험대상으로 하는 캐나다와 美國의 경우에는 1.5~3.9%로 높으며, 이를 우리 보험대상예금에 적용할 경우 차입한도는 3조 7천억~9조 4천억원이 된다.

우리의 경우 預金保護機構의 설립 후 수년간은 예금보호기금의 적립규모는 미미하지만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른 예상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1994년 말 현재 保險對象 總預金 規模는 14개 시중은행이 142조 7천억원, 10개 지방은행이 25조 8천억원으로 행당 평균 보험대상예금은 7조원 정도이다. 금융기관 청산시 필요한 最大資金이 市中銀行은 예금의 20%, 지방은행은 예금의 30%로 가정할 경우 평균적으로 볼 때 1개 은행의 도산처리에 필요한 最大資金은 2조 8천억원이 되며, 비율을 각각 30%와 40%로 할 경우 필요한 최대자금은 4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94년말의 M_2 잔고는 133조 1,787억원으로 지원가능한 規模를 M_2의 2%로 할 경우 2조 7천억원 정도, 3%로 할 경우 4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상의 점들과 우리 金融機關들의 도산 가능성이 美國 및 캐나다보다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현 시점에서 預金保險機構의 외부로부터의 차입한도는 2조 5천억원에서 4조원 정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預金保險機構 導入後 당분간은 차입한도를 확대하지 않고자 할 경우 保險對象預金의 증가세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차입한도를 5조원 정도로 시작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表 Ⅰ－17〉 借入限度의 國別 比較

	연 도	부보예금(A)	차입한도(B)	C=B/A(%)	비고[1](억원)
일 본	1972.3	72조 2,530억엔	500억엔	0.069	1,658
	1986	339조 1,080억엔	5,000억엔	0.147	3,533
캐나다	1967	171억캐나다달러	5억캐나다달러	2.9	69,704
	1992	3,020억캐나다달러	60억캐나다달러	1.987	47,759
미 국	1947	763억달러	30억달러	3.93	94,461
	1991	1조 9,577억달러	300억달러	1.53	36,775

註 : 1) 한국 보험대상예금총액에 대해 C를 적용할 경우의 차입한도.

라. 預金保險基金의 運用

預金保險基金을 단기간 내에 최대한도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유동성이 높은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運用收益을 극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금보험기금은 유동성이 높은 정부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가맹 금융기관에의 예금, 단기대출(overnight loans)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부실화 금융기관에 대한 資金支援으로부터 발생하는 利子도 기금에 전입되게 된다.

主要國의 경우를 보면 美國과 日本은 예금보험기금을 정부가 지정한 유가증권이나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英國은 수입보험료 全額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중앙은행이 해당 기금을 政府證券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預金保險基金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도산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유동성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이나 특정 금융기관에의 예치로 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預金保險機構 設立 後 당분간은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상의 투자수단 이외에 短期金融市場(CD, call, RP 시장)에의 運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信用管理基金에서는 기금을 가맹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고 있으나, 貸出期間이 장기화되거나 반복적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中央銀行의 최종대부자 機能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부실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法律制定事項

지금까지 예금보호기구의 조직과 예금보호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이 節에서는 公的인 預金保險制度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우리는 公的인 預金保護機構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영국, 터어키와 같이 은행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관련 조항을 은행법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미국·일본·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예금자보호에 관한 特別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중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에 관계없이 예금보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관련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예금보호기구(예금보호기금)의 設立目的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예금보호기구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예금보험을 제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유지·제고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예금보호기구의 성격에 따라 도산 금융기관의 처리(은행의 합병이나 신설 포함)에 대해 적절한 자금지원을 제공하거나 예금보호기구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보험가입 금융기관

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독(검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들의 건전경영을 도모하는 것도 設立目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되는 預金保護機構의 性格을 고려하여 설립목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둘째, 예금보험 관련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法律에 포함되는 用語들에 대한 定義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자주 언급되는 用語 중 먼저 예금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預金收取機關(대상기관을 은행에 국한할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관계의 대상이 되는 예금이나 기타 債權의 포괄범위를 明示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일부 특수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포함여부, 은행신탁을 예금보험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겸업화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볼 때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非銀行 金融機關이나 이들의 子會社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들 기관이 도산할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보험관계의 성립, 預金者의 성격, 보험사고의 발생, 금융기관의 도산, 자금지원의 성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도산하였다는 선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만 예금보호기구의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한 조항 때문에 자금원조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는 日本의 경험은 이들 用語를 정의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預金保護機構의 명칭, 법인 여부 등 法的 性格을 규정하는 사항들과 설립 및 등기에 관한 제반 절차, 그리고 定款, 資本金規模, 所在地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특수법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할 경우 동 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의 결정 및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 등 민법·상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법률에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 혹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본금을 출연할 것인지, 아니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할 것인지는 예금보호기구의 성격과 정부예산 및 금융기관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

도록 한다.

넷째,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을 맡을 내부기관들(理事會 및 運營委員會)에 대한 제반규정들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理事會에 관해서는 理事會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규정과 함께 1) 理事長의 자격, 任免權者, 임기, 권한, 2) 理事의 數, 任免, 임기, 자격, 직무 및 권한, 의무, 결격사유, 이사장을 포함한 理事의 보수, 3) 監事의 임면, 임기, 권한 및 의무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理事長을 누가 任免할 것인가는 예금보호기구의 위상과 연계되어 결정될 사항으로 앞으로의 재정경제원 및 중앙은행,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구 임원의 겸직[14]이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理事長 유고시의 업무대행, 理事會의 의결방식, 예금보호기구 직원의 임면 및 내부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理事會와는 별도로 구성되는 運營委員會에 관해서는 동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 임기, 결격사유,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동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당연직 위원의 선정, 민간 위원의 포함여부 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預金保護機構가 수행하게 될 業務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금보호기구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예금보호기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는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의 지급, 기타 이와

---

14) 미국의 경우 이사의 재직시는 물론이고 理事를 그만 둔 후 2년 이내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단, 임기만료시에는 제외).

관련된 부대업무 등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부실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합병·인수의 알선이나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가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예금보호기구로 하여금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나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에 이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입금융기관들에 대해 보험료 산정이나 경영상태의 건전성, 문제기관의 부실화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장부·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예금보호기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보호기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 밖에 예금보호기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 기구의 규모를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할 경우 기존 기관(업무대행기관)들에 대해 예금보호기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예금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預金保險의 對象이 되는 行爲(金融機關과 預金者間 保險關係) 및 保險事故에 대한 定義를 구체화함으로써 예금보호기구가 관여해야 할 사항들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가입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해서는 일부 특수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업종전환이나 합병 등에 의해 소멸되거나 신규로 존재하게 되는 기관의 보험처리에 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預金保險에의 加入 및 脫退(혹은 除外)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예금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금보험에의 가입신청 및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가입 승인조건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의 연혁 및 재무상태, 자본의 적정

성, 수익성에 대한 전망, 경영진의 성격, 제출된 정보의 신뢰성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예금보험에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승인조건을 명시할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들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既加入 金融機關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영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예금보험관련 법률이나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예금보호기구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호기구가 보험계약 해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와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관한 再審을 청구하는 절차 및 재심결정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동 사실을 예금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保險對象預金의 종류와 보험사고시의 예금산정기준을 정하는 것도 입법상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이에는 보험대상예금을 열거하는 방법과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만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동명의 예금이나 동반자 예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은행 신탁자금의 보험대상 포함여부와 수혜자 선정 등에 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납부하게 되는 保險料의 料率, 보험료 계산대상이 되는 예금의 산정기준, 납부시기, 보험료 연체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우선 보험료 계산대상 예금을 금융기관 총예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대상 예금만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를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함께, 보험료를 1년에 한 번 징수할 것인지, 2~4차례 분납을 허용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설·해산·합병되는 은행의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이외에 예금보호기구가 出捐金이나 特別保險料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들을 언제 부과할 수 있

으며, 부과시에는 어느 한도내에서 어떤 비율로 징수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保險金 支給에 관해서는 먼저 도산 금융기관에 대한 定義에 있어 法的으로 도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할 것인가, 아니면 감독당국의 선언이 있을 경우 도산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급불능, 급속한 자본잠식 또는 수익저하, 불량한 재무상태 등 금융기관의 도산을 판정하는 기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일단 도산한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산한 은행의 예금자들에게는 그들이 해당 은행에 맡긴 보험대상예금에서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공제한 純預金 중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이 예금자별 보험금 지급규모가 될 것이다. 이때 예금과 함께 예금에서 발생하는 利子도 보험대상에 포함될 것이므로, 도산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 계산기간, 이자율의 결정 등 이자규모의 산정기준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인당 보험금 지급한도는 예상되는 적립기금의 규모와 預金者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預金者들의 道德的 危險을 줄일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도산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결정 절차, 예금자들의 보험금 지급신청절차,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금자와 채권자들에게 도산 금융기관의 잔여재산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우선순위에 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금보호기구가 지불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호기구가 도산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 채권을 갖게 됨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산 금융기관의 청산에 앞서 예금보호기구가 不實化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금지원 여부 결정절차, 자금지원의 종류 및 한도, 지원자금의 회수방안 등을 사전

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산한 금융기관을 다른 기관이 인수할 경우 인수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절차 및 규모, 그리고 도산한 金融機關 株主의 반대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預金保護基金을 어떻게 적립·관리·운용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예금보호기금의 財源으로는 자본금, 보험료 및 출연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입 등이 있는데, 미국처럼 이들에 의해 조성되는 基金의 (보험대상예금에 대한) 목표수준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基金의 上限과 下限을 정해둘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기구 운영비용 등 예금보호기금의 사용출처를 명시해 둘 필요가 있으며, 국채 등의 유가증권에의 투자, 금융기관에의 예금 등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덟째,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만으로는 도산 금융기관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財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예금보호기구가 부족한 基金을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이를 허용할 경우 借入先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부차입의 일차 대상은 정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예금보호기구가 중앙은행으로부터도 차입할 수 있을 것이다. 예금보호기구가 외부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차입의 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다.

아홉째, 예금보호기구에 대해 保險加入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權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예금보호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예금보호기구에 대해 직접 감독권을 허용할 경우 감독의 중복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예금보호기구에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당국의 檢査報告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융기관들의 불건전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예금보호기구가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점설치, 위험자산(부채) 비율의 일정수준 초과, 減資, 大株主나 任職員 變動 등 예금보호기금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해당 金融機關이 預金保護機構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자료의 제출을 미루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制裁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열째, 지금까지 검토한 여러 규정들을 金融機關이나 그 기관의 임직원이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罰則을 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벌칙의 제정은 특정 규정마다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수단을 규정하는 방법과 모든 규정을 제시한 후 각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한 곳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호기구의 財務 및 會計에 관한 규정들이 관련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예금보호기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기록하고 사업연도 말에 이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후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금보호기구의 지도·감독 기관(재정경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은 預金保護機構의 豫算을 인가하고 결산보고서 및 이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승인하며, 필요시 예금보호기구의 활동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業務遂行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第2篇

主要國의 預金保護制度

I. 序　　論

우리나라의 交易國 및 競爭國을 포함한 世界 主要國은 이미 예외없이 預金保護制度를 갖추고 있다. 本篇에서는 우리나라의 預金保護制度 導入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主要國의 預金保護制度에 대해 살펴본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世界 主要國의 예금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리된 바와 같이 각국은 다양한 예금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설립배경, 운영방식, 제도의 장단점, 제도의 변천 및 그 이유, 운영의 성과, 제도의 역할 등에서 좋은 事例 硏究의 대상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새로이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적정한 제도의 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양한 예금보호제도로부터 많은 示唆點이 발견될 수 있다.

예컨대 세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거래에서도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호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예금보호제도를 改善하거나 새로이 導入하게 되었다. 또한 그 제도가 투명할 필요가 있어 예외없이 明示的인 예금보호제도를 갖추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 및 금융에 있어서 세계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 속에서 선두 그룹을 指向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명시적인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새로이 예금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되는 데는 많은 時間이 필요하므로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는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많은 국가는 1970~80년대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金融危機를 맞았으며 그 당시에 많은 銀行의 預金支給 不能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해 預金保護制度가 일반화되었다. 특히 국가간에 경제의 장벽이 소멸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감에 따

라 預金保護制度를 갖추지 않고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예금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심각한 金融危機를 맞이한 적은 없지만 점차 경제가 세계화되고 금융이 자율화되어 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金融危機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금융제도의 안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에게도 필요한 時點이다.

그리고 세계의 예금보호제도는 統一化(harmonization)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예컨대 EU는 경제의 단일화를 추진함에 따라 예금보호제도에 있어서도 국가간에 차이점을 최소화하여 통일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통일화 경향은 監督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반화되고 있다.

유럽 지역의 예금보호제도 통일화 경향은 세계의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세계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미 각종 제도의 世界的 統一化가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 점을 고려하여 외국의 預金保護制度와 一致하는 방향에서 預金保護制度의 導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제도가 정착되면 제도의 변경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

그 밖에 各國의 預金保護制度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形態를 띠고 있다. 예금보호기구를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국가(프랑스, 독일 등)가 있으며 예금보호기구의 운영에 중앙은행 또는 감독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국가(영국, 덴마크 등)가 있다. 또한 保險料를 사건 발생의 이전이 아니라 사건 발생의 이후에 납부하는 제도를 지닌 국가(프랑스), 共同 預金保護制度를 채택하는 국가(영국)도 있다. 예금보호제도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캐나다, 일본, 덴마크, 프랑스, 독일, 영국 등)가 있으며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벨기에 등)도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預金保護制度가 존재하는 것은 各國의 文化·歷

史·慣習 등에 배경을 두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EU의 지침도 통일된 預金保護制度를 도모하고 있지만 各國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預金保護制度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역사·관습 등에 적합한 예금보호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外國의 制度는 단지 그 국가의 문화·역사·관습에서 탄생한 제도인 것이다.

各國의 예금보호제도는 監督機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金融이 自律化되고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감독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은 감독기능의 재정립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보고서는 각국의 예금보호제도와 더불어 각국의 監督制度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Ⅱ. 美國의 預金保險制度

1. 預金保險制度의 設立 背景

美國에서의 예금보험제도의 기원은 1829년에 설립된 뉴욕州 安全基金制度(Safety Fund Banking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뉴욕州에서의 州內銀行의 예금 및 은행권 채무의 보증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그와 비슷한 제도들이 버몬트州(1831), 인디아나州(1834), 미시간州(1836), 오하이오州(1845), 아이오와州(1858) 등에도 보급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安全基金制度는 각 은행이 발행하는 銀行券의 보증에 주목적이 있었으며, 따라서 1863년 國法銀行制度(National Banking System)가 확립되어 州法銀行에 의한 은행권 발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이들 安全基金制度는 1866년 경에 모두 폐지되었다. 그후 1900년대 초 금융공황 발생을 계기로 오클라호마州 등 일부 州에서 비슷한 형태의 예금보험이 다시 시행되었지만, 은행의 파산이 속출함에 따라 보험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패하였다.

그런데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약 4년간에 걸친 대공황으로 인하여 전체 은행의 약 1/3에 해당하는 8,000여 은행이 파산하여 수백만명의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되자, 전국적인 기반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1933년 9월 聯邦預金保險公社(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가 발족하게 되었다. 동 공사는 다음 해인 1934년 1월부터 國法銀行, 州法銀行, 州認可 相互貯蓄銀行을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예금보험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뒤 1950년 聯邦預金保險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후 1982년 Garn St.-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는 聯邦認可로 전환한 상

호저축은행들이 모두 FDIC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1934년에는 國民住宅法(National Housing Act.)이 제정되어 聯邦貯蓄貸付保險公社(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FSLIC)가 설립됨으로써 저축대부조합의 저축계정을 대상으로 한 예금보험 업무가 개시되었다. 그후 1978년에는 금융기관 감독 및 금리규제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연방인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연방인가 상호저축은행도 FSLIC의 保險對象機關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1989년 FSLIC는 지급불능이 되어 파산하게 되었고, 聯邦預金保險公社 改善法(Financial Institution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FIRREA)에 의거 FDIC가 聯邦住宅貸付銀行理事會(FHIBB)의 보험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따라서 1989년 이후 FDIC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예금취급기관(deposit-taking sector)에 대한 예금보험의 관리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기능은 국법은행 및 주법은행과 일부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銀行保險基金(Bank Insurance Fund: BIF)과 저축대부조합과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貯蓄組合保險基金(Saving Association Insurance Fund: SAIF)이라는 새로운 매개를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한편 1970년 10월에는 聯邦信用組合法의 개정으로 신용조합의 출자금계정에 대한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全國信用組合出資金保險基金(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NCUSIF)이 설립되었다. 동 기금은 전국신용조합기구에 의해 운영되며, 연방인가 신용조합과 주인가 신용조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聯邦預金保險公社(FDIC)[1)]

가. 設立目的

① 한 금융기관의 도산이 금융제도 전체의 불안정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② 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소액예금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
③ 보험대상 금융기관들이 건전 경영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
④ 금융기관들의 도산이 야기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나. 機構

1) 理事會

FDIC는 1933년에 설립된 聯邦政府機關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理事會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理事會는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승인에 의거하여 임명하는 理事 3명(Chairman, Deputy Chairman, Director)과 통화감독관, 저축기관감독관 등 5명으로 구성되는데, 임명이사의 임기는 6년이고 그 중 1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

2) 內部組織

FDIC의 내부조직으로는 Chairman下에 일상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Chief Operating Officer와 3개 部署(supervision, resolution, consumer affairs)를 관장하는 Executive Director가 있으며, 7개 局(division)과 8개의 室(office)들로 구성되어 있다([圖 Ⅱ-1] 참조). 7개 局(division)의 주요업무는 〈表 Ⅱ-1〉과 같다.

---

1) 1989년 FSLIC의 파산으로 인하여 연방주택대부은행 이사회의 보험책임을 FDIC가

〈表 Ⅱ－1〉 FDIC Division들의 主要 遂行業務

Division	主要 遂行業務
supervision	· 약 7,000개의 주정부 인가 비가맹은행들과 600개의 주법 저축은행들을 감독
resolution	· 도산한 가맹금융기관들을 최소비용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계획 · 시행하는 것을 담당 · FSLIC (Resolution Fund)의 부채관리 · 자금지원 계약 및 (bridge banks) 관리
depositor and asset services	· 도산기관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 도산기관으로부터의 획득자산 처분
legal	· FDIC의 각 부서에 대해 법률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 감독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강구 지원
research and statistics	· 경제 및 금융상황에 관한 자료 생산 · 은행산업의 상황변화가 경제 및 FDIC에 미치는 영향 분석
finance	· 가맹기관으로부터의 보험료 징수 · receiverships 관리(1993년 말 현재 280억달러의 자산 관리) · 3개기금의 연차보고서 및 내부경영보고서 작성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FDIC의 검퓨터 시스템 운영 및 통계자료 분석

다. 資本金

설립 당초 재무성에서 출자한 1억 5천만달러, 연방준비은행이 출자한 1억 3,900만달러 등 총 2억 8,900만달러의 資本金을 保有하고 있었으나, 1947～48년중 전액상환함으로써 현재는 자본금이 없다.

떠맡게 됨으로써 FDIC는 기존의 은행보험기금(BIF)과 FSLIC로부터 대체된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을 국법은행 및 주법은행과 貯蓄貸付組合 각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BIF를 중심으로 설명한 후 SAIF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도록 한다.

또한 FDIC는 保險金支給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성으로부터의 차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借入實績이 없다. 차입허용 범위는 설립당시 30억달러였다가 50억달러로 증가되었는데, 1991년 聯邦預金保險公社 改善法(FDICIA)에 의해 銀行保險基金(BIF)과 貯蓄組合保險基金(SAIF)의 보험손실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경우 300억달러까지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1990년부터는 聯邦金融銀行(Federal Financing Bank: FFB)으로부터의 차입도 가능해졌다.

[圖 Ⅱ-1] FDIC의 組織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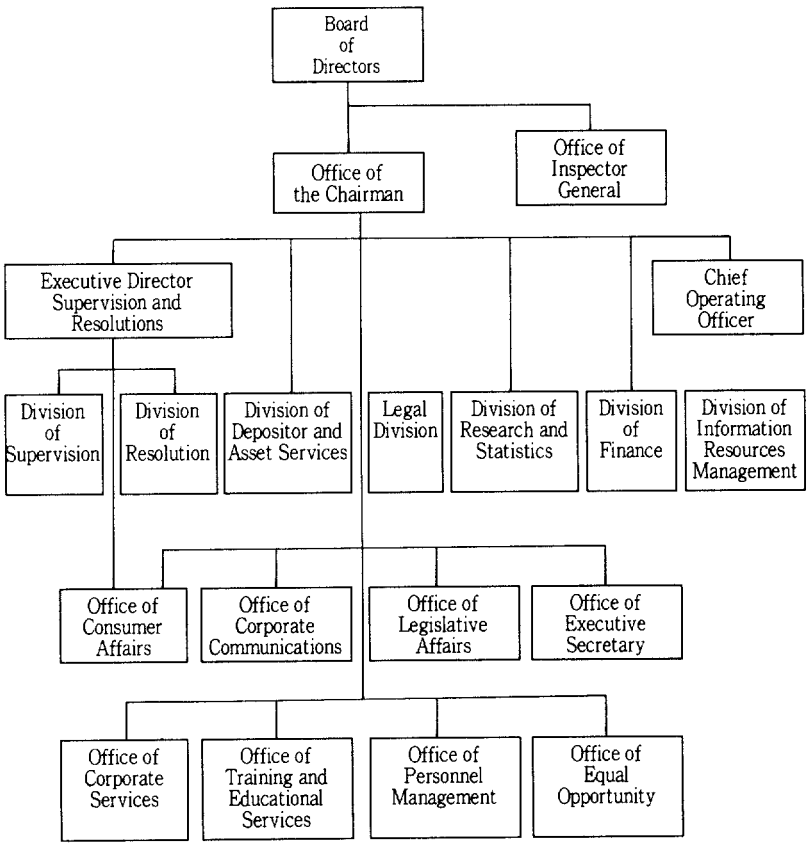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라. 主要業務

① 예금보험금의 支給業務 및 保險料의 징수

② 國法銀行의 新設 : FDIC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폐쇄은행의 피보험예금을 승계할 새로운 국법은행을 설치한다.

③ 경영부실은행에 대한 資金支援

④ 도산은행의 재산관리 및 청산업무

⑤ 피보험은행의 支店設置 및 합병 등에 대한 인가 : 1960년의 연방예금보험법의 개정에 의해 피보험은행은 합병·영업양도 등에 관하여 聯邦監督當局의 認可를 필요로 하고, 또한 합병에 의한 존속은행이 비가맹 피보험은행인 경우 혹은 피보험은행과 비피보험은행과의 합병인 경우에는 FDIC의 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⑥ 加入金融機關에 대한 감독업무 : 재무성 통화감독청(OCC) 및 聯邦準備制度(FRB)와의 감독업무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비가맹 주법은행 중 보험가입 주법은행과 주인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마. 加盟金融機關

FDIC의 보험가입대상 금융기관은 다음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強制加入 : 연방준비제도 가맹은행은 FDIC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에 가맹되어 있는 國法銀行과 主法銀行은 義務的으로 가입해야 된다.

② 任意加入 : 연방준비제도 비가맹의 주법은행과 주인가 상호저축은행은 FDIC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가입할 수 있다.

1993년 말 현재 가입은행수는 국법은행, 주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여 1만 1,331社에 이르고 있다.

바. 保險對象預金 및 付保限度

保險對象이 되는 예금의 범위에는 당좌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을 비롯한 모든 국내예금과 보험가입은행이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신탁자금 등이 포함되나, 金融債 및 海外支店預金 등은 제외된다.

1993년 말 현재 1인당 10만달러 이하의 예금(신탁자금 포함)은 1조 9,068억달러로 FDIC加入銀行의 전체 보험대상예금 2조 4,936억달러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表 Ⅱ-5〉 참조).

다음, 1인당 保險金支給限度는 설립 당초인 1934년 1월에는 2,500달러였으나 동년 6월에 5천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2]. 그후 1950년 이래로 1만달러였다가 1966년 10월 16일 금융기관감독법에 의거 1만 5천달러로 인상되었다. 이로써 被保險預金인 1억 9,300만구좌(1966년 6월 30일 현재) 중 99%, 예금총액으로 보면 58.2%의 예금액이 보호된 것이다. 그후에도 FDIC의 부보한도액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1969년에는 2만달러, 1974년에는 4만달러로 재조정되었으며, 1980년에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동시에 은행들이 「뮤추얼 펀드」나 재무성 증권과 보다 效率的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한도가 10만달러[3]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도산은행 처리시 타기관과 합병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왔기 때문에 1960년대 중반부터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付保限度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모든 預金者 및 債券者들이 그들 자산을 100% 보호받는 경향이 있었다고 FDIC는 지적하고 있다.

---

2) 당초에는 예금자당 1만달러까지는 전액지급, 다음 4만달러까지는 15% 지급, 5만달러 이상은 50% 지급이라는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도입이 제시되었으나, 의회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3) 주·지방정부의 정기 저축예금은 1974년부터, IRA와 Keough 계좌는 1978년부터 부보한도가 10만달러로 인상되었다.

사. 保險料

각 가맹은행은 FDIC에 每年 預金保險料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1933년 FDIC 설립 당시에는 총보험대상예금의 0.5%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필요시 追加保險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935년 은행법 개정시 保險料率을 보험대상예금과 비보험대상예금을 포함한 총예금의 1/12%(0.0833%)로 낮추었다. 이 保險料率은 國法銀行이 제정된 1863년부터 금융공황기를 제외한 1933년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은행도산에 따른 예금자 손실을 기초로 산출하여 1935년부터 적용되어온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FDIC는 1950년부터 보험료수입액에서 예금보험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제경비 및 보험금지급액을 차감한 금액(흑자규모)을 감안하여 피보험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피보험회사를 위해 「크레디트」(credit)[4]하여 다음 연도의 賦課保險料에 충당하는 보험료 반환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실효보험료율[5]은 법정보험료율보다 낮았다. 이 返還制度는 FDIC의 보험금지급액의 증가로 1984년부터는 중단되었다.

1989년 이후 FDIC가 FSLIC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聯邦住宅貸付銀行 理事會의 보험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1990년에는 保險料率이 은행보험기금 분담자(피보험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액의 0.12%, 저축조합보험기금 분담자의 경우에는 0.208%였으며, 1991/92년에는 銀行保險基金 분담자의 경우 각각 0.2125%, 0.2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表 Ⅱ-6〉 참조).

---

4) FDIC가 다음해의 부과보험료에서 차감하기 위해 보험료수익에서 「크레디트」하여 둔 금액은 〈表 Ⅱ-6〉의 보험료 「크레디트」란에 나타나 있다.

5) 실효보험료율은 〈表 Ⅱ-6〉에 나타나 있다.

그후 1993년 1월 1일부터는 각 가입기관의 건전성에 상응하여 保險料率이 변화하는「위험관련 보험료율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料率算定法이 발효되어 기존의 일률적인 보험료율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었다. 위험관련 보험료율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9개의 위험분류체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國內預金에 대하여 0.23%~0.31%의 保險料率을 적용하게 되는데, 1993년말 현재 BIF가맹은행의 경우 평균 保險料率은 0.237%이다(〈表 Ⅱ-3〉 참조).

1994년에는 BIF가맹은행들이 國內預金에 대하여 平均 0.24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FDIC는 추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매년 2회 FDIC에 보고되는 각행의 국내 본지점 예금총액에서 정기예금의 1%와 요구불예금의 16.75%를 차감한 금액의 단순평균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아. 保險金支給方法

保險加入銀行이 도산 또는 經營破綻이 발생하는 경우 FDIC는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데, 도산은행의 규모와 그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預金者保護方式을 결정하여야 한다(〈表 Ⅱ-4〉 참조).

① 預金直接支拂方式 : 예금자에 대해 피보험예금을 직접 지불한 후, 폐쇄은행의 청산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支給保險金은 보험대상예금 및 신탁자금의 원리금에서 당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차감한 純預金額을 기준으로 하되, 1인당 支給限度는 10만달러로 되어 있다.

② 預金承繼方式 : 폐쇄은행의 예금 및 건전한 자산을 타은행에 인계시키고 불량자산은 FDIC가 인수하며 필요에 따라 承繼銀行에 대해 資金을 원조하는 방식이다.

③ 新國法銀行 設立方式 : FDIC는 적당한 인수은행의 선정이 곤란하고 파탄은행의 존속이 당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국법은행을 신설하여 倒産銀行의 預金債務를 인수시키는 방식을 취하

기도 한다.

④ 合併方式: 경영파탄은행이 도산하기 이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여타 기존의 가맹은행에 대한 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파탄은행을 合併시키는 방식이다.

⑤ 直接資金援助의 方式: 銀行破綻의 표면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 어려운 은행이 폐쇄에 이르기 전에 資産買入이나 資金預託 등을 통해 당해 은행에 대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보험금의 직접지급방식이나 신국법은행의 설립을 통한 방식의 경우에는 예금자 1인당 10만달러까지의 순예금만이 보호되는 데 비해 여타 방식의 경우에는 예금전액이 보호를 받게 된다.

〈表 Ⅱ－2〉 聯邦預金保險公社의 保險料와 保險金 變化 推移

(單位 : %)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1933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보험료는 총보험대상예금 중 1/2%로 설정. 필요한 경우 특별보험료 징수 허용. 기본 보험금 한도를 대상기관별로 예금자당 2,500달러로 설정. 1934년 7월 1일부터 보험금을 5,000달러로 증액(상호저축은행의 부보한도액은 2,500달러로 유지)
1934	**국민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연간보험료는 대상기관들의 총 계좌금액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 합계의 1/4%로 설정. 준비기금이 총계좌의 5%가 될 때까지 연간 보험료를 징수. 필요한 경우 특별보험료 징수 허용. 기본 보험금 한도를 대상기관별로 예금자당 5,000 달러로 설정.	
1935	**주택저당구제법(Home Mortgage Relief Act)**: 보험료를 총계좌금액 중 1/8%로 인하. 특별보험료 상한을 총계좌금액 중 1/8%로 축소.	**은행법(Banking Act of 1935)**: 보험료율을 국내예금 총액의 1/12%로 변경. 재무성으로부터의 긴급차입한도를 9억 7,500만달러로 설정. 특별보험료 부가권 폐지.
1947		**은행법(Banking Act of 1935) 개정**: 재무성으로부터의 차입한도를 30억달러까지로 확대.
1950	**국민주택법 수정**: 보험료율을 총 계좌금액의 1/12%로 인하. 재무성으로부터 7억 5천만달러까지 차입 허용.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10,000달러로 설정.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보험료환급을 순보험료 수입의 60%로 설정.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10,000달러까지 인상.

〈表 Ⅱ－2〉의 계속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1960		**聯邦預金保險法 改正**: 보험료 환급을 순보험료수입액의 66.66%까지로 확대.
1961	**國民住宅法 改正**: 제2차준비금을 설정(예상되는 총예금의 순증가액의 2%를 선납하여 준비금으로 적립)	
1966	**金融機關監督法**(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ct of 1966):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15,000달러로 인상.	**金融機關監督法**(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ct of 1966):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15,000달러로 인상.
1969	**신용규제법**(Credit Control Act):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20,000달러로 인상.	**신용규제법**(Credit Control Act):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20,000달러로 인상.
1973	**국민주택법 개정**: 제2차준비금에 대한 보험료 납입 폐지	
1974	**연방예금보험법 개정**: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40,000달러로 인상	**연방예금보험법 개정**: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40,000달러로 인상, 州·지방정부 보유 정기·저축예금에 대한 부보한도를 100,000 달러로 확대.
1978		**금융기관 감독 및 금리규제법**(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Interest Rate Control Act of 1978): IRA와 Keough계좌에 대한 보험한도를 100,000달러로 확대.
1980	**예금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규제법**(Depositary Institutions Deregur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100,000달러로 인상.	**예금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규제법**(Depositary Institutions Deregur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 기본 보험금 한도를 계좌당 100,000달러로 인상. 보험료 환급을 순보험료수입의 60%로 축소.
1985	**행정 조치**(Administrative Action): FHLBB가 처음으로 FSLIC 가맹기관들에 대해 특별보험료(연간 1/8%) 부과.	
1989	**금융기관개혁·회복·조치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FSLIC를 폐지하고, FDIC하의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으로 대체. 보험료율은 1990년 5/24%(기본 보험료율 1/12%+특별보험료율 1/8%), 1991~93년 23/100%, 1994~97년 18/100%, 1997년 이후 15/100%를 적용하기로 결정.	**금융기관개혁·회복·조치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FSLIC를 폐지하고, FDIC하의 저축조합보험기금(SAIF)으로 대체. 원래 기금은 은행보험기금(BIF)으로 개칭. 보험율은 1990년 12/100%, 1990년 이후 15/100%로 인상. 1998년에는 BIF와 SAIF의 보험료율을 동일화.

資料 : Congressional Budget Office(1990), pp. 34~35.

[圖 Ⅱ-2] FDIC와 FSLIC의 保險料 水準 및 損失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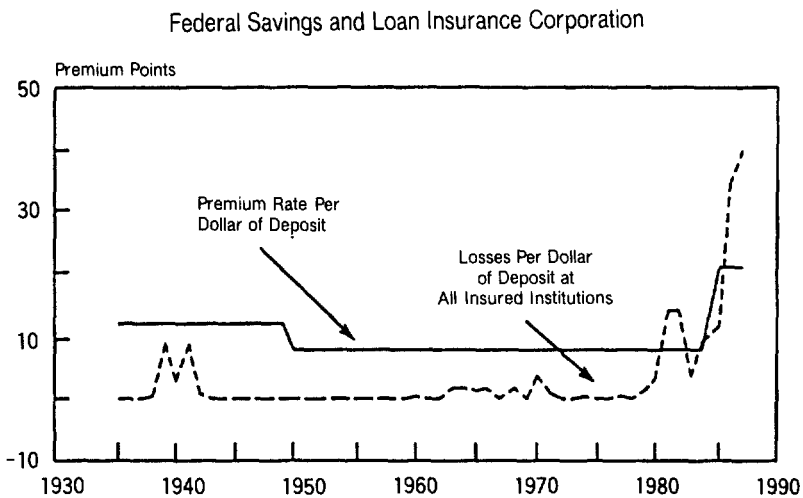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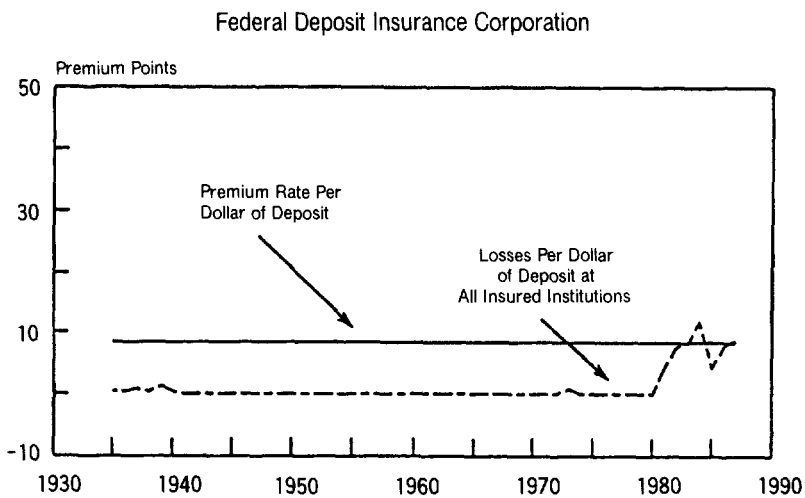

註 : 1 premium point = $1/10,000
資料 : Congressional Budget Office(1990), p. 30.

〈表 Ⅱ-3〉 危險加重 保險料率

(單位 : 개)

資本基準 \ 監督危險基準	A	B	C
자본상태 양호			
부과보험료율	$0.23/$100	$0.26/$100	$0.29/$100
BIF가맹은행수	9,595	1,112	288
SAIF가맹금융기관수	1,504	194	52
자본상태 적정			
부과보험료율	$0.26/$100	$0.29/$100	$0.30/$100
BIF가맹은행수	59	48	112
SAIF가맹금융기관수	49	44	49
자본상태 불량			
부과보험료율	$0.29/$100	$0.30/$100	$0.31/$100
BIF가맹은행수	3	4	66
SAIF가맹금융기관수	3	8	26

註 : 1. 평균 보험료율은 BIF가맹은행의 경우에는 국내예금의 100달러당 23.7센트, SAIF가맹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국내예금의 100달러당 24.7센트.
2. BIF가맹은행수의 경우에는 bridge bank 제외, SAIF가맹금융기관수의 경우에는 63개의 청산신탁회사(RTC) 관리대상기관 포함.
3. 1995년중에 최저보험료율이 $ 0.23/$ 100에서 $ 0.04/$ 100으로 낮추어졌으며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많음.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4〉 FDIC의 倒産銀行 處理方法

	파탄은행의 폐쇄에 의한 처리방법			은행폐쇄에 의하지 않는 처리방법	
	예금직접지불	예금승계방식	신국법은행설립	자금원조를 수반한 합병	직접자금원조
도입시기	1933년	1935년	1933년	1950년(1981년부터 실시)	1950년(1971년부터 실시)
처리건수	298건	324건	30건	16건	5건
개 요	예금자에 대해 피보험예금(현행법 정한도 10만달러)을 직접지불한 후, 폐쇄은행의 청산사무를 행함	폐쇄은행의 예금 및 건전한 자산을 타은행에 인계시켜 필요에 따라 승계은행에 대해 자금원조. 폐쇄은행의 불량자산은 FDIC가 인수	적당한 승계은행이 없고 파탄은행의 존속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우, 당해 은행의 피보험예금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신국법은행을 설립 -신국법은행의 영업은 2년간으로 한정되고, 기간중 갱생할 수 없는 경우 영업양도 또는 업무청산 -대출업무 불가, 예금의 수입은 요구불예금에 한하여 1인당 예금합계액은 10만달러 이내	파탄은행의 자산, 부채 전부를 타은행에 인수시켜, FDIC가 자금원조를 행함.	은행의 파탄 표면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은행이 폐쇄에 이르기 전에 자산매입, 예금예치 등의 직접자금원조를 행함.
발동상황	은행파탄이 많이 일어난 1930년대에는 본 방식이 주류이었으나, 최근에는 극히 소규모 은행의 경우에 극한되어 발동	최근에는 본 방식에 의한 파탄처리가 일반적임. -법정한도액의 예금자보호에 그치지 않고, 예금자 전체의 보호, 금융서비스의 계속, 은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유지 가능 -통상, 본 방식에 의한 편이 FDIC의 손실이 적게 해결된다.	파탄은행의 갱생이 어려우므로 본 방식의 발동은 극히 예외적. -대부분 1934~35년 당시 발동. 동 방식에 의해 갱생한 은행은 1개 은행 뿐 -1982.7에 폐쇄된 「팬스퀘어」은행에 대해 본 방식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①동행소재 오클라호마州가 지점설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규모은행이 많고 적당한 예금승계은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②예금구좌가 많으므로 예금직접지불보다도 본 방식에 의한 방식이 창구의 혼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1981. 11에 처음 발동한 이후 증가 -고금리라는 일시적 금융환경에 의해 수익면에 문제가 생긴 상호저축은행에 많이 발동되고 있음. -통상 FDIC에 의해 예금직접지불이나 예금승계방식보다는 손실이 적어지는 경우 발동됨.	본 방식의 발동은 극히 예외적 -경영이 어렵게 된 은행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불가결일 경우 및 경영재건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태에 있는 것등이 종래의 발동조건 -1982년 예금취급 금융기관법에 의해 발동조건 완화(금융환경이 은행파탄의 파급을 가져오는 불안정한 경우에 발동가능)

資料 :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1989), p. 17.

3. FDIC의 最近 運營現況

가. 銀行保險基金(BIF)의 運營現況

1) 銀行保險基金

銀行保險基金은 BIF가맹은행의 보험료, 미국재무성 증권의 투자수익, 파산은행에서 획득된 자산의 관리·처분으로부터 얻어진 수익·기금 및 재무성과 聯邦金融銀行으로부터의 借入金 등으로 조성된다.

예금보험기금의 總預金對比 比率은 1935년에는 0.68%였으며,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쳐 1960년대 이후에는 0.73~0.92%의 비율을 유지하여 오다가, 1980년대 말의 金融機關 倒産 增加로 1990년에는 0.16%까지 하락하였다. 1990년대에는 추정손실을 고려할 경우 은행보험기금 자체가 赤字로 반전되었으나, 최근의 銀行 經營狀態 호전으로 1993년 현재는 동 비율이 0.53%를 기록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付保預金對比 比率은 1960년대까지는 총예금대비 비율보다 0.5% 이상 높았으나 1970년대 이후 양 비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져 왔으며, 최근에는 기금의 소진으로 兩者가 거의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1993년 現在 銀行保險基金은 부보예금 총액 약 1조 9,068억 9천만달러의 0.69%(총예금의 0.53%)인 131억 2,100만달러인데, 이것은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70억 2,800만달러와 1억 60만달러의 결손금을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보면 대단한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1991/92년은 1934년 FDIC가 운영을 시작한 이래 保險基金이 유일하게 (마이너스)수지를 나타낸 해이다(〈表 Ⅱ-5〉 참조).

FDIC의 銀行保險基金은 일반적으로 파산은행의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1993년에 FDIC에 의해 취급된 파산은행은 모두 41개였으며, 그 중 6개가 모든 預金이 承繼銀行으로 이전되는 예금승계방식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0개는 부보예금만을 승계은행에 이전시키는 預金承繼方式에 의해 처리되었다(〈表 Ⅱ-8〉 참조).

[圖 Ⅱ-3] FDIC 基金의 預金對比 比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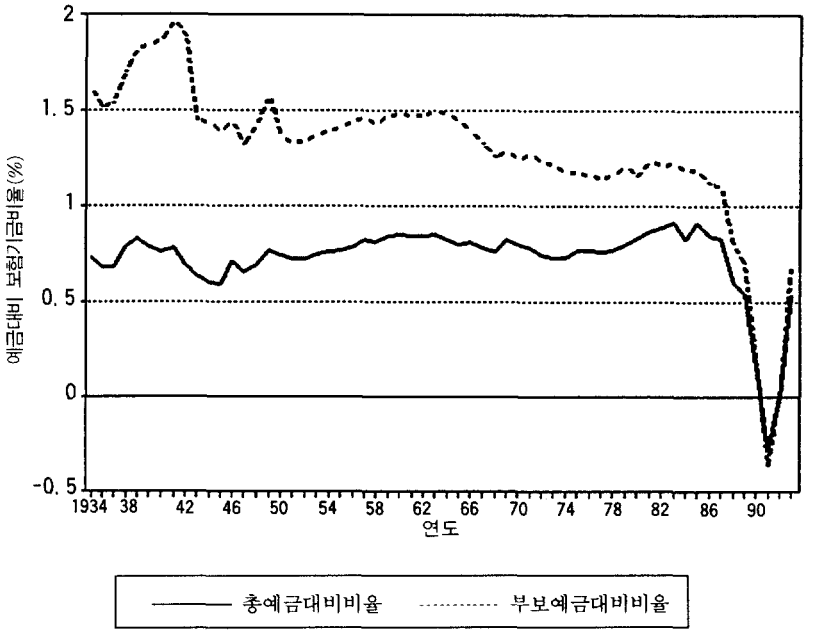

註 : 1991, 92년의 負(-)의 비율은 projected loss가 실현될 경우의 기금부족액으로 계산된 비율로서 실제로 기금이 소진된 것은 아님.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2) 保險事故에 따른 銀行保險基金의 支給現況

FDIC설립 이래 1993년까지 保險事故는 총 2,108건이 발생하였는데, FDIC가 예금자보호를 위해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약 1,021억달러 정도였으며, 이로 인한 추정손실은 대략 377억달러였다(〈表 Ⅱ-7〉 참조). 保險事故에 따른 은행보험기금의 支給現況을 보험금 지급방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Ⅱ-8〉 참조).

① 보험료의 직접지급 또는 국법은행의 신설을 통한 보험대상예금 채무인수의 경우, 1993년 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는 603건이며, 保險金 支給總額은 144억 3,800만달러, 추정손실액은 44억 4,500만달러이다.

〈表 Ⅱ－5〉 付保預金과 銀行保險基金 規模 推移

(單位 : 百萬달러, %)

	부보한도액 (달러)	피보험은행예금		부보예금의 비율	예금보험 기금	보험기금의 비율	
		총액	부보예금			총예금에 대한 비율	부보예금에 대한 비율
1993	100,000	2,493,636	1,906,885	76.5	13,121.6	0.53	0.69
1992	100,000	2,512,278	1,945,623	77.4	(100.6)	(0.00)	(0.01)
1991	100,000	2,520,074	1,957,722	77.7	(7,027.9)	(0.28)	(0.36)
1990	100,000	2,540,930	1,929,612	75.9	4,044.5	0.16	0.21
1989	100,000	2,465,922	1,873,837	76.0	13,209.5	0.54	0.70
1988	100,000	2,330,768	1,750,259	75.1	14,061.1	0.60	0.80
1987	100,000	2,201,549	1,658,802	75.3	18,301.8	0.83	1.10
1986	100,000	2,167,596	1,634,302	75.4	18,253.3	0.84	1.12
1985	100,000	1,974,512	1,503,393	76.1	17,956.9	0.91	1.19
1984	100,000	1,806,520	1,389,874	76.9	16,529.4	0.92	1.19
1983	100,000	1,690,576	1,268,332	75.0	15,429.1	0.91	1.22
1982	100,000	1,544,697	1,134,221	73.4	13,770.9	0.89	1.21
1981	100,000	1,409,322	988,898	70.2	12,246.1	0.87	1.24
1980	100,000	1,324,463	948,717	71.6	11,019.5	0.83	1.16
1979	40,000	1,226,943	808,555	65.9	9,792.7	0.80	1.21
1978	40,000	1,145,835	760,706	66.4	8,796.0	0.77	1.16
1977	40,000	1,050,435	692,533	65.9	7,992.8	0.76	1.15
1976	40,000	941,923	628,263	66.7	7,268.8	0.77	1.16
1975	40,000	875,985	569,101	65.0	6,716.0	0.77	1.18
1974	40,000	833,277	520,309	62.5	6,124.2	0.73	1.18
1973	20,000	766,509	465,600	60.7	5,615.3	0.73	1.21
1972	20,000	697,480	419,756	60.2	5,158.7	0.74	1.23
1971	20,000	610,685	374,568	61.3	4,739.9	0.78	1.27
1970	20,000	545,198	349,581	64.1	4,379.6	0.80	1.25
1969	20,000	495,858	313,085	63.1	4,051.1	0.82	1.29
1968	15,000	491,513	296,701	60.2	3,749.2	0.76	1.26
1967	15,000	448,709	261,149	58.2	3,485.5	0.78	1.33
1966	15,000	401,096	234,150	58.4	3,252.0	0.81	1.39
1965	10,000	377,400	209,690	55.6	3,036.3	0.80	1.45
1964	10,000	348,981	191,787	55.0	2,844.7	0.82	1.48
1963	10,000	313,304	177,381	56.6	2,667.9	0.85	1.50
1962	10,000	297,548	170,210	57.2	2,502.0	0.84	1.47

〈表 Ⅱ-5〉의 계속

	부보한도액 (달러)	피보험은행예금		부보예금의 비율	예금보험 기금	보험기금의 비율	
		총액	부보예금			총예금에 대한 비율	부보예금에 대한 비율
1961	10,000	281,304	160,309	57.0	2,353.8	0.84	1.47
1960	10,000	260,495	149,684	57.5	2,222.2	0.85	1.48
1959	10,000	247,589	142,131	57.4	2,089.8	0.84	1.47
1958	10,000	242,445	137,698	56.8	1,965.4	0.81	1.43
1957	10,000	225,507	127,055	56.3	1,850.5	0.82	1.46
1956	10,000	219,393	121,008	55.2	1,742.1	0.79	1.44
1955	10,000	212,226	116,380	54.8	1,639.6	0.77	1.41
1954	10,000	203,195	110,973	54.6	1,542.7	0.76	1.39
1953	10,000	193,466	105,610	54.6	1,450.7	0.75	1.37
1952	10,000	188,142	101,841	54.1	1,363.5	0.72	1.34
1951	10,000	178,540	96,713	54.2	1,282.2	0.72	1.33
1950	10,000	167,818	91,359	54.4	1,243.9	0.74	1.36
1949	5,000	156,786	76,589	48.8	1,203.9	0.77	1.57
1948	5,000	153,454	75,320	49.1	1,065.9	0.69	1.42
1947	5,000	154,096	76,254	49.5	1,006.1	0.65	1.32
1946	5,000	148,458	73,759	49.7	1,059.5	0.71	1.44
1945	5,000	157,174	67,021	42.4	929.2	0.59	1.39
1944	5,000	134,662	56,398	41.9	804.3	0.60	1.43
1943	5,000	111,650	48,440	43.4	703.1	0.63	1.45
1942	5,000	89,869	32,837	36.5	616.9	0.69	1.88
1941	5,000	71,209	28,249	39.7	553.5	0.78	1.96
1940	5,000	65,288	26,638	40.8	496.0	0.76	1.86
1939	5,000	57,485	24,650	42.9	452.7	0.79	1.84
1938	5,000	50,791	23,121	45.5	420.5	0.83	1.82
1937	5,000	48,228	22,557	46.8	383.1	0.79	1.70
1936	5,000	50,281	22,330	44.4	343.4	0.68	1.54
1935	5,000	45,125	20,158	44.7	306.0	0.68	1.52
1934	5,000	40,060	18,075	45.1	291.7	0.73	1.61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6〉 銀行保險基金의 收益/費用 推移

(單位 : 百萬달러, %)

	수 익					비용/손실			순손익
	합계	수입 보험료	보험료 크레디트	투자 및 기타수익	실효 보험료율	합계	예금보험 손실/비용	관리 및 운영비용	
1993	6,430.8	5,784.3	0.0	646.5	0.2440	(6,791.4)	(7,179.9)	388.5	13,222.2
1992	6,301.5	5,587.8	0.0	713.7	0.2300	(625.8)	(1,196.6)	570.8	6,927.3
1991	5,789.9	5,160.5	0.0	629.4	0.2125	16,862.3	16,578.2	284.1	(11,072.4)
1990	3,838.3	2,855.3	0.0	983.0	0.1200	13,003.3	12,783.7	219.6	(9,165.0)
1989	3,494.6	1,885.0	0.0	1,609.6	0.0833	4,346.2	4,132.3	213.9	(851.6)
1988	3,347.7	1,773.0	0.0	1,574.7	0.0833	7,588.4	7,364.5	223.9	(4,240.7)
1987	3,319.4	1,696.0	0.0	1,623.4	0.0833	3,270.9	3,066.0	204.9	48.5
1986	3,260.1	1,516.9	0.0	1,743.2	0.0833	2,963.7	2,783.4	180.3	296.4
1985	3,385.4	1,433.4	0.0	1,952.0	0.0833	1,957.9	1,778.7	179.2	1,427.5
1984	3,099.5	1,321.5	0.0	1,778.0	0.0800	1,999.2	1,848.0	151.2	1,100.3
1983	2,628.1	1,214.9	164.0	1,577.2	0.0714	969.9	834.2	135.7	1,658.2
1982	2,524.6	1,108.9	96.2	1,511.9	0.0769	999.8	869.9	129.9	1,524.8
1981	2,074.7	1,039.0	117.1	1,152.8	0.0714	848.1	720.9	127.2	1,226.6
1980	1,310.4	951.9	521.1	879.6	0.0370	83.6	(34.6)	118.2	1,226.8
1979	1,090.4	881.0	524.6	734.0	0.0333	93.7	(13.1)	106.8	996.7
1978	952.1	810.1	443.1	585.1	0.0385	148.9	45.6	103.3	803.2
1977	837.8	731.3	411.9	518.4	0.0370	113.6	24.3	89.3	724.2
1976	764.9	676.1	379.6	468.4	0.0370	212.3	31.9	180.4	552.6
1975	689.3	641.3	362.4	410.4	0.0357	97.5	29.8	67.7	591.8
1974	668.1	587.4	285.4	366.1	0.0435	159.2	100.0	59.2	508.9
1973	561.0	529.4	283.4	315.0	0.0385	108.2	53.8	54.4	452.8
1972	467.0	468.8	280.3	278.5	0.0333	59.7	10.1	49.6	407.3
1971	415.3	417.2	241.4	239.5	0.0345	60.3	13.4	46.9	355.0
1970	382.7	369.3	210.0	223.4	0.0357	46.0	3.8	42.2	336.7
1969	335.8	364.2	220.2	191.8	0.0333	34.5	1.0	33.5	301.3
1968	295.0	334.5	202.1	162.6	0.0333	29.1	0.1	29.0	265.9
1967	263.0	303.1	182.4	142.3	0.0333	27.3	2.9	24.4	235.7
1966	241.0	284.3	172.6	129.3	0.0323	19.9	0.1	19.8	221.1
1965	214.6	260.5	158.3	112.4	0.0323	22.9	5.2	17.7	191.7
1964	197.1	238.2	145.2	104.1	0.0323	18.4	2.9	15.5	178.7
1963	181.9	220.6	136.4	97.7	0.0313	15.1	0.7	14.4	166.8
1962	161.1	203.4	126.9	84.6	0.0313	13.8	0.1	13.7	147.3

〈表 Ⅱ-6〉의 계속

	수 익					비용/손실			순손익
	합계	수입 보험료	보험료 크레디트	투자 및 기타수익	실효 보험료율	합계	예금보험 손실/비용	관리 및 운영비용	
1961	147.3	188.9	115.5	73.9	0.0323	14.8	1.6	13.2	132.5
1960	144.6	180.4	100.8	65.0	0.0370	12.5	0.1	12.4	132.1
1959	136.5	178.2	99.6	57.9	0.0370	12.1	0.2	11.9	124.4
1958	126.8	166.8	93.0	53.0	0.0370	11.6	0.0	11.6	115.2
1957	117.3	159.3	90.2	48.2	0.0357	9.7	0.1	9.6	107.6
1956	111.9	155.5	87.3	43.7	0.0370	9.4	0.3	9.1	102.5
1955	105.7	151.5	85.4	39.6	0.0370	9.0	0.3	8.7	96.7
1954	99.7	144.2	81.8	37.3	0.0357	7.8	0.1	7.7	91.9
1953	94.2	138.7	78.5	34.0	0.0357	7.3	0.1	7.2	86.9
1952	88.6	131.0	73.7	31.3	0.0370	7.8	0.8	7.0	80.8
1951	83.5	124.3	70.0	29.2	0.0370	6.6	0.0	6.6	76.9
1950	84.8	122.9	68.7	30.6	0.0370	7.8	1.4	6.4	77.0
1949	151.1	122.7	0.0	28.4	0.0833	6.4	0.3	6.1	144.7
1948	145.6	119.3	0.0	26.3	0.0833	7.0	0.7	6.3	138.6
1947	157.5	114.4	0.0	43.1	0.0833	9.9	0.1	9.8	147.6
1946	130.7	107.0	0.0	23.7	0.0833	10.0	0.1	9.9	120.7
1945	121.0	93.7	0.0	27.3	0.0833	9.4	0.1	9.3	111.6
1944	99.3	80.9	0.0	18.4	0.0833	9.3	0.1	9.2	90.0
1943	86.6	70.0	0.0	16.6	0.0833	9.8	0.2	9.6	76.8
1942	69.1	56.5	0.0	12.6	0.0833	10.1	0.5	9.6	59.0
1941	62.0	51.4	0.0	10.6	0.0833	10.1	0.6	9.5	51.9
1940	55.9	46.2	0.0	9.7	0.0833	12.9	3.5	9.4	43.0
1939	51.2	40.7	0.0	10.5	0.0833	16.4	7.2	9.2	34.8
1938	47.7	38.3	0.0	9.4	0.0833	11.3	2.5	8.8	36.4
1937	48.2	38.8	0.0	9.4	0.0833	12.2	3.7	8.5	36.0
1936	43.8	35.6	0.0	8.2	0.0833	10.9	2.6	8.3	32.9
1935	20.8	11.5	0.0	9.3	0.0833	11.3	2.8	8.5	9.5
1933~34	7.0	0.0	0.0	7.0	n.a.	10.0	0.2	9.8	(3.0)
합계	62,161.5	44,517.8	6,709.1	24,352.8		49,039.9	44,691.5	4,348.4	13,121.6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7〉 銀行保險基金의 保險金 支給 및 그에 따른 損失額 推移

(單位 : 개, 千달러)

	은행의 수	지급금액	회수금액	추정추가회수액	추정손실
1993	41	1,755,587	789,252	390,251	567,084
1992	122	12,833,469	5,823,014	2,315,704	4,694,751
1991	127	20,502,584	12,850,480	912,711	6,739,393
1990	169	10,796,130	7,425,229	514,977	2,855,924
1989	207	11,422,319	4,521,631	627,879	6,272,809
1988	221	12,176,825	4,245,491	1,210,594	6,720,740
1987	203	5,029,941	2,916,707	105,898	2,007,336
1986	145	4,712,970	2,955,223	35,990	1,721,757
1985	120	2,916,218	1,673,897	143,769	1,098,552
1984	80	7,696,165	5,503,651	695,077	1,497,437
1983	48	3,759,137	2,235,404	105,140	1,418,593
1982	42	2,275,149	829,794	297,013	1,148,342
1981	10	888,999	69,326	43,518	776,155
1980	11	152,355	114,760	7,010	30,585
1979	10	90,489	74,372	5,250	10,867
1978	7	548,568	512,927	26,626	9,015
1977	6	26,650	20,654	3,903	2,093
1976	17	599,397	561,532	37,618	247
1975	13	332,046	292,431	23,303	16,312
1974	5	2,403,277	2,259,633	143,604	40
1973	6	435,238	368,852	(1,101)	67,487
1972	2	16,189	12,501	(8)	1,696
1934～71	496	681,319	647,392	347	33,580
합계	2,108	102,051,021	56,715,153	7,645,073	37,690,795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8〉 保險金支給方法別 銀行保險基金의 支給 現況

(單位 : 千달러)

	보험금직접지불 국법은행신설의 경우			예금승계방식의 경우			자금지원방식의 경우		
	은행수	지급금액	추정손실	은행수	지급금액	추정손실	은행수	지급금액	추정손실
1993	5	262,333	42,800	36	1,493,254	524,284	0	0	0
1992	25	1,777,691	486,909	95	11,055,397	4,206,882	2	381	960
1991	21	1,467,039	494,239	103	19,034,016	6,241,487	3	1,529	3,667
1990	20	2,178,955	718,312	148	8,614,876	2,135,180	1	2,299	2,432
1989	32	2,115,948	838,539	174	9,303,993	5,431,952	1	2,378	2,318
1988	36	1,252,142	426,154	164	9,175,894	4,739,504	21	1,748,789	1,555,082
1987	51	2,103,571	691,422	133	2,765,493	1,155,750	19	160,877	160,164
1986	40	1,155,978	416,005	98	3,398,144	1,208,336	7	158,848	97,416
1985	29	523,789	112,998	87	1,630,033	533,655	4	762,396	451,899
1984	16	791,817	94,763	62	1,373,169	422,211	2	5,531,179	980,463
1983	9	147,287	24,803	36	3,525,432	1,329,721	3	86,418	64,069
1982	7	277,240	71,237	26	418,321	58,908	9	1,579,588	1,018,197
1981	2	35,736	1,138	5	79,208	2,227	3	774,055	772,790
1980	3	13,732	2,217	7	138,623	28,368	1	n.a.	n.a.
1979	3	9,936	933	7	80,553	9,934	0	0	0
1978	1	817	204	6	547,751	8,811	0	0	0
1977	0	0	0	6	26,650	2,093	0	0	0
1976	3	11,416	73	13	587,981	174	1	n.a.	n.a.
1975	3	25,918	68	10	306,128	16,244	0	0	0
1974	0	0	0	4	2,403,277	40	1	n.a.	n.a.
1973	3	16,771	0	3	418,467	67,487	0	0	0
1972	1	16,189	1,696	0	0	0	1	n.a.	n.a.
1934~71	293	254,157	20,147	202	427,162	13,433	1	n.a.	n.a.
합계	603	14,438,462	4,444,657	1,425	76,803,822	28,136,681	80	10,808,737	5,109,457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② 健全銀行에 의한 예금승계방식의 경우, 1993년 말까지 1,425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FDIC는 약 768억달러의 保險金을 支給하였고, 281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③ 건전은행과의 합병이나 사고발생 은행에 대한 資金支援方式으로 FDIC가 처리한 보험사고는 1993년 말 현재 80건이며, 이로 인한 은행보험기금의 지급금액은 약 108억달러, 推定損失額은 51억달러이다.

나. 貯蓄組合保險基金(SAIF)의 運營現況

저축대부조합의 貯蓄資金에 대한 보험은 원래 FSLIC[6]가 행하고 있었다. FSLIC는 연방주택소유자대부공사의 출자로 1934년에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서 聯邦住宅貸付銀行理事會(Federal Home Loan Bank Board: FHLBB)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 부실 저축대부조합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FSLIC의 보험사고관련 지출이 급증하여 경영수지가 1986년 이후 계속 赤字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9년 FSLIC는 마침내 파산하였고, 동 공사의 기금은 FIRREA에 의거 貯蓄組合保險基金(SAIF)이라는 새로운 기금으로 대체되었으며 FSLIC 가맹금융기관들을 관리·청산하기 위한 淸算信託會社(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와 淸算基金造成會社(Resolution Funding Corporation: REFCORP)가 설립되었다. 현재 SAIF는 FDI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1) 加盟金融機關

1993년 말 현재 FDIC에 의해 보험되는 貯蓄組合保險基金(SAIF) 가맹금융기관은 63개의 淸算信託會社(RTC) 관리대상기관을 포함하여 1,929개이다.

---

6) 〈附錄 Ⅰ〉 聯邦貯蓄貸付保險公社(FSLIC)를 참조.

2) 付保限度額

예금자 1인당 예금손실 보전상한액은 10만달러로서 銀行保險基金(BIF)과 같다(〈表 Ⅱ-8〉 참조).

3) 保險料

1989년의 FSLIC 파산으로 인하여 연방주택대부은행이사회의 보험책임이 FDIC로 이전된 이후인 1990년에는 貯蓄組合保險基金(SAIF) 분담자의 경우 0.208%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1992년에는 보험료율이 0.23%였다. 그후 1993년 1월 1일부터는 BIF와 마찬가지로 「위험가중 보험료율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요율산정법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위험가중 보험료율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加盟金融機關들을 9개의 위험분류체계에 의하여 분류하고, 그에 따라 국내예금에 대하여 0.23%~0.31%의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993년 말 현재 SAIF가맹금융기관의 경우 평균보험료율은 0.247%이다. 1994년의 豫想 平均保險料率은 국내예금의 0.248%로 추정된다.

4) 貯蓄組合保險基金(SAIF)의 運營現況

貯蓄組合保險基金은 1989년 8월 9일부터 1992년 10월 30일까지의 FSLIC청산기금(FRF)의 상환금액 및 SAIF가맹금융기관의 보험료, 재무성의 원조, 연방주택대부은행 및 재무성과 연방금융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동 기금은 1993년 말까지 積立金을 꾸준히 증가시켜 오고 있는데, 1992년 말에 2억 7,900만달러였던 적립금이 1993년에는 약 12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피보험예금 6,955억 7천만달러의 0.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表 Ⅱ-9〉 참조).

〈表 Ⅱ－9〉 貯蓄組合保險基金의 付保預金과 積立基金

(單位 : 百萬달러, %)

	부보 한도액	피보험금융기관의 예금		부보예금의 비율	예금보험 기금	보험기금에 대한 비율	
		총액	부보예금			총예금에 대한 비율	부보예금에 대한 비율
1993	100,000	726,473	695,574	95.7	1,156.7	0.16	0.17
1992	100,000	760,902	729,458	95.9	279.0	0.04	0.04
1991	100,000	810,664	776,351	95.8	93.9	0.01	0.01
1990	100,000	874,738	830,028	94.9	18.2	0.00	0.00
1989	100,000	948,144	882,920	93.1	0.0	0.00	0.00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10〉 貯蓄組合保險基金의 收益/費用

(單位 : 千달러)

	수 익				비용/손실			FRF[1]로부터 이전된 기금	순손익
	합계	수입 보험료	입회비	투자 및 기타수익	손실에대한 예비비	이자 비용	관리 및 운영비용		
1993	923,516	897,692	48	25,776	16,531	0	30,283	0	881,161
1992	178,643	172,079	9	6,555	(14,945)	(5)	43,932	35,446	187,024
1991	96,446	93,530	8	2,908	20,114	609	42,362	42,362	73,416
1990	18,195	18,195	0	0	0	0	56,088	56,088	18,195
1989	2	0	2	0	0	0	5,602	5,602	0
합계	1,216,802	1,181,496	67	35,239	21,700	604	147,984	139,498	1,159,796

註 : 1) FRF는 FSLIC의 청산기금(Resolution Fund).
資料 : FDIC, *Annual Report 1993*, 1994.

4. 全國信用組合出資金保險基金(NCUSIF)

가. 機構

全國信用組合出資金保險基金은 聯邦預金保險公社(FDIC)와는 달리 1970년 신용조합들이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신용조합에 대한 연방감독기관인 전국신용조합기구 내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전국신용조합기구(NCUA)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나. 加盟金融機關

NCUSIF에 의한 信用組合의 출자금보험에는 聯邦認可 信用組合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州인가 신용조합의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1993년 9월 30일 현재 가입 신용조합수는 연방인가 조합 7,770개, 州인가 조합 4,651개를 합쳐 1만 2,421개(〈表 Ⅱ-12〉 참조)이며, 이들 組合의 總資産은 2,693억달러이다. 현재 600여개의 신용조합이 預金保險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 保險對象預金 및 付保限度額

保險對象은 신용조합의 출자금(share)이며, 가입조합의 도산시 조합원 1인당 손실보전 최고한도액은 연방예금보험공사 및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만달러로 되어 있다.

라. 保險料 및 其他 基金財源

피보험신용조합들은 1984년부터 전회계연도 6월 30일 현재 保險對象出資金殘額의 1%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료 납입액이

보험대상 출자금의 1.3%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信用組合들이 환급받게 된다. 실제로 1985년에 보험료 환급이 실시되었으며, 금년에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신용조합들이 매년 一定 料率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保險料로서 총 쉐어(share)의 1%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며, 보험료로 납부한 것은 신용조합의 資産으로 기록된다.

NCUA로부터의 資本金 出資는 없으며,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6억달러 한도 내에서 CIF(Central Iiquidity Facility)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保險金 支給方法

加入信用組合이 도산 또는 경영파탄에 처하는 경우 전국신용조합출자금보험기금에 의한 조합원의 출자금 보호방식은 聯邦預金保險公社(FDIC)와 대체로 동일하다.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조합의 경우, 기금에 의해 그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면 保險基金에 의한 원조가 행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신용조합과의 합병이 주선된다. 前者의 경우에는 法定支給準備金이나 法定支給準備金保證計定의 철회(waivers of statutory reserve requirements and guarantee account)와 같은 특별원조의 형태, 혹은 현금원조 및 당해 신용조합의 자산매입 등의 방식으로 원조가 행해지게 되며, 後者의 경우에는 현금원조나 기금에 의한 특정자산의 매입, 혹은 특정 자산가치의 보증 등의 방법으로 원조가 행해진다.

한편, 信用組合이 더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合併이나 기금원조의 方式도 실행될 수 없을 경우에는 NCUSIF은 당해 신용조합을 청산하고 그 資産을 처분하는 한편 피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조합원에게 出資金을 支給한다.

바. 運營現況

1993년 9월 30일 현재 NCUSIF의 積立基金은 피보험출자금 2,365억달러의 1.26%인 총 28억달러로 1992년에 비하여 2억 5,900만달러가 증가하였다. 이 기금의 증가는 2억 1,000만달러의 신용조합보험예금의 증가분과 4,300만달러의 순이익 및 600만달러의 保險轉換預金에 기인한 것이다.

NCUSIF에 의해 발생되는 주요 비용은 破産信用組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보험손실(insurance losses)이다. 1989/1990 會計年度의 보험손실은 각각 9,360만달러와 9천만달러였는데, 1991/92년에는 保險損失이 급격히 증가하여 각각 1억 6,300만달러와 1억 1,200만달러라는 높은 保險損失을 기록하였다. 그 후 1993년도에는 保險損失이 6천만달러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1991년도 보험손실의 1/3이며 1992년 보험손실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피보험출자금 1,000달러당 損失率도 1992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다(〈表 Ⅱ-11〉 참조).

6천만달러의 保險損失은 피보험예금 1천달러당 25센트의 손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1992년의 51센트와 1991년의 83센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동안의 피보험예금 1천달러당 保險損失을 살펴보면, 1988년에 0.38달러에서 1989년 0.58달러로 증가했다가 1990년에 0.51달러로 다소 감소했으며 1991년 들어서 0.83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후 현재는 감소추세에 있다(〈表 Ⅱ-12〉 참조).

1993년은 信用組合의 破産에 있어서도 1990년의 164건, 1991년의 130건, 1992년의 114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71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영곤란이 발생한 신용조합의 수도 474개로 지난 15년 중 가장 낮았다(〈表 Ⅱ-13〉 참조). 이처럼 全國 信用組合들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NCUSIF의 현금 및 비현금 원조 역시 감소하였다. 1993년 회계기간 말 현재 NCUSIF가 파산을 막기 위해 재무적으로 곤란이 발생한 信用組合에게 행한 비현금원조는 1,660만

달러로 1992년의 8,830만달러와 1991년의 1억 7,960만달러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현금원조 역시 660만달러로 1992년의 1억 120만달러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Ⅱ－13〉 참조).

〈表 Ⅱ－11〉 全國信用組合出資金 保險基金의 收益/費用

(單位 : 千달러)

	수 익					비용/손실			순손익
	합 계	수입보험료 (연방)	수입보험료 (주)	수입이자	기타수익	합계	영업비용	보험손실	
1985	100,213	10,508	5,208	83,789	708	36,399	10,927	25,472	63,814
1986	121,426	–	–	121,080	346	54,686	16,822	37,864	66,740
1987	112,746	–	–	112,407	339	77,198	21,466	55,732	35,548
1988	127,605	–	–	127,075	530	86,710	26,588	60,122	40,894
1989	148,800	–	–	146,612	2,188	124,425	30,817	93,608	24,375
1990	160,264	–	–	159,096	1,168	125,135	35,153	89,982	35,130
1991	207,409	26,174	15,061	162,979	3,195	203,353	40,353	163,000	4,056
1992	278,045	78,889	44,985	148,659	5,512	158,161	46,161	112,000	119,884
1993	146,250	–	–	142,027	4,223	103,574	43,574	60,000	42,676

資料 : NCUA,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12〉 NCUSIF에 대한 最近 5年間의 統計資料

	1989	1990	1991	1992	1993
가맹신용조합수					
연방인가 신용조합	8,914	8,595	8,297	7,992	7,770
주인가 신용조합	4,634	4,423	4,674	4,713	4,651
합 계	13,548	13,018	12,971	12,705	12,421
피보험출자금총액($10억)	161.9	176.6	196.7	218.4	236.5
피보험출자금 $1,000당 NCUSIF 손실($)	0.58	0.51	0.83	0.51	0.25

資料 : NCUA,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13〉 NCUSIF의 保險金支給 및 援助 現況

	1989	1990	1991	1992	1993
파산신용조합 수	54	83	89	81	54
보험금지급($1,000)	21,687	70,875	117,710	124,857	57,303
피보험출자금에 대한 보험금지급액의 비율(%)	0.013	0.040	0.067	0.057	0.024
합병신용조합					
원조받은 신용조합 수	60	81	41	33	17
비원조 신용조합 수	395	386	357	352	328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조					
현금원조($1,000)	39,360	67,891	35,101	101,228	6,634
비현금원조($1,000)	53,959	98,576	179,595	88,286	16,587
경우의 수	43	42	51	27	15
경영곤란 피보험신용조합 수	794	678	685	608	474
출자금($100만)	8,400	9,400	10,400	7,400	4,300
피보험출자금에 대한 경영 곤란 조합출자금비율(%)	4.8	4.9	5.2	3.4	1.8

資料 : NCUA, *Annual Report 1993*, 1994.

사. 信用組合에 대한 監督

NCUA가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900명의 검사요원들로 하여금 聯邦認可 信用組合들을 1년에 한번 검사하고 있으며, 州 政府認可 신용조합들은 認可 州政府 감독관들이 감독하고 있다.

5. FDIC 改革에 관한 最近 論議의 主要 內容

美國의 경우 預金保險制度의 도입은 소수 금융기관들의 不實化에 따른 예금인출사태가 금융제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金融機關의 健全性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소규모 預金者들이 금융기관 倒産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의 존재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들의 道德的 危險問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FDIC 설립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의 名目利子率 상승 및 金融規制 緩和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경영난에 처한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을 이용하여 高金利 商品을 제공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해 조달된 자금을 高危險 資産에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금융기관들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 預金保險制度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감독당국이 부실화 금융기관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취하지 못한 것(regulatory forbearance)도 損失規模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FDIC가 날로 늘어나는 도산 금융기관들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保險金 規模가 확대되고 급기야는 預金保險基金의 消盡과 倒産 金融機關들의 救濟(bail outs)를 위한 막대한 규모의 國民稅金 投入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처럼 예금보험제도에 내재하는 문제점들이 露呈되자 미국정부와 감독당국, 관련 경제학자들은 현행 예금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였으며, 1991년에는 聯邦預金保險公社 改善法(FDICIA)의 제정을 통해 위험가중 保險料率 制度를 導入하고, 부보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며,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早期 介入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하에서는 당시 논의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들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가. 保險危險 引受上의 問題 改善

1) 保險金 支給限度 縮小

預金保險의 부보한도를 현행 10만달러 이하로 축소하거나 보험금 지급단위를 금융기관별 計座當이 아니라 預金者當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나

金融機關 倒産時 예금자들도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預金者들에 의한 도덕적 위험문제를 축소할 수는 있으나, 특정 금융기관이 부실화 조짐을 보일 경우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금이 「뮤추얼 펀드」나 재무성 증권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 市場價値 會計制度(market－value accounting system)를 이용한 金融機關 危險度 再評價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金融機關 資産이나 보유 부동산 등을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金融機關의 健全性이나 지불능력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보다 早期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을 市場價格으로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가격에 의한 평가도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3) 金融機關 危險度 評價 結果의 公開

金融機關의 危險度를 재평가한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감독당국이 적절한 조치의 시행을 지체하거나 '대형금융기관 도산 불가(too big to fail)'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평가 결과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評價가 나쁜 銀行의 經營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도 있으며, 공개가 전제될 경우 評價結果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4) 金融機關의 認可 · 免許 制度 改善

예금보험기구는 金融機關 認可權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건전하지 못한 경영을 하는 데 대한 직접적인 制裁手段이 없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인가나 도산 금

융기관과의 합병 승인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旣加入 金融機關에 대한 預金保險 惠澤 制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金融機關들에 대해 감독당국이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처벌이 될 것이므로, 동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預金保險機構가 예금보험 혜택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regulatory discretion)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6) 預金保險基金 및 財務省으로부터의 借入限度 擴大

保險基金 擴大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할 수 있으며, 재무성으로부터의 차입 확대는 감독당국이 金融機關 倒産으로 인한 손실을 예금자로부터 국민세금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保險危險 統制上의 問題 改善

1) 金融機關 解散 規定 改善

金融機關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는 즉시 감독당국이 解散措置를 취하도록 法制化할 경우 부실화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보다 건전한 경영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시행할 경우 회복 가능성이 있는 金融機關을 도산시키거나 여타 金融機關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付保되지 않은 資産에 대한 保險金 支給 縮小

預金保險機構에 의한 보장이 비보호 예금자 및 채권자(uninsured depositors and creditors)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

이 금융기관들에 대해 도산에 이르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동시에, 預金保險基金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3) 倒産 金融機關 資産 處分時 預金保險機構의 優先辨濟權 認定

현재는 일반 채권자(secured creditors)가 預金保險機構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나, 예금보험기구에게 우선변제권을 허용할 경우 기구의 손실을 축소하고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金融機關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시행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不健全 經營에 대한 制裁 및 金融監督 強化

이 조치는 金融機關 經營者들이 건전하지 못한 경영행태를 취할 유인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단, 金融監督의 強化가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적 성과검사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保險加入 金融機關의 投資範圍 制限 (narrow banking)

保險對象 預金을 현금이나 무위험 유가증권으로 지급보증하는 금융기관들만이 예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預金保險制度의 道德的 危險 및 기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으나, 금융서비스 제공 축소, 협의은행(narrow banks)과 기타 금융기관들간의 방화벽(firewalls) 제정 필요, 협의은행의 경쟁력(viability) 문제, 기존 예금보험의 축소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 保險危險 轉嫁를 위한 制度 改善

1) 自營保險體制(self－insurance system)의 導入

聯邦預金保險制度를 금융기관들간의 상호보증체계로 대체하는 방안

으로, 자영보험체제에 가입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자본총액이 보험기금이 되며, 保險料는 保險事故가 발생하기 이전에 징수하여 적립하거나 사고발생 후 분담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美國과 같이 금융기관수가 많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독점금지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2) 共同保險方式(coinsurance)의 導入

政府의 保證限度를 축소하고 예금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상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經營情報에 대한 공시체계가 미비한 경우에는 도입하기 어려우며, 대형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3) 再保險(reinsurance)의 導入

피보험예금의 일부에 대해 再保險會社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 하여금 도덕적 위험 문제나 '대형 금융기관 도산 불가(too big to fail)' 문제를 축소하는 한편, 감독자들로 하여금 문제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預金保險의 總費用을 상승시킬 수 있고, 예금보험기구 자체의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금에 대해 再保險을 제공하려는 회사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4) 後配債(subordinated debt)의 發行 誘導

金融機關들로 하여금 예금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後配債를 발행함으로써 市場이 금융기관의 危險度를 평가하도록 하는 동시에 後配債 보유자들이 발행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어려우며, '대형 금융기관 도산 불가(too big to fail)' 정책이 암묵적으로 존재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表 Ⅱ－14〉 聯邦預金保險 改革을 위한 提案들의 主要 內容

문제점	위험인수	위험통제	위험전가
도덕적 위험	개인의 보험금 제한 보험금 한도 축소 시장가치회계를 위험 재평가 위험 재평가 공시 면허 및 인가제도 개선 면허 또는 인가 거부 중지 준비기금 확대 지급준비금(reserve)의 보고 개선 재무성으로부터 차입한도 확대	협의의 은행(narrow bank) 설립 위험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위험에 근거한 자본금 설정 은행 해산 규정 개선 감독 및 벌칙 강화 비보험 채권자에 대한 보험 제공 축소	금융산업의 자체보험 설립 후배채(subordinated debt)발행 요구 재보험이나 공동보험 도입
지급불능기관들의 청산 지연	보험금 한도 축소 시장가치회계를 위험 재평가 위험 재평가 공시 면허 또는 인가 거부 · 중지 준비기금 확대 지급준비금의 보고 개선 재무성으로부터 차입한도 확대	협의의 은행 설립 위험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위험에 근거한 자본금 설정 은행 해산 규정 개정 비보험 채권자에 대한 보험 제공 축소	금융산업의 자체보험 설립 후배채 발행 요구 재보험이나 공동보험 도입
시장가치 측정	위험 재평가 공시 시장가치회계를 위험 재평가 지급준비금의 보고 개선	협의의 은행 설립 은행 해산 규정 개선 위험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위험에 근거한 자본금 설정	후배채 발행 요구 재보험 도입 금융산업의 자체보험 설립
적정자본 비율 요구	시장가치회계를 위험 재평가	협의의 은행 설립 위험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위험에 근거한 자본금 설정 은행 해산 규정 개선	후배채 발행 요구
too big to fail	위험 재평가 공시 면허 또는 인가 거부 중지 준비기금 확대 재무성으로부터 차입한도 확대	협의의 은행 설립 위험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위험에 근거한 자본금 설정 은행 해산 규정 개선 비보험 채권자에 대한 보험 제공 축소	재보험이나 공동보험 이용 금융산업의 자체보험 설립 후배채 발행요구

〈表 Ⅱ－14〉의 계속

문제점	위험인수	위험통제	위험전가
도산기관 처리 방법	준비기금 확대 지급준비금의 보고 개선 재무성으로부터 차입한도 확대	협의의 은행 설립 비보험 채권자에 대한 보험 제공 축소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적용 불가
부보한도의 보험 제공	개인의 보험금 제한	위험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비보험 채권자에 대한 보험 제공 축소	적용 불가
보험가입 취소 불가능	면허 또는 인가 거부 중지	감독 및 벌칙 강화	금융산업의 자체보험 설립 재보험 도입
부정행위 견제	위험 재평가 공시 면허 또는 인가 개선 면허 또는 인가 거부, 중지 보험금 한도 축소 개인의 보험금 제한	협의의 은행 설립 벌칙 강화	재보험이나 공동보험 도입 금융산업의 자체보험 설립

資料 : Congressional Budget Office(1990), pp. 78~79.

Ⅲ. 캐나다의 預金保險制度

1. 預金保險制度의 設立 背景

1964년 2월 캐나다은행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포터 위원회가 銀行制度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同 報告書는 종래 획일적이고 경직된 은행제도를 고쳐서 각종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법률에 기초하여 聯邦政府의 통일적인 감독하에 상호 자유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報告書에 기초하여 1967년 3월 銀行法이 개정되고 이를 통해 캐나다 은행제도에 自由競爭原理가 대폭 도입되었으며, 경쟁에 따른 사회적 폐혜(은행도산으로 인한 예금자의 손해 등)를 축소할 목적으로 預金保險制度가 도입되었다. 은행들은 1967년 당시 CDIC 도입을 환영하지는 않았으나, 預金保險制度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모기지」(mortgage)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캐나다 預金保險公社法이 발효되기 전에 온타리오州는 同州 25개 대부회사 및 신탁회사를 포함하는 예금보험계획을 기획하여 1967년 2월 10일 시행하였으나, 캐나다 예금보험공사법이 발효된 후 온타리오州 계획은 중지되었고 온타리오州 金融機關은 모두 캐나다 預金保險公社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 역시 알베르타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타리오 州政府와 CDIC와의 합의에 의해 사전검사를 하지 않고 1967년 4월 29일에 가맹신청이 수리되었다. 預金保險公社法의 발효와 함께 16개의 州金融機關으로부터 가맹신청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7개는 노바 스코티아, 뉴-브룬스위크 및 마니토바의 州金融機關으로 장기간 保險監督官의 監督下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알베르타州의 7개 금융기관의 경우는 CDIC가 금융기관 검사를 할 때까지 입은 손해를 모두 알베르타 州政府가 배상한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사전검사 없이 CDIC의 업무

개시일인 1967년 4월 17일부터 가맹신청을 승인하고 이들 金融機關과의 預金保險契約을 체결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1967년에 퀘백州는 州內에서 예금수납을 행하는 모든 金融機關에 적용되는 예금보험계획에 대한 法律을 작성하였다. 이 계획은 州內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퀘백州 外에 州금융기관이 수납한 예금도 보험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퀘백州 내 예금의 일부(퀘백州 내의 연방금융기관 혹은 퀘백州 이외의 州금융기관에 의해 수납된 예금)는 퀘백州 預金保險委員會(QDIB)와 캐나다 예금보험공사 모두에 의해서 보험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퀘백州 정부간에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 CDIC는 퀘백州 금융기관이 퀘백州 외에서 수납한 預金을 보험한다.

② QDIB는 퀘백州 혹은 他州金融機關이 퀘백州 내에서 수납한 예금을 보험한다.

③ 퀘백州 내에서 他州金融機關이 수납한 예금의 보험을 CDIC가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當該금융기관과 當該 州당국간에 공동신청에 의하여 CDIC는 그 예금의 보험을 종결하는 것으로 한다.

④ CDIC는 연방금융기관이 퀘백州 內 혹은 外에서 수납한 예금의 보험을 계속하고 퀘백州는 그 연방금융기관에는 예금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CDIC는 QDIB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預金保險 活動에 따른 긴급한 유동성의 필요에 응할수 있도록 단기의 담보부대출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양해사항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캐나다 예금보험공사법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어 수정법률이 1968년 3월 27일에 발효되었으며, 1968년 말에는 퀘백州 내에 CDIC에 가맹한 州金融機關은 전혀 없게 되었다. 1967년 말 현재 CDIC 加盟 州金融機關은 대부회사 및 신탁회사 41개사이었다.

이에 따라 현행 캐나다 예금보험제도는 公的 預金保險制度로서 聯邦 및 州 政府 認可 金融機關들의 예금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캐나다預金保險公社(Canadi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CDIC)와 퀘백州 정부관할 금융기관(은행제외)의 예금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퀘백州 預金保險委員會(Quebec Deposit Insurance Board: QDIB)로 二元化되어 있다. 은행을 제외한 특정 금융기관이 퀘백州 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QDIB에 가입하게 되나, 퀘백州 밖에서도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CDIC에 가입하여야 한다. 兩 保險機構의 保險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인당 예금보험한도는 동일하다.

2. 캐나다 預金保險公社(CDIC)

가. 設立目的

① 예금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限度(현재 6만캐나다달러)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가맹기관의 健全 經營 및 健全 財務管理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캐나다의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③ 가맹기관에의 預金者 保護를 위해 ①, ②를 추구하는 동시에, CDIC의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機構 및 組織

1) 理事會

CDIC의 의사결정기구인 理事會는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CDIC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理事會는 재무부장관이 추천하고 총독이 임명하는 理事長(임기 5년)이외에 캐나다은행(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및 부원장 등 4인의

公共部門 理事와,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총독이 승인하는 4인 이하의 민간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理事(임기 3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맹기관의 現職 피고용인은 理事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理事會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는 가맹기관의 피고용인이 참여하고 있다.

2) 內部組織의 構成

1967년 설립 당시에는 단지 3명의 직원으로 預金保險料를 징수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으나, 倒産 金融機關의 처리를 위해 점차 기구를 확대해 온 결과 1994년 현재 CDIC에는 理事會 이외에 93명의 스탭(staff)이 근무하고 있으며(〈表 Ⅱ-20〉 참조), 이들 중 약 35명 정도가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현장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CDIC는 社長(President/CEO) 하부에 6개 部署가 존재하며, 社長은 경영진과 理事會 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圖 Ⅱ-4] 참조). 그리고 사장, 부사장들, 법률국장으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Executive Management Committee)가 부서간의 조정 및 정보교환의 場 역할을 수행한다.

① 法律/公社 事務局(Legal and Corporated Secretariat, 7명) : CDIC의 모든 부서에 대해 일상적인 혹은 전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 공사의 이해를 대변한다. 국장은 理事會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② 保險/危險評價部(Insurance and Risk Assessment Division, 20명) : CDIC法에 의거하여 회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건전경영 및 건전재무 기준의 유지 촉진, 예금보험의 위험평가 및 예금보험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運營部(Operations Division, 39명) : 오타와와 토론토 사무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다. 이 부서 내에 시스템 개발 및 지원 부문, 운영 및 인사 부문 등이 있다.

[圖 Ⅱ-4] CDIC의 組織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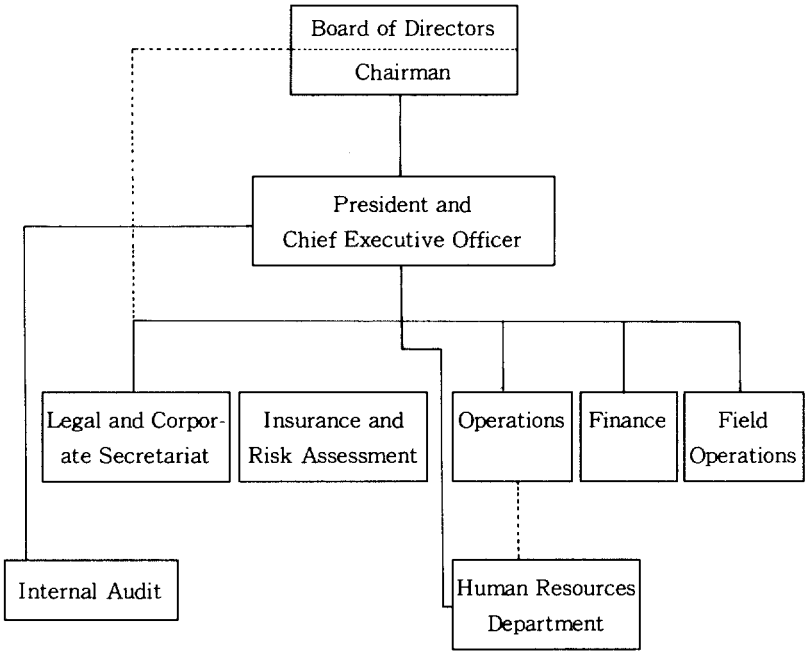

資料 : CDIC 內部資料.

④ 資金部(Finance Division, 10명) : 회계, 예산 및 재무기능을 담당한다. 이 부서는 CDIC의 재무업무를 총괄하며, 전략적 계획과정을 촉진시키고 CDIC의 재정, 금융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現場擔當部(Field Operations Division, 12명) : 토론토에 위치하며, 도산 금융기관들의 청산에 있어서 主債權者로서 CDIC 이익을 대변한다. 이 부서에서는 지급불능 가맹기관의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도로 회수하기 위해 청산자 및 관리자/경영자가 보유한 자산의 처분을 감시한다. 또한 이 부서는 도산 가맹기관의 預金者에 대한 保險金 支給을 맡게 되며, 동시에 채권, 보증, 인수 등을 감시한다.

⑥ 內部監査部(Internal Audit Department, 2명) : 내부감사기능을

담당하며, CDIC 사장과 理事會의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내부감사는 지속적으로 CDIC가 금융행정규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CDIC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업무를 집행하는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진다.

3) 資本金

設立 當時 CDIC의 수권자본은 1천만캐나다달러로서 전액 재무부가 출자하였으며, 주식의 양도는 불가능하였다. 예금보험기구의 설립 초기에는 금융기관 도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 수입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출자 자본금 전액을 1977년에 상환함으로써 현재는 자본금이 없다.

CDIC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聯邦政府(Consolidated Revenue Fund)로부터 이자지급 조건으로 단기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 그 한도는 설립당시 5억캐나다달러이었으나 1994년 현재는 60억캐나다달러로 규정되어 있다. 이 한도는 1992년에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추정된 것으로 수개의 금융기관이 도산 또는 도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최대의 규모로 예측된 것이다. CDIC는 中央銀行으로부터는 차입을 하지 않으며, 이는 金融機關들에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적용함에 있어 중앙은행이 CDIC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業務

①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징수

② 예금보험기금 및 기타 자산 운용

③ 가맹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담보 徵求, 채무보증 및 본 공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가맹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산 취득

④ 캐나다정부로부터의 차입 및 채권발행

재무부 장관은 총독 허가하에 연방세입기금에서 본 공사에 대부를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보통 60억캐나다달러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⑤ 가맹금융기관의 관리자, 청산인, 관재인(재산관리인)

본 공사가 가맹금융기관의 관리자, 청산인, 관재인에 임명된 때에는, 그 활동을 행하며 그 경비를 가맹기관이 부담한다.

⑥ 가맹금융기관의 감독, 검사

예금보험의 관한 情報 徵求 및 經營內容, 法規違反 檢査를 위하여 본 공사는 가맹금융기관의 검사를 행한다.

불건전한 經營과 法規違反에 대한 개선이 충분하게 인지되지 않을 때는, CDIC는 가맹금융기관에 대해 保險契約을 解約할 수 있다.

가맹기관들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90일 이전에 다음의 자료를 직접 CDIC에 제출한다.

- Consolidate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with comparative information of the previous year, duly approved by the member's board of directors;
- Consolidated,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member's parent company;
- A current list of the subsidiaries and affiliates of the member institution with an organizational chart;
- A current list of the names, addresses, telephone numbers and titles or offices of the directors and officers of the member and of each of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또한 CDIC는 가맹기관들에 대해 다음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

- Financial statements of the members and/or any of their subsidiaries, for the period specified, prepared on a consolidated or unconsolidated basis;
-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deposits(insured, uninsured, brokered, etc.), systems used to compile information about deposits, loans(amounts, maturities, etc.),

other assets and other liabilities;

- Other reports, documents and information that pertain to the affairs of the member and its subsidiaries, as well as other reports, documents and information pertaining to its affiliates.

가맹기관은 CDIC에게 다음 자료의 복사본을 제출한다.

- Any actual or proposed change in control of the member institution or any of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 Any actual or proposed amalgamation, merger, arrangement or other reorganization that involves the member institution or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assests or liabilities, or any of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 Any actual or proposed acquisition, which constitutes a substantial investmen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0 of the Bank Act, by the member institution or any of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in any bank, trust or loan company, insurance company, investment dealer or other provider of financial services;
- Any actual or proposed change of address of its registered head office.

그 밖에 가맹기관은 CDIC에 감사의 선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한다.

CDIC는 가맹기관으로부터 다른 3개 감독기관인 OSFI,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동등한 권한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加盟 金融機關

聯邦金融機關에 속하는 특허은행, 신탁회사 및 대부회사, 그리고 퀘백州 저축은행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州金融機關에 속하는 신탁회사 및

대부회사는 ① 州當局으로부터 예금보험 신청이 승인된 경우, ② CDIC가 허가한 경우, ③ 신탁회사법, 대부회사 법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州金融機關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입이 허용된다. 현재 CDIC는 131個社의 가맹금융기관을 갖고 있다.

가맹금융기관은 CDIC의 각종 규정(The CDIC Deposit Insurance Policy By-Law, The CDIC Interest Rate Risk Management Standards By-Law, The CDIC Internal Control Standards By-Law, The CDIC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Standards By-Law, The CDIC Credit Risk Management Standards By-Law, The CDIC Liquidity Management Standards By-Law, The CDIC Real Estate Appraisals Standards By-Law, The CDIC Capital Management Standards By-Law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 付保 限度額(insurance coverage limit)

CDIC의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 부보한도액은 1967년 당시에는 2만캐나다달러였으나, 1983년 의회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증가시킴으로써 현재는 6만캐나다달러(US $ 44,500)까지 보험이 된다. 복수명의 예금(joint deposits)이나 信託預金(trust deposits)의 수탁자는 계좌별로 한도금액까지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와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예금과는 별도로 가맹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6만캐나다달러까지 보험이 되고 있다(〈表 Ⅱ－15〉 참조).

7) 保險對象預金

캐나다의 預金保險은 은행간예금과 비거주자에 의한 예금은 보호하고 있으나, 외화예금 및 캐나다은행의 해외지점 예금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캐나다 預金保護制度가 기본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캐나다달러로

〈表 Ⅱ－15〉 被保險預金의 付保限度 關聯規程

THE FOLLOWING ARE THE APPLICABLE RULES TO DETERMINE AMOUNTS IN EXCESS OF $60,000 PER PERSON:

(a) with the exception of trust deposit, insurable deposits in RRSP's, RRIF's and joint deposits, deposits held for the same person must be aggregated to determine any amount in excess of $60,000.

(b) (i) Trust deposits are insured separately up to $60,000 from any other deposit of the depositor acting in a trust capacity if the trusteeship is disclosed at all times on the records of the member institution.

(ii) The interest of a beneficiary in a trust deposit is deemed to be separate from any other deposit of the beneficiary for the purposes of deposit insurance. Separate trust deposits which are subject to the same trust must be aggregated and any amount in excess of $60,000 is not insured.

(iii) Where there are two or more beneficiaries in a trust deposit, the interest of each beneficiary is treated as a separate deposit for the purpose of deposit insurance provided that the trusteeship and the interest of each beneficiary is disclosed on the records of the member institution. The beneficiaries' interest must be disclosed at all times and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 member institution to ascertain the amount of principal and the amount interest to which each beneficiary is entitled. Any amount of principal and interest for each beneficiary in excess of $60,000 is not insured.

(c) (i) Insurable deposits held in RRIF's are treated separately from any other deposits held for the same individual. The insurable deposits held by the same individual must be aggregated to determine any amounts exceeding $60,000.

(ii) Where a member institution acts as trustee or administrator for self-directed RRSP's, insurable deposit held in the self-directed RRSP with other member institutions are treated separately for the purpose of deposit insurance.

(iii) RRSP uninvested cash balances held by a member institution as trustee or administrator must be disclosed on the records of the member institution. The interest of the depositor must be disclosed at all times and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 member institution to ascertain the exact amount of principal and interest to which each depositor is entitled.

(d) Insurable deposits held in RRIF's are subject to the same rules as outlined in paragraphs (c)(i) to (iii) inclusive

(e) Cash balances held in individual capital accounts, revenue accounts and other accounts of each estate, trust, management, safe custody, agency and other similar accounts are subject to the same requirements as contained in paragraph (c)(iii).

(f) Deposit of the same joint depositors are aggregated and treated as a separate deposit from the individual deposits of the joint depositors and from any joint deposit a joint depositor may have with another depositor. Any amount of the above-mentioned aggregate in excess of $60,000 is not insured.

이루어진 예금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保險對象이 되는 預金

① 저축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② 정기예금 : 대부회사(loan company)에 의해 발행된 보증투자증권(GICS)과 (무담보)사채 중 기한이 5년 이하인 것

③ 우편환 등의 (송금)환(money order)

④ 환어음

⑤ 보증 환어음과 수표

⑥ 가맹금융기관에 의해 발행된 여행자수표

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

① 외국환예금

② 5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정기예금

③ 대부회사 이외에서 발행된 (무담보)사채

④ 회사채(bond)

⑤ 재무성증권

⑥ 주식과 투자신탁에의 투자

8) 保險料

CDIC 設立 當時 保險料는 연간 500캐나다달러, 혹은 가맹금융기관의 매년 4월 30일 현재 피보험예금총액(1인당 2만캐나다달러까지)의 1/30% 중 많은 금액으로,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0년대초 金融機關의 倒産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하게 되자 CDIC의 年間 保險料率은 피보험예금총액의 1/10%로 인상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기금의 누적 손실이 확대되자 保險料率은 1993년에 다시 1/8%로 인상되었으며, 1994년에 또 다시 가맹기관의 규모

나 위험도에 상관없이 모두 피보험예금의 1/6% 또는 5,000캐나다달러 중 많은 금액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특기할 것은 美國의 FDIC가 총 예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CDIC는 보험대상예금총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7]. 同 方式은 총예금에 대한 부과방식에 비해 보험료 산정이 복잡하게 되는 단점은 있으나, 보호되지 않은 예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모든 金融機關들은 각자의 위험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保險料率(피보험예금의 1/6%)의 적용을 받게 되며, 金融機關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risk-based premium assessment system)은 실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채택하지 않고 있다. 金融機關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損費로 인정된다.

徵求한 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으로서 CDIC가 유지하며 이 預金保險基金이 충분한 금액에 달한 때에는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보험예금총액의 1/6%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금으로서 CDIC가 徵求한 利子를 합하여 관할재판소에 제소하여 強制 徵求할 수 있다. 금리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른 금리에 2% 포인트를 추가한 수준이며, 이자계산시 납부예정 일자는 포함되고 實際 納付日字는 제외된다.

또한 감독기관의 자문과 가맹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年間 保險料 내에서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이자가 부과된다.

보험료 납부는 매년 5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4월 30일에 끝난다. 保險料는 4월 30일 현재의 피보험예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保險料

---

7) 매년 4월 초에 CDIC가 가맹기관들에 보내는 보험료 계산양식은 [圖 Ⅱ-5]를 참조.

[圖 Ⅱ-5] CDIC의 保險料 計算 樣式

RETURN OF INSURED DEPOSITS

_____

(NAME OF COMPANY)

(000'S)

1. TOTAL DEPOSIT LIABILITIES AS AT APRIL 30.19___	$ _____
2. DEDUCT : Deposits or insturments not insurable	(_____)
3. SUBTOTAL : Qualifiable deposits	.....
4. Deduct : Amounts in excess of $60,000 per person	_____
5. TOTAL AMOUNT OF DEPOSITS INSURED BY CDIC	$ _____
6. PREMIUMS PAYABLE(1/6 OF 1% ITEM 5 OR $5,000, WHICHEVER IS GREATER	$ _____

NOTE : ONE HALF OF THE PREMIUM IS PAYABLE ON OR BEFORE JUNG 30TH. THE BALANCE IS TO BE PAID ON OR BEFORE DECEMBER 31ST. INTEREST CHARGES WILL BE ASSESSED FOR LATE REMITTANCE OF PREMIUMS DUE AND PAYABL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5 OF THE CDIC ACT.

CERTIFIFD CORRECT : _____ _____ DATE : _____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資料 : CDIC 內部 資料.

[圖 Ⅱ-6] QDIB의 保險料 計算 樣式

RETURN OF INSURED DEPOSITS

For Provincially Incorporated Institutions Accepting Deposits in the Province of Quebec

_____ (NAME OF COMPANY)	(A) Total Deposits (000's)	(B) Deposits in Quebec (000's)	(C) Deposits outside of Quebec (000's)
1. TOTAL DEPOSIT LIABILITIES AS AT APRIL 30.19___	$	$	$
2. DEDUCT : Deposits or instruments not insurable	( )	( )	( )
3. SUBTOTAL : Qualifiable deposits			
4. Deduct : Amounts in excess of $60,000 per person			
5. TOTAL AMOUNT OF DEPOSITS INSURED BY CDIC	$	$	$
6. PREMIUMS PAYABLE (1/6 OF 1% OF ITEM 5 OR $5,000, WHICHEVER IS GREATER)	$		

NOTE : ONE HALF OF THE PREMIUM IS PAYABLE ON OR BEFORE JUNG 30TH. THE BALANCE IS TO BE PAID ON OR BEFORE DECEMBER 31ST. INTEREST CHARGES WILL BE ASSESSED FOR LATE REMITTANCE OF PREMIUMS DUE AND PAYABLE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5 OF THE CDIC ACT.

CERTIFIED CORRECT : _____ _____ DATE : _____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Financial Officer

資料 : CDIC 內部 資料.

率은 CDIC가 매년마다 미리 加盟機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가맹기관은 보험료를 6월 30일 이전에 全額 納付할 수도 있고 6월 30일 이전과 그 이후 12월 31일 이전으로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보험료 산정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가맹기관은 60일 이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새로이 가입된 加盟銀行에 대해서는 피보험예금을 수령한 첫달 말 이후 60일 동안 保險料 납부가 연기되며, 보험료는 첫달의 피보험예금을 기준으로 하여 날짜로 4월 30일까지 비례계산된 금액과 5,000 캐나다달러 중 많은 금액으로 결정된다[8].

이와는 별도로 1994년 1월부터 CDIC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金融機關에 대해 追加保險料(premium surcharge)를 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

① 건전 경영 · 금융거래를 위한 기준 위배

② 예금보험가입 규정의 기록 유지 및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③ 은행법, 신탁 · 대부회사법, 관련 州法 등 법규 위반

④ CDIC 요청사항의 불이행

9) 倒産機關의 處理方法

가맹기관이 도산한 경우 CDIC는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① 預金支給 (deposit payout) : 예금자들에게 부보한도까지 예금을 지급하는 한편 도산기관을 청산하고 동 기관에 대해 保險金 支給額에 해당하는 債權者로서의 권한을 행사함.

---

8) 예: 新加盟銀行이 7월 15일에 피보험예금의 수령을 시작하여 7월 30일까지 960만캐나다달러를 수령한 경우 보험료는 960만×(1/6)%×(289/365)=12,668.49캐나다달러이며 보험료의 1/2은 9월 30일이전에 나머지 1/2은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다.

② 合併支援 (purchase and assumption) : 도산기관을 다른 金融機關에게 매각하면서 매수기관에게 손실의 일부분을 보전함.

③ 第3者에 의한 代理經營 (agency agreement) : CDIC가 代理人을 지정하여 도산 금융기관의 경영을 맡김.

④ 資金支援 (financial assistance) :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 지급보증, 자산취득, 예금제공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

10) 資産運用方法

CDIC는 모든 수입을 캐나다은행에 예금해야 하며 預金保險基金의 운용 등은 전액 캐나다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캐나다은행은 CDIC 지시에 의하여 기금을 캐나다 재정증권에 투자 혹은 재투자해야 한다.

CDIC는 증권매각을 포함한 全體 收益 중에서 준비금 등을 차감한 純收益을 캐나다은행에 별도로 예금하고, 그 중에서 정부가 정한 年率로 자본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있다.

3. CDIC의 活動 現況

가. 設立 當時의 CDIC 運營狀況

1967년 4월 17일 預金保險會社法이 공포됨과 동시에 18개 연방 대부회사 및 신탁회사와 10개 연방인가은행이 자동적으로 聯邦加盟 金融機關으로 되었으며, 州政府 認可 가맹기관은 1967년말 현재 대부회사 및 신탁회사 41개사에 이르렀다. 설립 당시에는 가맹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기능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CDIC를 대신하여 총괄은행검사관이 各銀行에 대한 검사를 하고 保險監督官은 연방신탁회사와 연방대부회사에 대한 감독을 맡았다. 한편 州政府 관할 금융기관은 CDIC가 지명한 者에

의해 검사를 받았으며, 보험감독관이 州金融機關의 가맹승인에 관한 주된 심사를 담당하였다. 초기 CDIC의 직원은 3명에 불과하여 운영에 필요할 경우 보험청 및 재무부 직원과 시설을 원용하였으며, 오타와에 있는 지방개발융자국 본부와 시설 및 직원을 공유하였다.

1967년중 CDIC에 의해 총 171억캐나다달러를 상회하는 加盟金融機關의 예금이 保險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가맹금융기관이 지불한 初年度分 保險料는 약 570만캐나다달러에 달하였다. 수취수수료는 CDIC의 1,000만캐나다달러의 자본금과 함께 캐나다 재정증권에 투자되었다(〈表 Ⅱ－16〉 참조). 그리고 CDIC가 활동을 개시한 1967년 4월 17일부터 同年 12월 31일까지의 利子收入은 80만 9,918캐나다달러, 지불이자 및 영업비용은 43만 8,450캐나다달러를 기록하였다(〈表 Ⅱ－17〉 참조).

〈表 Ⅱ－16〉 CDIC 貸借對照表 (1967年 12月 31日 現在)

(單位 : 캐나다달러)

자	산	부 채 및 자 본	
현 금	1,559,212	미지급금	89,069
미수보험료 및 미수이자	1,797,230	캐나다 정부차입금	15,673,738
		법 제34조에 의한 것	15,350,000
캐나다정부증권	13,119,113	미지급이자	323,738
법 제11조에 의한 대부	15,350,000	자본금	10,000,000
		예금보험기금	6,062,748
		보험료수입	5,691,280
		純益計算勘定	311,468
계	31,825,555	계	31,825,555

註 : 1. 법 제11조에 기초한 대부는, 한 가맹금융기관에 대한 대부금 15,350,000달러로, 금리6.5%, 期限 1977년 12월 1일의 것임.
2. 1967년중의 가맹금융기관의 보고서에 기초한 피보험예금은, 합계 171억캐나다달러에 달하며, 그 중 연방금융기관은 159억캐나다달러, 州금융기관은 12억캐나다달러였음. 州금융기관의 피보험예금 중 103억캐나다달러에 대해서는, 관계 주당국과의 임시손실보상의 합의가 있었음.
3. 본 회사는, 재정행정법에 있어서 「재산을 소유하는 법인」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12월 31일 현재, 그 계정 중에 소득세충당금이 설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총독은 본 회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소득세에 대하여 재정집행법 제22조에 기초하여 면세조치를 취하였음.

資料 : 金融財政事情硏究會(1969. 11), p. 162.

〈表 Ⅱ－17〉 CDIC 損益計算書(1967年 4月 17日～1967年 12月 31日)

(單位 : 캐나다달러)

구 분	금 액
수 입	809,918
투자이자수입	413,552
법 제11조에 기초한 대부금이자	396,366
경 비	438,450
캐나다정부 지불이자	323,738
검사수수료경비	82,035
보험청	73,435
기 타	8,600
봉급 및 상여금	19,904
광고비	6,162
임차료	2,125
인쇄, 문방구, 상품권	1,664
사무용구비	1,181
여비	999
전화, 전보	406
잡 비	236
당기순이익(純益計算計定移越)	371,468

註 : 손익계산서 중의 「봉급」에는, 당기분의 이사장 보수 9,511캐나다달러가 포함됨.
資料 : 金融財政事情研究會(1969. 11), p. 162.

나. 最近의 CDIC 運營現況

1) 營業現況

1967년 設立 이래 15년 동안은 CDIC가 예금자들에게 지불한 保險金의 額數가 미미하였으나, 1983년 이래로 파산하거나 또는 CDIC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맹금융기관의 수가 증가해 왔다(〈表 Ⅱ－18〉 참조).

캐나다에서는 1967년부터 198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은행 도산은 없었으나 12개의 신탁회사 및 대부회사가 파산함으로써 CDIC의 개입을 필요로 했다. 이 중 8개 금융기관은 1983년과 1984년 사이에 도산하였

는데, 이로 인해 1984년 말에 CDIC 예금보험기금은 8억 7,100만캐나다달러의 결손금을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1967년부터 1992년까지의 CDIC 영업현황을 살펴보면, 총 영업코스트는 1993년 4월 1일의 추정치로 35억 9천만캐나다달러였으며, 가맹금융기관으로부터 徵收한 保險料는 20억 9천만캐나다달러였다. 따라서 1992년말 현재 CDIC는 약 15억캐나다달러의 결손금을 안고 있다.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의 CDIC의 영업코스트는 1,760만캐나다달러였으며, 도산 金融機關들에 대한 개입에 860만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지출함으로써 총 영업코스트는 2,620만캐나다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많은 부분은 파산금융기관의 預金者들에 대한 保險金 支給이 차지하였다 (〈表 Ⅱ－19〉, 〈表 Ⅱ－22〉 참조).

1992년 CDIC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8억 6,100만캐나다달러였다. 이 손실은 주로 CDIC의 Central Guarauty Trust Company, First City Trust Company, Shoppers Trust Company 등에 대한 개입 때문이었다. 반면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 기간동안 CDIC는 300만캐나다달러의 운영수익을 기록하였다(〈表 Ⅱ－22〉 참조).

1993년 1월부터 1994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Dominion Trust Company, Prenor Trust Company, Monarch Trust Company 등의 가맹금융기관이 파산했는데, CDIC는 이 3개의 金融機關에 13억캐나다달러를 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한 推定損失은 5,500만캐나다달러였다.

1994년 3월 31일 현재 CDIC의 추정 누적결손금은 현재의 市場 및 經濟狀況을 바탕으로 평가한 가맹금융기관의 총위험과 과거의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2억캐나다달러의 충당금(provision)을 포함하여 16억 5천만캐나다달러이다(〈表 Ⅱ－21〉 참조). 한편, 1967년 이래로 CDIC가 수납한 총보험료는 24억 8,300만캐나다달러로 평가된다.

2) 被保險金融機關의 保險料負擔

1992년 현재 1/10%의 보험료율에 따른 피보험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은 캐나다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의 세전이익 총액의 7% 정도에 이르며, 1994년 보험료율을 피보험예금의 1/6%까지 인상함에 따라 은행의 보험료는 세전이익의 1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2년 및 1993년에 부과된 保險料는 각각 3억 200만캐나다달러와 3억 9,100만캐나다달러였으며, 1994년에는 保險料 賦課額이 약 5억 3,700만 캐나다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表 Ⅱ-19〉 참조).

3) 各金融機關의 被保險預金의 比率(proportion of insured deposits)

캐나다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들의 예금총액에 대한 피보험예금의 비율은 1994년 3월 현재 49.1%이며, 1995년에는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탁회사와 대부회사의 대부분은 80% 이상의 預金을 CDIC의 預金保險에 가입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회사도 많다. 그러나 캐나다 信託會社(Canada Trust)와 같은 대규모 회사들의 경우 피보험예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신탁회사와 대부회사 전체로 보면 평균적으로 예금의 75% 정도를 CDIC의 예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表 Ⅱ－18〉 1967～94년 동안의 CDIC의 加盟金融機關의 破産(failures)

(單位 : 百萬달러)

	금융기관	지불금액	손실
1970	Commonwealth Trust Company	5	0
1972	Security Trust Company Limited	9	0
1980	Astra Trust Company	21	3
1982	District Trust Company	231	15
1983	Amic Mortgage Investment Corporation	28	14
1983	Crown Trust Company	930	5
1983	Fidelity Trust Company	792	354
1983	Greymac Mortgage Corporation	174	103
1983	Greymac Trust Company	240	143
1983	Seaway Mortgage Corporation	120	4
1983	Seaway Trust Company	300	69
1984	Northguard Mortgage Corporation	28	8
1985	Continental Trust Company	113	0
1985	Pioneer Trust Company	201	25
1985	Western Capital Trust Company	77	3
1985	Canadian Commercial Bank	352	184
1985	CCB Mortgage Investment Corporation	36	24
1985	London Loan Limited	24	7
1985	Northland Bank	318	107
1986	Bank of British Columbia	200	200
1986	Columbia Trust Company	99	0
1987	North West Trust Company	275	275
1987	Principal Savings & Commerce Canada	116	0
1988	Financial Trust Company	74	n.a.
1990	Settlers Savings & Mortgage Corporation	43	22
1991	Bank of Credit & Commerce Canada	22	4
1991	Standard Trust Company	1,164	135
1991	Standard Loan Company	157	0
1991	Saskatchewan Trust Company	64	9
1992	First City Trust Company	175	0
1992	Shoppers Trust Company	492	18
1992	Central Guaranty Trust Company	1,684	239
1993	Dominion Trust Company	431	25
1993	Prenor Trust Company	821	25
1994	Monarch Trust Company	65	5

資料 : C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19〉 CDIC의 最近 5年間의 財務狀況

(單位 : 百萬캐나다달러)

	1994.3.31	1992.12.31	1991.12.31	1990.12.31	1989.12.31
보험프로그램(insurance program)					
예금보험기금(결손금)	(1,648)	(1,451)	(590)	(643)	(851)
총 피예금보험($ billions)	303	302	290	270	245
보험료(premiums assessed)	391	302	290	271	245
자산 및 부채(assets and liabilities)					
지급보험료(claims paid)	1,351	493	1,408	–	4
회수보험료(claims recovered)	1,048	263	728	49	198
대부금(loans disbursed)	157	1,539	39	43	–
회수 대부금(loans recovered)	618	19	96	13	15
CRF로부터의 추가대부금(반제) (additional loans(repayments)from the CRF)	(499)	1,835	590	(150)	(320)
지불보증금(payment of guarantees)	65	–	–	–	–
영업(operations)					
영업비용(operating expenses)	17[1)]	17	15	12[2)]	12[2)]
조정비용(intervention expenses)	9[1)]	12	13	n.a.	n.a.
CRF대부금에 대한 이자비용	270[1)]	177	168	146	171

註 : 1) 이 금액은 15개월 동안의 금액이며 1993년 12월 31일의 수치는 각각 13, 6, 219임.
2) 이 금액은 영업비용과 조정비용 모두를 포함한 것임.

資料 : C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20〉 最近 5年間의 CDIC加盟金融機關 및 其他에 關한 統計値

(單位 : 個, %)

	1994.3.31	1992.12.31	1991.12.31	1990.12.31	1989.12.31
가맹금융기관					
연방금융기관(은행)의 수	61	61	64	64	65
연방금융기관(신탁/대부회사) 수	47	51	50	52	56
州금융기관의 수	23	30	32	35	33
총 금융기관의 수	131	142	146	151	154
파산(insolvencies)의 수	3	5	4	–	–
종업원(permanent)의 수	90	94	92	65	63
기타					
총예금 중 피보험예금의 비율	49.1	50.8	50.9	48.3	43.9
피보험예금의 증가율	0.2	3.8	7.3	10.4	13.6
기금에 대한 평균코스트	6.3	7.2	10.2	10.9	10.8

資料 : C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21〉 CDIC의 最近 貸借對照表

(單位 : 1千캐나다달러)

	1994. 3. 31	1992. 12. 31
자 산		
현금-단기투자	26,091	321,068
미수보험료 및 받을어음	6,649	5,191
이연이자비용(deferred interest expense)	7,464	24,455
자본자산(capital assets)	1,982	2,043
	42,186	352,757
대부금(loans receivable)	1,049,338	1,566,974
미수보험료(claims receivable)	1,742,077	1,381,997
	2,791,415	2,948,971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losses on loans and claims receivable)	(446,000)	(416,500)
	2,345,415	2,532,471
	2,387,601	2,885,228
부 채		
지급어음(account payable)	28,709	5,705
보증에 대한 예비비(provision for guarantees)	629,448	615,000
손실에 대한 총예비비(general provision for loss)	200,000	0
CRF로부터의 대부금	3,177,096	3,715,180
	4,035,253	4,335,885
예금보험기금 기말결손금	(1,647,652)	(1,450,657)
	2,387,601	2,885,228

資料 : C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22〉 CDIC의 最近 損益計算書

(單位 : 1千캐나다달러)

	1993. 1. 1~ 1994. 3. 31	1992. 1. 1~ 1992. 12. 31
수 익		
보험료(premiums)	391,161	302,371
현금과 단기투자에 대한 이자수익	7,081	3,212
기타 수익	11,054	2,273
	409,296	307,856
비 용		
손실에 대한 예비비(provisions for loss)	108,500	959,532
CRF로부터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	269,679	176,950
영업/조정(intervention)비용	26,219	28,652
기타 이자	1,893	3,401
	406,291	1,168,535
영업손익	3,005	(860,679)
기초결손금	(1,450,657)	(589,978)
소급조정(retroactive adjustment)	(200,000)	–
기말결손금	(1,647,652)	(1,450,657)

資料 : C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23〉 CDIC의 最近 財務狀態變動表

(單位 : 1千캐나다달러)

	1994. 3. 31	1992. 12. 31
영업활동		
영업손익	3,005	(860,679)
영업손익에 포함된 비화폐성항목		
손실에 대한 예비비(provisions for loss)	108,500	959,532
기타	100	(63,501)
지불보증금(payment of guarantees)	(64,552)	–
대부금(loans disbursed)	(157,459)	(1,538,705)
회수 대부금(loans recovered)	618,159	19,131
지불보험료(claims paid)	(1,350,912)	(492,981)
회수보험료(claims recovered)	1,047,768	262,539
영업활동에 의해 유입(유출)된 현금	204,609	(1,714,664)
투자활동		
자본자산의 구입	(596)	(1,010)
재무활동		
CRF로부터의 대부금		
先貸(advances)	1,230,000	2,105,000
반제(repayments)	(1,729,000)	(270,000)
재무활동에 의해 유입(유출)된 현금	(499,000)	1,835,000
현금 & 단기투자		
기간동안의 증가(감소)	(294,977)	119,326
기초잔액	321,068	201,742
기말잔액	26,091	321,068

資料 : CDIC, *Annual Report 1993*, 1994.

〈表 Ⅱ－24〉 CDIC가 介入한 信託會社와 貸付會社의 被保險預金

(單位 : 百萬캐나다달러, %)

	금융기관	총예금	피보험률
1970	Commonwealth Trust Company	5.4	100
1972	Security Trust Company Limited	10.3	100
1980	Astra Trust Company	22.9	92
1982	District Trust Company	231.0	84
1983	Amic Mortgage Investment Corporation	22.8	100
1983	Crown Trust Company	930.0	73
1983	Greymac Mortgage Corporation & Greymac Trust Company	791.0	93
1983	Seaway Mortgage Corporation & Seaway Trust Company	414.0	95
1984	Northguard Mortgage Corporation	28.1	99
1985	CCB Mortgage Investment Corporation	76.2	n.a.
1985	Continental Trust Company	117.0	93
1985	London Loan Limited	23.9	99
1985	Pioneer Trust Company	231.1	87
1985	Western Capital Trust Company	78.8	99
1987	Columbia Trust Company	101.3	99
1987	North West Trust Company	727.0	95
1987	Principal Savings & Commerce Canada	127.8	91
1988	Financial Trust Company	1,217.0	95
1990	Settlers Savings and Mortgage Corporation	148.0	99
1991	Saskatchewan Trust Company	58.9	99
1991	Standard Loan Company	160.4	97
1991	Standard Trust Company	1,240.6	92

資料 : CDIC, *Annual Report 1993*, 1994.

4. CDIC의 金融監督 機能

가. 캐나다預金保險公社(CDIC), 金融監督院(OSFI), 캐나다 中央銀行(BOC)간의 關係

캐나다의 預金收取機關에 대한 감독체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聯邦政府는 은행에 대한 전적인 감독권한과 연방정부가 인가한 신탁·대부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州政府는 주정부가 인가한 신탁회사 및 대부회사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dual jurisdiction system).

캐나다에는 聯邦預金取扱機關에 대한 監督機構로서 다음의 4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① 財務部(Department of Finance) : 재무부 장관은 CDIC 운영법안을 제정 및 개정할 책임이 있으며, CDIC 加盟 聯邦政府認可 金融機關을 폐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재무부 차관은 CDIC 이사회의 當然職 理事이다.

② 金融監督院(OSFI) : OSFI는 1987년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f the Bank(1930년대 설립)와 Department of Insurance(1890년대 설립)를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信認度 維持를 위해 연방정부소속 금융기관(보험회사와 신용조합 포함)과 연금을 감독할 권한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독지침(supervisory guidelines)을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CDIC법(제29조)에 따라 가맹기관의 재무상태 및 위험관리 상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州政府認可 CDIC 加盟機關들을 검사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OSFI를 대표하는 2인(감독원장, 부감독원장)이 CDIC 理事會에 참가하고 있다.

③ 캐나다 銀行 (Bank of Canada) : 캐나다 은행의 총재는 金融機關

關監督委員會(FISC)[9]의 委員이며 CDIC 理事會의 理事로서 간접적으로 은행감독에 관여한다. 캐나다 은행은 연방정부소속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a lender of last resort)이며, 캐나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④ 캐나다 預金保險公社(CDIC) : CDIC는 가맹기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맹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권한이 있다. 또한 CDIC는 주정부 감독관과 함께 主政府所屬 預金收取機關에 대한 감독권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체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OSFI와 BOC로부터 입수하며, 主政府가 認可한 신탁회사 및 대부회사에 대해서도 검사인을 지

[圖 Ⅱ-7] 캐나다의 金融監督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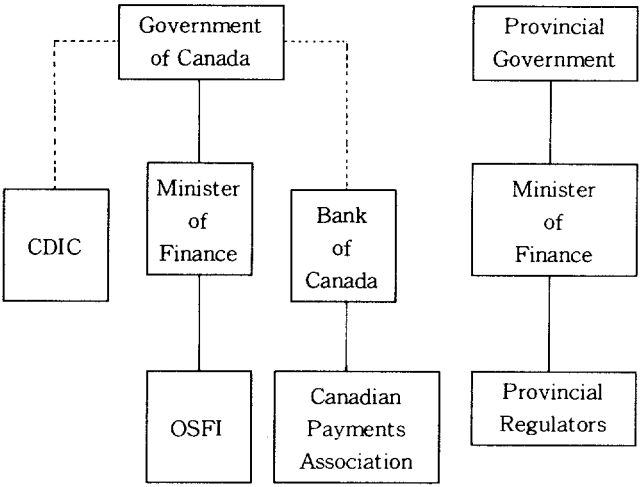

資料 :CDIC 內部資料.

9) 금융기관감독위원회(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Committee)는 금융감독기관간에 금융감독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에 관해 서로 자문 및 정보교환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이다.

정하여 이들로부터 필요한 情報를 입수한다. CDIC는 금융기관감독위원회(FISC)에 다른 3개의 감독기관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나. CDIC의 加盟機關 監督

예금취급기관의 성격에 따라 감독당국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상의 특성으로 인해 CDIC는 法的으로는 다른 金融監督機關 즉 財務部, 中央銀行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財務部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CDIC는 聯邦政府認可 加盟機關들의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CDIC법에 따라 연방정부인가 가맹기관들에 대한 情報蒐集 및 檢査를 OSFI에 의존하고 있다.

CDIC는 州政府管轄 加盟機關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스스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檢査者를 지명하고 있다. 이때 지방감독관들의 권한이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연방 혹은 지방감독관에게 해당 기관들의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현재는 OSFI가 CDIC를 대신하여 가장 큰 두개의 州정부소속 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을 검사하며, 2대 州政府認可 加盟機關들은 州政府 감독기관에 의하여 검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은 OSFI와 主政府 監督官에 의해 이루어지며, CDIC는 이들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OSFI-CDIC 連絡委員會(Liasion Committee)에는 양 기관의 長과 기관별로 2인의 임원이 월 1회 회동하여 관심사항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하고 있다.

CDIC법(section 29)에 따라 指名檢査者는 다음 사항들을 CDIC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保險業者로서의 CDIC의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의 환경 변화 여부

② 가맹기관이 산정하여 지불한 保險料의 正確性

③ 가맹기관의 실적이 CDIC의 健全經營 基準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④ 가맹기관의 營業 및 財務狀況

한편, CDIC는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CDIC 기금사용이 요청될 경우 해당 가맹기관에 대한 特別檢査(special examinations)를 행할 수 있다. 정규검사시 검사대상 기관의 자료 및 기록 등에 의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검사를 행할 때에는 資産價値評價를 위하여 보유자료 조사 이외에 직접 신용담보물의 방문조사 등을 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외부기관의 컨설턴트에 의하여 수행되며, 被檢査機關 경영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제공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게 된다. 특별검사 결과는 필요한 조치의 제안과 함께 CDIC 理事會에 상세히 보고되며, 理事會는 CDIC의 취지에 준하여 문제를 검토하고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특별검사의 비용은 가맹기관이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감독당국자들은 CDIC의 감독권한이 더 이상 강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다. 保險解除

CDIC는 가맹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 사실을 加盟機關의 대표에게 통보한 이후 加盟機關이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加盟機關이 피보험예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加盟機關이 지급불능사태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 保險을 취소한다.

가맹기관의 예금보험이 취소된 후에도 被保險預金은 2년 동안 혹은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까지 예금이 보호되며 그 加盟機關은 피보험예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加盟機關으로서의 의무를 지닌다.

5. 最近의 金融改革 方向

캐나다 財務部가 최근에 금융백서에서 발표한 金融改革方向 中 예금보험제도와 관련되는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問題 金融機關에 대한 早期介入의 法制化

① OSFI가 문제 金融機關들에 대해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신속한 조치(prompt actions)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지침(mandate)을 제정하도록 한다.

② 감독당국이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金融機關들에 대해 언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위험평가와 介入過程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한다.

③ 예금자, 보험가입자, 채권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문제 금융기관들의 자본잠식 전에 법적으로 이들 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金融機關의 經營情報에 關한 公示 擴大

① 금융기관들의 經營公示義務를 확대하고 공시되는 정보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한다.

② FISC내 소위원회인 NIC(National Information Committee)로 하여금 각종 금융기관들이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문서를 통일한 보고양식(uniform reporting forms)을 개발하도록 하여 은행들은 1993년부터, 그리고 다른 金融機關들은 1996년부터 이를 사용하여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 預金保險制度 改革

① 現在 全 金融機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을 금

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方案(risk-based premium system)을 검토한다.

② 동일인이 한 기관에 여러 계좌를 갖거나 여러 금융기관들에 계좌를 분산함으로써 예금보험액을 증대시키는 현상(stacking)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라. 金融機關들에 대한 健全經營監督 體系 強化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健全經營監督의 체계를 강화한다.

Ⅳ. 日本의 預金保險制度

1. 預金保險制度의 設立 背景

1950년대 중반 一部 金融機關들의 경영파탄을 계기로 1957년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預金保障基金法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보험가입대상 금융기관을 보통은행을 제외한 상호은행, 신용금고 및 신용조합 등 中小金融機關만으로 한정함으로써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이후 1960년대 후반 금융자율화 추진과정에서 金融機關間 適正 競爭體制의 導入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을 배경으로 1970년 7월 금융제도조사회가 「일반민간금융기관제도의 개편방향 등에 관하여」라는 對政府 답신서를 통해 預金保險制度의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함에 따라 1971년 4월 예금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7월에는 전국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등을 加入對象으로 한 특별법인인 예금보험기구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85년 6월의 「금융자유화의 진전과 그 환경정비」 제안에 따라 1986년 5월에는 預金保險法 등을 개정하여 보험가입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保險機構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는 등 예금자보호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가 대폭 보강되었다.

예금보험기구가 설립되는 데 대해 규모가 작은 金融機關들은 대체로 환영하였으나, 대형 금융기관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대장성이 설립원칙을 밝히자 금융기관들이 서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附錄 Ⅱ〉 참조).

한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이 金融業務와 控除業務를 병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1973년 9월 자본금이 3억엔(정부와 일본은행, 농림중앙금고, 信農連·信渙連 등이 각각 7,500만엔씩을 출자)인 별도의 「농수산업협동조합 저금보험기구」를 설립하였다.

2. 預金保險機構(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가. 設立目的

1971년 4월 預金保險法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금상환 지급정지시 예금자들에 대한 보험금·가불금 지급, 파탄금융기관의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자금원조 등에 의하여 預金者들을 保護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組織

預金保險機構는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 預金保險法에 의거 1971년에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預金保險機構의 산하에는 의사결정기관인 運營委員會(management committee)가 있다. 8명 이내의 운영위원 및 기구의 이사장,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정관·업무방법서의 변경, 보험금 및 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 자금원조에 대한 결정, 보험료율의 변경, 예산·결산 등 기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결을 행한다.

運營委員會의 위원들은 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기구의 이사장이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는 전국은행협회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 전국지방은행협회 회장, 제2지방은행협회 회장, 전국신용금고협회 회장, 전국신용조합중앙협회 회장, 신탁협회 회장, 전국노동금고협회 이사장 등 금융계의 대표자 8인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다.

預金保險機構에는 임원으로서 理事長(일본은행 부총재가 예금보험법 제26조에 의하여 겸임), 理事 및 監事 각 1명이 있으며, 그 밑에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事務局이 설치되어 있다.

運營委員 및 機構의 任職員은 그 직무상 알고 있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또한 형법 및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된다.

다. 資本金

預金保險機構는 1971년 정부 및 일본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이 각각 1억 5천만엔씩을 출자하여 총 4억 5천만엔으로 설립되었으며, 1986년 7월 預金保險機構에 새로 가입한 노동금고가 500만엔을 출자함으로써 1993년 말 현재 4억 5,500만엔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예금보험기구에 출자한 것은 一般의 預金保險機構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또한 예금보험기구는 保險金支給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政令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日本銀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 현재의 借入限度額은 5천억엔으로 되어 있다.

라. 主要業務

預金保險機構의 주요 업무는, 보험료의 수납, 보험금 · 가불금의 지급, 資金援助 및 資金의 管理와 運用이다.

기구는 이러한 업무의 일부를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日本銀行 또는 金融機關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현재 保險料의 수납사무에 있어서는 그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한편, 기구는 業務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金融機關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金融機關은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정부 및 都道府縣 또는 日本銀行은 예금보험기구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기구에 대하여 자료를 교부하거나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保險對象 金融機關(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預金保險制度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日本國內에 本店이 있는 다음의 금융기관들이다.

① 도시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

② 신용금고

③ 신용협동조합

④ 노동금고

이외에 政府關聯 金融機關과 外國銀行의 日本支店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수산가공업협동조합은 '농수산업협동조합 저금보험제도'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1994년 3월 현재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수는 金融制度改革法의 시행으로 신탁은행의 신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에 의해 그 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1993년 3월에 비해 13개가 감소한 1,023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은행 164개사, 신용금고 428개사, 신용조합 384개사, 노동금고 47개사 등이다.

바. 保險對象預金(Insured Deposit)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預金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예금 · 정기적금

② 상호부금

③ 원본의 보전계약을 한 금전신탁(특히, 합동운용지정금전신탁 및 대부신탁)

그러나 국내에 있는 일반 엔화 예금보호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외화예금, 양도성예금, 역외금융시장예금, 공공예금, 일본은행 및 보험가입대상 금융기관들의 예금, 예금보험기구의 예금, 무기명예금, 가명예금, 예금관련 공정거래규정을 위반한 예금 등은 保險金支給 對象에서 제

외된다.

1994년 3월 현재 保險對象預金 殘高는 541조 4,448억엔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은행이 424조 8천억엔으로 78.5%, 신용금고가 85조 7천억엔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조합과 노동금고의 비중은 각각 4.2%와 1.5%에 그치고 있다.

사. 保險金限度額

預金保險機構의 예금자 1인당 보험금 支給限度額은 1993년 말 현재 1천만엔이다. 1971년 제도 발족시에는 100만엔이었던 것이 1974년 6월에 300만엔으로 인상되었다가 그후 1986년 7월 1천만엔으로 다시 인상된 것이다. 현재는 1천만엔 미만 예금자의 비율이 90%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금액기준으로 할 경우 高額預金者의 比重이 이보다는 상당히 높다.

아. 保險料(Insurance Premium)

保險加入對象 금융기관들은 각 영업연도 개시 후 3개월 내에 예금보험기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加入金融機關의 직전 영업연도 말의 피보험예금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971년 預金保險制度 발족시에는 保險料率이 0.006%였으나 1982년에 0.008%로 인상되었으며, 그후 1986년 다시 0.012%로 인상되어 1993년 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보험료율은 예금보험기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장성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것이다. 보험료 수입은 1971년도에는 28억엔에 불과하였으나 1981년에는 136억엔, 1986년에는 407억엔으로 늘어났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보험료 수입이 600억엔을 초과하고 있다.

자. 保險金 및 假拂金(Advanced Payments)의 支給

1) 保險事故에 따른 保險金의 支給

預金保險機構에 의한 보험금지급의 원인이 되는 保險事故에는 다음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은 事故金融機關의 預金者 등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행해진다.

① 第1種 保險事故 : 금융기관들의 預金支拂停止가 되는 경우로서, 예금보험기구는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第2種 保險事故 : 금융기관의 면허취소, 파산선고 및 해산결의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기구는 保險金을 支給해야 한다.

한편, 개별예금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그 예금자가 사고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있는 피보험예금 잔액의 합계액으로서, 예금자 1인당 최고 1천만엔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단, 피보험예금 잔액 산정시는 사고발생일 현재까지 원금에 가산되지 않은 경과이자가 있을 경우 이 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預金者가 金融機關에 대해 차입채무가 있을 경우 그 債務相當額은 공제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금융제도의 불안정을 야기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부실화 금융기관들이 모두 구제됨으로써 保險金이 支給된 事例는 전혀 없다.

2) 假拂金

가불금은 保險金이 支給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견될 경우, 사고금융기관 예금자의 당분간의 생활자금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預金者의 請求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다. 預金保險機構는 가불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불금의 支給與否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불금은 각 예금자의 普通預金殘額에 대하여 1구좌당 최고 20만엔을

한도로 지급된다. 단, 후에 保險金이 支拂되면, 그 가불금 지급금액은 그 예금자의 보험금 금액에서 공제되게 된다.

3) 保險金 및 假拂金 支給의 公告

예금보험기구는 예금자들에게 保險事故에 따른 보험금 및 가불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장소 · 지급기간 · 지급청구절차 등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하며, 사고금융기관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의 각 지점과 사무소에 이 내용을 게시하여 예금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차. 資金援助

資金援助는 사고금융기관에 대해 합병, 영업양도 또는 주식취득 등을 행할 구제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그 합병 등을 용이하게 하도록 救濟金融機關에 대해 예금보험기구가 자금을 증여 · 대부 · 예치하거나 불건전자산을 매입, 또는 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인수 등의 방법에 의해 원조를 행하는 것이다. 1971년 設立 當時에는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파산된 이후에만 자금지원이 가능하였으나, 1986년 法改正을 통해 필요한 경우 預金保險機構의 비용절약을 위해 법적으로 파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資金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업태에 설치되에 있는 소위 相互援助制度의 운영기관이 이러한 합병 등을 원조하기 위해 구제금융기관에 대해 자금대부 또는 예치를 행하는 경우, 預金保險機構는 당해 運營機關에 대하여 자금의 대부, 자금의 예치 또는 채무의 보증에 의한 資金援助를 할 수 있다.

자금원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합병 등에 합의한 救濟金融機關은 대장대신에 의한 합병 등에 관한 적격성의 인정, 혹은 합병 등의 주선을 받은 후에, 예금보험기구에 대하여 資金援助의 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원조의 가부, 자금원조금액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때 운영위원회는 예금보험기구의 재무상태와 기구자산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기구는 이 결정에 따라서 구제금융기관과 자금원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資金援助를 실시한다.

대장대신은 合併 등에 관한 적격성의 인정시 다음 3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당해 合併이 예금자 등의 보호에 공헌하는 지의 여부

② 예금보험기구에 의한 資金援助가 당해 합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③ 당해 合併을 행하지 않아서 파탄금융기관이 해산된 경우, 당해 파탄금융기관이 업무를 행하고 있던 지역에서의 자금의 원활한 수급이 훼손되고, 이용자의 편리에 큰 지장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적격성의 인정에 관계되는 合併 또는 營業讓渡 등을 긴급히 행하지 않을 경우 預金者의 保護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장대신이 긴급성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 金融機關은 대장대신이 지정한 기일까지 合併 또는 營業讓渡 등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경우, 당해 金融機關의 株主總會 承認節次 등은 事後에 행해지게 된다.

카. 餘裕資金의 運用

預金保險機構는 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을 국채, 기타 대장대신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보유, 대장대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의 예금, 기타 대장성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運用하도록 되어 있다(예금보험법 제43조).

1994년 3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구는 責任準備金 8,205억 7천만엔 중 예금으로 2,454억 7천만엔, 유가증권에 5,627억 9천만엔(이 중 국채가

4,576억 2천만엔)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의 運用收益은 예금이자 12억엔, 유가증권 이자가 308억엔에 달하고 있다.

〈表 Ⅱ－25〉 預金保險制度의 擴充 · 整備過程

	1971년 제도발족시	그 후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	
1. 대상금융기관 [법률]	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1986년 7월 노동금고 가입
2. 자본금 [인가]	4억 5,000만엔 (정부 1억 5,000만엔 日銀 1억 5,000만엔 민간 1억 5,000만엔)		1986년 7월 4억 5,500만엔 (노동금고가 500만엔 출자)
3. 보험료율 [인가]	0.006%	1982년도 0.008%	1986년도 0.012%
4. 보험금지불한도액 (예금자1인당) [정령]	100만엔	1974년 6월 300만엔	1986년 7월 1,000만엔
5. 가불금지급제도 [법률] 동한도액(보통예금 1구좌당) [정령]			1986년 7월 도입 20만엔
6. 자금원조제도 [법률]			1986년 7월 도입
7. 차입금 (1) 日銀 차입한도액[정령] (2) 日銀 차입반제를 위한 금융기관차입 [법률]	500억엔		5,000억엔 1986년 도입 도입

資料 : 日本預金保險機構, 『預金保險機構年報 平成5年度』, 1994.

3. 預金保險機構의 最近 運營 現況

가. 現況

1993 회계연도의 日本經濟는 설비투자 및 개인소비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정체기조를 보였고, 고용정세도 악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과 日本銀行에 의한 공공할인율의 인하(2.5%→1.75%) 및 소득세 감세 등 최대 규모의 綜合經濟對策이 施行되었다.

한편, 金融面에서는 1993년 4월에 소위 金融制度改革法이 시행된 이외에, 6월에 정기성 예금금리의 완전자유화가 실현되었고, 또한 유동성 예금금리의 완전자유화도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등 金融自由化의 움직임이 한단계 더 진전되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대책의 일환으로서 금융기관의 불량자산 축소가 긴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장성은 1994년 2월 동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불량자산문제에 대한 행정상의 지침」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기관 경영을 상당히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각 金融機關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한층 경영합리화나 自己資本 擴充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리스크관리와 불량자산 문제에의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다. 거품경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金融環境 變化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실화되는 金融機關이 1980년말 이후 늘어나고 있으나, 당국은 금융기관의 도산이 금융시장 및 금융제도의 安定性에 미칠 影響을 고려하여 지금까지는 합병 또는 資金支援을 통해 이들 기관들을 구제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그 결과 1971년 預金保險制度의 설립 이후 保險金 支給을 요하는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수입보험료 및 기타수익에서 運營費 및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援助를 공제한 잉여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하여 보험금지급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1994년 3월 말 현재 預金保險基金의 殘額은 8,205억 7천만엔이다(〈表 Ⅱ－26〉 참조).

〈表 Ⅱ－26〉 預金保險機構의 貸借對照表

(單位 : 千엔, %)

	1994년 3월말		1993년 3월말	
		구성비		구성비
유동자산				
현금·예금	245,472,029	29.9	244,296,912	31.7
당좌예금	11,182	0.0	4,566	0.0
통지예금	245,460,846	29.9	244,292,345	31.7
유가증권	562,789,535	68.5	514,087,753	66.7
국채	457,624,458	55.7	400,747,881	52.0
지방채	3,706,123	0.5	3,891,253	0.5
정부보증채	32,125,246	3.9	40,114,912	5.2
사업채	69,333,707	8.4	69,333,707	9.0
가불금	17	0.0	37	0.0
미수수익	4,790,393	0.6	4,717,886	0.6
자금원조자산				
대부금	8,000,000	1.0	8,000,000	1.0
고정자산	1,662	0.0	1,751	0.0
총자산	821,053,639	100.0	771,104,341	100.0
유동부채				
가수금	3,509	0.0	1,466	0.0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24,775	0.0	21,809	0.0
자본금	455,000	0.1	455,000	0.1
책임준비금(예금보험기금)	820,570,354	99.9	770,626,065	99.9
총부채 및 총자본	821,053,693	100.0	771,104,341	100.0

資料 : 日本預金保險機構, 『預金保險機構年報 平成5年度』, 1994. 7.

나. 保險對象 金融機關 및 被保險預金의 推移

預金保險對象 金融機關의 수는 1972년 3월에는 총 1,163개사(은행 156, 신용금고 483, 신용협동조합 524)였으나, 이후 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수가 合併 및 他金融機關으로의 업종전환 등으로 크게 줄어 1994년 3월 현재에는 은행 164개사, 신용금고 428개사, 신용협동조합

384개사, 노동금고 47개사로 총 1,023개사를 기록하고 있다(〈表 Ⅱ－27〉 참조). 다음, 1980년대에는 金融自律化와 國際化의 進展에 따른 보험대상외 예금의 증가로 인해 保險加入對象 金融機關들의 총예금에 대한 피보험예금의 비중은 1972년 3월의 89.0%에서 1990년에는 73.2%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 영업규모의 신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1994년 3월에는 76.8%로 다소 높아지고 있다(〈表 Ⅱ－28〉 참조).

1992년 3월 말 현재 보험대상예금의 기관별 구성을 보면 은행금융기관 79.3%, 신용금고 15.2%, 신용협동조합 4.1%, 노동금고 1.4%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금융기관 중에서는 도시은행이 33.3%, 지방은행이 24.5%, 신탁은행 10.9%, 제2지방은행은 9.8%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도시은행의 비중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과 신용금고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表 Ⅱ－29〉 참조).

다. 收益狀況

預金保險機構의 주된 수입원은 수입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의 運用收入으로서, 1993 회계연도의 수입은 보험료수입 637억 9,200만엔에 資金運用收入 320억 500만엔, 유가증권상환이익 2억 4,300만엔, 伊豫銀行에 대한 자금원조 대부금 수취이자 4,000만엔을 더한 총 960억 8,100만엔이다. 이는 1992 회계연도에 비하여 16억 7,000만엔이 증가한 것이다(〈表 Ⅱ－30〉 참조).

한편, 지출 항목으로는 岩手銀行 및 信用組合 大阪弘容에 대한 金錢贈與 459억 9,000만엔(전년도비 259억엔 증가), 일반관리비 2억 3,700만엔(전년도비 6,800만엔 증가) 등이 있었고, 이들 지출액을 수입총액으로부터 차감한 剩餘金은 499억 4,400만엔(전년도비 242억 9,700만엔 감소)이었다(〈表 Ⅱ－30〉 참조). 이것을 연도말에 전액 책임준비금(예금보험기금)에 이월한 결과, 1993년 회계년도말 責任準備金(예금보험기금)의 잔고는 8,205억 7,000만엔이 되었다.

〈表 Ⅱ－27〉 預金保險對象 金融機關數의 推移

(單位 : 個)

	총계	은행금융기관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계	도시은행	지방은행	지방은행 제2차협회 회원은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			
1972.3	1,163	156	14	61	71	7	3	483	524	－
1973.3	1,151	159	14	63	72	7	3	484	508	－
1974.3	1,140	158	13	63	72	7	3	484	498	－
1975.3	1,126	158	13	63	72	7	3	476	492	－
1976.3	1,118	158	13	63	72	7	3	471	489	－
1977.3	1,114	157	13	63	71	7	3	469	488	－
1978.3	1,115	157	13	63	71	7	3	468	490	－
1979.3	1,109	157	13	63	71	7	3	466	486	－
1980.3	1,103	157	13	63	71	7	3	462	484	－
1981.3	1,094	157	13	63	71	7	3	461	476	－
1982.3	1,087	157	13	63	71	7	3	456	474	－
1983.3	1,082	157	13	63	71	7	3	456	469	－
1984.3	1,082	157	13	63	71	7	3	456	469	－
1985.3	1,074	156	13	64	69	7	3	456	462	－
1986.3	1,065	160	13	64	69	11	3	456	449	－
1987.3	1,113	164	13	64	68	16	3	455	447	47
1988.3	1,106	164	13	64	68	16	3	455	440	47
1989.3	1,085	164	13	64	68	16	3	455	419	47
1990.3	1,080	164	13	64	68	16	3	454	415	47
1991.3	1,069	163	12	64	68	16	3	451	408	47
1992.3	1,047	162	11	64	68	16	3	440	398	47
1993.3	1,036	160	11	64	66	16	3	435	394	47
1994.3	1,023	164	11	64	65	21	3	428	384	47

資料 : 日本預金保險機構, 『預金保險機構年報 平成5年度』, 1994. 7.

〈表 Ⅱ－28〉 被保險預金殘高와 責任準備金(預金保險基金) 推移

(單位 : 10億엔, %)

	대상금융기관예금잔액			책임준비금(예금보험기금)		
	총예금 A	피보험예금 B	피보험예금의 비율 (B/A) × 100	잔액 C	총예금에 대한 비율 (C/A) × 100	피보험예금에 대한 비율 (C/B) × 100
1972.3	81,194	72,253	89.0	3	0.004	0.004
1973.3	102,833	90,863	88.4	8	0.008	0.009
1974.3	116,312	104,186	89.6	14	0.012	0.014
1975.3	129,839	116,631	89.8	21	0.017	0.019
1976.3	150,629	136,197	90.4	30	0.020	0.023
1977.3	169,410	153,636	90.7	41	0.024	0.027
1978.3	189,872	172,002	90.6	53	0.028	0.031
1979.3	213,416	192,942	90.4	67	0.032	0.035
1980.3	235,571	209,822	89.1	83	0.035	0.040
1981.3	255,141	227,184	89.0	101	0.040	0.045
1982.3	285,301	251,345	88.1	122	0.043	0.049
1983.3	305,115	270,301	88.6	150	0.049	0.056
1984.3	331,490	290,402	87.6	181	0.055	0.062
1985.3	362,385	315,927	87.2	216	0.060	0.068
1986.3	407,760	339,108	83.2	254	0.062	0.075
1987.3	453,845	366,709	80.8	309	0.068	0.084
1988.3	515,952	404,748	78.4	371	0.072	0.092
1989.3	594,626	446,396	75.1	439	0.074	0.098
1990.3	685,242	501,597	73.2	513	0.075	0.102
1991.3	703,458	526,686	74.9	601	0.085	0.114
1992.3	694,900	526,242	75.7	696	0.100	0.132
1993.3	695,013	531,607	76.5	770	0.111	0.145
1994.3	704,975	541,444	76.8	820	0.116	0.152

註 : 총예금은 예금(정기적금, 부금, 금전신탁, 외화예금 등을 포함)과 양도성예금의 합계이고, 피보험예금은 총예금에서 예금보험대상 제외예금을 차감한 예금액.

資料 : 日本預金保險機構, 『預金保險機構年報 平成5年度』, 1994. 7.

〈表 Ⅱ－29〉 金融機關別 被保險預金殘高의 推移

(單位 : 10億엔, %)

	총계	은행금융기관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계	도시은행	지방은행	지방은행 제2차협회 회원은행	신탁은행	장기신용은행			
1972.3	72,253	60,774	29,188	15,582	7,228	7,511	1,263	9,160	2,317	－
	(100.0)	(84.1)	(40.4)	(21.6)	(10.0)	(10.4)	(1.7)	(12.7)	(3.2)	(－)
1975.3	116,631	96,133	42,209	26,536	13,019	12,312	2,055	16,346	4,151	－
	(100.0)	(82.4)	(36.2)	(22.8)	(11.2)	(10.6)	(1.8)	(14.0)	(3.6)	(－)
1980.3	209,822	171,728	71,684	49,556	23,851	23,544	3,090	30,371	7,722	－
	(100.0)	(81.8)	(34.2)	(23.6)	(11.4)	(11.2)	(1.5)	(14.5)	(3.7)	(－)
1985.3	315,927	258,664	107,585	76,232	33,195	37,522	4,218	45,606	11,656	－
	(100.0)	(81.9)	(34.1)	(24.1)	(10.5)	(11.9)	(1.3)	(14.4)	(3.7)	(－)
1990.3	501,597	405,035	180,209	120,168	47,904	50,384	6,369	70,972	19,172	6,417
	(100.0)	(80.7)	(35.9)	(24.0)	(9.6)	(10.0)	(1.3)	(14.1)	(3.8)	(1.3)
1991.3	526,686	421,729	184,899	125,264	50,722	55,185	5,657	76,734	21,307	6,914
	(100.0)	(80.1)	(35.1)	(23.8)	(9.6)	(10.5)	(1.1)	(14.6)	(4.0)	(1.3)
1992.3	526,242	417,522	175,188	129,149	51,681	57,126	4,377	79,876	21,473	7,370
	(100.0)	(79.3)	(33.3)	(24.5)	(9.8)	(10.9)	(0.8)	(15.2)	(4.1)	(1.4)
1993.3	531,607	418,975	169,169	133,250	52,707	59,378	4,469	82,933	21,854	7,844
	(100.0)	(78.8)	(31.8)	(25.1)	(9.9)	(11.2)	(0.8)	(15.6)	(4.1)	(1.5)
1994.3	541,444	424,776	169,657	137,050	53,879	59,841	4,347	85,735	22,588	8,344
	(100.0)	(78.5)	(31.3)	(25.3)	(10.0)	(11.1)	(0.8)	(15.8)	(4.2)	(1.5)

註 : (　) 안은 구성비임.

資料 : 日本預金保險機構, 『預金保險機構年報 平成5年度』, 1994. 7.

〈表 Ⅱ－30〉 預金保險機構의 損益計算書

(單位 : 千엔, %)

	1993. 4. 1~1994. 3. 31		1992. 4. 1~1993. 3. 31	
		구성비		구성비
경상경비				
일반관리비	237,101	0.2	168,512	0.2
감가상각비	335	0.0	605	0.0
잡비	52	0.0	57	0.0
자금원조비용	45,900,000	47.8	20,000,000	21.2
예금보험기금전입액	49,944,289	52.0	74,241,865	78.6
총비용	96,081,779	100.0	94,411,040	100.0
경상수익				
수입보험료	63,792,840	66.4	63,149,192	66.9
수입이자	1,203,902	1.3	2,222,684	2.4
유가증권이자	30,801,569	32.1	28,412,151	30.1
유가증권상환이익	243,467	0.2	586,981	0.6
잡수입	－	－	30	0.0
자금원조수익	40,000	0.0	40,000	0.0
총수익	96,081,779	100.0	94,411,040	100.0

資料 : 日本預金保險機構, 『預金保險機構年報 平成5年度』, 1994. 7.

라. 資金援助의 實施

1992년도의 자금원조는 4월 1일에 伊豫銀行(東邦相互銀行을 合併)에 대하여 80억엔의 자금을 대부한 것과, 10월 1일에 三和銀行(東洋信用金庫를 合併)에 대하여 200억엔의 금전을 증여한 것 등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993년 회계연도의 자금원조는 다음의 두 회사에 대해 이루어졌다.

① 岩手銀行에 대한 자금원조 : 1993년 6월 10일, 岩手銀行은 釜石信用金庫의 사업인수에 관해 대장대신으로부터 적격성을 인정받아 6월 11일 예금보험기구에 대해 자금원조 신청을 하였다. 기구는 6월 24일 운영

〈表 Ⅱ－31〉 지금까지의 預金保險資金 援助 發動事例

의결일 (실행일)	원조금액	처리방법	파탄금융기관 (자금량)	구제금융기관 (자금량)
91. 10. 28 (92. 4. 1)	대부80억엔 (수익효과 20억엔)	합병	東邦相互銀行 2,131억엔 (92/3말)	伊豫銀行 2조 8,907억엔 (92/3말)
92. 6. 1 (92. 10. 1)	증여 200억엔	大阪府 산하 18개 신용금고에 점포의 대종(30점포 중 25점포)을 양도한 후에 삼화은행과 합병	東洋信用金庫 3,042억엔 (91/3말)	三和銀行 35조 3,497억엔 (91/3말)
93. 6. 24 (93. 10. 1)	증여 260억엔	불량자산의 다른회사 이관, 岩手은행을 포함한 현의 3은행 3금고로 사업의 전부양도를 행한 후에 해산	釜石信用金庫 447억엔 (93/9말)	岩手銀行 1조 6,017억엔 (93/9 말)
93. 7. 28 10. 28 (93. 11. 1)	증여 199억엔 (그중 증액분 9억엔)	불량자산의 다른 회사이관을 행한 후에 합병	大阪府民信用組合 1,232억엔 (93/9말)	信用組合大阪弘容 2,345억엔 (93/9말)
94. 11. 25 (95. 3. 13)	증여 25억엔	불량자산의 다른 회사이관을 행한 후에 합병	信用組合岐阜商銀 136억엔 (94/3말)	信用組合關西興銀 1조 1,365억엔 (94/3말)
95. 2. 9 (95. 3. 20)	증여 400억엔	사업의 전부양도를 행한 후에 해산. 그 후 양수은행은 불량자산을 다른 회사에 이관	東京協和信用組合 1,100억엔(94/3말) 安全信用組合 1,069억엔(94/3말)	東京共同銀行 (신설)

資料 : 日本預金保險機構.

위원회를 개최하여 岩手銀行에 대하여 자금원조를 행할 것을 결정, 25일 자금원조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0월 1일 260억엔의 자금원조를 실시하였다.

② 신용조합 大阪弘容에 대한 자금원조: 1993년 7월 19일 신용조합 大阪弘容은 大阪府民 신용조합과의 합병에 대하여, 대장대신으로부터 적격성을 인정받아 7월 20일 기구에 대해 자금원조를 신청하였다. 기구

는, 28일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용조합 大阪弘容에 대하여 자금원조(190억엔)를 행할 것을 결정하고 29일 자금원조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신용조합 大阪弘容으로부터 자금원조액의 증액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동년 10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원조액을 증액(9억엔)할 것을 결정, 동년 11월 1일 총 199억엔의 자금원조(금전의 증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5년 3월 13일에는 부실화된 신용조합 岐阜商銀의 불량자산을 다른 회사로 이관하고 신용조합 關西興銀이 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25억엔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부실화된 東京協和信用組合과 安全信用組合에 대해서는 인수 금융기관이 나서지 않자 대장성과 일본은행이 東京共同銀行을 신설하고 일본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각각 200억엔씩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실채권 인수자금으로 예금보험기구와 민간 금융기관들이 각각 400억엔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두 신용조합의 구제방식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4. 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險機構

農水産業協同組合貯金保險機構는 협동조합 저금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어협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보험료로 경영파탄 농협·어협 등의 저금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경영곤란 농수산업 협동조합의 합병 등에 대해 적절한 자금원조를 행함으로써 信用秩序의 維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1993년도의 營業現況

1) 保險加入對象 金融機關

1993년 6월 말의 貯金保險對象 組合數는 농협 3,109조합(1992년 6월 말 3,389조합), 어협 등 1,682조합(1992년 6월 말 1,733조합)으로 1992

년 6월에 비하여 농협은 280조합이 감소하였고, 어협 등도 331조합 감소하였다.

저금보험기구는 47信農連, 35信漁連 및 농림중앙금고에 保險料 收納業務 등을 위탁하고 있다.

2) 財務狀況

1993년도의 損益狀況을 보면, 수익면에서는 보험료수입 75억 5,328만엔, 여유금 운용수입 48억 413만엔, 합계 123억 5,741만엔으로 1992년도에 비하여 6억 4,898만엔(비율로는 5.5%)이 증가하였다.

한편, 비용면에서는 1992년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의 지급은 없었지만, 鹿兒島縣 信農連에 대한 자금원조 3억 5,000만엔(1987년도부터 계속)이 있었다. 또한 人件費 및 事務費用 등의 일반관리비는 1억 4,692만엔으로 1992년도에 비하여 898만엔 증가하였다. 그 결과, 收益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은 117억 9,910억엔이었으며, 이를 全額 責任準備金(예금보험기금)으로 이월하였다.

餘裕金 運用은 국채 및 기타 대장대신이 지정한 유가증권의 보유, 대장대신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의 예금 및 금전신탁으로 제한되어 있다(법 제43조).

나. 資金援助 등의 實績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기구는 지금까지 경영곤란 농수산업협동조합의 합병 등에 대한 자금원조를 2회 실시하였다.

① 1987년 8월 1일…鹿兒島市農協을 흡수 합병한 鹿兒島農協(舊田上農協)에의 재정적 지원을 행한 鹿兒島縣 信農連에 대하여 매년 3억 5,000만엔을 증여(1987년부터 계속).

② 1994년 4월 1일…トキワ園藝農協(茨城縣)으로부터 신용사업만 분리하여 신설한 新實信用農協을 흡수합병한 美野里町農協에 대하여 매년 7,500만엔을 증여.

〈表 Ⅱ－32〉 貯金保險機構 貸借對照表 (1994년 3월 31일 현재)

(單位 : 千엔)

자 산		부 채 · 자 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현 금 · 예 금	14,149,812	가 수 금	1,619
유 가 증 권	78,860,000	(고 정 부 채)	
금 융 채	78,860,000	충 당 금	51,366
미 수 수 익	944,788	퇴직급여충당금	51,366
미 수 이 자	944,788	(자 본)	
(고 정 자 산)		자 본 금	300,000
유형고정자산	1,662	정 부 출 자 금	75,000
기 구 · 비 품	1,662	일본은행출자금	75,000
투자및기타자산	16,236	민 간 출 자 금	150,000
부 금 보 증 금	16,236	책 임 준 비 금	93,619,513
합 계	93,972,499	합 계	93,972,499

〈表 Ⅱ－33〉 貯金保險機構 損益計算書 (1993년 4월 1일～1994년 3월 31일)

(單位 : 千엔)

비 용		수 익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일 반 관 리 비	146,921	보 험 업 무 수 입	7,553,286
임 직 원 급 여	98,728	보 험 료	7,553,286
퇴직급여충당금전입	9,842	자 금 운 용 수 입	4,804,132
사 무 비 용	37,998	예 금 이 자	227,635
교 제 비	352	유 가 증 권 이 자	4,576,496
특 별 사 업 비	51,645		
조 사 업 무 비	9,210		
감 가 상 각 비	435		
잡 비	94		
자 금 원 조 비 용	350,000		
금 전 증 여	350,000		
책임준비금전입	11,799,109		
합 계	12,357,418	합 계	12,357,418

5. 預金保險機構와 監督當局과의 關係

가. 預金保險機構와 日本銀行의 關係

預金保險機構는 법적으로는 일본은행과 독립되어 있으나, 제도 및 실무의 여러 측면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일본은행 신용기구국이 兩機關의 協調 창구로 되어 있다.

1) 制度上의 關係

① 出資 : 日本銀行은 예금보험기구(자본금 4억 5,500만엔)에 대해 정부와 同額의 1억 5천만엔을 出資하고 있다.

② 日本銀行 副總裁가 預金保險機構理事長을 法律上 당연히 겸무(예금보험법 제26조)

③ つなぎ融資(입금이 예정되었을 때, 그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받는 융자)制度

: 예금보험기구는 일시적인 기금부족에 직면한 경우,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日本銀行으로부터 차입을 받을 수 있다(동 제42조, 정령에 의한 한도액 5천억엔).

④ 業務委託

: 預金保險機構는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日本銀行에 대해 그 업무의 일부(보험금 지급시 인원지원, 전산처리 등)를 위탁할 수 있다(동 제35조). 현재 법률적으로 日本銀行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없으나, 6번의 구제시 日本銀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業務支援을 받았다.

⑤ 日本銀行에 대한 資料交付 · 閱覽의 要請

: 예금보험기구는, 日本銀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자료의 교부 ·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동 제37조).

2) 實態面의 關係

① 職員의 派遣, 執務室의 提供

－현재 예금보험기구 사무국에 日本銀行職員 2명이 파견되어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예금보험기구 사무국의 집무실은 日本銀行 본점 내에 소재하고 있다.

② 日本銀行 當座預金口座의 提供

: 예금보험기구는 日本銀行本店에 당좌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험료납부, 자금원조의 실행, 여유금의 운용 등을 행할 때의 결제구좌로서 활용하고 있다.

③ 其他 實務面에서의 協力

: 양 기관은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나. 預金保險機構와 政府의 關係

① 出資 : 예금보험기구의 자본금 4억 5,500만엔 중, 1억 5천만엔을 정부가 출자하였다(예금보험법 제5조).

② 대장대신에 의한 監督

: 대장대신은,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보고의 징구, 立入檢査를 행할 수 있다(동 제45조, 제46조).

③ 重要事項에 대한 대장대신의 認可

: 예금보험기구가 업무운영에 관계된 중요사항(아래 ㉮~㉰)을 결정・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업무방법서의 변경(동 제36조, 제47조)

㉯ 예산・자금계획의 작성・변경(동 제39조)

㉰ 운영위원・이사의 임명(동 제17조, 제26조)

㉱ 보험료율의 변경(동 제51조)

㉲ 日本銀行, 가맹금융기관으로부터의 資金의 借入(동 제42조)

㉳ 日本銀行, 가맹금융기관에의 業務委託(동 제35조)

④ 자금원조의 발동에 관한 대장대신의 관여

: 대장대신은 예금보험기구에 의한 자금원조의 발동에 관하여, 사전에 「적격성의 인정」을 행하는 등 일정 역할·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 제61조).

⑤ 예금보험기구의 정부등에 대한 자료교부·열람의 요청

: 예금보험기구는 政府와 都道府縣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자료의 교부·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동 제37조).

6. 日本의 銀行監督

예금보험기구는 가맹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大藏省과 日本銀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장성은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인가권, 검사권과 영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日本銀行은 일본은행법(1조, 13조의 3, 25조)에 의거 신용제도의 保持, 育成을 위해 대장성과 별도로 日本銀行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한 은행[10]에 대한 검사(1928년부터 시행)와 모니터링(상시 파악)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업무에 있어서는 대장성은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의 건전성, 법규위반 여부 등을 주로 검사하는 반면, 日本銀行은 신용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

10)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용금고 및 동 연합회, 전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 노동금고 연합회, 상공조합중앙금고, 농림중앙금고,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단자회사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이외에 최근에 들어서는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각종 金融危險의 관리실태 파악 및 평가, 개선지도 등에 검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의 성격이나, 營業現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日本銀行의 검사(考査)는 2~3년을 주기로 3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장성과 일본은행이 특정 금융기관을 번갈아가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행은 대상 금융기관의 經營實態와 금융시스템 전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적인 각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유동성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의 매일의 자금 수급 동향, 단기자금의 운용 조달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經營의 健全性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預貸動向, 수익동향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고 있다.

또한 日本銀行은 신용제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의 조사·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89년 銀行內에 信用機構局을 신설하였다.

〈表 Ⅱ-34〉 大藏省과 日本銀行의 金融監督 比較

	大 藏 省	日 本 銀 行
檢査 根據	銀行法을 비롯한 金融機關관련 法規	日本銀行法에 따른 개별 金融機關과의 約定
檢査對象 機關	全 金融機關	日本銀行과 當座預金 去來約定을 체결한 金融機關
檢査 目的	預金者의 保護, 金融機關의 公共性 유지 및 공정한 業務運營信用秩序의 維持 및 日本銀行 金融政策의 원활한 수행	
檢査事項	資金의 充實度, 資産의 質, 經營管理, 收益狀況 및 流動性 관리의 파악·點檢	經營實態의 파악, 日本銀行 指示事項의 이행 여부 및 부문별 리스크 관리의 經營指導
檢査擔當部署	大臣官房 金融檢査部[1] (120명, 이 중 검사요원 100명)	考査局(180명, 이 중 검사요원 100명)

註 : 1) 1992년 7월에 설립됨.
資料 : 韓國銀行 東京事務所.

V. EU의 預金保護制度 指針(Directive)

1. 背景

EU는 美國 및 日本에 대항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金融部門의 會員國間 和合(harmonization)과 단일시장(internal market)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회원국간 자본이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1960년대부터 시작된 資本移動의 自由化는 1980년대 후반에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회원국간에 자유롭게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銀行指針」(The Second Banking Directive)에 의하면 EU 내에서는 은행 지점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유롭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投資서비스指針」(The Investment Services Directive)에 따라 EU 내에 투자기관의 지점설립과 서비스 제공도 자유화될 계획이다.

셋째, 이와 같이 金融의 自律化를 통하여 금융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한편 금융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화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간의 균형된 경쟁, 최소한의 자본금 설정 등을 통하여 금융의 안전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金融의 安全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를 위하여「金融機關의 解散에 대한 指針」(The Winding Up Directive) 등외에 「예금자보호에 대한 지침」(The Deposit Guarantee Directive)이 마련되었다.

예금보호지침이 검토된 1980년대 중반에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

란드, 스페인, 영국 등은 예금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었지만[11]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는 예금보호제도가 없는 상태였다. EU는 당시 특정국에서의 은행업 인가권이 EU 전지역에서 인정되는 單一 銀行業 認可主義(single banking license)를 채택하기로 하여 은행지점의 설립이 EU 내에서는 자유롭게 되도록 변화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EU 내에서는 타 회원국에 본점을 둔 은행이 특정 회원국에의 지점 설립이 자유롭게 되면서 은행의 해산에 대한 권한은 原則的으로 은행의 본점을 지닌 會員國의 적합한 기관이 갖도록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預金保護制度를 갖추고 있는 회원국은 갖추고 있지 않는 회원국에 비하여 불공정한 부담을 안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었다. 즉 預金保護制度가 없는 회원국에 은행 지점을 설립하게 되면 본점을 지닌 회원국이 예금보호제도를 갖춘 경우 본점은 예금자 보호의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호제도가 없는 회원국으로의 銀行支店 設立은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금융의 단일시장을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기 힘들 것이다. 또한 EU 내에서 BCCI은행의 파산 등 銀行金融機關의 파산 사례가 발생하자 대부분의 회원국은 금융기관의 파산위험에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預金保護裝置가 EU 금융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12]. 이에 따라 EU는 회원국간에 예금보호제도의 화합을 꾀하게 되었다.

EU는 예금보호제도의 화합을 검토한 초기에 해당되는 1987년에 회원국의 통일된 예금보호제도 도입을 拘束力이 없는 勸告(recommendation)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EU는 각국의 預金保護制度가 통일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쉽게 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1987년에 제시된 권고에서 개괄적인 기본

---

11) 주요국별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국별 설명을 참조.

12) 예금보호제도와 금융안전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本 報告書의 第1篇을 참조.

사항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이미 예금보호제도를 갖춘 회원국은 1988년까지는 제시된 사항을 수용하기를 권고하였으며 그 밖의 회원국은 1990년 이전에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제시된 사항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같이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채택한 것은 會員國의 自發的인 預金保護制度의 導入과 예금보호제도 운영의 실제 경험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점차 은행지침 등 관련 사항이 구속력을 지닌 지침[13]의 형태를 띠면서 예금보호제도 화합도 指針의 型式으로 채택되었다. 그 밖에 회원국간에 예금보호제도가 일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는 통일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도 預金保護의 指針을 채택하게 된 이유이다. 1993년부터 시행된 銀行指針에 따라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에 대한 감독은 본국(home country)의 監督機關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감독제도와 예금보호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타 회원국 지점의 預金保護制度도 본국의 제도를 따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본국의 預金保護制度가 적용됨에 따라 회원국간의 예금보호제도에 차이가 클 경우 은행간의 경쟁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영향으로 자국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預金保護機能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회원국간에 예금보호제도가 통일될 필요성이 커 구속력이 있는 지침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預金保護指針은 1992년 4월에 마련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預金保護指針이 완성되었다.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제정, 개정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늦어도 1995년 7월부터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는 이 지침의 내용을 살펴본다.

---

13) 지침은 EU의 각료 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혹은 위원회(The Commission)에 의하여 채택되어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회원국은 별도의 입법과정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고 수정하여 지침을 이행한다.

2. 保護 預金額

EU의 예금보호지침에 의하면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예금지급불능시에 회원국이 보호해야할 예금액의 최저액을 제시하였다. 현재 최저 보호예금액은 2만ECU(1995년 6월 현재 1ECU=1.3121US $)로 정하여졌다. 즉, 회원국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예금지급불능시에 적어도 예금을 2만ECU 이상 보호하는 제도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현재 最低 保護預金額이 1만 5천 ECU 이상인 회원국은 1999년까지 그 保護預金額을 유지할 수 있다. 1만 5천ECU는 예금보호제도가 있는 회원국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동시에 회원국은 예금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共同預金保護制度(coinsurance system)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이미 共同預金保護制度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를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共同預金保護制度를 도입함으로써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14]. 다만 예금액의 90% 이상이 보호되고 예금자의 책임은 예금액의 10% 미만에 그쳐야 한다. 이 경우에도 최저 보호예금액은 2만ECU 이상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예금액의 90%가 보호될 경우 최저 보호예금액은 2만 2,222ECU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호예금액의 算定基準은 특정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個別預金者를 대상으로 개별 예금자의 총예금이다. 이에 따라 특정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그 금융기관의 EU내 전 지점에 個別 預金者가 회원국의 통화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예금액을 합산하여 保護預金額이 산정된다.

---

14) 자세한 설명은 本 報告書의 第1篇 참조.

3. 保護對象 預金 및 預金者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과의 正常的인 去來에서 발생하는 계좌상 또는 일시적인 잔고, 기타 예금수취기관이 법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잔고와 信用機關이 발행한 증서에 의한 債務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보호대상 예금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해석되지만 금융기관간 예금, 임직원 및 주주 예금으로 해석되는 예금, 돈 세탁 등을 위한 不法 預金은 EU의 預金保護指針에 의한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보험 인수금, 정부예금, 공동투자 인수금, 연금, 계열회사 및 관련회사 예금, 기명되지 않은 예금, 비정상적인 예금, 자기 예금으로 해석되는 예금 등도 EU 預金保護指針에 의한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원국 통화와 ECU 이외의 통화에 의한 예금은 지침에 의한 保護對象 預金이 아니다.

2인 이상 공동예금자 계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예금자별 지분에 따라 예금이 배분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금은 공동예금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회원국은 공동예금자를 1인 예금자로 취급할 수도 있다. 명확히 實質的인 權利를 소유한 예금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예금자가 보호된다.

4. 預金保護制度의 運營

EU 지침에 의하면 회원국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형성된 1개 이상의 預金保護制度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금취급 금융기관은 모두 預金保護制度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특정 회원국의 預金保護制度는 타 회원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지점에도 적용된다. 다만 1999년까지 보호예금의 상한액, 종류 등은 營業國 預金保護制度의 보호예금 상한액, 종류 등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2000년 이후에는 이 제한이 재검토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營業國 預金保

護制度의 보호예금 수준, 종류 등이 본국에 비하여 보다 확대되어 있는 경우 타 회원국의 지점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영업국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회원국인 지점도 EU 지침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국 예금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예금자를 보호하여 金融의 安全을 도모하고 모든 은행에게 동등한 경쟁여건을 제공하면서 單一 金融市場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1987년 권고사항으로 예금보호제도가 제안될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예금보호제도는 타 회원국에 본점을 둔 예금취급기관의 지점 예금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지침과는 달리 지점의 예금보호는 본국이 아닌 영업국의 제도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預金收取機關의 破産事例가 발생하면서 지점에 대한 감독은 영업국보다는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감독은 營業國 主義(host country basis)가 아닌 本國 主義(home country basis)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기능과 예금보호기능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預金保護制度도 本國主義의 원칙을 따르게 된 것이다.

한편 보호예금은 예금지급 불능시에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예금지급 불능은 원칙적으로 監督機關 또는 法院으로부터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는 것을 의미하여 감독기관은 예금지급이 거절된 후 적어도 21일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預金支給 不能의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預金支給이 최대한 3개월 단위로 2차례 이내에서 연기될 수 있다.

그 밖에 회원국은 예금자가 預金保護制度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대선전으로 인하여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 예금자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預金保護에 관련된 情報의 利用이 제약될 수 있다.

5. EU의 相互主義(reciprocity)

EU는 EU의 金融市場이 單一化됨에 따라 비회원국의 금융기관은 EU 금융시장에의 진입과 업무가 자유롭게 되는 반면에 회원국의 금융기관은 비회원국의 금융시장에의 진입과 업무가 제약을 받게되어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불리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은행 지침, 투자서비스 지침 등에서 非會員國의 金融機關이 EU 금융시장에서 영업하고자 할 경우 相互主義 原則을 채택하였다. EU는 이와 같은 상호주의가 EU 금융시장에의 진입을 제약하기보다는 비회원국 금융시장의 개방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相互主義를 비회원국 금융기관의 지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現地法人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EU가 '單一 認許可(single license)主義'에 의하여 비회원국의 지점은 EU의 단일 금융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EU는 효과적으로 相互主義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비회원국 금융기관의 진입, 비회원국 금융시장의 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회원국이 회원국에 대하여 相互主義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EU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상호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해당 비회원국과 協商할 權限을 가진다.

EU는 상호주의를 두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同等한 市場 接近(comparable market access)'이며 다른 하나는 '自國民 待遇(national treatment)'이다. 동등한 시장 접근은 비회원국 시장에서의 회원국 금융기관에 대한 대우와 EU 시장에서의 비회원국 금융기관에 대한 대우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EU의 규제가 비교의 기준이 된다. 한편 자국민 대우는 비회원국의 규제가 비교의 기준이 되어 비회원국 金融市場에서 會員國 金融機關과 自國 金融機關과의 競爭與件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등한 시장 접근은 자국민 대우에 비하여 보다 넓은 相互主義의 意味를 지닌다.

〈表 Ⅱ－35〉 EU의 金融環境[1)]

		은행수 (個)	은행 지점수(個)	총자산 (10億 달러)	1000大[2)] 은행수(個)	인구 (百萬名)	GNP (10億달러)
벨기에	all banks	133	na	628.89	10	10.05	202.66
덴마크	commercial & savings banks	112	2340	153.82	9	5.19	124.70
프랑스	all banks	1635	26291	2626.62	24	57.66	1193.62
	commercial banks	415	10451	1559.20			
	large commercial banks	5	na	1145.02			
	savings banks	35	4308	157.53			
	cooperative banks	150	9903	611.87			
	other banks	1035	1629	498.01			
독일	all banks	3749	44922	3157.74	82	81.19	1633.55
	commercial banks	270	7331	1055.46			
	large commercial banks	3	3598	468.16			
	regional giro institutions	13	436	753.47			
	savings banks	704	19510	771.02			
	regional institutions of cooperative banks	4	46	132.98			
	cooperative banks	2778	17599	444.81			
그리스	commercial banks	21	1212	51.58	8	10.35	67.63
	large commercial banks	4	843	42.80			
아일랜드		na	na	na	3	3.56	20.25
이탈리아	commercial banks	176	14417	826.46	79	57.07	na
	large commercial banks	7	5808	376.05			
	savings banks	75	5553	265.85			
룩셈부르크	commercial banks	218	306	443.67	4	0.38	na
네덜란드	all banks	175	7167	702.72	10	15.30	294.45
포르투갈	all banks	42	3144	118.23	10	9.86	－
스페인	all banks	316	34731	726.83	35	39.14	423.70
	commercial banks	164	17455	469.17			
	savings banks	52	14223	236.69			
	cooperative banks	100	3053	20.98			
영국	commercial banks	37	11455	463.99	35	57.92	426.86
	large commercial banks	376	na	1802.26			
	mutual savings banks	368	na	131.86			
한국[3)]	commercial banks	97	3754	317.03	29	44.06	326.52
	specialized banks	5	2222	92.45			

註 : 1) 1993년 말 기준.
2) 1995년 7월 기준.
3) 은행(지점)수 및 총자산액은 1994년말 기준, 외은 국내지점 포함.

資料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5. 6.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March 1995.
OECD, *Bank Profitability-Financial Statesments of Banks[1979～1993]*, 1995.
Philip Molyneux, *Directory European Banking and Financial Associations*, Woodhead-Faulkner Ltd., 1990.
The Banker, July 1995.

〈表 Ⅱ－36〉 EU의 預金保險 形態

	운용기관명칭	도입시기	가입형태	운영형태
벨 기 에	Rediscount & Guarantee Institute	1985	자발적	관민기관
덴 마 크	Deposit Guarantee Fund	1987	강제적	민간기관
프 랑 스	Deposit Guarantee Fund	1980	강제적	민간기관
독 일	Deposit Security Fund	1976	강제적	민간기관
아일랜드	Deposit Protection Account	1989	강제적	공적기관
이탈리아	Interbank Deposit Protection Fund	1987	자발적	민간기관
네덜란드	Collective Guarantee Scheme	1979	강제적	관민기관
스 페 인	Deposit Guarantee Fund	1977	자발적	공적기관
영 국	Deposit Protection Fund	1979	강제적	관민기관

資料 : 본문 참고문헌 참조.

〈表 Ⅱ－37〉 EU의 保險金 支給限度와 保險料(1994년 말 현재)[1]

(單位 : %)

	지급한도 (자국통화)	(미국달러기준[2])	보험료
벨 기 에	France 500,000	15,705	특정부채의 0.02%
덴 마 크	Krone 250,000	41,098	총예금의 0.2% 이내
프 랑 스	Franc 400,000	74,822	無基金(소은행:총예금의 1% 이하)
독 일	자본금의 30%	n.a.	총예금의 0.03%
아일랜드	Punt 첫 5,000의 80%, 다음 5,000의 70%, 그 다음 5,000의 50%	15,471	총예금의 0.2%
이탈리아	Lira 첫 2억의 100%, 다음 8억의 75%	490,880	無基金
네덜란드	Guilder 40,000	23,053	無基金
스 페 인	Peseta 1,500,000	11,386	총예금의 0.2%
영 국	Pound 20,000 이내 예금의 75%	23,438	보험대상예금의 0.3% 이하

註 : 1) EU국의 경우 1995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EU 지침(Directive)'에 의거하여 내용이 변동될 것임.
2) 1994년 말 현재 환율 적용.

資料 : 본문 참고문헌 참조.

〈表 Ⅱ－38〉 EU의 預金保險對象(1994년 말 현재)[1),2)]

(單位 : %)

	은행간 예금	비거주자 예금	외화 예금	외국은행 국내지점	자국은행 외국지점	이자
벨 기 에	N	Y	N	N	N	Y
덴 마 크	–	–	–	–	–	–
프 랑 스	N	Y	N	Y	N	Y
독 일	N	Y	Y	Y	Y	Y
아 일 랜 드	–	–	P	–	–	Y
이 탈 리 아	N	Y	Y	3)	Y	Y
네 덜 란 드	N	Y	Y	Y	N	Y
스 페 인	N	Y	N	–	N	Y
영 국	N	Y	N	Y	N	Y

註 : 1) Y: 부보대상, N: 부보대상, 아님 P: 조건부 부보, –: 자료없음.
2) 〈表 Ⅱ－37〉의 註 1) 참조.
3) 가능하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음.
資料 : 본문 참고문헌 참조.

6. EU의 銀行監督

가. 預金保護制度와 銀行監督

예금보호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기관의 도산이 預金引出事態에 따른 여타 은행들의 連鎖倒産을 야기할 가능성을 축소시킴으로써 金融制度의 安全性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규모가 큰 은행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제도의 基金만으로는 預金者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제도의 존재를 악용하여 高危險－高收益을 추구하는 道德的 危險問題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호제도가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날로 악화되는 金融環境 속에서 收益性 維持와 生存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과도

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金融監督 當局이 金融機關들의 자산의 건전성, 자기자본 수준, 수익성, 내부의 위험통제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不實化의 조짐이 보이는 문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健全經營監督(prudential supervision)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U의 경우 金融市場의 통합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회원국가들간에 금융기관들의 相互進出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개별 회원국의 감독체계 및 감독기준의 強度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서비스의 교류가 확대되고 그 결과 支店이나 子會社를 통해 다수의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多國籍 金融機關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金融機關에 대한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BCCI 사건에서 보듯이 한 金融機關의 도산이 그 금융기관의 소재국뿐만 아니라 영업점이 있는 모든 국가들의 금융제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EC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에 들어 預金保護制度의 정비와 함께 회원국들의 금융기관 인가기준을 통일하고 감독기준상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왔다.

銀行監督의 주된 목적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 예금자보호, 금융기관들의 효율적인 기능수행 보장 등에 있으며, 이 밖에 시장실패의 부정적 효과를 축소하고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銀行監督이 이용되고 있다. 金融監督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金融制度에 대한 일반의 신인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감독은 시장규율의 적용확대와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監督水準을 결정함에 있어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운영의 묘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유럽에서의 銀行監督制度上의 變化와 EMU(European Monetary Union) 형성과정에서의 監督制度의 變化方向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EU 金融市場의 統合

EC 위원회(Commission)는 1985년 域內市場(Internal Market)에 관한 白書를 작성하였으며, 1986년의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에서는 은행서비스 자유화를 자본자유화와 연결시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어 1992년에 수립된 域內市場 프로그램(Internal Market Programme)에는 금융기관의 설립과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자유화하고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EC 역내에서 국경에 관계없이 금융서비스의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EMU(European Monetary Union)를 형성하기 위한 2단계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중에는 종전 會員國 中央銀行 總裁 委員會(Committee of Central Bank Governors)의 기능을 EMI (European Monetary Institute)가 인수하여 회원국들의 通貨信用政策을 조정하고 건전경영 감독의 시행과 금융제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관해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부터(늦어질 경우 1999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3단계에서는 유럽中央銀行(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CB+NCBs)이 EC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회원국들의 보유 외환 관리, 지급결제제도 개선 등의 基本目標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외에 ECB가 건전경영 감독에 관한 자문과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럽中央銀行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독관련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EMU 형성 과정에서 회원국들간에 이행단계에 차이가 있을 경우 ECB 내에 一般理事會(General Council)를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監督 調整問題를 담당하도록 하며, 모든 회원국이 4단계로 진입한 경우에는 政策理事會(Governing Council)와 執行委員會(Executive Board)가 모든 기능을 승계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이 EC 금융시장이 단계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銀行

産業에서의 경쟁도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됨으로써 金融機關間 구분이 더욱 不分明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會員國들의 銀行法 調和

이처럼 국가간 금융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단일 금융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것과는 별도로 각국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경영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유럽에서는 회원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金融規制 완화에 따른 金融制度의 不安全性 擴大에 대처하기 위해 공히 金融監督을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간에는 금융감독기준상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감독체계에 있어서도 中央銀行이 감독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나라들(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있지만, 독일 · 프랑스 · 벨기에처럼 별도의 감독기관이 설립된 국가들도 있는 등 감독체계와 방법상의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단일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감독기준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정합성(consistenc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EC 국가들의 감독기준 및 감독시행체계를 동일화하는 작업은 각국의 金融制度 및 同一化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에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에 따라 실제에 있어서는 감독의 근거가 되는 銀行法을 조화시키려는 EC 회원국가들의 노력은 個別國家의 獨自的 銀行制度를 부인하거나 모든 중요한 면에서 銀行制度를 直接的으로 同一化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른 회원국가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은행들을 相互 認定(mutual recognition)한다는 개념에 근거하는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92년 제정된 地域市場 프로그램(Internal Market Programme)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제정된 약 300개의 指針

들(Directives)은 회원국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Commission)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自國 銀行制度의 기본적 틀은 유지하면서도 지침들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EC 共同市場의 형성으로 금융기관들이 각 회원국가에서 상호 인정될 경우 각 회원국들은 自國 金融機關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은행감독의 기준이 되는 각국 은행법의 상당부분을 다른 회원국들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巨視的 通貨信用政策의 수행과 微視的 金融機關의 감독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회원국들의 감독을 동일한 기준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各 會員國 監督當局의 권한을 별도로 설립된 EC 감독기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권한집중을 피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감독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EU감독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집합체로서의 입장은 각 會員國이 監督에 관한 각종 規定이나 指針들을 제대로 준수하는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회원국들의 監督當局에 일임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健全經營監督 強化

1) 概觀

유럽 금융제도가 통합되고 보다 복잡해질수록 금융위기가 EC국가들에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해당국가들이 부담하는 經濟的 費用 또한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金融自由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銀行制度의 건전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건전경영감독 기준들을 근접시키려는 목적으로 1977년 1차 銀行指針(First Banking Directive)이 제정되었고, 1983년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그룹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EC 통합지침(Consolidation Directive)을 채택하였으며, 1988년 바젤위원회

(Basle Committee)가 자본협정(Capital Accord)을 제정한 것도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움직임 중의 하나였다.

한편 1989년 12월 30일 공표된 2차 銀行指針(Second Banking Directive)은 첫째, 금융기관의 설립과 EC 지역내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障壁의 제거, 둘째, 한 金融機關이 自國에서 인가를 받을 경우 어느 회원국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單一銀行認可」(single banking license)의 실현, 셋째, 각 회원국 감독당국들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주요한 監督基準上의 差異 縮小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발표된 지침들보다 단일 은행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신축적이고도 現實的인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즉,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concept)의 채택을 통해 진정한 共同銀行市場의 형성을 추구하면서, 특정 회원국이 자국의 공공정책이나 공익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국간 금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차별적인 장벽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C 역내 은행시장 전역에 기본적인 건전경영감독망을 형성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감독기준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에는 單一 金融市場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金融機關의 監督을 해당기관의 本國(home state) 감독당국이 맡도록 하는 원칙(principle of home country supervisory control)이 제시되어 있으며[15], 이 원칙이 효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기준에 의한 감독지침(92/30/EEC)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金融機關들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을 적정수준 이하로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1992년 말 신용위험의 축소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신용

---

15) 자국 감독기관이 해외지점에 대한 감독의 우선권을 가질 경우 BCCI사고에서 보듯이 해외지점의 영업비중이 본국에서의 영업보다 클 경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進出對象國家가 다른 회원국의 감독능력을 「모니터링」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large exposure)에 관한 지침(92/121/EEC)을 제정하여 1994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1993년초에 채택된 市場危險에 관한 指針(Capital Adequacy Directive로 불려짐)(93/6/EEC)은 1995년 7월 1일부터, 이와 관련된 시행규정은 1995년말부터 시행에 옮기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바젤委員會(Basle Committee)가 1990년 바젤협정(Basle Concordat)을 개정하여 국가들간의 보다 원활한 정보교환을 촉구하고, 1993년 봄에는 市場危險(market risk)의 측정에 관한 권고안을, 그리고 1994년 7월에는 派生金融商品市場(derivatives markets)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한 것도 관련국들의 金融監督의 질적인 차이를 축소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 銀行監督規程의 조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국가별로 감독상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監督機關(competent authorities로 지칭)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認可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16]이 EC 지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自國 監督當局에게 사전에 통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信用機關의 지점설치 요청을 검토한 후 인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支店設置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1993년 이후에는 특정 신용기관이 자국에서 인가를 취득한 경우 EC 지역 내의 어떤 국가에도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진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進出對象國家(host country)가 지점에 대한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지점설치를 요청하는 金融機關이 소속된 국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

16) 일반으로부터 예금 또는 기타 부채(repayable funds)를 인수하는 한편 자기계정으로 신용을 공여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한다. 만일 進出對象國家의 감독당국이 타 회원국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건전경영감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認可取消를 포함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銀行株式 所有

本國(home state)의 감독당국은 인가를 내주기 전에 해당 신용기관의 소유자와 자본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保有(qualified holding)한 자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信用機關들로 하여금 대주주들의 명단 및 지분율을 최소한 年 1회 이상 감독당국에 통고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信用機關에 대한 10%이상의 지분의 직·간접 취득, 지분율이 의결권이나 자본의 20%, 33%, 50%를 초과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 자회사의 취득 등은 사전에 관련 감독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所有株나 大株主들의 기관경영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健全經營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17] 관련자들에 대한 권고나 이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遂行可能業務

兼業主義 모형에 따라 商業銀行業務와 投資銀行業務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諮問委員會(Advisory Committee)의 자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EC가 허용하는 신용기관의 수행가능업무는 다음과 같다.

- 리스업무(financial leasing)
- 예금이체·송금(money transmission services)
- 결제수단 발행 및 관리
- 보증 및 신용공여 약속 (guarantees and commitments)

---

17) 지배력 남용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단기금융상품, 외환, 금융선물 · 옵션, 양도성 증권의 자기거래 또는 위탁거래
- 주식발행이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의 참여
- 자본구조, 산업전략,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조언, M&A 관련 자문 및 서비스 제공
- money broking
- portfolio management and advice
- safekeeping and administration of securities
- 신용조회서비스(credit reference services)
- safe custody services

한편, 신용기관이 아닌 회사의 株式所有는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들 非信用機關에 대한 총지분이 자기자본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構造調整(financial restructuring)을 위한 단기 보유나 타인을 위해 기관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이 限度超過分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감독당국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會員國 監督當局들간의 協調

EC 회원국들간의 監督基準 조화노력은 EC 회원국 중 7개국이 바젤 위원회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同 委員會의 監督基準 統一化 노력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C의 협상그룹(Contact Group)[18]은 위원회(Commission)와 바젤 위원회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돕고 정보공유를 증진하며, 건전경영감독 문제들에 관한 회원국들의 입장을 조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감독상의 불일치를 축소하는 데

18) 회원국 감독당국의 대표들과 관련 Commission Directorates의 대표로 구성되며, 매년 4번 회원국중의 한 곳에서 회동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1977년 1차 은행지침 제정시 설립된 EC 銀行諮問委員會(Banking Advisory Committee)는 各 會員國 및 위원회(Commission)로 부터 최고 3명의 대표가 파견되어 구성된 기구로 금융기관의 流動性, 收益性, 資本比率 등에 관한 EC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6) 域外 金融機關들에 대한 待遇

EC 기관들이 비회원국가들에서 市場接近(market access)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Commission)가 EC 이사회(Council)에 대해 해당 국가들과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접근상의 差別待遇와 內國民 待遇(national treatment)가 미흡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위원회(Commission)가 직접 협상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회원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유럽이 근거지가 아닌 대부분의 세계적 대형은행들에게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며, 규모가 작은 제3국 은행들이 유럽에 처음 진출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獨逸의 預金保護制度

1. 預金保護制度의 設立 背景

독일에는 민간 상업은행그룹, 저축은행그룹 및 신용공동조합그룹 등 3종류의 兼業銀行그룹이 있다[1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金融機關間 업무의 同質化가 진전되면서 공영 금융기관인 貯蓄銀行(sparkassen)은 법인세, 사업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과 저축은행채권에 대한 地方 公共團體의 보증, 地方 公共團體와 民間 商業銀行間의 거래제한 등과 같은 법적·행정적 우대 조치에 힘입어 급성장한 반면, 민간 상업은행의 지위는 相對的으로 크게 低下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상업은행들은 1960년대 들어 금융기관간에 공정한 경쟁 여건의 조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민간 상업은행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預金保護制度의 導入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방민간은행협회(bundesverband des privaten bankgewerbes)측에서는 공적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1966년에 민간 상업은행만의 독자적인 예금보호제도로서 共同基金(gemeinschaftsfonds)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독일의 공동기금은 英國의 경우처럼 은행의 도산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라 은행의 도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경쟁상의 불리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

19) 겸업은행이 아닌 전문화 은행(specialized banks)으로는 Mortgage Banks, Installment Finance Banks, Building Societies, Consumer Credit Banks, Investment Companies, Securities Clearance Banks, Guarantee Banks 등이 있다.

이어 1967년 4월 금리조정령의 폐지로 예대금리가 전면 자유화된 후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한층 심화되면서 정부에 의한 預金保護制度의 強化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73~75년중 「헬슈타트」은행을 비롯한 12개 개인은행의 경영파탄이 일어나자 정부는 다시 공적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民間 商業銀行측은 행정권의 개입 및 은행감독의 중복 가능성 등을 들어 공적 예금보호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976년 5월 보험금 지급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공동기금을 확충·개편하여 預金保護基金(einlagensicherungsfonds: deposit security fund)을 설립하였다.

한편, 독일에는 貯蓄銀行그룹과 信用共同組合그룹을 위한 별도의 예금보호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저축은행그룹은 지역협회에 의해 전면적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신용공동조합도 연방협회에 의하여 그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貯蓄銀行 保護基金(Savings Bank Security Fund: SBSF)은 1969년에, 信用共同組合 保護基金(Credit Cooperatives Security Scheme: CCSS)은 1976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이들 각 기금은 예금자보호보다는 오히려 개개의 加盟金融機關의 保護에 중점을 두고 예방 활동 및 대부, 보조, 보증 등을 행하고 있다[20].

2. 預金保護委員會

가. 組織

預金保護委員會는 은행연합회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3大은행의 대표 3인, 지방은행들과 기타 기관들의 대표 3인, 개인은행의 대표 3인 등 총

---

20) 본 보고서는 민간 상업은행을 위한 예금보호기금(deposit security fund)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대표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선임된다. 委員들은 銀行聯合會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 중에서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된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議長 또는 副議長(의장 불참석시)이 할 수 있으며, 특정 은행그룹대표 전원의 소집 요청이 있어야 하고, 2/3 이상 출석시 유효하다. 이 밖에 預金保護委員會 職員으로는 은행연합회 내에 2명의 부장(directors)과 5명의 회계사가 근무하고 있다.

나. 主要 業務

預金保護委員會는 不實金融機關에 대한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기금 자산의 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다. 또한,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은행연합회의 經營理事會(the board of management)가 부여한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은행연합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이사회가 預金保護委員會의 기능을 인수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없지만, 銀行聯合會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은행으로부터 모든 관련 정보를 징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에 대해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나 관련 자료 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預金保護基金

獨逸 民間 商業銀行그룹에 대한 예금보호제도는 은행법이나 예금보호 관련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제도가 아니라 민간 상업은행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自律的 制度라는 데 특색이 있다. 은행연합회 당국자들은 公的 預金保護制度 民間 機構가 덜 권위주의적이고 상황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회원 은행들의 편의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預金保護基金의 주된 業務

預金保護基金은 가입 은행에 대한 예금보호업무와 경영부실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지급 보증, 채무 인수 등의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預金保護基金의 주된 목적은 경영난에 봉착하거나 봉착할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에 대한 金融支援 提供과 民營銀行에 대한 일반의 신인도(public confidence) 저하 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加入對象 金融機關

가입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聯邦 民間銀行協會에 가입하고 있는 11개 주은행협회, 민간저당은행협회 또는 선박저당은행협회의 회원은행인 대은행, 지방은행, 개인은행, 외국은행지점, 민간저당은행 및 선박저당은행 등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① 은행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 책임자기자본(납입자본금 +적립금－자기주식 보유액)보유

② 은행업에 경험을 가진 2명 이상의 전문경영인 확보

③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성과와 유동성의 유지 및 은행업 준수

④ 은행검사협회(Auditing Association of German Banks)[21]

또한 加入對象銀行의 基金加入은 任意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일부 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 민간은행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현재 300여개 은행에 이르고 있다. EU회원국의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자국 예금보호제도가 독일지점의 예금을 보호하고 1994년 EC 預金保護指針의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預金保險機構에 참여하지 않아도

---

21) 은행연합회와는 완전히 분리된 기관으로 회원은행의 연간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예금보험기금을 위해 보험가입 은행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100명의 직원 중 60여명이 검사직(auditors)이다.

무방하다. 은행연합회의 경영이사회는 예금보험에 기가입한 은행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預金保險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보험해지의 사례가 없다[22].

다. 保護對象預金

保護對象預金은 非金融機關으로부터의 모든 예금과 투자신탁회사 및 수탁은행으로부터의 信託資金으로 되어 있다. 신탁자금의 경우에는 開放型 信託(open-end trust)은 수익자(beneficiary)가, 閉鎖型 信託(close-end trust)은 위탁자(trustee)가 보상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 예금 및 당해 은행의 임직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과 대주주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나 은행의 外國 關聯會社(foreign affiliates)의 부채도 保護對象에서 제외된다.

라. 保險金 限度額 및 支給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保險金은 保護對象預金의 원리금에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차감한 순예금액 및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공동명의예금(joint accounts)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共同名義者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1966년 설립시에는 예금구좌당 1만마르크까지 보호를 받았으나 이후 보험금 한도가 최고 2만마르크까지로 변경되었다. 1976년에 현재의 수준인 예금자 1인당 도산은행 자기자본(불입기금 및 준비금)의 30% 상당액까지로 보험금한도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거액예금을 제외한 個人預金者의 預金全額을 保護

---

22) 경영이사회의 보험해지 결정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주주총회에서 투표수의 2/3 이상 반대할 경우 보험해지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하고 있는 것이며[23], 은행에게는 건전경영의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일반 예금자에게 은행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政府 또는 中央銀行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 保險金 지급방식하에서는 대은행이 도산할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預金保護基金이 은행에 대한 공신력 유지를 위해 문제은행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預金保護基金이 확충 개편되어 설립된 1976년 이전에는 공동기금이 26차례 문제은행 해결에 개입하였으며, 1976년 이후 현재까지는 기금이 28회에 걸쳐 도산위기에 빠진 은행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預金保護基金의 財源 및 保險料

예금보호기금의 재원은 共同基金으로부터 승계한 자금, 加入銀行의 출연금 및 餘裕資金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출연금은 다시 정규출연금과 특별출연금으로 구분된다. 설립당시 정규 출연금은 금융기관 부채의 0.02%이었으나, 은행도산이 많았던 1984년에는 동비율을 0.06%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현행 정규출연금은 원칙적으로 각 은행의 최근 결산일 현재 非金融機關 예금액(liabilities to customers)의 0.03% 해당액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신규가입은행(설립 후 3년 이상 경과)은 해당년도의 정기 보험료이외에 대상예금의 0.09%를 일시불로 출연하도록

23) 저축은행기금(SBSF)과 신용공동조합기금(CCSS)의 경우에는 Deposits와 Credits의 100%를 보호.

되어 있고, 3년 미만의 신규가입은행은 가입시 資本金(liable capital)의 0.12% 이상(2만 5,000마르크 이상)을 보험료로 출연해야 하며, 3년이 지난 다음에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EU회원국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非金融機關 預金負債에서 自國 預金保護制度에서 보호하는 예금을 공제한 금액의 0.03%를 정규 출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의 경영이사회는 예금보험기금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정규 출연금의 징수를 정지할 수 있다. 또한 기금재원이 부족하거나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출연금을 2배까지 증액하거나 연 1회에 한해 정규출연금 범위내에서 특별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4]. 형성된 기금은 주로 고정금리부 예금이나 유가증권(주식 제외)에 운용되며, 운용수익은 기금에 귀속된다.

한편, 銀行聯合會는 예금보험기금 부족시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차입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預金保險基金 당국자들은 독일 감독당국의 엄중한 감독으로 인해 預金保險基金이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銀行監督

獨逸은 兼業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형태, 조직의 규모 및 영업범위는 각기 다르지만 은행들의 75% 이상이 보통은행업무, 장기신용은행업무, 신탁업무, 증권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兼業銀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에 규정된 證券業務를 포함한 아홉가지 업무[25]를 모두 수행하는 완전한 兼業銀行은 3대 은행과 일부 대형 지

---

24) SBSF의 경우 매해 가맹금융기관 자산의 0.03%를 출연금으로 징수하고, CCSS의 경우에는 해마다 Granted Credits의 0.05%를 보험료로 징수한다.

25) 예금, 대출, 할인, 증권중개, 證券任置, 투자신탁(providing trust (safe custody) services and operating investment funds), 채권인수(factoring), 보증(providing financial guarantees), 지로업무.

방은행에 국한된다. 은행법에 규정된 수행 업무 중 하나 이상 영위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2차대전 후 독일에서의 銀行監督은 地方政府가 담당하였으나, 1961년 7월 은행법이 제정되고 이와 동시에 聯邦銀行監督廳(Federal Banking Supervisory Office: FBSO)이 설립되면서 현재의 은행법에 의거하는 감독체계가 갖추어졌다. 1976년에는 독일은행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감독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1985년 은행법 개정에서는 겸업화를 추구하는 은행들의 위험도를 適正水準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 통합기준에 의한 자본의 적정성 및 대규모신용 규모 평가와 위험노출(risk exposure)을 제한하는 규정들의 강화가 이루어졌고, 監督當局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도 더욱 강화되었다.

독일 은행법상 은행감독의 목적은 은행제도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은행산업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銀行의 債權者들이 金融的 損失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獨逸의 銀行監督機關은 聯邦銀行 監督廳과 獨逸 聯邦銀行(Deutsche Bundesbank)이며, 연방은행감독청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財務省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은행 감독청의 廳長은 연방정부가 연방은행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大統領이 임명한다. 은행감독 당국의 기능과 중앙은행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점, 聯邦銀行監督廳이 하부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따라 聯邦銀行監督廳은 독일 연방은행의 본지점을 통해 독일에 있는 약 4,500개의 은행들을 감독하고 있다. 연방은행감독청내 6개 부서가 각기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게 되며, 각 부서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업무에 관해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圖 Ⅱ-8] 참조).

聯邦銀行監督廳과 聯邦銀行의 기능은 분명히 구분되며, 감독의 주된 기능과 책임은 聯邦銀行監督廳에 있다. 다만 聯邦銀行監督廳이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연방은행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은행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규정 제정시에는 兩者間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연방은행도

[圖 Ⅱ-8] 獨逸의 銀行監督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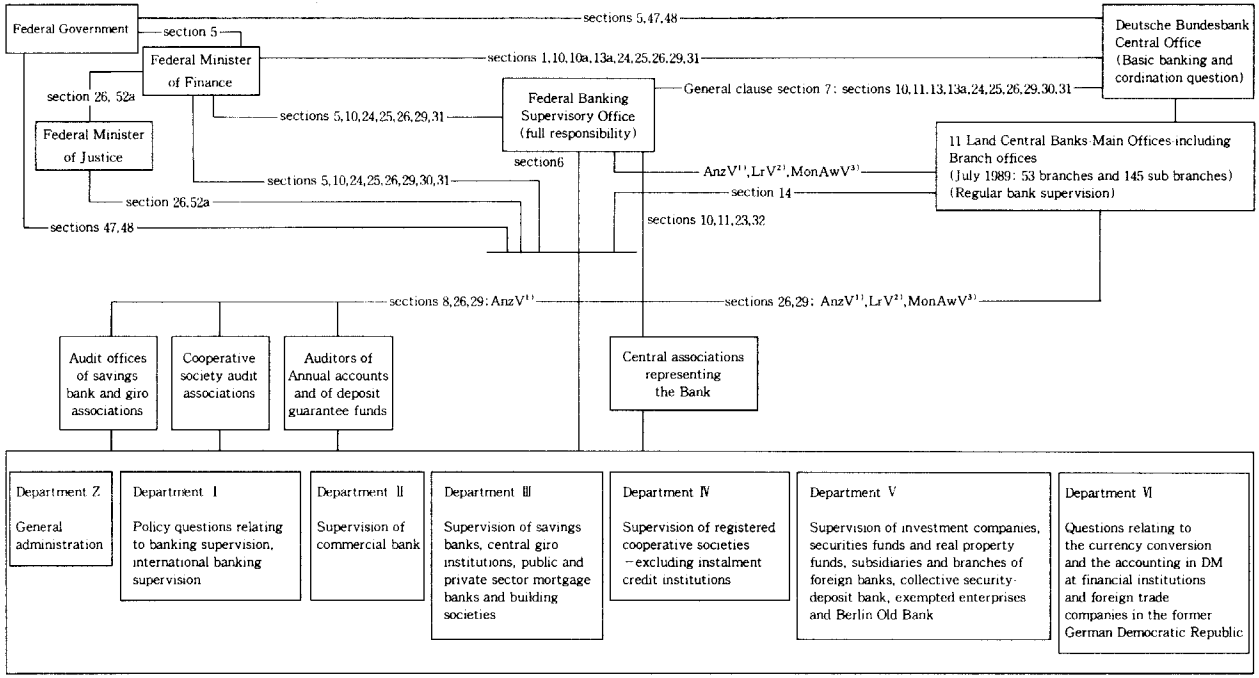

註 : 1) Reports Ordinance.
2) Country Exposure Ordinance.
3) Monthly Returns Ordinance.

資料 : 독일 연방은행.

은행들에 대한 정기적 검사에 관여하며, 은행들의 재무제표 및 기타 보고서들을 분석하여 은행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등의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26], 通貨信用政策을 통해 은행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獨逸 銀行監督當局은 예금자보호를 위해서는 은행들로 하여금 엄격한 銀行認可條件들을 충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銀行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자는 연방은행감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인가신청인 또는 경영인은 個人的 신뢰성과 專門的 은행경영자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27], 둘째, 은행의 실질적인 營業責任者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인가 신청시 500만ECU(약 1천만마르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28].

감독당국이 사용하는 規制手段으로는 은행업인가권 이외에 적정 자본금 및 유동성 유지요구(principles Ⅰ, Ⅰa, E, Ⅲ), 자본참가제한 및 여신규제, 보고의무 부과, 검사 및 공시, 정보 조사 및 개입권 행사 등이 있다. 먼저, 고객으로 예탁받은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29]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1항).

---

26) 독일연방은행은 은행장부나 기록, 기타 영업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청을 강제할 법적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불응시 연방은행감독청에 보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연방은행감독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 요청에 불응한 은행에 대해 최고 5만마르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7) 전문적 은행경영자격은 유사한 영업규모로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책임자로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된다.

28) 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예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1992년에 연방은행감독청의 행정관행에 따라 6백만마르크 정도가 요구되었으나, 1993년의 은행법 개정에서 5백만 ECU로 은행법에 명시되었다.

29) 은행법(제10조)에는 금융기관 설립 형태별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례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적립금의 합계에서 동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기주식(또는 자기 영업자본)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30], 출자금, 금융스왑, 선물 계약 및 옵션권 등 위험자산은 책임 자기자본(liable capital)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다(principle Ⅰ). 그리고 은행의 영구적 투자(토지 혹은 자본참가 등)는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다(제12조). 1985년 이후로 위험자산의 규모를 계산할 때에는 統合基準(consolidated basis)에 따라 지분율이 40%를 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내 및 해외 자회사와 리스, 팩토링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principle Ia에서는 환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매일의 업무종료시 外換資産 및 負債規模의 차이가 만기에 관계없이 自己資本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리리스크에 관해서는 특정 월 또는 특정 연도의 상·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오픈 포지션」(open position)의 합계가 매일 업무종료시 自己資本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은행들은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항상 충분한 支給準備를 해야 하는데(제11조), 구체적으로는 특정 長期資産의 합계가 특정 長期負債[31]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으며(principle Ⅱ), 각종 중·단기 자산의 합계는 특정 중·단기 부채와 기타(financial surplus) 등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principle Ⅲ). 銀行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지 않거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監督當局은 해당 금융기관의 이익배당, 추가 여신 취급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제45조 1항).

셋째, 은행의 지급불능사태가 不實債權의 증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監督當局은 信用危險의 축소를 위해 단일 대규모 여신(자본의 15% 초과 대출)[32]이 자본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

---

30)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국내 금융기관(외은지점 포함)에 대한 여신은 해당액의 20%, 외국 소재 외국은행에 대한 여신, 고객에 대한 보증서 발급, 우발채권 등은 해당액의 50%만 계산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국내 공법인과 연방 특별기금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

31) 만기 4년이상 부채와 장기사용이 가능한 단기 부채로 비은행고객의 Savings Deposits의 60%와 Sight and Time Deposits의 10%.

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여신의 합계를 자본의 8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5만마르크를 초과하는 대규모 여신은 聯邦銀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이미 보고된 대규모 여신도 20%이상 증가하거나 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33].

넷째, 모든 金融機關은 銀行法과 聯邦銀行法 및 이에 따른 보고 관련 규정·통첩에 의거하여 월·연별 영업상황을 聯邦銀行에 報告할 義務가 있으며, 연방은행은 이를 분석·평가한 후 이들 보고서와 이에 대한 의견을 聯邦銀行監督廳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은행그룹의 경우 모회사는 자신의 월별 영업상황과 함께 그룹전체의 통합기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은행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독립적인 專門 監査人(independent certified auditors)에 의해 은행법 제29조가 규정한 바대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방은행감독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외환업무(연방은행 소관)를 제외한 銀行業務에 대해 外部監事를 선정하여 監査를 행할 권리를 갖고 있다(제44조 1항).

은행들이 이상에서 살펴 본 健全經營義務(prudential requirements)를 어겼음이 드러날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은행들의 위반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개입할 권한을 갖게 된다. 즉, 금융기관이 自己資本과 流動性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업책임자 또는 소유주에게 이익배당, 여신, 토지·건물·선박·자본참가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제45조). 또한 金融機關의 資産 狀態가 불안정하여 고

---

32) 규제대상이 되는 여신은 모든 종류의 금전대출, 유상으로 취득한 금전채권, 인수신용, 기명저당채권 및 자치단체 채권을 제외한 기명식 채권, 어음 및 수표의 할인, 금융기관의 기타 상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보증, 지급보증 기타 담보책임, 차입자인 기업에 대한 25% 이상의 자본참여, 리스계약에 의한 목적물에 대한 순채권을 포함한다(제19조 제1항).

33) 이 규정은 통합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자본율이 50% 이상인 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객 재산의 보호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聯邦銀行監督廳은 예금수취, 대출실행, 영업책임자나 소유주의 업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감사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聯邦銀行監督廳은 금융기관의 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매각처분 및 지급행위 금지, 고객과의 거래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제46조). 만약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부족 또는 채무초과가 발생할 경우 영업책임자는 지체없이 聯邦銀行監督廳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에 의한 파산신청은 聯邦銀行監督廳만이 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 예탁된 재산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고 은행법에 규정된 다른 수단으로는 도산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聯邦銀行監督廳은 해당 金融機關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와 관련된 영업책임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담당 직무 집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제36조 1항). 그리고 금융기관 영업책임자가 고의, 과실로 법령이나 聯邦銀行監督廳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聯邦銀行監督廳은 그 영업책임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 연방은행감독청은 은행들의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 경고 또는 10만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다(제56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는 銀行法上에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고, 감독당국이 이들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獨逸 監督當局은 은행들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은행경영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獨逸 監督當局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은행을 구제한 적이 없으며, 은행에 대한 資金支援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롬바르트 대출 등에 국한하고 있다. 그리고 부실화가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최고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銀行의 健全性 維持에 노력하고 있다.

〈表 Ⅱ－39〉 EC金融統合에 대응하기 위한 最近의 獨逸 銀行法 改正內容(1993年 1月 1日)

(單位 : %)

	改 正 內 容
金融機關의 範圍 확대 및 非銀行에 대한 規制	－金融機關의 定義 : 종전의 금융기관이라는 개념 이외에 비은행금융기관*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 －非銀行 관련 규제 내용 · 비은행의 영업은 聯邦銀行監督廳의 인가 불필요 · 은행의 책임자본 계산시 비은행에 대한 출자분 모든 투자자산 공제 · 은행의 비은행에 대한 투자 제한(은행의 단일 비은행에 대한 10% 이상의 자본참여는 은행자본의 15% 초과 불가. 비은행에 대한 자본참여 합계는 은행자본이 60% 초과 불가)
責任資本(liable capital)의 槪念 擴大 및 BIS 基準 導入	－책임자본의 구성 · 책임자본을 基本資本과 補完資本으로 구분하고, 책임자본 합계는 危險加重資産의 8% 이상을 유지하되, 보완자본이 기본자본을 초과 불가 · 未實現準備金은 기본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4.4% 이상일 경우에만 위험가중자산의 1.4%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 負債性資本金과 後順位債務는 5년이상 보유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완자본으로 인정 －책임자본은 최근 영업년도말의 확정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간결산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책임자본 변경 가능 －外銀支店의 책임자본에 부채성자본금 및 후순위채무 가산 인정(단, 이들의 합계가 책임자본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후순위채무가 책임자본의 50% 초과 금지) －책임자본범위 확대에 따른 거액 與信取扱規模의 自動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동일인에 대한 거액 여신 산정시에 적용되는 책임자본의 범위는 종전의 개념을 계속 적용
銀行의 最低資本金 維持 義務 賦課	－은행의 最低資本金을 5백만ECU(약 천만 DM)으로 명문화
報告對象與信額의 上向 調整	－聯邦銀行에 대한 보고대상이 되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액을 종전의 '1백만DM'에서 '3백만DM'로 상향 조정함.

〈表 Ⅱ－39〉의 계속

	改 正 內 容
銀行의 單一免許制 導入	－EC의 타회원국 소재 금융기관은 연방은행감독청의 인가없이 독일내 지점 설치 및 서비스 제공, 비은행 업무 영위 가능. －독일내 금융기관이 EC 타회원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그 내용을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銀行 設立認可基準 明瞭化	－인가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명시 －충분한 책임자본(최소한 5백만ECU) 미보유 등 인가 거부 사유 보완
銀行에 대한 資本 參與 監督 強化	－자본참여자가 은행 주식 또는 의결권의 10% 이상 취득시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연방은행감독청은 자본참여자의 신용도 조사를 위한 자료(최근 3년간 결산서와 회계감사인의 결산감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허가 거부 및 의결권 행사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貯蓄預金制度의 自律化	－EC 회원국 중 독일에만 존재하는 貯蓄預金制度를 은행자율에 맡김으로써 은행법상의 저축예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연방은행감독청의 법령(회계 지침)에 수용하여 1993. 7. 1부터 실시함.
預金保護制度 加入與否 通報義務 新設	－은행이 預金保護制度(Sicherungseinrichtung)에 가입하지 않고 예금 수취시 동 사실을 일반거래 약관에 명시 및 일반고객앞 고지를 의무화하고, 탈퇴시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함.
聯邦遞信廳 소속 郵便銀行에 대한 監督 실시	－聯邦遞信廳의 조직 개편(1989. 7. 1)에 따라 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공기업인 郵便銀行을 1996년부터 은행법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시킴.

註 : 비은행(Finanzinstitute) ; 은행이 아니면서 자본참여, 채권의 유상취득, 리스계약 체결, 신용카드 또는 여행자 수표의 발행 관리, 환전업, 자기 명의의 유가증권 취급, 선물계약 옵션 환율 또는 금리수단 취급, 유가증권 발행에의 참여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은행간 자금 중개, 유가 증권 또는 선물 옵션 등에 의한 타인의 위탁 재산관리 또는 투자 상담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

資料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Ⅶ. 英國의 預金保護制度

1. 預金保護制度의 設立 背景

英國의 預金保險制度는 미국, 일본, 서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장 늦은 1982년에 도입되었다. 영국에서는 1971년 5월 新金融調節方式의 일환으로 실시된 금리자유화 이후 중소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1973~74년중 20여개에 달하는 중소금융기관들의 예금지급 불능으로 인한 금융위기(secondary banking crisis)[34]가 발생하면서 예금자보호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즉 영국은 1973~74년 사이에 폭넓은 금융위기에 처하게 되자 中央銀行(The Bank of England)은 다점포를 갖고 있는 國內 銀行들(clearing banks)에게 소위 '구조기금(life-boat fund)'이라는 지원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구조기금은 첫해 26개의 문제은행에 12억파운드 이상 대출되었으며, 問題銀行들에게 預金 또는 短期 貸出의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기금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은행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合議된 公式에 따라 배분되었다.

政府(中央銀行)-民間의 협조아래 이루어진 이와 같은 긴급 자금지원이 성공하게 되자, 銀行制度에 대한 대중의 信賴度는 점차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비효율적인 개별 은행들을 정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

34) 1970년대 초에는 부동산경기가 상승국면을 보이면서 중소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의 예금을 부동산회사에 대한 장기 대출로 운용하였으나, 제1차 유류파동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자 중소금융기관들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預金保護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中央銀行(영란은행)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던 소규모의 예금수취기관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現行 銀行監督體系에 虛點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중앙은행의 비공식적이고 관행에 의존하는 은행감독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6년 8월 '예금수취기관의 認可와 監督(The Licensing and Supervision of Deposit-Taking Institutions)'에 관한 政府報告書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1979년 4월 예금수취금융기관에 대한 면허제 도입, 영란은행에의 금융기관 감독권 부여, 예금보호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銀行法(Banking Act)이 제정되었다. 이 은행법에 의거 1982년 2월 預金保護委員會(Deposit Protection Board)와 預金保護基金(Deposit Protection Tund)이 설치됨에 따라 預金保護制度가 정식으로 導入되었다. 그 후 1987년 은행법 개정으로 예금보호기금의 자금조달기반 확충 및 예금자 1인당 보호대상예금의 상한 인상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預金保險制度가 한층 보강되었다[35].

1979년 은행법에 따라 1982년에 설립된 預金保護委員會(Deposit Protection Board)는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預金保護制度는 필요시 유동성을 갖추고 中央銀行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부와 민간이 성공적으로 협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은행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는 예금보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거액 예금자들은 預金保護制

35) 최초출연금의 하한이 종전의 2,500파운드에서 1만파운드로, 예금자 1인당 보호대상예금의 상한이 종전의 1만파운드에서 2만파운드로 각각 상향조정되었다.

度에 대해 은행파산시 예금보호를 위하여 中央銀行이 새로운 救助基金을 통해 介入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소액 예금자들의 보호는 中央銀行과 은행들간의 필요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救助基金의 運用으로 예금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으나, 이는 거액예금자들의 신뢰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少額預金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도산시 중앙은행의 선별적인 금융지원이 아니라 별도의 상설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倒産銀行의 預金者들을 保護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요구되었다.

英國의 預金保護制度 설립은 폭넓은 은행산업 개혁의 일부분이었다. 사실 1979년 은행법에 포함된 강제성을 띤 예금보호안은 원칙적으로 銀行産業에 대한 공식적인 감독제도의 도입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預金保護는 中央銀行에 의하여 수행될 은행의 감시,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預金保護委員會는 1982년 인가된 은행 및 預金收取機關들로 부터 징수한 출연금으로 형성되는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중앙은행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National Savings Bank, National Girobank와 같은 공공기관들의 경우 이미 재무부에 의한 보증 예금이 있었으며, 建築組合(building societies)은 자체의 投資者 保護制度(investor protection scheme)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銀行法上에 예금보호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소액 예금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크게 강화되었다.

2. 預金保護委員會

가. 組織

預金保護委員會는 1979년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공적 기구로서 정부와 英蘭銀行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separate statutory bo-

dy)이다. 위원회는 中央銀行 總裁, 副總裁 및 業務部長(Chief Cashier)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中央銀行 總裁가 임명하는 中央銀行 직원 약간명 및 가입금융기관 대표 3인으로 구성되며, 中央銀行 總裁가 동 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업무부장은 예금보호기금의 실질적 운영을 영란은행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에 포함되며, 中央銀行 總裁가 中央銀行 직원 약간명(현재는 1인)을 추가로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은 中央銀行의 직원이 위원회에서 다수(majority)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기관 대표들은 각각 決濟銀行(clearing banks), 綜合金融銀行(merchant banks), 中小銀行(smaller banks)의 上級經營者(director, controller, manager)중에서 1인씩 선출되며, 예금보호기금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금출연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가한다. 金融機關 代表들이 위원회에 참가함으로써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관련 위원의 위원회로부터의 탈퇴가 예상된다. 預金保護機構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은 전적으로 中央銀行에 의해 지원되며, 업무부담의 정도에 따라 직원수가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있다[36].

나. 主要業務

預金保護委員會는 예금보호기금의 보유·관리·운영하고 은행법상 인가된 금융기관으로부터 出捐金을 징수한다. 또한 보험가입 금융기관이 해산명령이나 自發的 解散 결정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사태에 처할 경우 中央銀行의 지원을 받은 사고대책반(claim unit)을 통해 예금자 손

36) 현재 5명의 중앙은행 직원이 예금보호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CCI 도산 때문에 직원수가 50명에 달한 적도 있다.

실을 보전해 주는 등의 순수한 預金保護業務만을 담당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기능은 없으며, 은행의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예금보호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該當銀行에 개입하게 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出捐機關에 대해 정보 및 자료제출[37),38)]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예금보호기금을 中央銀行 計座에 예치하여야 하며, 中央銀行에 예치된 기금의 운영은 예금보호위원회 위원 중 中央銀行 관계자 4인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가능한 한 이 기금을 재무부 증권에 투자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投資收益은 기금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中央銀行은 특정 은행이 예금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경우 동 은행에 대한 破産 決定을 내릴 수 있고, 少額 預金者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문제은행이 다시 건전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지원할 은행, 지원규모 등을 상황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거액 예금자들과 은행기관들에 대해 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을 강요할 수 있게 된다.

預金保護委員會는 단지 예금자들에게 보호예금을 지급하고, 파산은행의 債權者로 행동할 의무만을 진다. 정리된 파산은행의 자산은 기금에의 상환, 예금자들의 손실보전, 특별출연금을 납부한 會員銀行들에의 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때 회수된 돈은 그 해에 분리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 회계연도 초 기금잔액이 500~600만파운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경우 特別出捐金 및 追加出捐金 규모에 의거 적절한 비율로 은행들에 상환하게 된다.

---

37) 영국 내 모든 예금수취금융기관들이 영국의 예금보호제도에 보고하는 자료는 관련 기관들이 가입한 예금보호제도의 명칭, 예금보호관련 명세서, EEA(European Economic Area) 내 통화 또는 ECU로 표시된 예금의 보호 사실,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이용가능성 여부 등이다.

38) 영국 내 EEA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납부 및 자료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영국의 예금보호위원회는 이 기관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재무부장관(Chancellor of Exchequer)에게 할 수 있다.

다. 對象金融機關

예금보험제도의 대상금융기관은 은행법상 인가 금융기관인 일반 상업은행, 머천트뱅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과 자회사, 割引商社(discount houses) 및 金融會社(finance house) 등이며, 모두 預金保險에 義務的으로 加入하도록 되어 있다.

英國內 外國銀行 지점 및 자회사 중 EEA(European Economic Area)이외의 지역 은행들은 본국에서의 제도에 의하여 英貨預金(sterling deposit)이 보호된다는 것을 英國의 預金保護委員會에 입증하는 경우 英國의 預金保護委員會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그 금융기관 명단을 관리한다. 그러나, 外國銀行의 본국 예금보호제도가 영국의 예금보호제도보다 취약한 경우 英國의 預金保護制度에 가입해야 한다.

라. 保護對象 預金

保護對象 預金의 범위에는 동업자예금, CD,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예금, 국내은행 해외지점예금 등을 제외한 EEA국가들의 통화 및 ECU로 표시된 모든 예금 및 이자가 포함된다. 外貨預金의 경우 1995년 7월 이전에는 保護對象에서 제외되었으나, 지금은 EU회원국 통화 예금에 한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된 예금의 경우 保護預金을 계산할 목적으로 파운드화로 환산하며, 基準 換率은 지급정지일의 환율이거나 지급정지일 이후 예금을 지불하는 시점의 환율로 한다. EEA이외의 통화예금, 파산은행과 관련된 기업들 또는 사람들(임직원 및 가족들)의 예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예금, 부정거래한 예금, 擔保預金(secured deposits), 信用機關 預金, 保險引受機關 預金, 기타 금융기관들 예금, 은행과 유사한 기관들의 예금, 은행의 자본이 참여된 예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마. 保險金 限度額

金融機關의 도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시에 보험금은 保護對象預金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차감한 순예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예금자 1인당 보호대상 순예금의 최고한도액을 2만 파운드(ECU 22,222)로 제한하고 동 예금의 90% 해당액(최고 1만 8천 파운드, ECU 20,00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39]. 이러한 보험금 지급방식은 金融機關이 도산하는 경우 預金者에게도 保護對象預金額의 10%를 부담시킴으로써 預金者가 去來金融機關을 선택할 때 金融機關의 경영상태까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 system)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미국, 캐나다의 경우와는 달리 영국 예금자들의 預金保護制度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아 共同保險制度 자체가 預金保護制度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保護對象 預金 중 보험금 계산시 同名預金은 하나의 계정으로 합산하며, 共同名義計定(joint account)은 예금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組合計定(partnership accounts)은 분리계정으로 본다. 또한 고객계정(clients' account)은 顧客名義의 분리계정으로 본다.

영국내 EEA이외 국가의 子會社(영국의 예금보호제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본국의 한도와 차이가 있는 경우 영국의 제도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며, 영국내 기관의 자회사가 EEA이외 국가의 預金保護制度에 가입하는 경우와 EEA에 속한 기관들이 英國의 預金保護制度에 가입하는 경우 該當國家와 협의를 거친다.

---

39) 1995년 7월 1일 이전의 지급불능기관들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은 최고 2만파운드 중 75%(1만 5,000파운드), 1987년 5월 15일이전의 지급불능기관들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은 1만파운드 중 75%(7천 5,000파운드)이다.

바. 出捐金 및 其他財源

다른 나라의 경우 대체로 加入金融機關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징수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는 데 반하여 英國에서는 金融機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기금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연금만을 징수하고 있다.

즉 預金保護委員會는 대상금융기관의 보험가입시 금융기관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基準預金(deposit base: 최초출연금 징수전 일정기간 동안의 총예금 평균잔액에서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융기관예금 등의 평균잔액을 차감한 예금액)의 적정비율(0.01%) 해당액을 最初出捐金(initial contributions)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기금재원의 부족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성의 허가를 얻어 追加出捐金(further contributions) 또는 特別出捐金(special contributions)을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년도 말 기금잔액이 300만파운드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위원회는 財務部의 승인을 받아 동 잔액이 500~600만파운드를 유지하도록 추가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財務部는 추가적인 기금규모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금증액을 명령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基金限度가 조정된 적은 없다. 會計年度중에도 保險金支給 등으로 연말 이전에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財務部의 승인을 받아 特別出捐金을 징수할 수 있다.

출연금의 결정에 있어서는 大型銀行과 零細金融機關과의 출연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最初出捐金의 경우 최저 1만파운드[40], 최고 30만파운드를, 追加出捐金의 경우 최고 30만파운드를 각각 그 한도로 하되, 가

---

40) 최초출연금의 최저한도는 1987년 은행법 개정시 보험금 지급한도가 1만파운드에서 2만파운드로 상향조정되면서 2,500파운드에서 1만파운드로 인상되었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총액은 基準預金의 0.3%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82년 예금보호기금 설립 당시에는 모든 가입 금융기관들에 대해 기준예금의 0.01%에 해당하는 최초출연금(최저한도 2,500파운드)을 부과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預金保護制度를 민간재원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政府의 預金保護基金에 대한 출자는 全無하였다.

그 밖에 預金保護委員會는 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영란은행으로부터 외부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부차입한도는 1천만파운드로 되어 있으며, 1천만파운드 이상 차입시에는 財務部와의 협의후 지정한도금액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1991년의 BCCI사건으로 예금보호기금의 지급수요가 크게 확대되자, 財務部의 명령으로 동 차입한도는 1억 2,500만파운드로 상향조정되었다.

사. 基金運用 實績

預金保險制度 도입 이래 매년 1~5개 金融機關에 대해 保險金 支給義務가 발생하였는데, 預金保護委員會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지급불능 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진 때와 파산법에 따라 金融機關이 관리명령을 받고 동법에 의한 관재인의 제안을 채권자 단체가 승인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기금운영실적을 보면 1994년 2월말까지 모두 28개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1억 3,278만파운드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1992년 4월 BCCI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의 예금에 대해 保險金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거액의 결손금을 기록하게 되어 1994년 2월말 현재 1,950만파운드의 缺損金(당기결손금 1,070만파운드, 전기이월결손금 880만파운드)을 기록하고 있다. 1993년중에는 결손금의 보전을 위해 8,032만파운드의 특별출연금을 징수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1996년까지는 기금의 결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表 Ⅱ－40〉 加入·倒産 金融機關數 및 基金殘額 推移[1)]

(單位 : 個, 萬파운드)

	1982~85	1986~90	1991	1992	1993	1994
보험가입금융기관수(A)	596.5	581.6	588	597	612	615
도산금융기관수(B)	2.5	0.8	3	5	3	3
B/A(%)	0.42	0.14	0.51	0.84	0.49	0.49
보험금지급액	132.0	45.6	797	2569	7168	1988
기금잔액	283.3	565.8	−34	−2889	−884	−1953

註 : 1) 전년 3월초~당해년 2월말중(1982년은 1~2월중).
資料 : Deposit Protection Board, 연차보고서, 각 연호.

〈表 Ⅱ－41〉 英國 預金保護基金의 最近 4년간 貸借對照表

(單位 : 파운드)

	1992. 2	1993. 2	1994. 2	1995. 2
자산총계	263,258	249,202	84,728	81,036
유동자산	263,258	249,202	84,728	71,788
고정자산	−	−	−	9,288
부채총계	29,238,171	9,085,783	19,615,185	19,356,178
유동부채	2,407,143	2,054,299	379,911	303,585
법인세	95,493	264,714	100,985	69,367
영란은행차입금	26,649,001	6,713,225	19,109,629	18,961,326
이연과세	86,834	53,545	24,660	21,900
연말예금보호기금 (순부채)	(28,975,213)	(8,836,581)	(19,530,457)	(19,275,142)
연초예금보호기금	(336,934)	(28,975,213)	(8,836,581)	(19,530,457)
연중예금보호기금	(28,638,279)	20,138,632	(10,693,876)	255,315

資料 : Deposit Protection Board, *Report and Account*, 각호.

〈表 Ⅱ-42〉 英國 預金保護基金의 最近 4年間 損益計算書

(單位 : 파운드)

	1991.3~1992.2	1992.3~1993.2	1993.3~1994.2	1994.3~1995.2
수 익	557,453	80,997,141	273,309	300,756
재정증권투자이자	595,254	714,977	264,725	261,255
수 입 이 자	1,600	11,901	7,704	–
과 세 액[1]	(179,401)	(231,424)	(72,100)	(66,607)
기 초 출 연 금	140,000	180,000	60,000	100,000
특 별 출 연 금	–	80,321,687	12,980	6,108
비 용	29,195,732	76,019,473	21,273,359	12,757,495
지 급 보 험 금	25,648,096	71,682,350	19,883,679	11,372,048
일 반 관 리 비	1,384,662	1,784,828	982,278	619,042
이 자 비 용	2,145,349	2,533,969	389,072	745,918
감 가 상 각 비	–	–	–	4,628
감 사 인 보 수	17,625	18,330	18,330	15,863
영 업 이 익(손 실)	(28,638,279)	4,977,668	(21,000,050)	(12,456,739)
예금보호기금전입	–	15,160,964	10,306,174	12,712,054
당기순이익(순손실)	(28,638,279)	20,138,632	(10,693,876)	255,315

註 : 1) 해당 연도 투자수익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계와 실제상 투자소득의 차이에 따른 시차에 인한 이연과세, 전년도 충당금.

資料 : Deposit Protection Board, *Report and Account*, 각호.

〈表 Ⅱ－43〉 英國 預金保護基金의 最近 4年間 財務狀態 變動表

(單位 : 파운드)

	1991.3~1992.2	1992.3~1993.2	1993.3~1994.2	1994.3~1995.2
영업활동				
기초출연금수입	140,000	130,000	100,000	110,000
특별출연금수입	–	80,284,867	49,800	684
예금보호기금전입	–	15,160,964	10,306,174	12,712,054
지급보험금	(25,648,096)	(71,011,299)	(20,562,230)	(11,330,479)
기타현금지출	(528,219)	(1,496,795)	(1,996,538)	(750,218)
영업활동에 의한 순현금흐름	(26,648,096)	23,067,737	(12,102,794)	742,041
투자및재무활동				
수입이자	10,498	10,532	9,073	–
재정증권투자이자	332,121	817,222	350,885	269,619
지급이자	(812,731)	(3,864,223)	(388,854)	(748,500)
투자및재무활동에 의한순현금흐름	(470,112)	(33,036,469)	(28,896)	(478,881)
과세				
지급법인세	(370,608)	(95,492)	(264,714)	(100,985)
유형고정자산구입	–	–	–	(13,872)
현금증가액	(26,877,035)	19,935,776	(12,396,404)	148,303

資料 : Deposit Protection Board, *Report and Account*, 각호.

3. 銀行監督

英國에서는 1694년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거하여 설립된 中央銀行(Bank of England)이 銀行産業에 대한 監督을 遂行하여 왔다. 1946년 中央銀行銀行法에 의해 中央銀行의 주식 모두를 영국 정부가 취득한 이래 中央銀行은 상황에 따라 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法的인 監督權限을 부여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1979년 은행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은행들을 규제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英蘭銀行은 주로 개별은행 경영자들에 대한 사적 친분관계와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에 의해 非公式的으로 관행에 의한 監督을 遂行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3~1974년의 과대 대출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야기된 2차 金融危機로 많은 예금수취 금융기관들이 中央銀行의 감독 영향권 밖에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41]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또한 1차 EEC은행지침의 시행을 위해서 EC회원국들의 信用機關 認可節次를 통일할 필요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英國에서도 銀行認可節次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1979년의 銀行法 制定으로 연결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영국에서는 런던을 유럽금융센터의 선두 주자로 만들고 영국의 金融産業을 現代化하기 위해 외환규제의 폐지, 증권시장에서의 「빅뱅」(big bang), 건축조합의 업무규제완화 등의 금융자율화 조치가 취해졌지만, 예금자 보호가 銀行法上에 明文化되고 새로운 監督機關이 설립되는 등 법적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최근에 들어 금융그룹들(financial conglomerates)의 출현과 겸업화의 진전으로 수행 업무에 의한 金融機關 形態의 구분이 점차 불분명해

41) 은행의 경우 대출 업무를 하는 데는 인가가 필요하였으나 예금수취에는 별도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영국에서는 아직 금융기관들이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는 水平的 監督體系가 유지되고 있다. 즉 中央銀行이 은행인가 및 감독을 맡고 있고 건축조합들을 규제하며, 투자 및 증권 관련 회사들의 경우 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SIB)의 감독하에 4개의 자율적 규제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s, SROs)[42]로부터 인가 및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금융업을 수행하는 은행그룹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감독업무의 중복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先導規制原則(lead regulation principle)을 정해 놓고 있다.

中央銀行은 財務部(Treasury)의 통제를 받으며, 총재 및 임원들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등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通貨信用政策에 관한 전략적인 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능 수행에 있어 상당한 自律性을 부여받고 있으며, 특히 감독업무에 관해서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英國에서 健全經營監督(prudential supervision)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1987년 은행법, 1986년 建築組合法(Building Societies Act), 1986년의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이 있으며, 1985년 會社法(Companies Act, 1989년 개정)의 일부 규정도 관련되어 있다.

한편 1987년 은행법상(제16조)에는 中央銀行이 金融監督의 原則에 관한 의견서(a statement of principles)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中央銀行은 이에 따라 1988년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였으며, 1993년에

---

42) Securities and Futures Authority(SFA), Investment Management Regulatory Organization(IMRO), Financial Intermediaries, Managers and Brokers Regulatory Association(FIMBRA), Life Assurance and Unit Trusts Regulatory Organization(LAUTRO).

이를 수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銀行監督의 주된 목적은 1987년 銀行法上 預金者 保護로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안정성이나 경쟁 촉진 등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英國은 銀行制度의 安定性을 유지하기 위해 中央銀行이 은행의 경영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공식적이지만 엄격한 감독을 통해 인가은행들의 건전경영을 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은행감독은 中央銀行 內 銀行監督局(Banking Supervision Division)이 담당하며, 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감독을 맡고 있는 都賣金融市場監督局(Wholesale Markets Supervision Division)이 銀行監督局을 지원하고 있다. 은행감독국은 은행감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銀行監督委員會(Board of Banking Supervision)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銀行監督委員會에는 中央銀行 總裁가 의장을 맡게 되며, 부총재, 은행감독국장 이외에 총재가 財務省長官(Chancellor)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6명의 독립적인 위원들이 있다. 한편 BCCI 사고로 영국 은행산업이 큰 혼란을 겪은 이후 中央銀行은 特別調査室(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별도로 설치하였는데, 이 기구에는 유능한 회계사가 실장으로 있으며, 중앙은행이 인지한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불법 금융행위들을 조사하거나 은행내 관련 당국이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총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英國에서는 銀行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中央銀行으로부터 사전에 銀行認可를 취득하여야 한다. 中央銀行이 제시하고 있는 銀行認可 기준으로는 첫째, 은행이사와 상급 경영자들이 은행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fit and proper persons)이어야 하며, 둘째, 預金收取機關은 영업활동을 신중히(prudently) 영위해야 하며,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업의 규모 및 성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순자산 · 유동성 ·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하고 적절한 회계체계를 구비하여야 하며, 셋째, 이사회에는 충분한 수의 비상근이사(non-executive

directors)가 참여하여야 하고, 은행이 2명 이상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넷째, 인가시 최소한 백만파운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예금자(장래의 예금자 포함)의 이해가 어떤 형태로든 위협받을 경우 中央銀行이 해당 金融機關의 認可를 취소할 수 있다.

다음, 中央銀行은 은행의 대주주 지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경우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은행주식을 5%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中央銀行에 사후 통보하여야 하며, 은행을 매수(발생주식의 15% 이상 취득)하려 하거나 은행에 대한 株式保有比率이 50% (majority shareholder controller) 및 75%(principal shareholder controller)를 초과할 때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21, 37조). 中央銀行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주식매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23조), 또한 기존 대주주가 은행의 건전경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所有株式을 賣却하도록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24, 26조).

현재 英國 銀行法은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나 투자에 대해 별다른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 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기자본의 적정성이나 거액대출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없다. 다만 은행의 자회사들은 1983년의 EC 통합감독지침(Consolidated Supervision Directive)에 의해 모은행과 統合基準에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 항목이 은행의 자산 구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공식적인 한도는 없지만 사례별로 당국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다(case by case limit).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은행들이 독일에서와 같은 겸업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은행업과 증권업의 구분은 법적인 전업주의 표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競爭制限的인 관행 및 시장구조의 존재, 그리고 증권업에의 참여가 자기자본 기준과 유통망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한 진입 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43]. 그러나 세계적인

金融自由化 趨勢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은행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영국의 주요은행들은 금융그룹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1986년 10월의 Big Bang으로 증권매매 위탁 수수료의 자유화, 증권거래소 회원의 개방, 「자버」(jobber)와 「브로커」(broker)를 구분하던 單一資格制度(single capacity system)의 폐지 등이 이루어지자 자회사 매수를 통해 증권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自己 資本의 적정성(capital adequacy)을 평가함에 있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를 통합하여 고려하며,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에 의해 설립된 다른 증권관련 감독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감독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中央銀行과 證券投資委員會(SIB)간에 理解覺書(A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성격에 따라 감독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현 체계(〈表 Ⅱ-44〉 참조)하에서는 각 감독당국이 다른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제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中央銀行은 특히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은행의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오염(cross infection) 가능성의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中央銀行은 은행그룹의 위험도를 분석함에 있어 통합기준에 의해 子會社나 기타 有關會社들에서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exposure)를 파악하는 동시에, 은행그룹내 자본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비통합기준에 의한 財務諸表 評價도 행하고 있다.

아울러 中央銀行은 개별은행별로 그들의 위험자산비율(이른바 trigger ratio)을 달리 설정하고 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銀行經營 危險의

---

43) 감독당국도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기능적 구분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表 Ⅱ－44〉 英國 金融機關들에 대한 監督體系

	life assurance	non-life insurance	pension schemes	banking	mortgage credit	investment business
prudential questions	T/SIB/SRO	DTI	IR	T/BoE	T/BSC	T/SIB/SROs
general organization	DTI	DTI	IR	T/BoE	BSC/OFT	DTI/SIB/ROs
contractual questions	DTI/OFT	DTI/OFT	IR	BoE/OFT	OFT	DTI/SIB
pricing and unfair competition	DTI/OFT	DTI/OFT	DTI/OFT	OFT/BoE	DTI/OFT	DTI/OFT/SIB

註 : 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IR : Inland Revenue; BSC : Building Societies Commission; T : Treasury; OFT : Office of Fair Trading; BoE : Bank of England.

資料 : ECU Institute, *Banking Supervis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Institutional Aspect*, Etudes Europeennes, Belgique, 1995.

［圖 Ⅱ－9］ 中央銀行 內 銀行監督 機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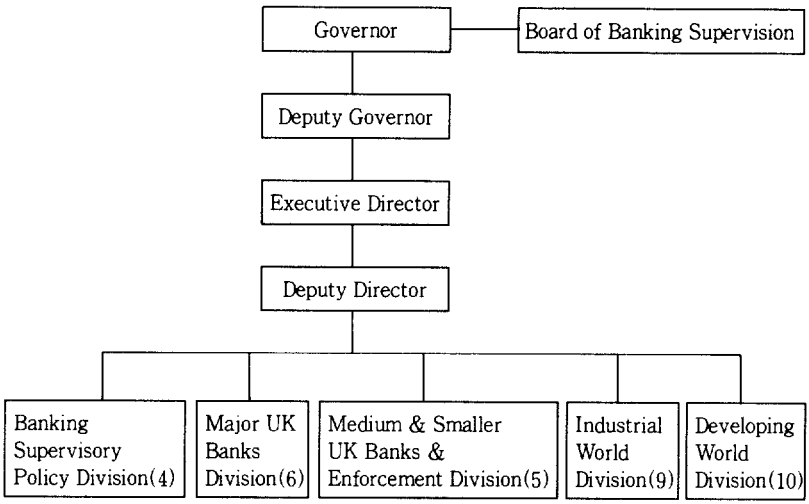

註 : ( ) 안 수치는 각 Division Head를 포함한 Senior Manager(또는 Advisor)의 수를 가리킴.

資料 : Bank of England, *Banking Act Report for 1994/95*, 1995, p. 44.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不實 貸出의 回收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및 체계, 貸損充當金 수준에 대한 은행의 檢討回數, 保有 有價證券의 實際價値 評價方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경영실패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자본의 10% 이상 貸出(large exposure)은 中央銀行에 사후보고토록, 그리고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25% 이상 대출은 사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中央銀行의 은행에 대한 감독권은 은행들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독립적인 회계사로부터의 감사보고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9조). 中央銀行 자체는 은행검사를 하지 않지만 은행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한

〈表 Ⅱ-45〉 年度別 銀行倒産數 및 預金保險料 支給規模

(單位 : 社, 백만파운드)

	은행도산수	예금보험금지급[1)]
1982	1	–
1983	1	0.8
1984	3	3.1
1985	5	1.4
1986	–	0.3
1987	3	0.7
1988	1	1.3
1989	–	–
1990	–	–
1991	1	8.0
1992	6	25.6
1993	2	71.7
1994	3	19.9
1995	1	11.4
계	27	144.2

註 : 1. 각 연도의 2월 28일까지 수치임.
1) 도산은행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표시된 수치는 각 연도에 지급된 금액의 합계를 표시함.

資料 : Deposit Protection Board.

회계감사를 연 1회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매월 보내오는 재무제표들로부터 대출의 특정분야에의 집중, 자본 충실도, 유동성, 수익성 등의 主要指標들을 파악하여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영란은행은 은행법 제정 이후에도 은행 담당자와 정보교환을 위해 경영자들과 빈번한 면담을 가짐으로써 각 은행들의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란은행은 該當 金融機關에게 通報한 후 조사팀(investigators)을 임명하여 해당기관의 영업활동 성격이나 경영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제41조).

Ⅷ. 프랑스의 預金保護制度

1. 預金保護制度의 設立 背景

프랑스의 은행위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政府(재무부) 및 中央銀行(프랑스은행)의 강력한 감독권한과 프랑스銀行聯合會에 의하여 1980년 설립된 예금보호제도와의 조화에 있다. 프랑스 예금보호제도는 보험기능은 없고 가맹은행간의 손실분담협정기능만을 수행하는데, 동 협정의 목적은 금융기관이 도산했을 경우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하는 데 있다.

프랑스 예금보호제도는 은행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활동을 통해 문제 회원은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프랑스의 預金保護制度는 連帶責任基金(solidarity fund)을 형성하여 회원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대책임은 '銀行文化'의 개념과 은행기관들의 강력한 협조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에는 은행연합회 내에 '專門家 連帶責任(professional solidality)' 장치가 만들어졌는데, 이 장치는 어떠한 사법적 또는 법률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通貨當局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적이었다.

1984년 은행법 제정으로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도입되었고, 감독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동시에 모든 은행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프랑스 銀行聯合會(Association Francaise des Banques: AFB)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1984년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감독기관은 프랑스 법률 규칙을 금융기관이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金融機關의 健全性을 監督한다. 중앙은행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은행파탄 문제는 사례별로 처리하고 있으며, 도산은행의 처리방식에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고시 프랑스 은행감독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1984년 은행법 제52조와 은행업계 자체내의 손실 분담협정 등이 있다.

1984년 銀行法(1984 Banking Law) 제52조(art. 52)에는 부실위험이 있는 은행의 주요 주주를 소집하여 당해 은행의 자본구조 개선을 위한 資金支援 要請을 할 권한을 中央銀行(프랑스은행) 총재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은행은 문제의 부실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원조 외에 자금을 은행업계에 할당,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총재는 '은행구제를 위한 적당한 수단'을 취하든가 아니면 은행을 도산시켜 손실분담협정을 실행하도록 은행업계에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은행 고위관리에 의하면, 프랑스은행 총재가 지금까지 제52조를 적용한 것은 1988년의 사우디은행의 경우 뿐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預金保護制度는 조정, 감시 그리고 간접적인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銀行法의 體系 內에서 운영된다. 이런 운영체계는 은행제도에 대한 정부권한의 확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 대규모의 성공적인 은행국영화에 따라 銀行産業에서 大衆은 폭넓게 보호되었다. 1980년의 銀行聯合會 예금보호안은 거의 民間銀行인 중소은행들을 보호할 목적이었다.

프랑스 은행산업의 공공-민간 구성 및 정부의 지배권과 전문가 연대책임이 혼합된 예금보호안은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은행 위기에 대처하는 데 확신을 주었으며, 공표된 법조항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은행법 제52조(中央銀行의 특별개입)는 中央銀行이 은행파산 관리에 따른 폭넓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 총재는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들의 주주들을 소집하기도 하며, 예금과 제3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협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預金保證制度에 대한 中央銀行 立場을 강화함으로써 은행파산에 따른 중앙은행 개입 지원시 은행연합회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2. 預金保護制度

가. 主要業務

프랑스 預金保護制度는 가맹은행간의 손실분담협정기능을 수행하며, 保險機能보다는 金融機關의 도산시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하는 데 重點을 두고 있다.

나. 對象金融機關

당해 예금보호제도는 민간 상업은행(외은지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들은 그들 자체의 預金者保護體系를 갖추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가입은행수는 420개이다.

다. 保護對象預金

손실분담협정은 소규모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장치로서 銀行間 預金, 外貨預金, 無記名預金 및 超過補償된 預金은 보호되지 않으며, 당해은행의 임직원예금 및 해외지점 예금 역시 보호대상예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保險金 限度額

파탄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預金者保護制度에 의하여 40만프랑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예금보호제도로부터의 지급총액은 연간 2억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마. 保險料

保險金支拂이 필요할 경우에 加盟金融機關이 갹출하여 기금을 마련하

게 되는데, 각 加盟金融機關의 분담금은 예금규모와 중재규모의 증가에 따라 누감적 · 누진적 기준에 근거를 둔 복잡한 체계에 따라 계산된다. 분담금은 1년에 1억프랑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과거 2년, 미래 2년을 대상으로 5억프랑의 분담금이 부과될 수는 있다.

대규모은행들은 현행 은행자산(예금)규모에 비례한 손실분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동 협정이 발동될 경우 小規模銀行에서 동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으나 대규모은행의 도산을 보호하기에는 어차피 불충분하므로 銀行規模가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그 예금규모 비율로 책정되는 분담협정 금액은 사실상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바. 運用實績

預金保護制度 도입 이후 10개 내외의 은행이 도산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부실은행 처리는 프랑스은행의 주도[44]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금보호제도는 프랑스은행이 해산시키기로 결정한 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보험금을 사후 지급하는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즉 프랑스는 은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 · 검사를 통하여 예금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예금보험제도는 이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

44) 은행법상 프랑스은행 총재는 金融監督委員會(Commission Bancaire) 의장의 자격으로 부실은행의 주주들에게 자본금 증액 등 必要措置를 요구하거나 은행업계의 공동자금 지원을 주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부실은행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銀行監督

프랑스의 경우 1984년 1월 새로운 은행법이 제정 · 공표되기 이전에는 銀行聯合會(French Bankers' Association: AFB) 所屬 金融機關, 金融會社協會(Association of Financial Companies) 所屬 金融機關 및 其他 金融機關들(mutual and co-operative banks, savings institutions, specialist institutions 등)에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은행보다는 상호저축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은 결과 그들의 市場占有度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新銀行法에서는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들이 같은 법률체계하에서 동일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해 종래 존재하던 商業銀行, 綜合金融銀行(merchant banks), 中長期 信用銀行의 區分을 없애는 동시에 은행업무를 광의로 정의함으로써 수행업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분류를 폐지하는 兼業主義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45].

현행 은행감독체계하에서는 財務部(Ministry of Finance)가 감독업무를 관장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여러 개의 委員會들이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銀行規制委員會(Committee for Banking Regulation)는 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6명의 위원 중 재무부장관이 의장, 프랑스은행 총재가 부의장이 되며, 財務部長官이 임명하는 4명의 위원 중 2명은 금융전문가, 나머지 2명은 신용기관 협회와 금융기관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신용기관의 자본규모 및 주식인수 조건 설정, 지점설치 인가[46],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금융거

45) 다만 금융회사와 전문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으로부터 2년 이하의 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46) 현재는 세금우대 저축예금이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지점의 설치에 관해서만 위원회가 인가권을 보유하며, 기타 지점의 설치는 자유화되었다.

래규정 및 경쟁규칙 제정, 경영기준(유동성, solvency, 안정적 경영구조 등) 제시, 회계기준 및 경영정보 공시의무의 범위 제정 등 최소한의 건전경영감독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銀行規制委員會의 규정들은 신용기관의 법적 성격, 지점수, 수행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신용기관에 따라 규정에 차이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 銀行委員會(Banking Commission)는 감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동 위원회의 의장은 프랑스은행 總裁이며, 재무부 Director 1명과 財務部長官이 임명하는 임기 6년의 위원 4명(고위 행정장관(magistrates) 2명, 금융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다. 은행위원회는 신용기관이 관련 감독규정들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며, 신용기관들의 경영상태 및 건전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銀行委員會는 신용기관들에 대해 기관 경영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나 정보 및 외부감사의 회계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다. 金融機關 經營關聯 統計資料의 분석 및 신용기관 검사는 프랑스은행에 위임하고 있다. 신용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특정업무 수행금지, 경영자의 해고, 과태료 부과 및 최종수단인 인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째, 信用機關委員會(Committee of Credit Institution)는 개별 신용기관에 대한 인가권을 보유하며, 신용기관의 경영상태 및 소유구조, 소재지, 법적 성격 등에 발생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의 의장은 프랑스은행 총재이며, 재무부 Director 1명과 財務部長官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위원 4명(금융전문가 2명, 신용기관협회와 금융기관 노동조합 대표 각 1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信用機關의 認可基準으로는 납입자본이 銀行規制委員會에서 규정한 최저한도를 초과할 것, 신용기관 경영에 경험이 많은 2명의 유능한 경영자를 보유할 것, 법적 형태가 신용기관 수행업무와 합치할 것 등이 있다.

이들 위원회 이외에 2개의 자문기구인 국가신용이사회(National Credit Council)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가 설립되어

있다. 국가신용이사회(National Credit Council)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자문과 금융제도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며, 재무부장관이 의장, 프랑스은행 총재가 부의장으로 있고, 정부.의회.신용기관.금융전문가.소비자단체.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선출된 51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신용기관의 對 顧客關係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로 매년 국가신용이사회(National Credit Council)에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은행도 信用機關 監督에 참여하는데, 銀行委員會의 의뢰에 따라 은행경영 자료의 분석 및 신용기관 검사를 수행하는 이외에 은행법상 프랑스은행 총재가 은행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 不實銀行의 주주들에게 자본금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은행업계의 공동자금 지원을 주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不實銀行에 대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은행 자체적으로는 규정에 의거한 감독보다는 信用機關에 대한 道德的 勸誘를 통해 신용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은행의 도산이 많지 않은데, 이는 감독당국의 엄격한 감독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프랑스 은행들의 68%가 國營銀行이고 은행이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은행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구제를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데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은행시장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은행도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다소 용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은행감독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表 Ⅱ－46〉 프랑스 銀行聯合會의 倒産銀行에 대한 資金支援 現況 (1976년 이후)

(單位 : %)

	도산은행	소재지	위임은행	지원액 (백만포함)	채무자요구액 대비 지원 비율
1976	Banque Baud	Evian	–	11.3	60.3%
1978	Banque Lacaze	Lourdes	BNP	39.1	75.0%
1979	Banque Hispano Francaise	Biarritz	Societe Generale	14.0	50.0%
1979	Banque Roy	Lille	Credit du Nord	6.3	44.9%
1980	Banque Catalane	Perpignan	Credit Lyonnais[1]	0.0	100.0%
1980	Banque Gadic	Paris	CCF	10.7	50.0%
1980	Banque Phoceenne	Marseille	Societe Lyonnaise de Banque	28.2	60.0%
1989	Banque de Participations et de Placements	Paris	Credit du Nord	33.0	49.0%
1989	United Banking Corporation	Paris	BNP	54.0	28.5%
1989	Lebanese Arab Bank	Paris	Societe Generale	45.5	5.0%
1990	Industrial Bank of Monaco	Monaco	Credit Lyonnais	108.7	45.0%
1991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Paris	CCF(1992)	40.0	진행중
1992	Banque Majorel	Rodez	CIC	±130.0	진행중
1994	Private Commercial Bank	Paris	Credit du Nord	NC	진행중

註 : 1) 스페인 주주에 의해서 변상.

Ⅸ. 其他國의 預金保護制度

1. 덴마크의 預金保險制度

가. 背景

덴마크는 1970년대까지는 金融産業을 엄격하게 規制하였다. 즉 금리가 규제되어 있었고 은행의 최저 자본금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金融의 不安定이 우려될 필요가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 금융이 자유화되었고, 특히 金利가 自由化되면서 은행 대출이 증가하였다. 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不動産 購入을 위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은행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은행 대출은 더욱 증가하였다. 은행은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 短期金融市場에 자금조달을 의존하였다. 따라서 金融이 自律化되면서 은행의 위험은 증가되었다.

한편 덴마크의 금융시장은 원래 경쟁적이었다. 예컨대 덴마크의 경제력에 비하여 은행의 수는 많은 편이었다. 1993년 말 현재 덴마크에는 1백만 인구당 450여개의 銀行支店이 있는데 이는 美國 등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이다. 또한 金融市場에의 進入이 매우 자유로운 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대출억제를 위한 高金利 政策 등으로 인하여 북구 3국 등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이 증가하여 銀行의 經營危機가 유발되었으며 은행의 도산사례가 우려되었다.

덴마크는 銀行의 倒産이 우려되자 예금자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7년에 預金保險制度를 도입하였다. 또한 당시에 EU는 권고(Recommendation) 사항으로 預金保護制度의 도입을 권장하기도 하

하였다[47]. 1980년대 후반 이후 실제로 1995년 7월 현재까지 1988년의 C&G Banken을 시작으로 8개의 은행이 도산하였으며 1991~94년 동안 도산한 은행의 자산규모는 GDP의 5.3%에 달하였다(〈表 Ⅱ-47〉, 〈表 Ⅱ-48〉 참조). 이와 같은 은행의 도산에 預金保險制度는 效果的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形態

덴마크의 예금보험제도는 '預金保護法(Consolidated Deposit Guarantee Fund Act)'에 근거하여 민간 독립기구의 형태인 '預金保護機構(The Deposit Guarantee Fund)'로 도입되었다. 預金保護機構는 감독원이 영업권을 취소한 은행에 대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교적 그 역할은 단순하다.

다. 保護對象 機關 및 預金

은행, 저축은행(savings banks), 협동은행(cooperative banks), 외국 금융기관지점 등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預金保護機構에 가입하여야 한다. 예금 가운데 임직원의 예금, 동업자 예금,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의 예금이 아니다.

---

47) Pozdena(1992)는 덴마크는 엄격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금보호제도가 필요없지만 EU의 권유 때문에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필자가 방문하여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금보호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덴마크 금융기관의 경영위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表 Ⅱ－47〉 덴마크의 破産 金融機關[1)]

(單位 : %)

	C&G Banken	Højderyggens Andelskasse	Andelskassen Grøsted	Lannung Bank	Benzon Bankier	Lindknud-Hovborg Andelskasse
보험에 의한 총지급액(1994년 말까지) :						
－예금자수	799.0	404.0	992.0	219.0	140.0	1,820.0
－백만 DKK[2)] (순액)	40.0	11.8	38.0	18.1	6.3	80.0
보호된 순예금 (백만 DKK)[3)]	43.0	12.4	40.2	18.1	8.3	80.3
보호되지 않은 예금자 수	n.a	6	9	41	10	79
배당						
－추정치	35.0%	30.0%	87.0%	69.0%	n.a	75.0%
－장부치	－	－	50.0%	60.0%	n.a	－
－장부 상의 날짜	－	－	94.9.27	92.11.31과 92.12.20	－	－
발생날짜	88.5.7	92.5.11	92.8.5	92.9.17	94.6.22	94.6.27

註 : 1) Samson Bankier의 경우 1995년 5월 5일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됨.
2) 1994년 말까지 지급된 것을 기초로 하였음.
3) 지급액 및 예정분.

〈表 Ⅱ－48〉 북유럽지역 金融機關의 損失規模

	손실 및 비중(1991년～1994년)[1)]			
	10억 각국 통화	대출 중의 비중	연간GDP대비 비중	잔액 대비 비중
덴 마 크[2)]	51.9	10.8	5.3	5.3
스 웨 덴	165.4	19.3	11.5	11.1
노 르 웨 이	41.2	9.2	7.6	7.6
핀 란 드	64.2	15.0	8.5	8.5

註 : 1) 누적치임.
2) 패로(Faroe)섬의 금융기관들은 제외.

라. 保險金 및 保險料

保險金은 예금에서 예금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순예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保險金 支給 限度는 30만덴마크크로네이다. 다만 연금관련 예금, 어린이 예금, 주택저축 예금, 교육저축 예금 등의 특수예금은 전액이 보호된다.

金融機關은 預金保護機構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매년 금융기관 총예금의 0.2% 이하이다. 예금보호기구의 기금은 30억덴마크크로네 이상이어야 하며 기금이 그 미만이 되면 금융기관의 총 기부액은 매년 7억덴마크크로네이어야 하며 그 기부액은 각 금융기관의 保險對象 純預金額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保險對象 純預金은 매년 3월과 9월의 보험대상 순예금을 평균한 값이다. 금융기관의 납부액은 매년 1월에 전년도의 보험대상 순예금을 기준으로 조정하며 金融機關은 預金保護機構가 통지한 후 8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預金保護機構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預金保護機構의 기금이 부족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상공부는 국회의 승인을 거쳐 예금보호기구의 자금 차입을 보증할 수 있다.

마. 運營

預金保護機構는 理事會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사회는 商工部(Minister of Business and Industry)가 지명한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회장은 경제 및 회계 전문가이며 다른 이사 1인은 법률 전문가, 이사 2인은 금융기관 대표, 나머지 이사 1인은 예금자를 대표하며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 및 예금자에 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預金保護機構는 해당 金融機關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預金保護機構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지만 이사회의 이사는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점외에도 감독원 및 중

앙은행은 預金保護機構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즉 預金保護機構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규정은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預金保護機構는 업무 및 결산 보고서를 다음 해 3월 이내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감사를 받는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金融機關 倒産時 預金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금보호기구는 기금이 30억덴마크크로네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은 유동성이 5억덴마크크로네 이상이면서 총 기금의 25% 이상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預金支給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법원으로부터 金融機關의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예금보호기구는 預金者 保護에 관한 내용을 예금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預金保護機構는 1개 이상의 일간 신문을 통하여 도산 금융기관에 관한 내용, 예금 保險金 支給에 관한 내용 등을 예금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개별 예금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바. 銀行構造 및 監督制度

덴마크의 은행구조는 소수의 대형은행과 다수의 소형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4년말 현재 은행 수는 219개, 은행 총 자산은 9억 5,800만 덴마크크로네, 은행 총 고용인은 4만 2,000명이다. 상위 2개 대형은행의 市場 占有率이 약 55%이며 상위 12개 대형은행의 市場 占有率이 약 87%이다. 그리고 은행은 전국에 자유롭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덴마크는 兼業主義(universal bank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업무는 광범위하다. 은행은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인 예금·대출 업무외에 증권업무를 수행하며 보험업무도 子會社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상업은행 업무를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88년에 덴마크의 監督院(The Supervisory Authority of Finan-

cial Affairs)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기존의 두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탄생하였다. 그 이전에는 商業銀行과 貯蓄銀行의 감독기관 그리고 보험회사의 감독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1990년 1월에는 擔保信用會社(mortgage-credit institutions)에 대한 감독기관도 감독원에 흡수되어 현재는 감독원이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즉 監督院은 상업은행, 저축은행 등의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의 보험회사, 연 기금,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소, 예금보호기구, 투자자 보호기구 등을 감독한다[48].

덴마크가 단일 감독원 제도를 갖추게 된 이유는 첫째 兼業主義下에서 금융시장간, 금융기관간의 협조관계가 긴밀하게 됨에 따라 감독제도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감독에 관한 專門家를 다수 確保하게 되어 다양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점도 단일 감독제도를 채택한 이유이다.

直接 檢査(on site inspection)는 모든 은행에 대하여 1~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주기는 은행의 규모 및 등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등급은 감사 후에 결정되며 매년 감사보고서 결과에 의하여 수정된다.

감독의 주요 내용은 은행의 健全性 判斷에 주어 지는데 첫째 '채무이행이 可能한 財務比率에 관한 規則(solvency ration rules)'의 준수이다. 은행의 채무이행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은행의 위험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適正 資本比率의 保有'이다. 원칙적으로 최저 자기자본 비율은 8%이며 후순위 부채를 자기자본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최저 비율은 10%이다. 셋째 '資産運用에 대한 規則'이다. 流動性 資産은 부채의 15%, 부채와 지급보증 합의 10%

48) 한 감독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으나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유사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상이어야 하며, 유가증권 투자는 단일 기업에게는 자기 자본의 15% 이내, 전체로는 자기 자본의 60% 이내로 제한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자기 자본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2. 네덜란드의 預金保護制度

가. 背景

네덜란드는 預金者를 保護하고 이로 부터 금융제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1979년에 預金保護制度를 도입하였다. 預金保護制度의 內容은 1986년에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최근에는 EU의 권고 내지 지침에 따라 預金保護制度가 변경되었다.

나. 形態

네덜란드의 '預金保護制度(Collective Guarantee Scheme)'는 '信用制度監督에 관한 法(The Act of the Supervision of the Credit System)'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예금보호제도는 중앙은행(The Nederlandsche Bank)에 의하여 金融部(The Minister of Finance)의 자문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다. 保護對象 機關 및 預金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預金保護制度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비회원국 지점은 예금자가 본국의 預金保護制度에 의하여 네덜란드의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예금 가운데 동업자 예금, 자본의 성격을 지닌 예금, 불법 예금, 공적

예금, 보험 · 공동투자 기관의 예금, 연 · 기금, 임직원, 5% 이상 지분의 주주와 그 친인척 예금, 가명 및 차명 예금 등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자는 보호 예금에 포함되며 外國 通貨의 예금도 보호된다. 共同名義(joint accounts)의 예금은 단일 예금자의 예금으로 취급된다.

라. 保護 限度額

保護 限度額은 개별 예금자를 기준으로 2만ECU이다. 예금자가 도산한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하여 EU내의 예금액이 2만ECU를 초과하더라도 2만ECU까지만 보호된다. 예금은 모두 길다(guilder)로 환산하여 지급된다.

마. 運營

預金保護制度에 의한 예금 지급은 中央銀行이 預金取扱 金融機關에 대하여 예금지급 불능의 판정을 내릴 때 이루어진다. 中央銀行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상황을 확인한 후 21일 이내에 지급불능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보호 예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지급시기는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2차례까지 연기될 수 있다.

예금지급 불능 금융기관의 預金者에 대한 保護預金 支給額은 다른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부터 割當 比率(apportionment percentage)에 의하여 징수된다. 割當 比率은 預金取扱 金融機關이 中央銀行에 제출하는 월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中央銀行이 금융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각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징수액은 총 보호예금 지급액에 각 금융기관의 할당 비율(각 금융기관 할당 비율의 총 합은 1)을 곱하여 산정된다. 만약 후에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은 할당 비율에 따라 각 預金取扱 金融機關에게 지급된다.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年間 徵收額은 自己資本(own funds)의

5% 이하이어야 한다. 만약 연간 징수액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中央銀行이 無利子로 초과 자금을 예금취급 금융기관에게 대출하며 각 금융기관은 조속히 차입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바. 金融規制 및 監督制度

네덜란드의 金融規制는 EU 위원회가 금융규제를 법제화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문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는 문서화된 규제는 없었다. EU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금융규제가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金融規制는 그 목적을 金融制度의 건전성 유지, 자유로운 경쟁체제의 확립,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에의 상한선을 두는 등의 규제가 설정되었다.

네덜란드의 감독제도는 金融市場別로 별도의 감독기관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이 중심이 되고 있는 信用機關(credit institutions)과 投資機關(investment institutions)의 주 감독기관은 중앙은행이며, 증권업무의 주 감독기관은 證券委員會(Securities Board)이고 보험회사의 주 감독기관은 증권위원회(Insurance Board)이다. 재무부 장관도 관련 법에 의하여 각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中央銀行의 金融政策은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재무부 장관이 중앙은행 집행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제약은 있지만 대체로 中央銀行은 金融政策과 監督業務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도 할 수 있다. 다만 中央銀行은 독립적인 外部監査 또는 財務部長官에 의하여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인 금융조약 체결에 있어서는 재무부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機能에 의한 監督이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銀行業務와 證券業務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재무부의 자문을 받으면서 中央銀行과 證券委員會에 의하여 수행된다. 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金融機關은 감독기관에게 일년에 두번 은행에 필요한 자금, 보험회사의 필요 예치금,

자회사의 자본금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업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中央銀行이 감독하며 보험업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위원회가 감독한다. 또한 양 감독기관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것을 법이 명시하고 있다.

은행은 중앙은행에 매월의 업무보고서와 연차 보고서를 재출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눈에 띄지 않는 保護者(secret guardianship)'로서 은행의 업무를 감독한다. 은행의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발생하여 은행파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銀行은 법원에 청산인의 지정을 요청하여 은행의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中央銀行은 預金者 保護業務를 수행한다.

參 考 文 獻

具丁玉, 『美國의 信用協同組合』, 신협연구 94-1, 信用協同組合中央會研究所, 1994. 12.

金基根, 「主要國의 預金保險制度 現況」, 『경제브리프스』, 한국산업은행, 1993. 6, pp. 30~51.

朴景緖, 『銀行의 預金保險制度 導入方案』, 政策調査報告書 95-02, 韓國金融研究院, 1995. 3.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金融環境變化와 預金保險制度의 發展方向』, 1993. 2.

信用管理基金, 『G7 국가의 預金保險制度』, 조사연구 제91-01호, 企劃調査部, 1991. 9.

———, 『預金保險制度의 評價 및 改善課題』, 研究用役報告書, 1992. 5.

———, 「예금보험과 모럴 해저드」, 『신용관리』, 1993. 3, pp. 58~73.

鄭雲燦, 「금융자율화와 預金保險制度」, 『신평저널』, 1988년 가을호.

鄭雲燦 · 金大植 · 金容鎭, 『예금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과제』, 신용관리기금, 1992. 5.

崔長鳳 · 安鍾吉, 『美國 · 캐나다 · 日本의 預金保險制度』, 韓國租稅研究院, 1995. 5.

崔長鳳 · 安鍾吉 · 金基洪, 『預金保護制度의 도입을 위한 연구』, 韓國租稅研究院, 1995. 7.

韓國銀行, 「주요국의 預金保險制度」, 『조사통계월보』, 1988. 12.

———, 『美國의 銀行産業 및 預金保險 現況과 向後 政策方向』, 調査第1部, 업무참고자료 91-3, 1991. 2.

———, 『주간해외경제』, 94-50호, 1994. 12.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預金者保護制度의 現況 및 補完方案』, 業務資料

監企-31, 1989. 12.

———, 『金融規制와 銀行監督』, 1992. 3.

韓國租稅硏究院, 『主要國의 預金保護法』, 1995. 12.

金融財政事情硏究會(日本), 『預金保險制度』, 大藏省銀行局內 金融制度硏究會, 1969. 11.

———, 『銀行法の解說』, 株式會社きんさい, 1994. 6.

預金保險機構(日本), 『預金保險制度の槪要』, 1993. 8.

———, 『預金保險機構年報』, 1994. 7.

Association of German Bank, *By-Laws of the Deposit Protection Fund of the Association of German Banks,* August 1995.

Avery, R. B. and A. N. Berger, "Risk-based Capital and Deposit Insurance Reform,"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North-Holland), 1991, pp. 847~874.

Bank of England, *Banking Act Report for 1994/95,* 1995.

———, *Statements of Principles,* May 1993.

Becketti, Sean, "Can Losses of Federal Financial Programs Be Reduced?,"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July/August 1991, pp. 5~20.

Berlin, M., Anthony Saunders and Gregory F. Udell, "Deposit Insurance Reform: What Are the Issues and What Needs to Be Fixed?,"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North-Holland), 1991, pp. 735~752.

Black, Robert P., "Reflections on Deposit Insurance,"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Vol. 77, No. 1, January/February 1991, pp. 3~6.

Bradley, M. G., C. A. Wambeke and D. A. Whidbee, "Risk

Weights, Risk-Based Capital and Deposit Insur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North-Holland), 1991, pp. 875~893.

Bundesverband Deutscher Banken e. V., *The Banking System in Germany*, Köln, 1995.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nual Report 1993*, 1994.

_____, *Application for Deposit Insurance By-Law and Policy of Deposit Insurance By-Law*, 1993.

_____,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ct*, May 1989.

_____, *Deposit Insurance Survey Report*, June 1993.

_____, *Premium Surcharge by-Law*, 1994.

_____, *Standards of Sound Business and Financial Practices*, 1993.

Carisano, Rita, *Deposit Insurance: Theory, Policy and Evidence*, Billing & Sons Ltd., Worcester, 1992.

Chan, Yuk-Shee, Stuart I. Greenbaum and Anjan V. Thakor, "Is Fairly Priced Deposit Insurance Possible?," *Journal of Finance*, Vol. 47, No. 1, March 1992, pp. 227~24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Reforming Federal Deposit Insurance*, September 1990.

Danmarks Nationalbank, *Danish Government Securities 1995*, February 1995.

_____, *Data on Danish Public Foreign Borrowing*, May 1995.

_____, *Monetary Review*, May 1995.

Department of Finance, *Enhancing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Canadian Financial System*, February 1995.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dernizing the Financial System: Recommendations for Safer, More Competitive Banks*, Fe-

bruary 1991.

Deposit Protection Board, *A Guide to the United Kingdom Deposit Protection Scheme*, 1995.

———, *Report and Accounts*, each issues.

Diamond, D. W. and Dybvig, P. H., "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1, June 1983, pp. 401~419.

Dotsey, M. and Anatoli Kuprianov, "Reforming Deposit Insurance: Lessons from the Savings and Loan Crisis,"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March/April 1990, pp. 3~28.

Dreyfus, Jean-Francois, Anthony Saunders and Linda Allen, "Deposit Insurance and Regulatory Forbearance: Are Caps on Insured Deposits Optimal?,"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6, No. 3, August 1994, pp. 412~438.

ECU Institute, *Banking Supervis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Institutional Aspect*, Etudes Europeennes, Belgique, 1995.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nual Report 1993*, 1994.

Flannery, Mark J., "Pricing Deposit Insurance When the Insurer Measures Bank Risk with Error,"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North-Holland), 1991, pp. 975~998.

General Accounting Office, *Credit Unions: Reforms for Ensuring Future Soundness*, July 1991.

Hein, Scott E., "A Reexamination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Deposit Insurance," *Business Economics*, July

1992, pp. 26~31.

Jaffee, Dwight M., "Symposium on Federal Deposit Insurance for S&L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4, Fall 1989, pp. 3~9.

Kane, Edward. J., "The Gathering Crising in Federal Deposit Insurance," *MIT Press*, Cambridge, MA., 1985.

———, "The High Cost of Incompletely Funding the FSLIC Shortage of Explicit Capital,"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4, Fall 1989, pp. 31~47.

Kareken, John H., "Deposit Insurance Reform; or, Deregulation is the Cart, Not the Horse," *Quarterl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Winter 1990, pp. 3~11.

Keeley, Michael C., "Deposit Insurance, Risk, and Market Power in Bank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90, pp. 1183~1200.

Keeton, William R., "Small and Large Bank Views of Deposit Insurance Today vs. the 1930s,"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September/October 1990, pp. 23~35.

Keeton, W. and C. Morris, "Why Do Banks' Loan Losses Differ?,"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May 1987, pp. 3~21.

Kendall, Sarah B. and Mark E. Levonian, "A Simple Approach to Better Deposit Insurance Pricing,"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North-Holland), 1991, pp. 999~1018.

Kydland, Finn E. and Edward C. Prescott, "Business Cycles:

Real Facts and a Monetary Myth," *Quarterl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Spring 1990, pp. 3~18.

Landskroner, Yoram and Jaco Paroush, "Deposit Insurance Pricing and Social Welfa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8, No. 3, May 1994, pp. 531~552.

Merton, Robert C., "An Analytic Derivation of the Cost of Deposit Insurance and Loan Guarantees: An Application of Modern Option Pricing Theo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 1977, pp. 3~11.

_____, "Deposit Insurance Reform: a Functional Approach,"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Vol. 38,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North Holland), 1993, pp. 1~34.

Mester, Loretta J., "Curing Our Ailing Deposit-Insurance System," *Business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September/October 1990, pp. 13~24.

Mingo, J. J., "Open-bank Assistance Transactions and Prompt Corrective Action,"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8, No. 4, December 1994.

Ministry of Finance, *The Ministry of Finance: Organization, Roles, and Functions*, July 1994.

Moysich, Alane K., "An Overview of the U.S. Credit Union Industry," *FDIC Banking Review*, Vol. 3, No. 1, Fall 1990, pp. 12~26.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Annual Report 1993*, 1994.

Nederlands Bank, *Credit System Supervision Manual*, October 1994.

Norton, J. J., et al. (ed.), *International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the 1990s*, Graham & Trotman/Martinus Nijhoff, London, 1994.

O'hara, M. and Wayne Shaw, "Deposit Insurance and Wealth Effects: The Value of Being 'Too Big to Fail'," *Journal of Finance*, Vol. 45, No. 5, December 1990, 1587~1600.

Park, Sangkyun, "The Behavior of Uninsured Deposits Market Discipline or 'Too Big to Fail'?," *Research Paper No. 9130*,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December 1991.

Pozdena, Randall J., "Danish Banking: Lessons for deposit Insurance Reform,"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Vol. 5, 1991, pp. 289~298.

Ronn, E. and A. K. Verma, "Pricing Risk-Adjusted Deposit Insurance: An Option-Based Model," *Journal of Finance*, Vol. 41, 1986, pp. 871~896.

Saunders, A., E. Strock and N. G. Travlos, "Ownership Structure, Deregulation and Bank Risk Taking," *Journal of Finance*, June 1990, pp. 643~653.

Shaffer, Sherrill, "Aggregate Deposit Insurance Funding and Taxpayer Bailout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North-Holland), 1991, pp. 1019~1037.

Shiers, Alden F., "Deposit Insurance and Banking System Risk: Some Empirical Evidence," *The Quarterly Ri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34, No. 4, Winter 1994, pp. 347~361.

Stiglitz, J. and A. Weiss,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81, pp. 393~410.

Talley, Samuel H. and Ignacio Mas, "Deposit Insuranc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1990.

Todd, Walker F.,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in the Collapses of Three State Chartered Private Deposit Insurance Funds," *Working Paper 9411*,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October 1994.

Wheelock, D. C., and S. C. Kumbhankar, "Which Banks Choose Deposit Insurance? Evidence of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in a Voluntary Insurance System,"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7, No. 1, February 1995, pp. 186~201.

White, Lawrence J., "The Reform of Federal Deposit Insura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4, Fall 1989, pp. 11~29.

_____, "The S&L Debacle: Public Policy Lessons for Bank and Thrift Regu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附　　錄

〈附錄 Ⅰ〉聯邦貯蓄貸付保險公社(FSLIC)

1930년대 공황시, 저축대부조합의 도산이 속출하자 이러한 도산에 의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1934년 國家住宅法(The National Housing Act 제4장)이 제정되고 그에 의거하여 FSLIC가 설립되었다.

가. 機構 및 資本金

FSLIC는 연방주택소유자대부공사가 출자한 1억달러의 資本金으로 설립된 聯邦政府機關의 하나로서 聯邦住宅貸付銀行理事會(FHLBB)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7억 5천만달러 한도 내에서 재무부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었으나 차입실적은 없었다.

나. 業務

FSLIC의 업무내용은 가입대상 금융기관만 다를 뿐 FDIC와 동일하였다.

다. 加盟 金融機關

FSLIC의 保險加入對象 金融機關도 FDIC의 경우와 같이 연방인가 저축대부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州인가 저축대부조합은 임의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1987년 말 현재 加入金融機關數를 보면 저축대부조합의 경우 연방인가 조합 1,288개, 州認可조합 1,360개를 합쳐 2,648개로 전체 저축대부조합 2,961개의 89.4%

(총자산기준으로는 98.9%)에 달하고 있는 데 반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984개 중 FDIC의 보험에 가입한 485개 은행을 제외한 499개만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50.7%(총자산 기준으로는 52.2%)에 머물고 있었다.

라. 付保限度額

예금자 1인당 예금손실 보전상한액은 10만달러로서 FDIC와 같았다.

마. 保險對象預金

保險對象預金에는 저축대부조합의 저축계정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이 모두 포함되었다.

바. 保險料

1987년 현재 법정 定規保險料率은 당시의 FDIC와 같은 수준인 保險對象 預金殘額의 1/2%로 되어 있었다.

사. 保險金支給方法

保險加入機關이 倒産 또는 經營파탄에 처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방식은 국법은행을 신설하여 도산금융기관의 보험대상예금채무를 인수시키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FDIC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다만 FSLIC는 預金承繼方式에 크게 의존하는 FDIC와는 달리 資金支援을 통해 경영파탄 금융기관을 건전 금융기관에 합병시키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保險金의 직접지급방식을 채택한 것은 1987년까지 14건에 불과하였다.

아. FSLIC의 運營과 破産

1980년대에 들어서 金利自由化 등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저축대부조합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특히 석유산업 및 부동산관련사업 등에 과도한 투자를 하였던 남서부지역 소재 저축대부조합이 油價下落 및 不動産景氣 沈滯 등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부실 저축대부조합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FSLIC의 保險事故關聯 지출이 급증하게 되었고 1985년부터는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매분기 보험대상예금의 1/32% 해당액(연간 1/8%)을 特別保險料로 징수하였으나 FSLIC의 수지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1987년 은행법을 제정하여 FSLIC의 損失보전을 위한 108억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을 허용함과 아울러 同 公社의 自會社로 자금조달회사를 설립하여 연간 37억 5천만달러 한도 내에서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9년 FSLIC는 支給不能에 직면하여 파산하게 되었고 FSLIC의 기금은 貯蓄組合保險基金(SAIF)이라는 새로운 기금으로 대체되었다.

〈附錄 Ⅱ〉 日本 預金保險制度 導入에 대한 日本 金融機關의 意見[1)]

1. 都市銀行 意見

가. 基本的인 思考方向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굳이 預金保險制度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日本의 金融制度 현상을 직시한다면 예금보험제도 창설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예금보험제도의 기반위에서 금융효율화가 한층 촉진될 수 있다.

이른바 金融效率化는 금융기관 경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쟁은 金融機關의 경영에 優劣을 발생시키고, 또한 금융기구의 재편성과 경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新技法의 도입을 동반한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 예금자에게 만의 하나라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本制度에 의하여 만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公共性 維持를 위한 社會的 義務이기도 하다.

2) 過保護行政의 철폐, 예금자보호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이른바 過保護行政은 환언하면 過行政이 초래한 결

---

1) 1969년 4월 24일 금융제도조사회 제2분과회에서의 금융기관대표 5인의 의견.

과이기도 하다. 과행정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過保護行政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금융행정의 모습이다. 이것을 고쳐 진정한 預金者保護原則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의 창설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나. 預金保險制度 創設의 方向

이상의 思考와 일본의 실정을 고려하면, 預金保險制度는 금융계에 경쟁원리 도입, 즉 점포의 자유화, 은행업무의 다양화, 금리기능의 탄력화 등의 진전과 병행하여 導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保險基金 적립이 금융기관의 자금코스트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자금코스트에 부담을 주는 것은 금융효율화의 목적인 低利安定資金 공급에 反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보험료 지불은 일종의 조세적 성격 혹은 당연한 사회적 連帶義務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결정은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2) 預金保險基金은 민간의 自主運營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民間의 自主運營에 일임한다는 것은 동시에 민간의 책임하에 운영한다는 것으로 금융기관 스스로가 이것을 자각함으로써 예금자보호 정신이 한층 더 살아나게 된다. 또한 행정의 중복화를 피할 수 있고, 예금보험제도의 조직기구도 보다 간소하게 할 수 있다.

3) 預金保險에 의한 保障對象은 일반대중이어야 한다.

대중예금자는 각 금융기관 經營의 健全性 程度를 상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중예금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保險金額 限度

도 日本의 소득수준, 저축보호상황, 소액저축비과세제도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4) 預金保險制度는 점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美國과 같은 제도를 일거에 실현하려고 하거나 당초부터 거액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서서히 육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預金保險制度에 관한 몇 가지 事項

1) 預金保險制度와 預金者心理

本 制度는 預金者心理에 어떤 악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불안은 無用한 것이며, 본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金融機關 經營에 안도감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 金融機關 行政의 方向

預金保險制度의 目的은 金融機關의 經營保全과 預金者保護라는 2가지이다. 그러나 경영보전의 경우는 금융기관 경영파탄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반하여 預金者保護의 경우는 만의 하나 경영파탄이 야기 된 때의 사후적 조치이므로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 日本의 預金保險制度는 어디까지나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창설되어야 하므로 본 제도가 행정적 통제수단으로 변해서는 안된다.

2. 地方銀行의 意見

가. 競爭原理의 導入에 관하여

預金保險制度의 創設은 경쟁원리의 도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競爭原理 導入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日本의 金融制度는 오랜 역사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業態와 조화를 이루면서 금융기능을 행하고 있다. 그 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金融效率化라는 이름하에 일률적으로 競爭原理를 導入하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보통은행을 봐도 일본의 보통은행제도는 전국적 점포망을 갖는 都市銀行과 地域經濟를 기반으로 하는 地方銀行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양자는 같은 은행법에 의거한 보통은행이지만 주로 영업분야가 도시은행은 대기업중심, 지방은행은 지역금융중심으로 보완적이어서 日本經濟의 發展에 기여할 수 있었다.

점포배치 하나에 있어서도, 지역에 책임을 갖고있는 지방은행은 효율화라는 관점만으로 점포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은 도시은행이 銀行經營 立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점포배치를 고려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금융행정과 관련된 사안이나 중앙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자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도시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영체질 역시 크게 상이하다.

일부에서는 지방은행과 도시은행을 구별없이 경쟁시키는 것이 金融效率化를 위해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양자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춰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또한 國民經濟的 立場에서도 효율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預金保險制度의 必要性에 대하여

地方銀行은 사운드뱅킹을 일관된 경영방침으로 하여 장기간 실천해 왔다. 이렇게해서 배양된 경영의 건전성과 그것에 기초한 예금자와의 신뢰관계는 굳건하여 그 기반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信用制度의 근간은 保險制度가 아닌, 각 금융기관과 예금자와의 신뢰관

계 구축에 있으며 따라서 지방은행으로서는 현단계에서 預金保險制度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金融機關 전반의 신용제도 유지라는 공공적 관점에 입각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預金者保護制度를 검토하려는 의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는 외국의 사례에 구애되지 않고 일본의 실정에 입각한 제도를 온갖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預金保險制度의 基本에 대하여

日本의 실정에 맞는 預金保險制度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 3가지를 기본적인 것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

① 業種別 保險機構로 할 것

② 自主的으로 運營되는 조직으로 할 것

③ 가능한한 金融機關 負擔의 경감을 도모할 것

1) 業種別이라는 것에 대하여

同一 業種의 金融機關은 장기간에 걸쳐 공통의 경영이념을 갖고 다양한 금융기능을 행하며 그 집단 내에는 강한 親近感이 있다. 이 때문에 동일 업종이라면 서로간에 보험에 드는 것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동안의 검토결과도 金融機關 전부보다도 업종별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2) 自主的이라는 것에 대하여

銀行과 預金者間은 강한 신뢰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預金保險制度도 결국은 그 신뢰관계를 좀더 깊게 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金融機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경우 保險機構 內容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요망된다.

① 기구는 간소하게 하며, 그 運營은 參加金融機關의 사회적 책임에

의거 자주적으로 한다.

② 保險機構의 業務는 保險金支給에 한하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제금융 등은 일절 하지 않는다.

保險制度는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預金者를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保險金의 支給에 한정하는 것이다. 만일 信用制度가 위태로와지는 사태가 발생 할 경우 예금보험제도가 아닌 정부, 중앙은행 등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3) 負擔輕減 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제도에 참가하는 金融機關의 負擔은 가능한한 경감해야 하며, 업종별로 간소한 보험제도라면 經費負擔도 자연스럽게 경감될 것이다.

3. 信託銀行의 意見

가. 預金保險制度 導入에 관하여

金融機關은 이제까지 그 공공성을 감안, 예금자보호와 건전경영의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金融行政 側面에서도 많은 조치가 강구되어 왔다.

이들 조치는 日本經濟 속에서 금융이 완수해야 할 역할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國民經濟上 필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며 아울러 預金者保護를 도모함으로써 저축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래 預金者保護는 각금융기관의 자기책임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預金保險制度에는 금융기관의 비용증가나 기타 다른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예측불능 사태에 대비하여 「사소한 실수도 예방」하기 위하여 豫防措置를 강구할 예정이다. 信用秩序維持 方針으로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신중을 기하는 금융기관 전

통으로도 異意를 주장 할 근거는 없다. 本 制度의 導入으로 인하여 경쟁조건이 다른 金融機關間에 필요 이상의 경쟁을 유발하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預金保險制度의 도입에 있어서도 金融效率化를 진실로 實效있게 하기 위해서는 金融正常化를 병행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預金保險制度와 信託計定에 대하여

信託業界로서는 종래부터 예금자 및 수익자 보호의 관점에 입각하여 健全經營에 주력해 왔는데,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특히 分別管理原則에 의거하여 고유계정과 이를 분리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受益者 保護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신탁업계로서는 지금부터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수익자 보호에 철저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預金者保險制度 창설의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확실함을 원하는 수익자의 심리를 감안, 대부신탁, 合同運用 指定金錢信託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가입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신탁특유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했으면 한다.

4. 相互銀行의 意見

가. 金融效率化와 相互銀行의 立場

국민경제의 대형화, 자유화시대를 맞아 경제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일본금융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도 金融全體의 效率化가 요청되고 있다. 이미 상호은행도 작년 9월부터 통일된 經理基準의 적용을 보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점포행정도 탄력화되어 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

金融機關의 競爭原理 導入은 시대의 요청이라고 하여도 그 前提로서 「적정한」경쟁이 이루어질 환경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상호은행은 중소기업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과 昭和26年에 발족했다는 후발성 때문에 보통은행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 내지는 경영체질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 주요 사항을 제기하면, 먼저 「중소기업금융제도 존재방식」이라는 답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신경이 많이 쓰이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부득이 높은 코스트의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各 金融機關의 機能의 同質化, 競爭激化 속에서 상호은행이 코스트 인하를 도모하는 등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주력을 다하면서 진정한 中小企業金融機關으로서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 없이, 전술한 대로 歷史的·制度的 背景 때문에 상호은행으로서는 여전히 타개해야 할 장벽이 남아 있다.

따라서 各 金融機關間에 적정한 경쟁을 시키고자 한다면 各 金融機關의 제도상의차이 및 다양한 체질을 충분히 배려하여 실제로 그러한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각종 公金取扱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후발금융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상호은행은 이것의 취급에 있어서 현저하게 뒤지는 상태에 있으며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두번째로는 상호은행이 中小企業金融機關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長期融資를 하지 못하는 체제가 정비되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정비된 상태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상호은행 등 中小企業專門金融機關에 장기융자의 자금원이 되는 長期預金의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금후 競爭原理의 導入下에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호은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려가 행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競爭原理를 導入하는 것은 원활한 중소기업금융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專門金融機關의 發展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

나. 預金保險制度에 대하여

預金保險制度의 創設이 효율화 행정추진의 기본조건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장·단기금융기관의 존재방식 등 各 金融機關 存在方式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일반 민간금융기관의 존재방식은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계에 있다. 또한 상호은행의 입장에서도 적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환경의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인 것도 전술한 바와 같다. 이렇게 금융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명료하지 않은 유동적 환경하에서, 預金保險制度 導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속도 등에서 매우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預金保險制度는 과거에 몇 번 검토되었었고, 또한 최근 昭和32년(1961년)에도 예금보장기금법안으로서 검토되었으나 보류된 사실이 있다. 그 경위를 회고해 보면 당시의 제안내용이 一部 金融機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고, 기본적으로는 금융 내지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日本의 다양한 風土的인 문제가 뿌리 깊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한편 상호은행의 경우에는 직접 預金者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업계로서는 同種連帶相互扶助의 목적을 갖는 相互保障協定이 체결되어 있다. 이 제도는 상호은행의 信用維持 向上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預金者保護에도 충분히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과거에 이 상호보장협정은 경영이 악화된 동업자의 구제를 도모, 예금자의 동요를 미연에 방지한 실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상호보장협정은 예금자보호의 기능을 실질적으로는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預金者保護의 창설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개선책과 병행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信用金庫의 意見

가. 預金者保護에 대한 基本的 態度

信用機構 維持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서는 경영의 건전화에 유의하는 것 이외에 예금자보호를 위해 만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信用金庫業界로서도 자산의 유동성 확보 등 경영의 건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 자주적으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신용보전을 위한 제도를 창설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預金者保護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바, 예금자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 또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適正한 競爭을 確保하기 위한 條件의 整備

현재 과제로 되어 있는 預金保險制度는 金融效率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金融機關 經營의 合理化를 촉진하는 한편, 경쟁의 결과 금융기관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 예금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영향을 완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도되고 있는 적정한 경쟁이 現狀에서 문자 그대로 기대될 수 있을까? 즉 경쟁의 진정한효과는 完全競爭市場下에서 발휘되는데, 현 상황은 아직 資本蓄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금융기관이 over loan에 고민하고 있고, 중소기업자는 한계적 거래자로 취급되고 있다. 즉 비정상적인 금융환경하에서 신용금고 등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이 제도 및 기타의 면에서 경쟁상 불리한 조건하에 놓여져 있는 현 상황하에서, 業態가 다른 異種金融機關을 포괄한 自由競爭을 위하여 획일적인 競爭原理가 導入된다면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에 있어서의 불리한 점이 해소되지 못하여 열악한 중소기업금융은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우선 금융이 정상상태로 회복될 필요가 있으며, 신용금고 등 중소기업전문기관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부과되어 왔던 각종 제약이나 취급상의 차이를 가능한한 완화하고 필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시정하여 진정한 적정경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건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前提되어야 한다.

다. 信用機構의 維持

預金保險制度가 信用機構 維持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이상, 특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도 단지 規模의 大小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預金保險制度는 일정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信用機構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支給準備資產을 확보하여 경영기초를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이 경영의 건정성을 維持, 예금자보호에 유감이 없도록 예방적인 조치가 검토되는 것이 첫째이다.

또한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경영에 노력하는 金融機關의 부담으로 불건전한 金融機關을 구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金融機關 經營者 각자가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는 것에 책임을 갖고 자주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信用機構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금자 모두가 보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예금보험제도가 恐慌 등의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이것들을 위한 만전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業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금지불준비제도」를 제도적으로 체크하여 강화하는 것도 한가지 案이라고 생각한다.

라. 金融의 效率化

預金保險制度의 실시에 의한 보험료 부담의 多少와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비용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부담 여하에 따라서는 저리자금의 공급,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경감이라는 金融效率化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減殺된다면 金融의 效率化推進이라는 당초의 의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도창설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의 투입, 혹은 조직의 간소화 등의 배려도 필요하다.

마. 結論

전술한 대로 預金保險制度의 실시에 즈음하여 그 前提條件으로 고려되는 적정경쟁이 확보되기 위한 조건정비,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保持를 위한 조치, 자금코스트 상승을 적극 회피 할 필요가 있는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용금고업계로서는 預金保險制度 創設에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으나 금후 이와같은 사항에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 결정되었으면 한다.

6. 信用組合의 意見

가. 序

預金保險制度는 金融效率化를 위한 적정경쟁원리를 도입하는데 있어 전제조건으로서 預金者保護 措置를 강구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 '金融效率化' 와 '競爭原理의 導入' 및 금융제도조사회의 답신에 기초하여 작년에 법제화된 중소기업금융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中小企業金融의 圓滑化'에 대하여 먼저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金融의 效率化

'金融의 效率化'라는 것은 ① 국민경제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② 低利良質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에 대해서는, 日本經濟의 담당자인 대기업의 자금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金融機關에 보다 많은 자금이 흡수되도록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그 專門金融機關에 국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다해도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항상 자금이 부족하다. 오히려 대형금융기관 계열하에 있는 특정 대기업에의 과다대출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②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金融機關은 자금코스트가 저렴하여 대출금리가 낮은 金融機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자금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예금 및 대출이 거액이므로 대출금리가 낮은 그 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집중한다면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말은 맞지 않다. computer recession이익도 중소기업금융기관이라 해도 전국연합회 또는 지구별 조직으로 개발한다면 대형금융기관에 열세인 것을 만회할 수 있다.

2) 適正競爭原理의 導入

'適正競爭原理의 導入'은 필요한 점이나 그 전제로서 우선 競爭條件의 均衡을 확보하는 공평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점포행정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밀착하여 예금을 흡수, 융자할 필요에 따라 한 지역 내에 밀도 높은 점포를 허용받음으로써 대형금융기관에 비하여 競爭條件上 어느정도의 균형이 확보될 수 있지만 점포의 자유화가 도모되지 않는 균형은 깨지게 된다. 특히 영세기업을 상대하는 신용조합은 가장 고밀도 점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후발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자유화의 압력을 받게 되어 상

당한 피해를 입을 입장에 있다. 가장 강력한 제약을 받고있는 信用組合에는 점포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측면에서 競爭條件의 均衡을 확보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도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3) 中小企業金融의 圓滑化

'中小企業金融의 圓滑化'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을 주축으로 하여 금융제도조사회의 답신에서도 장기안정자금의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바, 그 실행 조치로서 중소기업금융정비개선법에 의거 相互銀行, 信用金庫, 信用組合 3종을 專門金融機關으로 하여 미비점을 고쳤으며, 合併轉換法에 의해 金融機關으로서의 강화도 목표로 하였다. 그 후 조사회의 심사에서도 이 점이 언급되어 있다.

나. 要望事項

이러한 생각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금융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적정경쟁원리의 도입이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소기업 및 그 전문금융기관을 상당정도로 평가하는 행정이 선행되기를 요망한다.

다. 自主的 方案

預金者保護는 공공성을 갖는 금융기관의 최대 사명이므로 본래 自主的으로 이를 확보해야 하는바,

① 지급준비를 강화하며

② 현행 동종 금융기관의 상호보장협정을 개선 ·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意見

支給準備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압박하여 대출금리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상호보장협정은 金融機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預金者保護는 아니라는 점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술한 대로 올바른 내용의 金融效率化를 위한 경쟁원리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일에 대비하여 預金保險制度를 창설한다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

마. 預金保險制度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 預金保險制度가 設立된다면 모든 金融機關을 加入시켜야만 한다.

① 信用維持라는 관점에서 각종 금융기관은 大小에 상관없이 공통의 입장에 있으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金融機關이라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쉽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잇점을 고려하여 保險料는 稅金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했으면 한다.

② 大企業에는 補完關係에 있는 하청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전문금융기관의 예금보호도 남의 일이 아니며 大型金融機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信用組合도 預金保險制度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시켜야 한다.

① 신용조합은 金融法에 의해서도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그 지위가 명확하며, 예금량은 약 1조 5,000억엔, 예금자 수는 약 540만명으로 전국중소기업 사업주 350만명, 종업원 2,500만명 총 2,850만명의 19%에 달되고, 확실한 중소기업자 및 근로자의 금융기관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 영세예금이 集積된 총예금량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으나 예금자 수는 대단히 많아 신용조합은 매우 대중화된 금융기관임을 보여주고 있다.

② 신용조합 감독법규인 「協同組合에 의한 金融事業에 관한 法律」에서도 확실하게 신용조합의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써 일반신용을 유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신용조합예금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있다.

③ 信用組合은 상호부조 협동조합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처럼 개인의 자유가 강조된 경제관념이 발달한 상태에서는 조합원이라 해도 단순한 예금자, 거래자라는 의식만으로 조합원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異種金融機關에도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용조합의 예금만이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합경영의 전도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세예금자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④ 예금보험의 주된 대상은 소액 대중예금으로 생각되므로 전문기관인 신용조합을 가입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3) 都市銀行으로부터 信用組合 등 모두를 포괄하고, 또한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보험기관이 설립되야만 한다. 加入金融機關은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예금자보호에는 종래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자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附表 Ⅰ－1〉 預金種類別 預受金 現況(1993年度 末殘基準)

(單位 : 億원,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소 계		기타예금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시중은행	156,813	14.7	349,089	32.7	561,789	52.6	1,067,691	76.5	327,593	23.5	1,395,284	100.0
지방은행	49,134	24.7	85,388	43.0	64,134	32.3	198,656	82.7	41,702	17.3	240,358	100.0
특수은행	12,453.2	25.2	36,883.2	74.8	-	-	49,336.4	63.6	28,195.9	36.4	77,532.3	100.0
합 계	218,400.2	16.6	471,360.2	35.8	625,923	47.6	1,315,683.4	76.8	397,490.9	23.2	1,713,174.3	100.0

資料 : 韓國銀行, 『調査統計月報』, 各號
_____, 『銀行經營統計』, 1994.

〈附表 Ⅰ－2〉 市中銀行의 預金種類別 預受金 現況(1993年度 末殘基準)

(單位 : 億원,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소 계		기타예금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 흥	26,842	18.9	53,369	37.6	61,662	43.5	141,873	81.7	31,751	18.3	173,624	100.0
상 업	19,757	13.8	59,053	41.2	64,635	45.0	143,445	79.0	38,074	21.0	181,519	100.0
제 일	25,829	18.0	53,995	37.7	63,528	44.3	143,352	80.1	35,561	19.9	178,913	100.0
한 일	21,897	15.9	52,325	37.9	63,861	46.2	138,083	76.7	42,063	23.3	180,146	100.0
서 신	17,471	13.9	40,962	32.6	67,362	53.5	125,795	82.9	25,930	17.1	151,725	100.0
외 환	17,241	17.1	30,187	29.9	53,495	53.0	100,923	56.9	76,351	43.1	177,274	100.0
신 한	8,026	10.0	25,092	31.3	47,080	58.7	80,198	75.7	25,698	24.3	105,896	100.0
한 미	3,119	12.1	7,448	28.8	15,251	59.1	25,818	75.1	8,553	24.9	34,371	100.0
동 화	5,189	14.9	7,367	21.2	22,183	63.9	34,739	80.4	8,464	19.6	43,203	100.0
동 남	3,495	18.6	4,026	21.5	11,224	59.9	18,745	76.9	5,623	23.1	24,368	100.0
대 동	2,707	16.7	3,959	24.3	9,603	59.0	16,269	72.5	6,159	27.5	22,428	100.0
하 나	2,001	4.7	4,949	11.6	35,889	83.7	42,839	81.5	9,689	18.5	52,528	100.0
보 람	1,829	3.9	3,770	8.0	41,569	88.1	47,168	84.8	8,477	15.2	55,645	100.0
평 화	1,409	16.7	2,587	30.6	4,445	52.7	8,441	61.9	5,203	38.1	13,644	100.0
합 계	156,813	14.7	349,089	32.7	561,789	52.6	1,067,691	76.5	327,593	23.5	1,395,284	100.0

資料 : 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1994.

〈附表 Ⅰ－3〉 地方銀行의 預金種類別 預受金 現況(1993年度 末殘基準)

(單位 : 億원,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소 계		기타예금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대 구	9,681	25.2	17,815	46.3	10,987	28.6	38,483	84.3	7,197	15.7	45,680	100.0
부 산	7,510	21.1	16,092	45.1	12,063	33.8	35,665	86.0	5,790	14.0	41,455	100.0
충 청	6,063	31.8	6,776	35.5	6,242	32.7	19,081	85.4	3,258	14.6	22,339	100.0
광 주	4,141	22.0	7,868	41.7	6,852	36.3	18,861	78.7	5,102	21.3	23,963	100.0
제 주	1,411	25.0	1,623	28.8	2,605	46.2	5,639	86.4	886	13.6	6,525	100.0
경 기	7,273	25.3	13,936	48.4	7,581	26.3	28,790	86.2	4,593	13.8	33,383	100.0
전 북	2,090	21.0	4,207	42.3	3,652	36.7	9,949	74.4	3,426	25.6	13,375	100.0
강 원	2,034	25.5	2,613	32.7	3,338	41.8	7,985	74.8	2,694	25.2	10,679	100.0
경 남	6,916	27.4	10,960	43.4	7,360	29.2	25,236	82.1	5,505	17.9	30,741	100.0
충 북	2,017	22.5	3,497	39.0	3,452	38.5	8,966	73.4	3,252	26.6	12,218	100.0
합 계	49,134	24.7	85,388	43.0	64,134	32.3	198,656	82.4	41,702	17.3	240,358	100.0

資料 : 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1994.

〈附表 Ⅰ－4〉 特殊銀行의 預金種類別 預受金 現況(1993年度 末殘基準)

(單位 : 億원,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소 계		기타예금		합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중소기업	1,900.7	28.0	4,881.5	72.0	6,782.2	51.6	6,368.9	48.4	13,151.1	100.0
국 민	3,385.0	28.4	8,523.2	71.6	11,908.2	81.3	2,744.6	18.7	14,652.8	100.0
주 택	1,068.2	10.8	8,787.2	89.2	9,855.4	66.7	4,918.7	33.3	14,774.1	100.0
농 협	5,568.4	41.8	7,767.6	58.2	13,336.0	70.5	5,587.6	29.5	18,923.6	100.0
수 협	339.4	33.0	688.0	67.0	1,027.4	53.2	902.5	46.8	1,929.9	100.0
축 협	201.7	23.5	656.8	76.5	858.5	36.2	1,512.8	63.8	2,371.3	100.0
합 계	12,463.4	28.5	31,304.3	71.5	43,767.7	66.5	22,035.1	33.5	65,802.8	100.0

資料 : 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1994.

〈附表 Ⅰ－5〉 A銀行의 總預受金 金額別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
(1992年 12月 末 基準)

(單位 : %)

	예금주별 총예수금 (CD제외)		예금주별 총예수금 (CD포함)		예금주별 순예수금 (CD제외)		예금주별 순예수금 (CD포함)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만원 미만	90.91	9.36	90.88	8.05	92.02	9.91	91.98	8.28
~1,000만원 미만	3.98	6.20	3.98	5.33	3.48	6.42	3.45	5.36
~1,500만원 미만	1.90	4.78	1.79	4.12	1.82	5.17	1.62	4.31
~2,000만원 미만	0.99	3.81	0.99	3.27	0.84	3.85	0.84	3.20
~2,500만원 미만	0.67	3.28	0.67	2.81	0.61	3.57	0.60	2.97
~3,000만원 미만	0.32	1.93	0.32	1.66	0.29	2.10	0.29	1.75
~3,500만원 미만	0.24	1.72	0.24	1.50	0.22	1.93	0.23	1.63
~4,000만원 미만	0.15	1.25	0.15	1.08	0.14	1.38	0.14	1.15
~4,500만원 미만	0.13	1.21	0.13	1.05	0.12	1.36	0.12	1.15
~5,000만원 미만	0.10	1.01	0.10	0.88	0.09	1.10	0.09	0.93
~5,500만원 미만	0.09	1.09	0.10	0.98	0.09	1.21	0.09	1.05
~6,000만원 미만	0.06	0.72	0.06	0.63	0.05	0.78	0.05	0.67
~6,500만원 미만	0.05	0.68	0.05	0.51	0.04	0.73	0.04	0.63
~7,000만원 미만	0.04	0.56	0.04	0.50	0.03	0.60	0.03	0.52
~7,500만원 미만	0.03	0.56	0.04	0.60	0.03	0.61	0.03	0.53
~8,000만원 미만	0.03	0.45	0.03	0.40	0.02	0.48	0.03	0.41
~8,500만원 미만	0.03	0.48	0.03	0.43	0.02	0.52	0.03	0.45
~9,000만원 미만	0.02	0.44	0.02	0.38	0.02	0.46	0.02	0.39
~9,500만원 미만	0.02	0.40	0.02	0.36	0.02	0.42	0.02	0.37
~1억원 미만	0.02	0.36	0.02	0.34	0.01	0.38	0.02	0.35
1억원 이상	0.31	59.64	0.34	59.54	0.26	56.84	0.28	57.09

〈附表 Ⅰ-6〉 B銀行의 總預受金 金額別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
(1992年 12月 末 基準)

(單位 : %)

	예금주별 총예수금 (CD제외)		예금주별 총예수금 (CD포함)		예금주별 순예수금 (CD제외)		예금주별 순예수금 (CD포함)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만원 미만	92.74	20.86	92.65	19.81	93.27	22.53	93.18	21.27
~1,000만원 미만	3.74	13.56	3.73	12.87	3.48	13.64	3.49	12.88
~1,500만원 미만	1.47	9.26	1.47	8.80	1.38	8.23	1.38	8.71
~2,000만원 미만	0.70	6.21	0.70	5.90	0.84	6.08	0.64	5.74
~2,500만원 미만	0.41	4.68	0.41	4.46	0.38	4.64	0.38	4.38
~3,000만원 미만	0.21	3.02	0.21	2.91	0.18	2.96	0.20	2.84
~3,500만원 미만	0.14	2.44	0.16	2.49	0.13	2.45	0.15	2.51
~4,000만원 미만	0.10	1.87	0.10	1.81	0.09	1.83	0.09	1.77
~4,500만원 미만	0.08	1.67	0.08	1.88	0.07	1.64	0.07	1.63
~5,000만원 미만	0.06	1.38	0.08	1.93	0.05	1.32	0.08	1.83
~5,500만원 미만	0.05	1.38	0.06	1.64	0.05	1.32	0.06	1.60
~6,000만원 미만	0.03	1.01	0.04	1.01	0.03	0.92	0.03	0.92
~6,500만원 미만	0.03	0.95	0.03	0.96	0.02	0.87	0.03	0.89
~7,000만원 미만	0.02	0.80	0.02	0.78	0.02	0.71	0.02	0.70
~7,500만원 미만	0.02	0.77	0.02	0.78	0.02	0.69	0.02	0.70
~8,000만원 미만	0.02	0.63	0.02	0.62	0.01	0.57	0.01	0.57
~8,500만원 미만	0.02	0.65	0.02	0.66	0.01	0.58	0.01	0.57
~9,000만원 미만	0.01	0.56	0.01	0.55	0.01	0.49	0.01	0.48
~9,500만원 미만	0.01	0.56	0.01	0.58	0.01	0.49	0.01	0.51
~1억원 미만	0.01	0.60	0.01	0.63	0.01	0.44	0.01	0.59
1억원 이상	0.14	27.22	0.16	29.17	0.12	28.62	0.14	28.83

〈附表 Ⅰ－7〉 C銀行의 總預受金 金額別 預金主 및 金額 構成比

(1992年 12月 末 基準)

(單位 : %)

	예금주별 총예수금 (CD제외)		예금주별 총예수금 (CD포함)		예금주별 순예수금 (CD제외)		예금주별 순예수금 (CD포함)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금주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만원 미만	94.88	9.56	94.83	8.56	95.32	9.56	95.26	8.51
~1,000만원 미만	2.40	5.38	2.39	4.81	2.20	5.09	2.19	4.53
~1,500만원 미만	1.05	4.05	1.04	3.82	0.97	3.88	0.97	3.44
~2,000만원 미만	0.46	2.67	0.47	2.38	0.44	2.54	0.44	2.25
~2,500만원 미만	0.30	2.17	0.30	1.91	0.28	2.03	0.27	1.79
~3,000만원 미만	0.15	1.35	0.16	1.20	0.14	1.27	0.14	1.13
~3,500만원 미만	0.12	1.30	0.13	1.28	0.11	1.21	0.12	1.14
~4,000만원 미만	0.08	0.97	0.08	0.89	0.07	0.90	0.07	0.83
~4,500만원 미만	0.06	0.86	0.07	0.82	0.05	0.78	0.05	0.75
~5,000만원 미만	0.05	0.77	0.05	0.72	0.04	0.69	0.05	0.85
~5,500만원 미만	0.05	0.91	0.08	0.84	0.05	0.86	0.06	0.89
~6,000만원 미만	0.03	0.50	0.03	0.48	0.02	0.45	0.02	0.43
~6,500만원 미만	0.03	0.62	0.03	0.61	0.03	0.55	0.03	0.54
~7,000만원 미만	0.02	0.40	0.02	0.41	0.02	0.40	0.02	0.41
~7,500만원 미만	0.02	0.47	0.02	0.46	0.02	0.39	0.02	0.39
~8,000만원 미만	0.02	0.40	0.02	0.39	0.01	0.36	0.02	0.38
~8,500만원 미만	0.02	0.41	0.02	0.41	0.01	0.33	0.01	0.33
~9,000만원 미만	0.01	0.58	0.01	0.87	0.01	0.31	0.01	0.30
~9,500만원 미만	0.01	0.31	0.01	0.82	0.01	0.26	0.01	0.29
~1억원 미만	0.01	0.32	0.01	0.82	0.01	0.32	0.01	0.31
1억원 이상	0.21	85.20	0.24	69.18	0.19	67.81	0.22	70.74

〈附表 Ⅰ－8〉 各國의 1人當GNP 및 貯蓄額 對比 預金保險 付保限度額

	보험금 지급한도액 (자국통화)(A)	1인당GNP대비 지급한도액		1인당저축액대비 지급한도액	
		1인당GNP(B)	A/B×100	1인당저축액(C)[2]	A/B×100
오스트리아	Schiling 200,000	263,917	75.8	228,323	87.6
벨기에	Franc 500,000	728,159	68.7	–	–
캐나다	Dollar 60,000	23,914	250.9	5,218	1,149.9
콜롬비아	Peso 150,000	1,235,099	12.1	209,175	71.7
덴마크	Krone 250,000	162,736	153.6	110,501	226.2
핀란드	Markka 500,000	94,581[1]	528.6	56,099	891.3
프랑스	Franc 400,000	122,043	327.8	71,609	558.6
인디아	Rupee 30,000	7,700	389.6	3,474	863.4
일본	Yen 1,000만	3,832,825	260.9	3,799,101	263.2
케냐	Schilling 100,000	10,734	931.6	3,486	2,868.5
네덜란드	Guider 35,000	37,353	93.7	30,527	114.7
나이지리아	Naira 50,000	7,123	702.0	–	–
파라과이	Guarany 5,000,000	–	–	79,198	6,313.3
필리핀	Peso 15,000	23,124	64.9	8,023	187.0
스페인	Peseta 1,500,000	1,539,474	97.4	1,096,857	136.8
스위스	Franc 30,000	51,455	58.3	54,137	55.4
트리니다드토바고	Dollar 50,000	19,271	259.5	7,751	645.1
터키	Lira 3,000,000	–	–	4,272,157	70.2
영국	Pound 15,000	10,916	137.4	10,073	148.9
미국	Dollar 100,000	24,643	405.7	3,730	2,681.0
베네수엘라	Bolivar 250,000	255,567	97.8	65,209	383.4
한국	20,000,000원		334.0		876.6
	30,000,000원	5,988,675	500.9	2,281,480	1,314.9
	50,000,000원		834.9		2,191.6

註 : 1) 1인당 GDP사용.
2)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인구수.

資料 : 본문 참고문헌 참조.
IMF, IFS, 각호.